

쿠릴 문제

역사, 법, 정책 그리고 경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쿠릴 문제

역사, 법, 정책 그리고 경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지음
김종현 옮김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나라의 대외정책 효율성을 분석하는 주제는 현재까지 러시아 학계에서는 그 누구도 연구하지 않은 학술적 처녀지다. 러시아 자료들을 보면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 분과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관계 분과의 선도적 연구 소들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필자의 연구를 제외하고[예를 들어 87, 88 참조], 러시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출간된 학술서는 없다.

해외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개념적·이론적 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외정책을 최적화할 필요에 따라 해외의 몇몇 나라들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일련의 실용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요컨대 1980년대 미국에는 향후 대외정책의 여건들을 예측하고 국제관계 분야에서서

국가 간의 발전전략과 정부정책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컴퓨터를 활용한 일련의 실용적 연구들이 존재했다. 이 연구들은 과학분석센터인 ‘랜드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몇몇 국가들(미국,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 일본)에서는 질적 기준에 따라 대외정책의 효율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는 위와 같은 방안을 현실화시킨 결과로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성격의 연구물들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체제하에서 러시아 거주자들, 즉 국민 전체의 운명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결정들을 채택함에 있어, 이러한 과정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어떤 외국의 경험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소련, 러시아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내 공화국들에서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연구를 시도한 적이 없다. 대외정책의 효율성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주관적일 뿐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 소련 외무부 장관 셰바르드나제(Э. Шеварднадзе)는 자신이 관할했던 외교정책 부서의 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즉 80년대 중후반 - 저자 주) 신사고에 입각한 대외정책 노선의 실현에 따른 ‘평화배당금’ 총액이 2,400~2,500억 루블에 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94의 2쪽]고 평가했다. 그러나 냉정하고 현실적인 수치들은 전 세계 지전략적 안정성의 전반적 악화와 그에 따른 국지적 국제분쟁을 차치하고라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는데, 1992년 한

해에만 그 액수가 약 340억 달러에 달했다[45의 1쪽, 46의 1쪽과 3쪽 참조]. 그나마 여타의 국제정치적·군사전략적 측면들은 이 액수에서 배제되었다.

러시아연방 하원 안보위원회 위원장 일류힌(В. Илюхин)은 “러시아 연방의 정치·경제활동, 안보현황, 지정학적 상황, 외교활동 등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 역량이 손상을 입고 있는 규모와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자유와 독립이 현저하게 침해당함으로써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34의 1쪽].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국제관계 분야에서 신사고정책에 바탕을 둔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 노선이 추진된 결과, 지구적 차원의 지정학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와해되었고, 세계 재분할 경쟁에서 새로운 전쟁의 발발 위험성이 증가되었다. ‘1995년 러시아 국가안보개념’을 만들어낸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련 해체 이후 발트 해에서 태평양까지의 유라시아 공간에 형성된 지정학적 진공상태가 러시아에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본과 중국 같은 극동지역 세력 중심”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34의 91쪽].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사이에 대외정책의 주요 현안들이 축적되었다. 최근 20년 동안 러시아 국민들의 등 뒤에서 러시아의 안보와 이익에 손실을 입히는 조약과 협정들이 체결되고 비준되면서 러시아의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치는 국제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가 대외정책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국제조약과 협정을 준비하며, 대외정책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질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외정책과 경제의 상호관계를 분석해 보면, ‘신사고 정책’과 ‘현대 세계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지위’에 기반을 두고 수행된 고르바초프(M. С. Горбачев)와 엘친(Борис Ельцин) 정부의 대외정책이 갖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효율성 및 대외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문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극동,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복잡한 상호관계와 정치, 경제, 군사전략, 문화인류 및 여타 영역들의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학술적 문제들은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개인, 사회 또는 국가가 취한 활동의 모든 형태가 그 형태의 효율성 측정 가능성과 필요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식의 문제 제기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대외정책의 효율성은 경제적 효율성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대외정책의 효율성 문제는 폭넓은 다방면적인 의미를 지니며, 지정학, 경제, 군사전략, 정치이데올로기, 사회심리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 속에서 대외정책 활동의 근본적인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경제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기준이 대외정책의 영역에서 유일하게 적용되는 평가 척도는 아니며, 주요 척도가 아닌 경우도 자주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대외정책의 효율성이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과거 러시아의 경험에서는 실질적인 대외정책 행위가 경제적 평가를 동반한 적은 사실상 없었다.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그리고 주로 이데올로기와 몇몇 지정학적 요인만이 고려 대상이었다.

대외정책이 지니는 경제적 효율성의 평가는 그 수행이 어렵고 다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외정책을 다루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써 정당한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대외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과 비용에 대한 가치의 범주(효과, 수입, 순익)로 표시된 대외정책 결과로 이해된다.

이처럼 현대 학문을 통해 대외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을 사실과 근접하게 계산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경제적 타당성의 관점에 입각하여 국제관계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근사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극동지역 국제정황의 정확한 분석과 함께 경제적 평가 도구를 도입하면 극동에서 러시아의 정책을 다루기 위한 과학적 분석과 예측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러시아에서 수행한 대외정책을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평가한다면, 전반적으로 지전략적 안정성의 약화는 차치하더라도, 러시아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바로 지금이 대외정책의 '채산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즉 정치인들과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이 지닌 효율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명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행위 영역상) 지역적이고 (행위 기간상) 단기적 성격의 개별적 대외정책 상황들을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정치인들과 해당 정부기관들의 대외정책 결정 및 국제관계에서 그것의 구현 행위를 경제적 관점에서 개략적이거나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별한 평가방법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리학적 장치를 사전에 만들어내지 않아도 현 시점에서 이미 가능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러시아는 영토를 매각하여 나라의 영토적 완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국의 이익에 반하는 노선을 취해왔다.

과거 러시아에서 그렇게 해왔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국가 대외정책 및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몇몇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와 ‘소련 및 러시아의 국익보다 인류 공동의 가치 우선’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극동지역의 인접국들과 아시아·태평양 관계 노선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행위 영역상) 지역적 성격의 행위를 추출해낼 수 있다. 그것은 러일관계와 관련 있다. 1991년 고르바초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른바 ‘쿠릴 문제’가 그것이다.

영토문제는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가장 첩예하고 고통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다. 게다가 러시아에서는 외무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점진적으로 영토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하고 학술단체의 개별 대표들과 언론인들을 동원하여 이 문제에서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행위가 감지되고 있다.

극동지역과 동북아에서 영토문제에 따른 러·일의 국가 간 관계를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분석하는 일은 실질적 관심을 제공한다. 이 경우 주목해야 할 사실은 러시아연방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국제적 측면에서 러시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해양도서와 풍부한 생물자원, 해저 석유, 가스, 망간단괴 등을 보유한 도서 주변 해양경제권역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러일관계의 영토문제에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는 다수의 연구서

가 존재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두 열강이 ‘분쟁’ 지역(쿠릴열도와 사할린)을 획득한 역사적 측면, 즉 누가 먼저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고, 양국 국민들이 얼마나 오래 그곳에 머물렀으며, 어떤 유적들을 그곳에 남겼는가를 중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법은 일본과 러시아 양측이 동일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양국 모두 (정치적 의지에 따라) 학자들의 힘을 빌려 자국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증명해낼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효용성이 없다. 이 접근법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역사적) 접근법은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적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모든 역사적 시점의 편린을 기산점으로 삼아 상응하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일본은 시모다조약[下田條約]이 체결된 해인 1855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사할린에 대한 공동영유권을 배제한 생략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할린의 공동영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투루프(Итуруп) 섬 이북의 쿠릴열도를 일본에 귀속시킨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оговор), 이른바 ‘교환’조약을 체결한 시점인 1875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향후 영토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러시아가 급속하게 약화되면 될수록, 서부, 남부, 동부 등 러시아의 국경 전역에 대한 압력은 가중될 것이다.

필자는 이전에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및 국경문제와 관련하여 ‘극동에서 러시아 대외정책의 효율성 문제(Проблемы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88]라는 공동연구에서 2개 장을 집필했고,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2개 장에서 남쿠릴열도를 일

본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그리고 경제·전략적 측면들을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측에서 제기한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법적 접근방식이 제기되어 있다.

이 연구서의 방법론적 토대는 국가안보와 국익의 개념인데, 이는 국제관계에서 실용성을 추구하고 국제법과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대외정책의 근본으로서 대외정책의 효율성, 구체적 대외정책 수단 및 대외정책의 노선과 독트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다.

이 책의 연구대상은 영토·국경문제(남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현대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관계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영토 및 국경 획정에 대한 역사적·정치적·법적 증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러시아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쿠릴 문제’의 법적·경제전략적 부분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긴요하고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집필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쿠릴 문제’의 역사적·국제법적·지정학적·방위적·경제적 측면에 대한 실제적인 종합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극동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불법성과 대일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소련/러시아 외교부의 계산착오를 제시했고, 남쿠릴 지역의 자연자원, 생물자원, 광물자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러시아에 대한 이 지역의 경제전략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쿠릴(Kuril)’은 원주민 아이누(Ainu)족의 토착어로서 사람(man)이라는 뜻이다. 쿠릴열도에는 사할린과 홋카이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이 누구의 땅인지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조차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누대에 걸쳐 살아온 토착인 아이누족의 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이누족은 러시아와 일본의 폭력과 배척의 식민정책으로 인해 변경민이 되어버렸고, 쿠릴열도는 태평양전쟁 발발과 더불어 미소전시동맹(美蘇戰時同盟)의 시험대가 됨으로써 과거 아이누족의 삶의 터전은 현재 동북아시아 영토분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책은 쿠릴열도 문제를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실증적으로 다루

고 있다. 저자인 트카첸코 박사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영토문제 전문가다. 그는 러시아-중국, 러시아-일본, 러시아-미국 간의 경계문제를 다룬 약 380여 편의 연구 성과를 펴낸 바 있으며, 특히 그의 저작 『러시아-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국경』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번역 발간하여 2011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현재 그는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극동인민 고고·인류·역사학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자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국립해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책의 구성은 서론, 본론(2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서 말미에 58건의 사료를 첨부문서로 엮어놓음으로써 쿠릴열도 관련 자료집의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어 원본의 경우, 총 310쪽 분량에서 사료부분은 135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책의 절반을 관련 자료로 편집해놓고 있다. 요컨대 쿠릴 문제에 관한 한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의 당위성을 입증할 방대한 자료 축적에 대한 자신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일관하고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병적인 부분이 쿠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1991년 고르바초프가 공식적으로 쿠릴 문제를 러일간의 영토문제로 인정한 이래, 러시아 외무부가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여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일련의 행위가 감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르바초프의 ‘신사고(新思考)’ 정책과 ‘러시아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목표로 한 엘친 정부의 대외정책이 “소련 해체 이후 발트 해에서 태평양까지의 유라시아 공간에 형성된 지정학적 진공상태에서 일본과 중국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둘째, “대외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분석하기”가 그것이다.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정책으로 러시아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다면, 정부 결정으로 초래된 결과들을 경제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쿠릴 문제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바, 해양도서와 풍부한 생물자원, 해저 석유, 가스, 망간단괴 등을 보유한 도서 주변 해양경제권역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저자의 문제의식은 2부로 구성된 본문에서도 관통되고 있다. 제1부는 쿠릴 문제의 역사적·법적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18~21세기 초반까지 시기별로 4개장으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18~20세기 초 러일 간 국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양국 간의 국경문제의 기원을 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 동참한 러시아 차르의 정책에서 찾음으로써 쿠릴 문제의 역사적 연고권을 ‘지리상의 대발견’ 시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이는 러시아 코사크의 동진과 북빙양 동부해역과 태평양 북부해역에 대한 해양탐사에서 확인되는 러시아 차르(Царь)들의 정책 그리고 1640년대에 오희츠크 해와 태평양 연안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러시아 탐험가들과 해양 탐사대의 업적들과 연동되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대항해 시대’의 산물이 러일 간의 국경문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양국 사이에 체결되었던 일련의 조약들(1855년 시모다조약, 1875년 페테르부르크조약, 1905년 포츠머스조약, 1925년 소일기본조약)과 국경선의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1875년 조약의 결과, 사할린은 러시아가, 쿠릴열도는 일본이 나눠가졌던 태평양에서의 양국 간의 세력균형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와해됨으로써 일본은 전쟁을 통해 쿠릴열도뿐만 아니라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남부를 동시에 갖게 되는 현상변경의 주범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쿠릴열도의 영유권 변화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러일 양국은 강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전쟁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현실이 쿠릴 문제 발생의 배경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1945년 9월 20일부터 소련이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을 수립한 것은 바로 그날 포츠담선언에 따른 일본 천황의 칙령이 발표되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알타협정과 포츠담선언에서 연합국 대표들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의 조건으로 전후 소련에 사할린 남부를 반환하고 쿠릴열도를 할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945년 9월 16일 소련군 사령부가 천황의 예정된 칙령과 관련하여 동년 9월 20일부터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가 소련의 영토로 발표될 것임을 각 도서의 현지 당국에 통보한 것은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들이 결의한 1945년 2월 11일자 알타협정에 근거한 것이지, 결코 일본과의 강화조약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제3장에서는 20세기 후반 러일 영토문제의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소련과 일본 간의 영토문제 발생 배경에 미국의 책략이 있었음을 지목한 바, 이는 소련과 일본의 우호관계 수립과 상호접근을 막으려는 미국의 압력이 쿠릴 문제의 배경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련이 알타협정에 근거하여 쿠릴열도를 영유한 상태는 소일(蘇日) 간의 조약을 통해 확정되지 못했다는 법률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쿠릴열도 지배는 국제법적으로 불법점령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일은 영토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했는가? 이는 미소 간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소일 간의 국제법적 조

정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논지다. “미국은 법률적 측면에서 영토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련은 그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20세기 말~21세기 초 ‘쿠릴 문제’의 정치적·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쿠릴 문제의 현대적 성격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맞물려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질서 속에서 담보상태에 있던 쿠릴열도 문제가 냉전체제의 해체를 겪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쿠릴열도 문제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추동세력은 한편으로 냉전의 해체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전후질서를 변경하려는 일본과 다른 한편으로 이에 호응한 소련과 러시아의 지도자 고르바초프와 옐친이었다.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질서를 특히 독일에 유리하게 변경시켰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동에서의 전후질서도 일본에 유리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1991년 고르바초프의 일본 방문 시, 소일 영토문제 즉 쿠릴열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고르바초프의 이 같은 입장은 1990년 말 이른바 ‘섬 대신 돈’이라는 대일 협상공식으로 표출되었다. 소련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쿠릴열도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도서의 귀속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요체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처음으로 소일 간의 쿠릴열도 문제가 존재하며 그 문제를 토론하는 데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고르바초프를 계승한 옐친은 1993년의 도쿄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쿠릴열도 문제에 접

근한 트카첸코 박사에게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정책은 ‘민족배반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 책의 제2부는 남쿠릴열도의 전략적·경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서 저자가 주목한 남쿠릴 열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안보위협이 키워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를 점령하는 자가, 태평양과 오호츠크 해의 출입구를 점령하는 것인바, 쿠릴열도의 지배는 오호츠크 해와 태평양 사이의 군함과 상선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쿠릴열도는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개전 당시 소련의 극동과 미국의 하와이에 대응한 군사교두보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이를 양보할 경우, 극동과 아태지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 안보위협론의 요지다. 따라서 저자는 쿠릴열도의 일부 지역을 상실하는 것만으로도 레이더망의 왜곡과 원자력잠수함의 방위영역 확대로 인한 통일된 전략 방위체계의 손상을 입게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남쿠릴 지역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남쿠릴 지역이 갖는 최고의 경제적 가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영토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관심 역시 인구과잉으로 인한 거주공간의 축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남쿠릴열도의 총면적은 8,600km²인 바, 쿠릴열도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이 면적은 사이프러스, 레바논, 자메이카 등의 면적과 유사하며,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작다. 남쿠릴열도 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는 육지를 제외한 해양생물자원만으로도 최소 220~450억 달러에서 최대 600~1,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남쿠릴 지역을 일본에 양도하여 러시아가 겪게 될 장래 해양생물자

원의 예상 손실액이며 육상자원을 포함할 경우, 최소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국가의 미래자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자원이 독특하게 조합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트카첸코 교수는 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국익과 경제적 효율성의 시각에서 검토했다. 국익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쿠릴 문제에 들이댄 이유는 고르바초프와 엘친 대통령 시기의 잘못된 외교정책과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때문이다. 남쿠릴열도의 대일 양보가 초래할 경제적 손실과 방위 부담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저자는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국가안보와 영토보전을 보장하려면, 러시아연방 헌법에 연방 주체의 동의 없이는 영토의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러시아 국민의 동의 없이는 남쿠릴열도의 양보는 불가하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카첸코 교수의 이 책은 러시아 애국주의적 시각에서 쿠릴열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소련과 일본은 공식적인 평화조약은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전히 전쟁상태에 있으며, 남쿠릴열도는 알타협정과 연합국 최고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소련군이 점령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련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되는 권리와 이득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석에 따른다면, 남쿠릴열도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에 따라 포기한 영토이지만 이를 소련에 양도한다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

전히 일본 영토이고, 소련은 알타협정과 SCAPIN 1호에 따라 남쿠릴열도를 점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일본 영토를 불법 점령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2011년 2월 18일 남쿠릴열도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러시아 인테르팩스 통신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를 정리했다. “미국은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며 러일 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는 남쿠릴열도 문제의 해법이 러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러시아는 미일 공조체제에 맞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2월 15일 러시아 어업청은 러시아와 중국 대련의 수산회사가 남쿠릴열도 부근에서의 해삼 양식 합작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결국 남쿠릴열도를 둘러싸고 한편으로 미일 동맹체제와 다른 한편으로 러중 협조체제가 상호대립하고 있는 신냉전(新冷戰) 체제가 재현되고 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쿠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아마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봐야 할 듯싶다. 러일전쟁 이전 사할린과 쿠릴을 사이 좋게 나눠가졌던 그들만의 그 시절로.



- 이 책은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B. I. Tkachenko)의 책 『Курильская проблема: история, право, политика и экономика』(블라디보스토크: 네벨스코이 해양대학교, 2009)를 완역한 것이다.
- 외래어 표기는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따랐다.
- 본문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자강조 부분이다.

차례

저자 서문 · 4

해제 · 12

제1부 ‘쿠릴 문제’의 역사적·법적 측면

제1장 18~20세기 초 러일 국경선의 전개 · 33

제2장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소련에 양도된 쿠릴열도의 정치적·법적 문제 · 57

제3장 20세기 후반 양국 간의 영토문제 · 93

제4장 20세기 말~21세기 초 ‘쿠릴 문제’의 정치적·법적 측면 · 127

제2부 남쿠릴 지역의 경제전략적 의미

제1장 러시아 국가안보를 위한 ‘쿠릴 문제’의 지정학적·방위적 측면 · 167

제2장 러시아 국가안보를 위한 ‘쿠릴 문제’의 경제적 측면 · 192

결론 · 219

참고문헌 · 222

첨부(문서와 자료) · 234

찾아보기 · 394

첨부(문서와 자료)

첨부 1

1855년 1월 26일(2월 7일) 체결된 통상과 국경에 관한 시모다[下田]조약 · 234

첨부 2

1875년 4월 25일(5월 7일)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페테르부르크조약 · 235

첨부 2.1

선언 · 238

첨부 2.2

1875년 8월 10일(22일) 도쿄에서 채택된 페테르부르크조약 부가조항 · 239

첨부 3

1895년 5월 27일(6월 8일)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통상과 항해에 관한 조약 · 241

첨부 3.1

선언 · 243

첨부 3.2

정부통첩 · 244

첨부 4

1905년 8월 23일(9월 5일)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포츠머스강화조약 · 244

첨부 4.1

1905년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포츠머스강화조약의 첨부 No. 10 · 247

첨부 5

소련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상호관계의 주요 원칙에 관한 1925년 1월 20일자 협약 · 248

첨부 5.1

선언 · 249

첨부 6

일본과 소련 간에 체결된 1941년 4월 13일자 중립에 관한 조약 · 250

첨부 6.1

선언 · 252

첨부 7

1941년 8월 14일자 영미선언(대서양헌장) · 253

첨부 8

런던 연합국 회의에서 발표된 소련 정부의 1941년 9월 24일자 선언 · 254

첨부 9

1943년 11월 27일자 회담 공보(카이로선언) · 254

첨부 10

소련 주재 미국 대사 해리먼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발신한 1944년 12월 15일자
전문 No. 761,93/12-1544 · 256

첨부 11

극동문제에 관한 3개 열강의 1945년 2월 11일자 크림(알타)협정 · 256

첨부 12

일본과의 중립조약 폐기에 관한 소련 정부의 1945년 4월 5일자 성명 · 258

첨부 13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 등 3개 정부 수뇌의 1945년 7월 26일자 성명(포츠담선
언) · 259

첨부 14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행한 1945년 8월 8일자 성명 · 261

첨부 15

일본 정부가 도쿄 주재 소련 대사에게 행한 1945년 8월 10일자 성명 · 262

첨부 16

소련, 미국, 영국, 중국 정부가 1945년 8월 10일자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발송한 답변에 관한 타스(TACC) 통신의 보도 · 263

첨부 17

포츠담선언의 항복조건 수용에 관한 일본 정부의 1945년 8월 14일자 성명 · 264

첨부 18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일본이 인정하는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1945년 8월 14일자
칙서 · 265

첨부 19

일본의 1945년 8월 14일자 항복 성명에 관한 적군 총참모부의 해명 · 269

첨부 20

미국 정부가 일본 주재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발송한 1945년 8월 29일자
훈령 · 270

첨부 21

1945년 9월 2일자 일본의 항복문서 · 271

첨부 22

포츠담선언에 따른 황제 특별칙령의 효력 발생에 관한 히로히토 천황의 1945년
9월 20일자 칙유 · 274

첨부 23

피억류자 지원처 설립에 관한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1945년 11월 22일자 칙유
No. 651 · 277

첨부 24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제국 정부에 발송한 1946년 1월 29일자 각서 No.
677 · 278

첨부 24.1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제국 정부에 발송한 1946년 1월 29일자 각서 No.
677 · 280

첨부 25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46년 2월 2일자 포고 · 282

첨부 25.1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의 토지, 은행, 산업과 공기업, 철도, 수상운송수단 그리고 통신시설의 국유화에 관하여 · 282

첨부 25.2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하바롭스크 변경 산하 남사할린 주의 성립에 관하여 · 283

첨부 26

미국의 1951년 5월 7일자 대일강화조약 안에 관한 소련 정부의 의견 · 284

첨부 27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행한 소련 제1외무차관 그로미코의 1951년 9월 5일자 연설 · 290

첨부 28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행한 미국 국무장관 딜레스의 1951년 9월 5일자 연설 · 300

첨부 29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행한 요시다[吉田] 일본 총리의 1951년 9월 7일자 연설 · 301

첨부 30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행한 소련 제1외무차관 그로미코의 1951년 9월 8일자 성명 · 303

첨부 31

일본과 체결한 1951년 9월 8일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305

첨부 32

1952년 3월 20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준서 당시 이루어진 미국 상원의 조건 · 313

첨부 33

일본 입법에 따른 쿠릴열도의 구성 · 313

첨부 33.1

일본 수상의 1869년 8월 15일자 포고문 No. 734의 첨부문 · 314

첨부 33.2

일본 수상의 1876년 1월 14일자 포고문 No. 2 · 314

첨부 33.3

일본 수상과 내무대신의 1885년 1월 6일자 포고문 No. 1 · 315

첨부 34

쿠릴열도의 지리적 경계 · 315

첨부 34.1

일본 해군성 산하 수로측량국에서 1937년에 발간한 사할린 남부와 치시마의 수
로도에 의거한 쿠릴열도 · 315

첨부 34.2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의 ‘쿠릴열도’ 조 · 316

첨부 34.3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의 ‘쿠릴열도’ 조 · 319

첨부 34.4

1941년(도쿄) 일본 국립철도국의 공식 일본 안내서에 나타난 쿠릴(치시마)
열도 · 320

첨부 34.5

미국 국무부 산하 영토조사과의 1944년 12월 28일자 각서 일본. 영토문제. 쿠릴
열도 · 320

첨부 35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비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본의 주권과 소유권 포기에 관한 일본 정부 소속 공식적 인사들의 성
명 · 321

첨부 35.1

1951년 10월 6일 일본 중의원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 대표인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의 성명 · 321

첨부 35.2

1951년 10월 17일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에 대한 일본의 권리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절적한가에 대한 일본 중의원의 강화조약 및 안전조약 특별위원회 소속 니시무라 에이이치[西村英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본 수상 요시다의 답변 · 322

첨부 35.3

1951년 10월 19일 일본 중의원의 강화조약 및 안전조약 특별위원회 소속 다카쿠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본 정부 대표 외무성 조약국장 니시무라 구마오의 답변 · 323

첨부 36

1945년 6월 26일자 국제연합현장 · 324

첨부 37

1956년 공동선언 서명 이전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공한 · 325

첨부 37.1

일본 정부 전권대표 마쓰모토가 소련 제1외무차관 그로미코에게 발송한 1956년 9월 29일자 공한 · 325

첨부 37.2

소련 제1외무차관 그로미코가 일본 정부의 전권대표 마쓰모토에게 발송한 1956년 9월 29일자 공한 · 326

첨부 38

1956년 공동선언 서명 당시 소련과 일본 대표단의 공식 회담 · 328

첨부 38.1

호루시초프와 고노 사이에 진행된 1956년 10월 16일자 회의록 · 328

첨부 38.2

호루시초프와 고노 사이에 진행된 1956년 10월 17일자 회의록 · 337

첨부 38.3

호루시초프와 고노 사이에 진행된 1956년 10월 18일자 회의록 · 342

첨부 38.4

호루시초프와 고노 사이에 재개된 1956년 10월 18일자 회의록 · 345

첨부 39

소련과 일본의 1956년 10월 19일자 공동선언 · 346

첨부 39.1

소련과 일본의 1956년 9월 8일자 공동선언 비준에 관한 소련 최고상임위원회의

명령 · 349

첨부 40

1956년 공동선언 서명 이후 소련과 일본 양국 정부의 공식 교신 · 350

첨부 40.1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송한 1960년 1월 27일자 각서 · 350

첨부 40.2

일본 정부가 소련 정부에 발송한 1960년 2월 5일자 각서 · 352

첨부 40.3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송한 1960년 2월 24일자 각서 · 353

첨부 40.4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송한 1960년 4월 22일자 각서 · 356

첨부 41

시그날니(Сигнальный, 카이가라) 섬 구역에서 일본 어부들의 미역채취와 관련
하여 소련 인민경제소비에트 산하 국립어업위원회와 전일본어업인연합 사이
에 체결된 1973년 6월 10일자 협약 · 359

첨부 42

소련 연해 구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과 어업 조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76년 10월 10일자 명령 · 360

첨부 43

북빙양과 태평양의 소련 측 연해 구역에서 생물자원의 유지와 어업 조정에 따른
임시조치 도입에 관한 소련 각료회의의 1977년 2월 24일자 결의 · 363

첨부 44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소련 연안에서의 어업과 관련하여 소련 정부와 일본 정
부 사이에 체결된 1977년 5월 27일자 협약 · 364

첨부 45

일본 어부들의 미역채취업과 관련하여 소련 어업부와 홋카이도 어로인연합 간에
체결된 1981년 8월 25일자 협약 · 367

첨부 46

소련과 일본 양국 연안어업 분야에서의 상호관계에 관한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1984년 12월 7일자 협약 · 368

첨부 47

1991년 4월 18일자 소 · 일 공동성명 · 369

첨부 48

1991년 4월 26일자 소련 상원에서 행한 고르바초프의 연설 · 371

첨부 49

러일관계에 관한 1993년 10월 13일자 도쿄선언 · 373

첨부 50

해양생물자원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일부 문제에 관해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1998년 2월 21일자 협약 · 374

첨부 50.1

러시아연방 외무부가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에 발송한 1998년 5월 21일자 통
첩 · 376

첨부 50.2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이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제2국에 발송한 1998년 5월 21일자 구두통첩 · 377

첨부 51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1998년 11월 13일자 모스크바선언 · 378

첨부 52

강화조약 문제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2000년 9월 5일자 성명 · 380

첨부 53

강화조약 협상의 지속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2001년 5월 25일자 이르쿠츠크성명 · 382

첨부 54

러일행동계획 채택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2003년 1월 10일자 공동성명 · 384

첨부 54.1

러시아와 일본의 행동계획 · 386

첨부 55

1936년 소련 헌법(기본법) · 389

첨부 56

1937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기본법) · 389

첨부 57

개정 및 추가된 1978년도 러시아연방 헌법(기본법) · 390

첨부 58

1993년 러시아연방 헌법 · 392

제 1부

측면 ‘쿠릴 문제’의 역사적·법적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장

18~20세기 초 러일 국경선의 전개

일본은 20세기 중반부터 쿠릴열도의 남쪽 부분이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련과 러시아에 쿠나시르(Кунашир), 이투루프(Итуруп), 시코탄(Шикотан)과 하보마이(Хабомай) 군도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855년의 러일조약으로 영토를 분할할 당시 이 섬들이 이미 일본의 합법적 영토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러일우호통상조약(혹은 시모다조약)은 …… 조약체결 시점까지 사할린과 쿠릴열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일본으로서 이 섬들(쿠나시르와 이투루프)을 개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 일본은 그 누구보다 먼저 이 섬들을 관리했다.”[75의 6쪽, 76의 4쪽]. 이후 일본은 영유권의 역사적 객관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보다 먼저 4개 섬을 발견하고 조사했으며, 늦어도 19세기 초에 이 섬들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립했다. 19세기 초반에 러

시아 역시 우루프(이투루프 섬의 북쪽에 위치한 첫 번째 섬)가 러시아 도서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임을 인정했다”[86의 4쪽]. 일본은 이러한 주장과 자의적으로 선별하고 출간하여 러시아에 배포한 자료들을 근거로 “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군도 등 일본에서 ‘북방영토’로 불리는 섬들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75의 3쪽, 76의 3쪽]. 더욱이 일본은 오늘날 러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4개 섬, 즉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 문제 타결”이라고 간주하고 있다[86의 2쪽].

역사의 유물이 된 먼 과거의 사건이 영토와 국경 문제를 분석하는데 일정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결정적 의미를 지닐 수는 없다는 점을 언급해야만 한다. 인류의 문명사와 국제관계 영역에서의 국가 간 상호작용의 역사가 지속되면서 이런저런 지리적 영토의 귀속은 수없이 바뀌었다. 국가들도 생겨났고 사라졌다. 국가의 역사는 대체로 전쟁을 통한 끊임없는 영토 변경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시대의 국제조약집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영토와 국경 문제 해결의 결정적 요소는 역사적 측면(상응하는 역사적 접근법)보다는, 정치적·법적 측면(상응하는 정치적·법적 접근법)이다. 물론 영토와 국경 문제를 분석하는 데 지리적 영토의 국가적 귀속이 변하는 역사적 측면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유용할 수도 있다.

19~20세기 러일 국경의 전개는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코사크의 동진, 북빙양 동부해역과 태평양 북부해역에 대한 해양탐사에서 확인되는 러시아 차르들의 정책 그리고 러시아 탐험가와 해양탐험가들의 헌신으로 1640년대에 오호츠크 해와 태평양 연

안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모스크비틴(И. Москвитин)–1639, 포야르코프(V. Поярков)–1645, 데즈네프(С. Дежнев)–1648]. 17세기 초부터 러시아 탐험가들은 태평양 북부해역의 수많은 섬들을 포함하여 동쪽에서 새로운 대지를 발견했고, 그것들을 지도에 표시했다. 쿠릴열도는 17세기에 러시아 탐험가들이 발견했다. 그들은 이미 17세기 초에 사할린과 북쿠릴열도가 존재한다는 초기 정보를 확보하였고, 1660년대에는 북쿠릴열도의 개략적 형상이 러시아 지도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코사크들이 1645년에 사할린 북부[포야르코프(V. Поярков)], 그리고 1648년[데즈네프(С. Дежнев)], 1649년[스타두힌(М. Стадухин)], 1654년[스타두힌(Т. Стадухин)]에 북쿠릴열도에 체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8의 345~346쪽, 77의 65쪽, 91의 17~18쪽]. 아시아의 북동부가 러시아에 편입되었던 17세기 말, 사할린이 발견되었고, 쿠릴열도와 일본에 관한 정보가 처음 수집되었다. 17세기 말~18세기 초 캄차카(Камчатка)반도, 사할린, 쿠릴열도와 산타르(Шантар) 군도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 지도들에 처음으로 표시되었다.

1697년 아틀라소프(В. Атласов)가 캄차카를 병합한 후, 1702년 포트르 1세는 쿠릴열도를 조사하고 이 열도를 통한 일본까지의 교역로를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1711~1739년 사이에 쿠릴열도 전체가 지도에 표시되었고 러시아 해양탐험가들이 조사했다. 쿠릴열도가 최초로 남부 지역을 포함하여 지도로 제작된 것은 1711~1713년의 코지렙스키(И.П. Козыревский) 탐험의 결과다. 1711년과 1713년[1711년에는 코사크인 안티페로프(Д.Я. Антиферов)가 동행] 코지렙스키는 슴슈(Шумшу)섬, 파라무시르(Парамушир)섬과 작은 섬인 아보시(Авошь)를 방문했으며, 쿠릴군도의 22개 섬 중에서 이투루프와 쿠나시르를 포함한 16개



그림 1 러시아 극동 지도의 일부

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1713년 코지렙스키는 최초로 쿠릴열도의 상세지도를 작성했고, 이 지도에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외에 그가 쿠릴 열도의 ‘22번째 섬’이라고 명명한, 훗날 홋카이도(Хоккайдо)로 불린 섬이 표시되었다. 코지렙스키에 따르면,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와 우루프에 거주하는 원주민은 “국적을 갖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교역하는”[68의 453쪽], 독립적 존재인 아이누였다.

1713년 그는 솅슈와 파라무시르의 아이누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했다.

1721년 표트르 1세의 지시에 따라 측지학자인 예브레이노프(И. М. Евреинова)와 루지나(Ф. Ф. Лужина)의 해양탐사대가 오네코탄(Онекотан)을 포함하는 섬들을 조사했다. 그들은 6개의 북부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했으며[91의 25쪽], 추가로 8개 섬을 지도에 표시해놓았다. 원주민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한 러시아 개척자들의 활동은 러시아제국 법령을 통해 공인되었다. 예카테리나(Екатерина) 1세는 태평양에서 발견한 섬들을 포함한 새로운 영토를 러시아에 편입시키도록 하명해 달라고 요청한 원로원의 1727년 1월 18일자 상주서에 근거하여 입수된 정보에 맞게 1727년 4월 10일 쿠릴열도를 러시아제국에 편입시키라는 칙령을 내렸다[69의 151쪽].

극동에서 러시아 영토의 확장은 러시아가 태평양 북부지역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영유한 결과였다.

1738~1739년 슈판베르크(М. П. Шпанберг)와 발톤(В. Вальтон)이 사할린, 쿠릴열도, 일본 북부 연안을 따라 항해했다. 항해 중에 쿠릴열도 전역을 지도에 표시했다. 슈판베르크와 발톤은 탐사 도중 처음으로 남쿠릴과 예조(Эдзо, 홋카이도)에 다다랐다. 그들은 1739년에 예조, 쿠나시르, 시코탄에 발을 디뎠고, 혼슈 섬 북동 연안의 일본 해안에 도달했다. 슈판베르크의 학술탐사 덕분에 이 지역의 지리적 형상이 세계 최초로 제공되었고, 현재 일본에서 하보마이로 부르는(소쿠릴 열도에 포함된 이 군도는 18세기부터 러시아 지명에서는 플로스키에[Плоские]군도로 불렸다) 시코탄과 일단의 군도로 구성된 소(小)쿠릴열도를 포함하는 남쿠릴열도에 대한 상세지도가 작성되었다. 슈판베르크는 해군사령부(A

дмиралтейств—коллегия)에 보낸 보고서에서 자신이 방문한 섬들 중에서 “마트마이(Матмай, 홋카이도) 하나만이 일본 칸[汗]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섬들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러시아 탐험가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쿠릴열도를 따라 점진적으로 남하했고, 1760년대 중반에는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도달했다. 1766년 치킨(Н. Чикин)의 탐사대가 우루프 섬에 최초의 러시아인 정착지를 건설했고, 이투루프 섬에는 1768년 기병중위 초르니(И. Черный)가 이끄는 코사크 분견대가 정착지를 건설했다. 18세기 말에는 슝슈, 파라무시르, 시무시르(Симушир), 우루프, 이투루프, 쿠나시르에 러시아인 정착지가 건설되었다.

러시아 탐험가들은 쿠릴열도에서 아이누가 거주하는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 그 즉시 이 땅이 러시아에 편입되었음을 선포했고, 개별 섬들을 조사하여 지도에 표시했으며, 아이누족들의 토지개간, 모피업, 어업, 농업, 지질조사, 정착지 조성 등을 연구했다. 또한 지역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선교활동을 수행했고, 그들에게 러시아어와 새로운 생산양식을 교육시켰으며, 지역민(아이누)들에게서 정기적인 공물로 현물세를 징수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국세였다. 당시 아이누는 원시공동체의 해체단계에 있었고, 자신들의 국가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점유한 섬들에는 그 섬이 러시아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십자가 형태의 특별한 표지가 설치되었다.

현물세의 징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법률적 개념 및 17~18세기와 그 이전 시기의 전통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에게 공물(국세)을 징수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공물을 징수하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매우 중요한 조건들 중 하나며, 그 징표였다. 그 시기에 현물세를 국가에 납부하

는 것은 그 나라의 국적을 인정하는 법률적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그 주민들이 거주하는 영토는 해당 공물을 받는 나라에 속했다. 러시아 탐험가와 항해가들에게 보내진 러시아 정부의 모든 훈령에는 다른 나라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지배를 확장한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었다.

현물세(공물) 징수는 쿠릴열도에서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등의 남쿠릴열도에서는 현물세가 1760년대 중반부터 1780년대 초반까지 징수되었다. 1779년 4월 30일 제정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원로원에 보낸 칙령에 따라[69의 33쪽],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쿠릴열도의 현지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았던 현물세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

역사적 상황들과 사료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1713년부터 스킨슈와 파라무시르의 아이누에게서 현물세(공물)를 징수했고, 1730~1732년에는 4개 섬, 1734년부터는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섬, 1751~1755년 그리고 1766년부터는 열여섯 번째 섬까지 포함되었고, 1768~1769년에는 우루프, 이투루프, 쿠나시르 섬, 1770~1774년에는 재차 이투루프까지 포함되었고, 1778~1779년에는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과 마트마이 북부지역에서 징수했다. 사실상 쿠릴열도와 홋카이도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누족의 모든 성인, 즉 1,500명에게 현물세가 부과되었다. 1781년에는 쿠나시르의 아이누족에게 현물세를 징수했고, 1790~1791년에는 이투루프의 아이누족에게 징수했다[69의 39~40쪽].

사료들은 남쿠릴열도의 주민인 아이누족이 이미 1768년부터 러시아

제국 신민이었고, 러시아가 이 열도를 자국에 귀속된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마트마이와 남쿠릴열도를 포함한 쿠릴 열도의 주민들에게서 현물세를 징수했던 상황은 쿠릴열도 아이누족의 국적이 러시아였고, 1770년 무렵에 쿠릴열도 전체가 러시아에 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1785~1786년과 그 이전 시기에 우루프뿐 만 아니라,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의 수많은 원주민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대항해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된 규칙에 따르면,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땅을 먼저 발견한 자들이 속한 나라가 그 영토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다. 아메리카 북서해안 및 알류산열도와 코만도르(Командор) 제도를 포함하여 그 인근에 위치한 섬들의 발견, 그리고 러시아 항해가인 슈판베르크와 발톤이 발견한 (일본에 접해 있는) 남쿠릴열도의 암맥 등은 18세기 중후반의 발견들과 관계된 것들이다. 당시 러시아 항해가들은 다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침해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엄격하게 준수했다. 그들은 새로운 섬을 발견하고 점유할 때 알류산, 코만도르, 쿠릴열도가 다른 나라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이에 예카테리나 2세는 최초로 발견한 러시아인들의 권리에 의거하여 러시아 항해가들이 태평양에서 발견한 육지와 섬들에 대한 권리를 러시아가 보유한다는 외무부의 1886년 12월 22일자 칙령을 공포했다[70의 229쪽, 232쪽].

이와 같이 러시아 탐험가들의 활동 결과 쿠릴열도는 1780년대 말 사실상(de facto) 러시아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의 국제법 규범에 따르면, 이는 쿠릴열도의 남부 도서들을 포함한 쿠릴열도 전체가 러시아에 속한다고 보기에 충분했다. 이 사실상의 지위는 러시아 공문서를 통해 법

적으로(de jure) 확정되었다. 우선적으로 남쿠릴열도에 거주하는 남쿠릴 아이누족들의 러시아 국적을 확인하고 이 섬들이 러시아 영토임을 선포한 예카테리나 2세의 1779년과 1786년 명령, 파벨(Павел) 1세의 1799년 명령[69의 38쪽] 등과 같은 러시아제국 법령이 이에 해당한다.

러시아의 지도와 도감에도 남쿠릴열도의 영토적 귀속이 반영되어 있다.

슈판베르크의 탐사를 비롯하여 러시아 선원들과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발간한 『러시아제국 도감(Атлас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1745)에는 사할린 및 시코탄, 쿠나시르, 이투루프, 마투슈마(마즈마에, 후일 홋카이도)를 포함한 쿠릴열도 전체가 표시되었다. 이 섬들은 지도의 보다 남쪽에 그려진 일본과는 별개로 표시되었다(지도의 가장자리에 혼슈의 일부가 표시되어 있다)[69의 32쪽]. 후일 러시아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출간된 이 도감은 공식적인 국제 문서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1796년판 러시아제국 도감에서는 남부군도를 포함한 쿠릴암맥 전체가 러시아제국의 구성부분으로 표시되었다. 공식 『러시아제국 도감』(1796)에서는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 총독관구의 지도에서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을 포함한 쿠릴열도 전체를 러시아제국 영토로 채색했다. 이렇듯 18세기 말 남부 군도를 포함한 전(全) 쿠릴열도는 행정상 이르쿠츠크 총독관구 산하 오희츠크 주 캅차카 군에 속한 러시아 영토였다[69의 29쪽].

그 외에도 전술한 18세기 중후반의 지도들 모두는 마트마이(홋카이도)를 일본과 별개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18세기에는 심지어 홋카이도마저도 일본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18세기 말~19세기 초 전 쿠릴열도가 러시아에 귀속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1805년 러시아 사절단 대표 레자노프(Н. П. Резанов)가 일본 정부 전권인 도야마(К. Тояма)에게 전달한 비망록인 바, 여기에는 “일본 정부에 선언한다. 북방의 모든 육지와 바다는 우리 폐하에게 속하므로, 일본제국은 마트마이 북단 너머로 자신의 영토를 확대하지 말라”[69의 40쪽]고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당시 인정받던 국제법 규범에 따라 18세기에 쿠릴열도의 남쪽을 포함한 쿠릴열도 전체가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17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오호츠크 해 연안, 추코트카, 캄차카, 산타르(Шантар)열도, 코만도르제도, 알류산열도, 알래스카, 쿠릴열도, 사할린이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러시아의 탐험가와 항해가들은 광활한 극동과 북아메리카 공간을 최초로 발견했고 점유하는 데 우선권을 갖는다. 러시아인들이 발견한 극동과 러시아령 아메리카 지역은 당시의 역사적 시점에서 적용된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에 속하게 되었다. 당시의 국제법에서는 지리적 대상의 발견과 점유 그리고 그곳 원주민들의 국적 취득은 해당 영토를 일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정당한 근거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 15세기까지 예조[蝦夷, 홋카이도]에는 일본인이 살지 않았으며, 실제로 섬 지역을 알지도 못했다[77의 61쪽]. 15~16세기가 되어서야 최초의 일본인 이주민들이 혼슈에 인접한 예조 남단에 정착하여 그곳을 점유할 수 있었다. 그 후 1604년에 예조 남해안에 마츠마에[松前] 봉건공국이 생겨났다. 이 공국은 중앙정부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아 홋카이도 원주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18세기 말 그곳에는 모두 2만 5천~3만 명 정도의 일본인이 거주했다[37의 96쪽]. 예조 섬에는 원

주민인 아이누족이 거주했으며, 일본인들은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여기지 않았다. 일본인들에게서 독립을 지키려는 아이누족의 투쟁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18세기 말까지 혼슈의 북쪽, 즉 홋카이도 남단의 좁은 연해지대만이 일본에 속해 있었다. 홋카이도는 아이누족 거주지를 둘러싸고 있는 방어선에 의해 전 방향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의 북쪽 국경선은 홋카이도 남부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다.

일본의 쇄국체제는 1639년 일본의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특별 명령으로 수립되어 19세기 중반까지 존속되었다. 당시 일본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나라였다. 사형의 공포를 이용해 일본인들이 자기 영토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과 장거리 항해를 위한 대형선박의 건조를 금지한 것은 일본 쇄국체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였다. 이러한 정책은 일본 북부에서도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일본 영토는 인위적으로 중세의 국경 범위 속에 고착되었다. 따라서 일본 고유의 역사적 국경은 1640년대에 최종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홋카이도 남단에 위치했던 일본 마츠마에 공국 최북단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남쿠릴열도, 특히 쿠나시르 섬의 아이누족과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것도 18세기의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도 일본에서 독립적이었던 쿠릴열도 및 에조 원주민들과 행해진 단편적인 교역일 뿐 일본 중앙정부가 장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본인이 우루프와 이투루프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것은 1786년이다[8의 376쪽]. 남쿠릴열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 18세기 내내 그리고 19세기 전반까지 일본 정부는 쇄국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했다. 심지어 18세기 말이 되어서야 마츠마에 공국의 일본인들이 홋카이도 중부와 북부를 점유하기 시

작했다. 일본 연구자들은 19세기 초반까지도 홋카이도 북부지역이 일본 영토가 아니었고, 일본 본토와 아이누족 거주지 사이의 경계가 홋카이도 중부 이남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섬의 남부와 남서쪽 부분에서만 주인이었으며, 북부와 북동부 지역 전체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일본인들과는 상관이 없었다. 일본인들은 아이누족과의 교역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 지역에 나타날 뿐이었다. 에조는 1869년이 되어서야 일본에 공식적으로 귀속되었다. 이때 섬의 명칭이 에조(야만적인)에서 홋카이도(북쪽 바닷길)로 변경되었고, 동일한 지명의 새로운 일본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1870년대까지도 남쪽 지역을 제외한 홋카이도의 모든 삼림지역에는 오직 아이누족만이 거주했다 [77의 63쪽].

따라서 일본이 제기한 테제, 즉 남쿠릴열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테제는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먼저 남쿠릴과 쿠릴열도 전역을 점유하고 지배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론은 명확하다. 남쿠릴열도를 포함한 쿠릴 열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 아니었다. 이 땅은 아이누족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으나, 러시아인들이 쿠릴열도를 평화적으로 식민화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 일본이 '역사적 정의의 복원'이라는 맥락에서 러시아에 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

1802년 쿠릴열도를 식민화하고자 홋카이도의 하코다테[函館]에 특별 관청이 설립되었다. 이후 남쿠릴에 대한 일본의 팽창이 시작되었다.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식민화하면서 이 섬들이 러시아에 귀속되었다는 증표로 만들어놓은 러시아식 십자가를 파괴하고 자기들의 표주를 설치했으며,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서 러시아 사업가들을 강제로 추방했고,

아이누족이 러시아와 교역하고 교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당시 러시아는 1812년 프랑스의 공격을 격퇴하고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나폴레옹전쟁으로 인한 유럽대륙의 정세에 관여하고 있었고, 머나먼 극동의 영토를 공고히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19세기 초반 러시아는 쿠릴열도의 남부도서들에서 점진적으로 밀려났다.

18세기 말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쿠릴열도 남부 도서들을 점령했다. 미 국무부 산하 영토조사과의 1944년 12월 28일자 비망록 ‘일본, 영토문제, 쿠릴열도’ 편에는 일본이 1800년경이 되어서야 쿠릴열도의 남부 지역을 확보했다고 언급되어 있다[248쪽 첨부34.5 참조].

스노우(И. Сноу)의 정보에 따르면, 1805년 섬에 거주하는 러시아 사 람들이 우루프에서 이투루프로 건너갔을 때, 일본인들이 그 섬을 점령하고 있음이 드러났다[79의 21쪽]. 이어 스노우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1806년 흐보스토프(Н. А. Хвостов)와 다비도프(Г. И. Давыдов)의 탐험대가 남쿠릴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일본인들이 러시아인 14명을 추방했다”고 기술했다. 흐보스토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쿠릴열도 남부에서 일본인들을 추방하고, 홋카이도 남부의 지방관에게 사할린과 쿠릴열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했다. 그리고 1806년 아니바(Анива) 만 연안의 아이누 촌락에 러시아 부대기와 통상기를 게양했으며[91의 98쪽], 1808년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아메리카 회사에 사할린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칙령을 반포했다.

19세기 중반 일본이 쿠릴열도의 남부 도서들로부터 러시아를 밀어내면서 쿠릴열도 지역의 러일 국경선이 사실상 우루프 섬 남단과 이투루프 섬 북단 사이에 설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19세기 중반에도 이

전 시기 자국 탐험가들이 이투루프에 그들의 정착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다. 그러나 이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압박을 받던 정착지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850년대 러시아는 극동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쿠릴열도, 사할린, 흑룡강 하구를 점령할 가능성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이에 일본과 교역관계를 수립하고 러·일 국경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타틴(Е. В. Путятин) 원정대를 일본 연안으로 파견했다.

1854년 1월 푸타틴은 일본 전권대표들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이투루프 섬을 오랫동안 점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 섬을 절반으로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소규모의 일본인들(어부들 가족 수십 명)만이 어로기에 사할린의 최남단인 아니바 만의 임시 거주지에 머무르는 만큼, 이 일본인들에게 러시아인과 동일한 권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라페루즈(Лаперуз) 해협을 따라 국경선을 획정하자고 제안했다[91의 155쪽]. 회담에서 일본 전권대표들은 북위 50도 선을 따라 사할린에 국경선을 설정하여 사할린을 사실상 절반으로 나누고, 이투루프를 일본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다[91의 157쪽].

푸타틴 사절단의 방일 시기인 1853~1855년은 영국, 프랑스, 터키, 사르데냐(Sardinia)가 러시아를 상대로 유럽연합을 결성했던 크림전쟁 시기와 일치했다. 크림전쟁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 극동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려 했고, 1854년에는 캄차카의 페트로파블롭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에 육전대를 상륙시켰으며, 1855년에는 그곳에 포격을 가하고 우루프 섬에 있는 러시아인들의 무역관을 파괴하는 한편, 중립국 일본의 해역에서 러시아 선박들을 공격했다. 푸타틴의 사절단은 이

러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공식적인 국경획정을 위한 조약을 신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러시아는 남쿠릴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크림전쟁 시기 러시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일본 전권대표들은 교섭의 결과 사할린을 ‘러시아와 일본 간의 공동점유지역’으로 공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사할린 원주민들은 17세기 중반에 이미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었다.

일본의 남쿠릴열도 점령은 1855년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시모다조약에 명문화되었다[177쪽 첨부1 참조]. 러시아와 일본은 1855년 1월 25일(2월 7일) 시모다에서 체결된 통상 및 국경조약을 통해 쿠릴열도의 러일 국경선을 이투루프와 우루프 섬 사이에 설정하였고, 사할린[크라후토(Крафто) 또는 가라후토(Карафутто)]은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점유지역으로 남겨두었으며(제2조), 양국 간에 공식적인 영사관계가 수립되었다(제4조).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획정에 관한 국가 간 쌍무조약들은 소(小)쿠릴열도(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와 쿠나시르 섬이 일본의 소유임을 단 한 차례도 확인 해준 적이 없었다. 이는 1855년 시모다조약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이후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선은 이투루프와 우루프 사이를 지나게 된다. 이투루프 섬 전부는 일본에 속하며, 우루프 섬 전부와 그 이북의 여타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영토다”[89의 276쪽]. 요컨대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는 그 전체가 일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지만,

쿠나시르 섬과 시코탄 섬,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하보마이라고 부르고 있는 섬들의 영토적 귀속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예 우루프 섬과 북쪽의 여타 쿠릴열도 섬들이 러시아에 속하고 있음을 매우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러·일 간에 최초로 체결된 국가 간 조약의 문구는 상술한 바와 같다.

일본이 사할린의 가장 남쪽에만 일본 어부들의 임시거처를 두었던 만큼, 이 섬의 많은 부분에 대한 권리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할린의 남쪽 절반 모두에 대한 영유권을 제기했다.

사할린은 이미 17세기 중반과 후반에 러시아 탐험가들이 발견했고 탐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1689년 청과 체결한 네르친스크(Нерчинск) 조약에 따라 러시아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던 아무르(Амур) 강 중류와 하류의 좌·우 양안 지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사할린까지의 편리한 직통노선은 장기간 폐쇄되었고, 오희츠크 항구를 거쳐 캄차카와 오희츠크 해 북부 연안으로 가는 항로는 멀었다. 러시아는 19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사할린 확보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다. 1805년 러시아의 해양 탐험가 크루젠슈테른(Г. И. Крузенштерн), 1806~1807년 호보스토프와 다비도프, 1840년대부터 1850년대 초까지 네벨스코이(Невельской) 등이 사할린을 탐사하면서 상세하게 조사했고, 그곳에 러시아군 초소와 정착지를 건설했으며, 탄맥이 발견됨에 따라 1853년부터 탄광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사할린 남부에 형성된 일본인 부락은 그 수가 적었으며, 대부분이 계절에 따라 임시적으로 머무는 상황이었다. 부락들은 아 니바 만 연안의 극히 한정된 부분만을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은 사할린 남부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푸타틴은 사

할린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분할되지 않은 지역으로 남겨둔 것이다. 사할린의 이런 지위는 1855년의 시모다조약에 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청국도 사할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었다. 사할린은 ‘러시아와 일본 간에 분할되지 않은 지역으로 예전처럼’ 남아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르 강 하구에 인접한 사할린은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다(Уда)지역에 포함되었다.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으로 청국과 러시아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던 공간이 1858년 아이훈(Айгун)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편입되면서 청국이 사할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황들은 사실상의 공동관리 체제(러시아와 일본의 사할린 공유)로 나타났고 이는 시모다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20년이나 더 유지되었다. 사할린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련의 러일협상은 1860년대와 1970년대에 진행되었다.

1867년 5월 18일 페테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에서의 협상 결과 사할린 공동관리 규정에 관한 임시협약이 체결되었다. 사할린 영유권에 관한 합의 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할린의 러시아인과 일본인들을 위한 임시규정이 제정되었다. 러시아인과 일본인은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러시아와 일본 현지 당국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제1조). 섬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러시아인과 일본인은 섬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건축의 권리, 생업 종사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제2조). 현지 주민들에게 사적 자유와 재산 보유권이 부여되었다(제3조)[91의 216쪽 참조]. 비록 1867년 협약으로 러시아가 일본에 상당한 양보를 했지만, 러시아는 이 협약으로 사할린 남부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할린 영토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첫 걸

음을 떨 수 있었다.

다음의 자료들은 사할린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특징지을 수 있다. 1872년 러시아는 사할린에 15개의 군 초소를 보유했다. 당시 사할린에는 6,500명의 상주인구가 있었으며, 그중 4,320명이 현지 주민이었는데, 그 가운데 아이누족이 2,370명, 러시아인이 1,900명이었으나 일본인은 단 278명으로 전체 주민의 약 4%에 불과했다[91의 274쪽].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을 극동과 동시베리아 방어의 요충지로 간주했기 때문에 사할린 전체를 확보하기 위해 라페루즈 해협을 따라 국경을 설정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 요컨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의 네 번째 해협 이남의 도서들을 교환하는 방식인데 러시아 영토로 남겨둔 파라무시르, 솜슈, 알라이드(Алайд, 아틀라소바[Атласова])를 제외하고, 쿠릴열도 전체를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일본은 사할린 남부의 대가로 쿠릴열도 전체를 양도하라고 러시아에 제안했다. 계속된 협상 결과 러시아 정부는 일본이 사할린에 대한 공동관리권(사실상 사할린 남부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대신에 우루프에서부터 솜슈에 이르는 쿠릴열도의 광대한 영토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본에 대한 이 같은 양보는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고, 근거조차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할린 전역이 러시아 관할로 이관되었다. 이는 프리아무르(Приамурье)와 연해주(Приморье) 지역이 1858년 청국과 체결한 아이훈조약과 1860년 베이징 추가조약으로 러시아 영토가 된 이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교환협정은 1875년 4월 25일(5월 7일)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에 명문화되었다[178쪽 첨부2]. 러시아 외무대신 고르차코프(А. М. Горчаков)와 일본 특명전권 에노모토[榎本武揚]가 이 조

약에 서명했다.

1875년 조약에 따라 사할린 섬 전체가 러시아제국의 영토로 선포되었으며, 이 해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선은 라페루즈 해협을 따라 설정되었다(제1조). 그 대신 일본에는 쿠릴열도의 18개 섬이 양도되었으며, 이 해역의 양국 국경선은 캄차카 반도의 로파트카(Лопатка) 곳과 스텝군도 사이를 지나는 해협을 따라 설정되었다(제2조). 이와 같이 러시아의 고유영토인 쿠릴열도 북부와 중부가 또 다른 러시아의 영토이자, 일본이 근거도 없이 영유권을 주장했던 사할린과 교환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의 거주민들은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해당 국가의 국적 취득과 법률 준수의 조건으로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권 및 직업 종사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현지에 남을 수 있었다(제5조).

일본 상인과 어업 종사자들은 오후츠크 해 및 캄차카 반도의 항구와 해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다(제6조).

1876년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남부에 남겨진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일본 측에 지급했다[180쪽 첨부2.1 참조].

1875년 8월 10(22)일 도쿄에서 1875년 조약에 대한 추가조항이 합의되었다. 이 조항은 원 거주지에 잔류한 사람들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같은 날 비준서가 교환되면서, 조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181쪽 첨부2.2 참조].

1855년 시모다조약과 1875년 페테르부르크조약 모두 러시아 측의 강압없이 전적으로 평화로운 교섭과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근거 없는 양보를 통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쿠릴열도 전체를 일본에 양도한 것은 제정러시아의 전략적 실수로써, 이로 인해 러시아 극동지역 방위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는 러

시아에게 태평양에서 쿠릴열도가 지닌 전략적 의미를 과소평가한 증거였다. 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도한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영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 향후 쿠릴열도는 1904~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사할린과 캄차카에 대한 공격기지로 이용되었다. 러시아 함대와 상선대의 선박들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편리한 통로를 상실했다. 일본인들은 1875년 페테르부르크조약 규정을 이용하여 러시아 극동해역에서 어업상의 자유권을 남용하고 어업자원을 약탈했다.

1895년 5월 27일(6월 8일) 러시아와 일본은 통상 및 항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제8조에 따라 “본 협약은 법적 효력을 갖는 날로부터 1855년 1월 26일에 체결된 조약, 1858년 8월 4일 체결된 통상 및 우호 조약, 1867년 12월 11일에 체결된 협약 및 위대한 양 국가 간에 체결된 또는 현존하는 모든 추가 협약과 조약들을 대체하게 되며, 동일부로 상기 조약과 협약들의 효력이 상실된다”[183쪽 첨부3 참조]. 이 협약과 함께 본 협약의 선언서가 조인되었다. 선언서에 따르면, “제18조에서 본 협약은 1875년 4월 25일(5월 7일) 위대한 러시아제국과 위대한 일본제국이 체결한 협약 및 1875년 8월 10일(22일) 도쿄에서 체결한 추가 조항과 관련이 없으며, 동 조약과 조항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이었다[185쪽 첨부3.1 참조]. 따라서 1895년의 협약에 의해 1855년의 시모다조약은 효력을 상실한 반면, 1875년 페테르부르크조약의 효력은 확인되었다. 1895년 협약은 1899년 7월 5일(17일)에 발효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분명하게 공표한 바와 같이, 1895년 협약의 제8조에 따라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이전의 모든 조약과 협약은 효력을 상실했다[185쪽 첨부3.2 참조].

러시아는 시모다조약과 페테르부르크조약의 체결을 통해 일본에 근

거 없이 영토를 양보함으로써 일본이 “이제부터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실로 영원한 평화와 진정한 우정이 있을 것”[177쪽 첨부 참조]이라고 규정한 시모다조약 제1조를 이행하게 될 경우, 흑해와 발칸 그리고 유럽 정치에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극동에서 일본의 반(反)러시아적 행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양국 간 평화적 관계의 시기는 19세기 말까지로, 그리 길지 않았다. 일본은 경제와 군사력이 발전하면서 극동과 동아시아에서 팽창과 영토 침략의 길로 나아갔다. 결국 제국주의 열강 러시아와 일본의 이익이 한국과 만주에서 충돌했고, 이는 러일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게 했다.

일본은 극동지역의 식민지 획득 경쟁에서 극단적 공격성을 보였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1904년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1904~1905년 러일전쟁 결과, 일본은 사할린을 점령했고, 러시아 국민들의 돈으로 부설한 남만지선과 뤄순[旅順], 다렌[大連]의 조차권을 강탈한 후, 만주에서 러시아를 축출했다.

1905년 8월 23일(9월 5일) 포츠머스강화조약[186쪽 첨부4 참조]의 규정에 따라 북위 50도선 이남의 사할린 남부가 러시아에서 강제로 떨어져나갔다(제9조). 이로써 1855년과 1875년에 체결된 조약을 포함하여 국경선 획정을 위해 양국이 체결했던 이전의 모든 협약이 사실상 폐기되었다.

1905년 포츠머스강화조약 제12조에 의해 “통상과 항해에 관한 러일 조약의 효력은 전쟁에 의해 폐지되었다”[187쪽 첨부]. 그 외에 본 조약의 부속조항 No. 10에 의해 “전쟁의 결과 일본과 러시아가 체결한 모든 통상조약이 폐기되었다”[188쪽 첨부4.1]. 요컨대 포츠머스강화조약과 그 부속조항에는 1895년 페테르부르크조약 및 이 조약과 관련 있는

1875년 페테르부르크조약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러일조약과 협약을 폐기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1895년 조약은 동 조약 제8 조와 조약 선언서에 특별히 언급된 바와 같이 1899년부터 러·일 양국의 국경선을 규정하는 유일한 조약이었다.

1905년의 포츠머스강화조약과 그 부속조항 No. 10에는 이전에 체결한 러·일 간의 모든 통상조약이 법률적 효력을 상실한다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게다가 법률적 효력의 상실은 이들 조약의 통상관련 조항에만 해당된다고 특별히 규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의 남부를 양도받았던 1855년의 통상 및 국경에 관한 러일조약 역시 폐기되었다. 따라서 일본 측이 1855년 시모다조약과 1875년 페테르부르크조약을 인용하여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예로부터의 역사적·법적 권리’의 근거를 위한 법률적 논거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조약들은 1905년에 이미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얼마 후 포츠머스강화조약을 폭력적으로 위반했다. 1918~1922년 극동에서 러시아(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РСФСР]과 극동공화국)에 대한 간섭을 자행한 일본은 연해주, 프리아무르 주, 자바이칼(Забайкалье)의 일부뿐만 아니라 사할린 북부지역을 점령했으며, 사할린의 경우에는 1925년까지 점령 상태를 유지했다. 포츠머스강화조약 제1조에는 “평화와 우정은 위대한 러시아 황제와 일본 천황 사이에 있는 것처럼, 양국과 양국 신민들 사이에 똑같이 함께할 것이다” [186쪽 첨부]라고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일본의 공격성은 자신과 전쟁 상태에 있지 않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정치적인 양탕트 진영의 일본 동맹국이었던 나라에서도 발현되었다.

양국의 외교관계와 영사관계는 1925년 1월 20일 소련과 일본의 상호관계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을 통해 복원되었다[189쪽 첨부5 참조]. 이 조약에 따라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에서 체결된 조약의 효력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기 포츠머스조약을 제외하고 1917년 11월 7일 이전에 일본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 협정, 협약들은 향후 협상당사국 정부 사이에 개최될 회의에서 재검토될 것이며, 그것들은 변화된 환경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변경되거나 혹은 폐지될 것으로 규정되었다(제2조).

또한 소련의 전권대표인 카라한(И. Карахан)은 소·일 상호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 체결 당시 특별성명에서 “소련 정부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소련 정부가 동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과거 차르 정부와 공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190쪽 첨부5.1 참조]라고 천명했다. 이를 통해 소련 전권대표는 러시아 영토에서 사할린 남부지역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 소련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성명은 정치적·법적 측면에서 소련 측이 1925년 조약 체결 당시 1905년 포츠머스조약에 규정된 차르 정부에 의한 사할린 남부의 일본 양도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다. 여기에는 사할린 남부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소련 정부의 입장이 표명되어 있었다.

1925년 조약 제5조에서는 소련과 일본이 “상호 평화와 우호 속에 살고자 하는 각자의 희망과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 모든 공적자와 양 체약국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은 소련방 혹은 일본 영토의 어느 곳에서건 그리고 어떤 형태로건 질서와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개적 혹은 은밀한 행위를 자제하고 억제한다”고 규정했다

[188쪽 첨부].

일본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자바이칼 지역에서 소련의 영토보전을 침해하고자 1938~1939년 연해주와 하산(Хасан) 호수 인근에서, 그리고 몽골인민공화국에 위치한 할хин골(Халхин-Гол) 강변에서 소련을 공격함으로써 1905년 포츠머스강화조약과 1925년 소·일 상호관계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을 위반했다.

러시아와 일본 국경선의 변화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양국의 공문서들에 규정되어 있다. 이 문서들이 역사적·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양국 국경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극동의 침략국 일본과의 투쟁에 참여한 연합국들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직후에 이루어낸 정치적·법적 결정과 합의들이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연방과 일본 사이의 국경획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기초가 되는 문서들이다.

제2장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소련에 양도된 쿠릴열도의 정치적·법적 문제

소련, 미국, 영국 연합국이 일본에 승리한 날, 즉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로부터 이미 6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다. 그러나 러·일 양국 관계를 해치는 남쿠릴열도(일본식으로는 '북방영토') 문제가 195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러시아에 자국 내에서 '북방영토'로 불리는 남쿠릴열도[이투루프, 쿠나시르 그리고 시코탄, 젤론니(Зеленыйь), 탄필리에바(Танфильева), 폴론스코보(Полонского), 유리(Юрий), 아누친(Анучин) 등으로 이루어진 쿠릴 소암맥]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소련이 1945년 종전 결과로 무단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쿠릴 문제'의 역사적·법적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1945년 이후의 전후 시기가 아니라, 러·일 간의 영토문제로 150년 넘게 지속된 국제법적 상호관계의 역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그리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쿠릴 문제'를 분석할 경우, 영토

문제와 관련한 러·일 양국의 국제법적 상호관계의 150년 역사에서 단지 특정시간의 조각들만을 따로 떼어내거나 국제법 규정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1855년 시모다조약의 제2조에 따라 우루프와 이투루프 사이에서 러·일 국경선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전혀 증명해주지 못한다. 러·일 국경선은 일본이 극동에서의 공격적인 침략전쟁을 통해 거둔 영토팽창의 성공을 반영하여 이미 두 차례나 일본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1875년 평화적인 교섭으로 체결된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의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일본이 사할린 영유권을 공식 포기하는 대신 이투루프 섬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쿠릴열도의 나머지 18개 섬 모두가 일본에 양도되었다. 1904~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로서 1905년에 체결된 포츠머스강화조약의 제9조에 따라 사할린 남부가 일본에 귀속되면서 러시아는 그 지역을 잃게 되었다.

남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1855년의 조약을 인용하고 있는 일본은 동일한 역사적·법적 논리에 근거하여 1875년과 1905년의 강화조약이라는 국제법적 토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논리적으로 일본의 주권은 쿠릴열도 전체와 심지어 사할린 남부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게다가 1855년의 시모다조약에서 사할린은 양국 간에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즉 러·일 양국의 공동점유지(공동관리)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1855년 시모다조약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러시아를 상대로 남쿠릴은 물론, 러시아와의 공동점유라는 조건하에 사할린 전체를 요구할 수 있다. 더구나 일본에는 소련(러시아)을 상대로 이렇듯 확대 해석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의회 의원들이 포함된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

일본이 1920년대 초부터 1940년대까지 침략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팽창주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04년 일본은 뤄순 항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고, 그 후 중립항인 제물포항에 있는 러시아 전함 ‘바라크’ 호를 공격하면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1905년 일본은 침략전쟁의 결과로 러시아에서 사할린 남부를 강탈했고, 그 후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1918년 일본은 바이칼 호수에 이르는 소비에트 극동을 점령하여 4년 동안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강탈했으며, 러시아와 소련령인 사할린 북부에서는 심지어 1925년까지 같은 짓을 저질렀다. 1930년대 일본은 중국 동북지방을 점령했다. 1938년 연해주 하산 호(湖) 지역에서의 사건과 1939년 몽골인민공화국의 노몬한(Номонхан) 지역에 위치한 할힌골 강변에서의 사건은 일본식 평화애호와 우호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하와이군도와 알류산열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나 그 후 극동과 태평양에서 일본의 영토 팽창은 성공하지 못하여 1945년에 일본 군국주의의 괴멸 및 민족과 국가의 재앙으로 끝났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함대와 공군을 동원하여 하와이의 진주만에 배치된 미군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침략전쟁은 소련이 가담한 연합국에 의해 1945년 파멸적인 패배로 종결되었다. 당시 소련은 아시아대륙(중국, 한국)과 쿠릴열도 그리고 사할린에서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극동,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시기를 1.5~2년 단축시켰다.

붉은 군대의 도움을 받아 자국의 인명 손실을 줄이고 종전 시기를 앞당기려 했던 미국은 테헤란, 얄타, 포츠담에서 집요하게 소련의 대일 참전을 이끌어내려 했다. 소련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러시아가 겪은 쿠릴과 사할린의 영토적 손실을 만회하고, 안보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극동국경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자 극동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최후의 거대한 발화지점을 진화하기 위해 참전에 동의했다.

1945년 극동,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에서 국제적 침략국인 일본이 괴멸되었으며, 공정하게 처벌을 받았다. 소련(러시아)은 결과적으로 극동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유리한 국경을 확보했다. 이것이 역사적 과정이다.

쿠릴열도가 소련 및 러시아에 귀속된 것은 극동지역에서 벌어졌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다. 미국과 영국의 최고위 국가 지도자들(루스벨트와 트루먼, 처칠과 애들리)이 서명한 얄타와 포츠담선언의 결정에 따르면, 극동의 침략자인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참전하는 조건은 전후 소련에게 사할린 남부를 반환하고 쿠릴열도를 할양하는 것이었다.

1945년 2월 11일 크림회담에서 소련, 미국, 영국의 정부 수반들이 채택한 ‘극동문제에 관한 3국 협정’에서는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여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 후 미국과 영국의 보장하에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서를 반환받고 쿠릴열도를 할양받는 소련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었다. 이 권리는 포츠담선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3대 열강의 비밀협정은 미국 국무장관서리 애치슨의 1946년 1월 22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이 협정은 쿠릴열도의 점유권을 소련에 부여한 것이었다. 당시 애치슨은 “제

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자신이 이해하는 한 이 협정이 쿠릴열도를 소련에 최종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건을 밝혔다.

타스(TACC) 통신은 이에 대해 “에치슨이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하여 실로 ‘실수하고 있다’. 1945년 2월 11일 소련의 스탈린,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이 조인하고, 합당한 이유로 인해 당시에 공표하지 않았던 3대 열강의 얄타협정에는 대일전에서 승리한 후 쿠릴열도가 소련에 양도되고, 모든 부속도서를 포함한 사할린 남부가 소련에 반환된다는 사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84의 4쪽].

이 협정문의 본문은 서명 후 1년이 지난 1946년 2월 11일 라디오로 먼저 공개되었고 이후 중앙지인 《이즈베스티야(Известия)》와 《프라우다(Правда)》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발표되었다[196쪽 첨부11 참조, 38의 1쪽 참조]. 1946년 2월 12일 미 점령당국의 결정에 따라 본 협정문이 일본에서도 보도되었다. 63년이 경과한 지금 이 발표문이 실질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협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통보된 바와 같이, 크림회담 당시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 등 3국 정부의 수반은 소련, 미국, 영국을 각각 대표하여 1945년 2월 11일 소련의 대일 참전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당시 이 협정은 합당한 이유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소련, 미국, 영국 정부가 의견을 교환한 결과 2월 11일 오후 5시 (모스크바 시각)에 상기 협정을 모스크바, 워싱턴, 런던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협정문의 본문이 게재되었다.

“소련, 미국, 영국 3대 열강의 지도자들은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에서 전쟁이 종료되고 2~3개월이 경과한 뒤,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는 데 합의했다.

1. 외몽골(몽골인민공화국)의 현상유지(status quo).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으로 침해되었던 러시아의 권리 복구, 즉
 - a) 소련에게 사할린 남부와 모든 부속 도서 환부.
 - b) 무역항 다렌(大連)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 항구를 국제화하고 소련 해군기지로서의 위순에 대한 조차권 회복.
 - c)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소중(蘇中)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중동철도와 해양출구인 다렌을 연결하는 남만지선을 공동운용. 여기에서 중국은 만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유지한다.

3. 소련에 쿠릴열도 양도.

외몽골 및 상기 항구와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스탈린 원수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은 그와 같은 동의를 얻기 위해 대책을 수립한다.

3대 열강의 정부수반은 대일전 승리 후 소련의 이와 같은 요구가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소련은 중국 정부와 일본의 압제로부터 중국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에서 군사원조를 제공하고자 우호 및 동맹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1945년 2월 11일.

스탈린(И. Сталин)

프랭클린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신문에 보도된 협정문에는 크림회담 당시인 1945년 2월 11일에 조인된 극동문제에 관한 3국 협정의 영문본 사진이 첨부되었는데, ‘극비(Top secret)’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는 2쪽짜리 타자본이었다.

크림에서의 ‘극동문제에 관한 3국 협정’은 그 본질과 내용면에서 최소한 7개국(소련, 미국, 영국, 중국, 몽골, 일본 및 일본의 점령지인 만주와 중국 동북지역에 수립된 일본의 속국인 만주국)의 이해관계를 다룬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그 실행에 따른 체약국들의 구체적인 의무와 제3국(중국, 몽고, 만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기간, 절차 등이 명시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만주에서 완전한 주권을 유지한다”는 협약 규정은 3대 체약국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소·일 관계와 만주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외몽고의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1941년 4월 13일 소일중립조약 체결과 함께 선포된 몽골 인민공화국과 만주국의 영토보전 및 국경불가침의 상호존중에 관한 소·일 양국 정부의 성명서에는 “소련은 만주국의 영토보전과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일본은 몽골인민공화국의 영토보전과 안전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4의 1쪽]. 이에 3국 협정은 (세계적 규모에서의 전쟁 수행이라는) 극단적인 조건과 특별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을 받았던 당시의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에 부합하는 국제법 문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극동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조속한 종전을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실무적 성격을 지녔던 이 협정은 당연히 다자비준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공표의 대상은 더욱 아니었다. 이 협정을 체결한 소련 인민위원소비에트 의장 겸 소련 국방위원회 의장 스탈린,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그리고 대영제국 수상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자국의 입법기관들로부터 특별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형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다.

이 협정은 소련, 미국, 영국 등 3개 연합국의 구체적인 상호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소련은 독일의 항복과 유럽에서의 종전 이후 2~3개월이 흐른 뒤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할 의무를,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서 및 1904년 일본의 러시아 침공으로 침탈당한 다렌, 뤼순 그리고 중동철도(中東鐵道)와 남만지선(南滿支線)에 대한 (외몽고 및 전술한 항구와 철도 문제에 대한 중화민국의 동의하에) 러시아의 역사적 권리 복원, 19세기에 러시아가 상실한 영토인 쿠릴열도의 수복 그리고 대일전 승리 후 소련의 청구권 충족 보장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동맹국들은 극동문제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면서 소련의 이와 같은 역사적 권리를 정당하고 확실한 것으로 인정했다.

몽골민족공화국(외몽고)의 국제법적 지위와 관련된 제1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칼날이 일본을 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모든 열강 가운데 전쟁의 지속을 원했던 국가는 오직 일본이었고, 극동,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침략자로서 침략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국의 영토, 영유권 및 소유권을 다른 국가(또는 국가들)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되지 않았으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없었던 게 당연했다.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권리회복 문제는 1943년 11월 테헤란회담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대담하는 과정에서 소련 국방위원회 의장인 스탈린이 최초로 제기했다.

소련이 연합국에 가담하여 일본을 상대로 개전한 이후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소련 측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미국 측에 제기된 최초 시점은 스탈린과 소련 주재 미국 대사 해리먼(William Averell Harriman)이 대담을 가졌던 1944년 12월이었다[195쪽 첨부10 참조].

소련, 미국, 영국은 크림(알타)회담에서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의 대소(對蘇) 반환에 최종 합의했다. 1945년 2월 10일 스탈린과 루스벨트는 극동문제에 관한 협정에 관해 사전 합의했으며, 4월 11일 그 합의를 확인한 처칠은 3국 협정의 체결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반인 장제스도 이 협정에 동참했다.

1945년 알타협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극동문제에 관한 중요한 국제 법적 문서다. 이 문서에는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서[톨레니(Толений), 모네론(Монерон)] 및 쿠릴열도에서 소련(그리고 러시아)의 주권 회복에 대한 세계 주요 열강의 합의가 기록되어 있다.

소련의 대일 참전 및 소일 영토와 재산문제의 전후 처리에 관한 미·영·소 3국 협정 체결 당시 각 체약국들은 많은 점에서 자국의 국익을 추구했다. 미국과 영국은 자국 군대가 일본군의 괴멸이라는 핵심과업을 용이하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조속한 항복을 이끌어내려 했다. 소련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극동 국경에서 군사적 위협을 발본색원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겨 침략국 일본을 상대로 해방 투쟁을 전개하던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을 지원하며, 과거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영토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역사적 권리를 복구함으로써 극동지역 국경의 안전을 보장하려 했다.

1945년 7월 25일 미국, 영국, 중국의 포츠담선언을 구성하는 일부로

영토문제가 포함되었다[198쪽 첨부13 참조, 382~384쪽 첨부21 참조]. 이 선언은 1945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소련, 미국, 영국 등 3국 정부 수뇌들이 참여한 포츠담회의의 결과로서 채택되었다. 포츠담선언에서 무조건항복을 일본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포고되었고, 제8조에서는 카이로선언의 조항을 인용하여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향후 연합국이 정하는 ‘군소 도서들로 국한될 것’이라는 단서가 붙었다[199쪽 첨부]. 포츠담선언은 일본군의 무장해제(9조), 권력에서 군국주의자들의 배제(6조), 일본 전범들에 대한 준엄한 처벌(10조), 군국주의 근절(6조) 등 패전국 일본에 관한 중요한 정치적 원칙들을 규정했다. 선언은 일본 국민의 의지가 자유롭게 반영된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12조)될 때까지, 일본 영토를 점령(7조)한다고 규정했다.

포츠담회담에서 소련 대표단은 소련이 크림회담에서 채택된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대일전에 참전할 것임을 확인해주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은 포츠담선언에 동참했고, 크림에서의 ‘극동문제에 관한 3국 협정’으로 결정된 연합국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국제법에 따라 1945년 8월 9일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했다.

포츠담선언은 국제법 문서인 미국, 영국, 중국의 1943년 11월 27일자 카이로선언에 기반을 두었다. 카이로선언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영토문제의 처리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바, 과거 일본이 다양한 시기에 걸쳐 점령했던 모든 영토의 반환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제2차 세계대전 3대 연합국(미국, 영국, 중국)의 처벌 요구를 담고 있었다. 3대 열강은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을 통해 대일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때부터 일본이 태평양에서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섬들을 박탈하고, 만주, 대만 그리고 평후열도[澎湖列島] 등 일본이 중국에서 탈취한 모든 영토는 중화민국에 반환된다. 또한 일본은 무력과 탐욕의 결과로 장악한 여타의 모든 영토에서도 추방될 것이다”[194쪽 첨부9 참조, 33의 18쪽 참조]. 일본이 점령한 여타 영토에는 사할린 남부도 포함되었다. 일본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1914년 이전 시기에 쿠릴열도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고 그곳을 합병했다. 카이로선언의 결정은 소련, 미국, 영국 등 각국 정부의 수뇌들이 참석한 1945년 2월의 알타회의를 통해 더욱 발전되었다. 극동문제에 관한 크림(알타)회담의 결정은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전적으로 부합했다. 그리고 카이로선언은 1945년 포츠담선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제법은 침략을 자행한 국가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원칙에 따라 침략으로 탈취한 영토의 반환이나 공격기지로 이용한 침략국 영토의 일부 할양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침략에 대한 징벌의 수단 또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접경지역에서의 침략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장책으로서 피침략국에게 해당 지역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집단적 자위권의 차원에서 침략국에 대응하여 활동했던 국가집단의 권리에 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77조와 제107조는 제2차 세계대전의 개전에 대한 처벌로 3국 조약(독일, 일본, 이탈리아) 참가국의 영토 중 침략기지로 이용된 일부 지역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는 미국은 물론, 극동지역 소련의 안전을 위협한 침략 기지였다. 사할린 남부 영토는 일본이 내전 당시 간섭하는 과정에서 사할린 북부를 점령하여 1925년까지 장악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및 소련 침략에 이용되었고, 쿠릴열도는 1904~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령 캄차카를 공격한 기지이자 태평양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대한 공격기지로 이용되었다. 남쿠릴은 1941년 진주만의 미국 해군기지를 공격한 기지였으며, 북쿠릴은 미국령 알류산열도의 일부를 점령하기 위한 기지로 이용되었다. 유사하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와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공격의 교두보였던 동프러시아는 연합국의 결정에 따라 소련에 양도되었다.

국제연합헌장 제77조 제1항의 'b'목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적국에서 분리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별히 강조된 개념이 있으며, 제77조의 제1항은 그와 같은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제도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252쪽 첨부 참조, 128의 47쪽 참조]. 게다가 국제연합헌장 제80조에 따르면 “앞으로 [신탁통치] 협정이 …… 체결될 때까지 국제신탁통치체를 다룬 이 장은 어떤 국가와 민족의 권리 혹은 현존하는 국제협정의 조문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제연합 회원국이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당사자인 일본은 이 조약의 8조를 준수해야 했으며, 그 조항에 따라 일본은 1945년 2월 11일의 크림(알타)협정을 포함하여 “1939년 9월 1일 시작된 전쟁 상황의 중지를 위해 연합국들이 현재 체결하거나 향후 체결할 모든 조약, 그리고 평화의 복구를 위하여나 평화의 복구와 관련하여 연합국이 체결한 다른 모든 협약들의 완전한 구속력’을 인정했다[250쪽 첨부 참조, 47의 129쪽 참조]. 국제연합헌장 제107조에 따르면,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 취했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251쪽 첨부 참조, 47의 134쪽 참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75조(침략

국의 경우)는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하여 침략국 측의 침략에 관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서 그 침략국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조약상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47의 100쪽]. 국제연합헌장 제103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52쪽 첨부 참조, 47의 133쪽 참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공동체가 채택한 위의 국제법 규정은 소련, 미국, 영국 등 3국 수뇌의 크림회담에서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 서 및 쿠릴열도 전체에 대한 소련의 주권회복이라는 조건에 동의했던 1945년 2월 11일자 결정에 필수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은 태평양에서 연합국의 공동행동에 참가하여 국제적 침략국 일본을 괴멸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위 지역을 점수했다. 여기서 일본이 누른베르크, 도쿄 그리고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국제전범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침략국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1945년 2월 11일자 알타협정에 따라 일본과 관련하여 채택된 소련, 미국, 영국의 의무는 현대 국제법의 관점에서 합법적이다.

일본은 부당하게 시작된 침략전쟁으로 1905년 사할린 남부를 점령하여 1875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의 조항, 즉 이 조약의 체결 직전까지 러시아의 영토였던 우루프에서 북쪽으로 캄차카까지의 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도하고(제2조), 그 대가로 일본은 사할린의 공동점유권, 이른바 ‘그(일본 천황)가 현재 소유 중인 사할린(가라후토)의 일부 지역’을 러시아에 양보한다(제1조)는 조항을 위반했다[178쪽 첨부2 참조, 90의 292~299쪽 참조]. 이와 같이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 제2조는 1904~

1905년 일본의 러시아 침공에 의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또한 일본은 1904년의 러시아 침공으로 제1조에서 “실로 이제부터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항구적인 평화와 진정한 우정이 존재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는 1855년 시모다조약을 무효로 만들었다[177쪽 첨부]. 또한 1918년에 일본은 사할린 북부를 포함한 극동과 자바이칼로 대표되는 동시베리아 일부 등, 러시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소련에 속하는 영토를 상당 기간 점령함으로써 1905년의 포츠머스강화조약마저 폐기해 버렸다. 일본은 ‘이제부터 …… 러시아와 일본 양국 간의 평화와 우정’이라고 선언한 본 조약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186쪽 첨부 참조, 51의 115쪽 참조]. 이렇게 러시아와 일본 간의 국경에 관한 모든 조약체제가 일본에 의해 파괴되고 폐기되었으며, 취소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유효한 법률적 문서로서 위 조약들을 인용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이투루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여 일본과 러시아 간의 국경선을 이투루프와 우루프 두 섬 사이로 획정했던 1855년의 시모다조약의 법적 효력 역시 1895년의 무역 및 항행에 관한 러일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후자의 조약으로 대체되면서 종료되었다[183쪽 첨부3 참조, 19의 42~43쪽 참조]. 1875년의 조약은 (1895년 조약에 첨부된) 특별선언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었다[185쪽 첨부3.1, 15의 52쪽 참조]. 무역 및 항행에 관한 1895년 조약의 효력이 발휘된 1899년 7월 5(17)일부터 ‘본 조약 제8조에 의해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기존의 모든 조약과 협약들의 효력’이 중단되었다[185쪽 첨부3.2 참조, 63의 54~55쪽 참조]. 일본은 이런 식으로 남쿠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거부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을 위반함으로써 북쿠릴에 대한 권리도 상실했다. 일본

은 사할린 남부도 무력 침략으로 점령했다.

1945년 ‘극동문제에 관한 3대 열강의 크림협정’에 따라 사할린 남부와 그 모든 부속도서가 소련에 환부된 것은 침략으로 탈취되었던 지역에 대한 러시아 권리의 복원이었다. 1943년 카이로선언에 따르면 “탐욕에 찬 일본은 무력으로 이 지역을 점령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사할린 남부를 점령하고 쿠릴열도 전체를 보유한 상태에서, 태평양을 비롯하여, 캄차카와 추코트카 항구를 향한 소련의 자유로운 출항을 봉쇄했다. 일본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군사기지와 비행장을 건설하여 이 지역을 소련 침공의 교두보로 변화시켰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소련 극동지역의 봉쇄에 이용했다.

20세기 전반부에 일본 제국주의는 부단히 침략전쟁을 수행했으며, 중국, 소련, 미국 등의 주변 국가들을 무수히 도발했다. 일본이 쿠릴열도를 실질적인 소련 봉쇄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도 이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1941년 11월 26일 이투루프의 태평양 방면 연안에 있는, 수심이 깊고 부동항(不凍港)에 모든 방향의 바람으로부터 안전한 카사트카(Касатка, 히토카푸) 만을 은밀히 출항한 일본 항공모함 선단은 미국에게 들키지 않고 하와이군도의 진주만에 위치한 미 해군 주력 기지를 기습했다. 이 공격은 선전포고 없이 행해진 부당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남쿠릴열도는 미국 침공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전략적 의미를 지녔던 대규모 해·공군 공격작전에 이용되었다.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을 소련에 양도한 원인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1946년의 전반적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일본에서 쿠릴열도를 몰

수하여 소련에 양도한 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징벌의 수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 전반기 내내 일본 대외정책의 본질이 변함없이 군국주의적이고 침략적이었던 만큼 소련 극동지역 국경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련의 중요한 국제법 문서 중에서 반드시 살펴되어야 할 것은 1941년 8월 14일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처칠 영국 수상의 공동선언인 대서양헌장이다. 이 헌장은 전쟁의 목적을 공표했으며, “미국과 영국은 영토 혹은 다른 것의 획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193쪽 첨부7 참조, 3의 166쪽 참조]. 1941년 9월 24일 소련은 성명을 통해 대서양헌장이 지닌 ‘민주적 원칙을 지지’하면서 그 헌장에 가입했다. 그와 동시에 본 헌장의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모든 국가가 처한 다양한 상황, 필요 그리고 역사적 특성과 부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194쪽 첨부8 참조, 17의 167쪽 참조]. 1941년의 대서양헌장은 태평양에서 일본의 개전 이후 일본과 관련하여 체결된 1941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 그리고 1945년 2월 11일의 크림(알타)협정 등으로 상당히 보완되었다.

1945년 4월 5일 소련 정부는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1941년 4월 13일 5년 기간으로 체결되어 조약의 만기가 1년이나 남아 있던 소일중립조약의 폐기를 성명한 바, 이런 행위는 조약 폐기의 권리를 규정한 본 조약 제3조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었다[191쪽 첨부6 참조, 58의 550쪽 참조]. 몰로토프는 소련 외무인민위원부의 성명에서 소련 정부를 대표하여 “소일중립조약은 1941년 4월 13일, 즉 독일의 소련 침공 및 일본과 영·미 양측 간의 전쟁 발발 이전에 체결되었다. 이후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으며, 독일의 동맹국 일본은 소

련과 교전 중인 독일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소련의 동맹국인 미국 및 영국과 교전 중이다. 따라서 소일중립조약은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조약의 기한 역시 연장이 불가능해졌다”[197쪽 첨부12 참조, 53의 2쪽 참조]고 발표했다.

소련이 1941년 4월 13일자 소일중립조약을 1945년 4월 5일에 폐기한다고 발표한 것은 1941년 6월 22일 독소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이 조약을 위반한 구체적 사실에 따른 행동이었다. 즉 “일본은 소련과의 국경선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결시켰으며, 1941년 8월부터 소련 침공을 준비했다. 독소전쟁 내내 극동, 시베리아와 우랄지역의 경제 및 군사적 잠재력에 관한 정보를 독일에게 제공하고, 소련을 상대로 한 파괴 활동, 소련 국경에서의 도발, 수차례에 걸친 소련의 영토·영해·영공 침범, 상선 및 어선에 대한 검문 등의 방식으로 중립해역과 소련 영해에서의 항행을 방해했다(약 200회). 그 결과 18척의 소련 선박이 침몰했으며, 항행 손실액이 약 6억 4천만 루블에 달했다(당시 시세에 따른 액수임) [27의 170쪽].

일본은 1941년 4월 13일자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에게 이 조약은 의무 없는 형식적 허구에 불과했다. 알타의 크림선언에서 채택된 동맹국의 의무에 충실했던 소련은 위와 같은 당시의 국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조속한 종전을 목적으로 소일중립조약의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일본에 선전포고했으며, 세계의 모든 열강들도 이런 사실을 이해하여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은 1945년 8월 8일 일본에 대한 소련의 ‘때 이른’ 선전포고가 ‘5년 기한으로 체결된 1941년 4월 13자 중립조약’의 위반이자, ‘히로시마 이후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투하되어 일본의 패전이 이미 명확

해진 상태'여서 군사적 필요성도 없었으며, '북방영토의 점령은 이미 군사행동이 중단된 이후 유혈충돌 없이 이루어진 군사 점령'으로 해석하고 있다[76의 6쪽].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하보마이 암맥은 언제나 일본 영토며, 평화 시에 협상으로 일본 영토가 된 쿠릴 또한 그런바, 스탈린의 일방적인 북방영토 병합행위는 영토 불확장의 원칙과 모순"이라는 주장이 이루어지고 있다[76의 7쪽, 10쪽].

일본 외무성 공식 간행물(1996)의 발췌본에는 1945년 8월 소련의 행위가 국제법 및 1941년 소일중립조약의 위반으로서, '일본 북방영토'의 점령과 병합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바로 그런 논리에서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암맥이 '일본의 고유영토'며, 쿠릴열도의 북부 지역, 즉 쿠릴 대암맥과 소암맥 모두 일본 영토로 이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련이 1941년 4월 13일자 소일중립조약을 위반한 1945년 8월을 양국 영토 논쟁의 시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소련은 1946년 4월 13일 이후에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만큼, 양자 간 국제조약을 공식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행동을 평가하려면 당시의 주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일 선전포고 당시 소련 정부는 히틀러의 독일이 괴멸되어 항복한 이후, 일본만이 전쟁을 지속하던 유일한 열강이었다는 절박한 국제적 상황과 의무에 따르고 있었다.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의 3개 열강이 제시한 무조건항복에 관한 1945년 7월 26일자 요구를 거부했다. 3개 연합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소련 정부는 연합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3개 열강의 1945년 7월 26일자 성명에 동참했다. 소련 정

부의 이런 정책은 평화를 앞당기고, 계속된 희생과 고통에서 인민을 해방시켜주며, 무조건항복을 거부한 뒤 독일이 경험해야 했던 위험과 파멸을 일본 국민이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200쪽 첨부14 참조, 23의 1쪽 참조].

소련 정부는 1945년 4월 5일자와 8월 8일자 대일성명에서 1941년의 중립조약으로 소련이 받아들인 의무와 비교할 때, 1945년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언급했다[47의 96쪽]. ‘상황의 근본적 변경’ 원칙(국제법의 일반규범)은 후일 1969년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62조에서 규정되었다.

법률적 관점에서 소련의 대일 개전은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 창립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연합헌장 제107조와 제103조에 부응한다. 국제연합헌장 제107조에 따르면,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 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103조에 따르면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252쪽 첨부]. 소련은 일본과 개전하기 전인 1945년 7월에 국제연합헌장을 비준했다. 소련의 대일 개전은 미국, 영국, 중국에 의해 1945년 7월 26일 채택되었고, 1945년 8월 8일 소련이 가입한 포츠담선언의 규정 조건에 따른 평화복구를 적국 일본이 거절한 이후 이루어졌다. 연합국 일원은 일본과의 전쟁 당시 국제연합의 회원으로서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 엄격히 따르며 행동했다. 이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

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7의 111쪽]. 그 외에도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75조를 고려해야 한다(‘침략국 사례’). 이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에 의거하여 침략국의 침략에 관하여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서 그 침략국에 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조약상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47의 100쪽]. 따라서 1945년 소련이 소일중립조약의 실효를 통고한 뒤, 1945년 8월에 일본을 상대로 개전한 것은 국제법 규정, 즉 국제연합헌장(제1, 103 그리고 107조) 및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제62와 75조)과 완전히 합치하는 것이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의 대일개전 이후, 군사행동을 지속해도 전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일본 정부는 8월 10일, 겨우 2주 전인 7월 26일에 거절했던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통첩을 스웨덴과 스위스를 통해 연합국 측에 전달했다[201쪽 첨부 15 참조, 22의 29쪽 참조].

여기서 다음의 주요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의 4개 연합국 측은 8월 11일자 답변을 통해 무조건항복을 다시 확인하면서, 포츠담선언에 따라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통치권은 항복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속하게 될 것이다.** 천황은 포츠담선언 조건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항복조건에 일본 정부와 일본제국 대본영이 조인하도록 재가하고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265쪽 첨부16 참조, 85의 195~196쪽 참조].

군사참의관회의(軍事參議官會議)와 일본 내각의 연합회의는 1945년 8월 14일 4개 열강의 최후통첩을 검토하여 받아들였다. 의회의 기능은

심하게 제한했던 1889년 일본 헌법에 의거하여 배타적이고 광범위한 권력을 이양받은 일본의 수장 히로히토 천황은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1945년 8월 14일 일본 정부는 스위스 정부를 통해 “천황은 일본의 포츠담선언 조건 수용에 관한 칙서를 하달했으며, 상기 조건들을 이행하기 위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요구할 수도 있는 다른 명령을 자신의 명의로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영·중·소의 4국 정부에 통보했다[202쪽 첨부17 참조, 6의 1쪽 참조].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은 일본의 무조건항복 조건 수용에 관한 칙서를 라디오로 일본 신민에게 발표했다[203쪽 첨부18 참조].

그러나 전투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각 부대에는 하달되지 않아서, 일본군이 이전처럼 계속 저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통보는 무조건항복에 관한 일반선언에 불과했다[206쪽 첨부19 참조, 65의 1쪽 참조]. 항복 선언 당시 일본군의 실제 항복이 없었기 때문에 극동에 배치된 소련군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소련의 대일 개전 이후 연합국은 얄타협약의 이행 조건을 고수했다. 즉 소련 각료회의 의장 스탈린이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게 발송한 1945년 8월 16일자 메시지에서 “크림에서의 3국 결정에 의거하여 소련에 양도되어야 하는 전체 쿠릴열도를 일본군이 소련에 항복하는 지역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루먼은 8월 18일자 답변을 통해 “극동주둔 소련군 총사령관에게 항복해야 하는 지역에 전체 쿠릴열도를 포함시킨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8월 27일자 답변에서 “본인은 본인의 전임자가 평화 조정 중 소련이 그 도서들을 획득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일본 내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육군 및 해군 일반명령 제1호 역시 ‘만주, 북위 38도 이북의 한국, 가라후토 그리고 쿠릴열도에 위치한 모든 일본군은 반드시 극동주둔 소련군 총사령관에게 항복할 것’으로 언급하여, 일본군이 소련군에게 항복하는 지역에 사할린 남부는 물론, 전체 쿠릴열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74의 30~39쪽].

연합국의 합동군사행동으로 일본은 극동과 태평양에서 패했다. 일본은 1945년 9월 2일 도쿄 만에 정박한 미국 전함 ‘미주리(Missouri)’ 호 선상에서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선언 조건을 이행하고, 대일전 참전 연합국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패전을 인정한 항복문서에 조인했다[207쪽 첨부21 참조, 61의 4쪽 참조].

일본은 항복문서에서 국가 최고 전권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전체 일본군 그리고 일본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대가 연합국에 무조건항복한다고 선언했으며(제2조), 모든 일본군과 일본 국민에게 즉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또는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정부기관이 제시할 수도 있는 모든 요구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제3조). 또한 일본제국 총참모부에게는 모든 일본군과 일본의 통제하에 있는 부대에게 무조건항복을 하명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제4조). 일본 정부와 총참모부에게는 모든 연합군 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들을 즉시 석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제7조). 항복문서의 이 4개 조항이 무조건항복의 군사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항복문서의 다음 4개 조항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실로 구체적인 국제법적 의무를 일본에 부여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오늘날 날에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1조에서 “우리는 천황과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제국 총참모부의 이름과 명령으로 행동하면서, 실로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중국 그리고 영국 정부의 수뇌들에 의해 발효되고 이후 소련이 거기에 참가하여, 후일 연합국이라 명명되었던 국가들의 선언 조건을 수용한다” 일본 항복문서의 이 조항은 그 현실성과 의미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제5조에서 “모든 민간인, 육군과 해군의 공인들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이 항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내린 또는 최고사령관의 전권에 의하여 내려진 모든 지시, 명령 그리고 지령에 복종하고 그것을 이행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공신들에게 하명하니, 모두들 자신의 현 위치를 고수하고 이전처럼 자신의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라. 그러나 연합국 최고사령관 혹은 최고사령관의 전권에 의해 하달된 특별명령에 의해 그 직책에서 면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에서 “이에 이 선언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합국 최고사령관 또는 연합국에 의해 임명된 대표가 요구하는 일체의 조치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그 후임자들이 포츠담선언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할 것임을 약속한다. 일본 항복문서의 이 조항은 그 현실성과 의미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제1조의 (본 저자가 강조한) 부분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제8조에서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통치권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종속되며, 최고사령관은 항복조건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일본의 항복문서에는 (천황과 일본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본 외무대신과 (일본제국 대본영의 명령에 따라) 총참모장이 서명했으며, 연합국 측에

서는 미국, 중국, 영국,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군사대표들이 서명했다. 이처럼 일본의 1945년 9월 2일자 항복문서는 일본, 일본의 최고지도부 그리고 그 후임자들에게 법률적 책임을 부과한 가장 중요한 다자간 국제법 문서로서, 그 안에는 영토문제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항복문서의 제1조는 일본의 주권을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향후 연합국이 결정할 일부 군소 도서들로 제한시킨 제8조를 비롯하여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의 조건들을 수용하고 있다.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35조(제3국에 대하여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47의 88쪽]에 따르면, 만약 해당 조약의 참가자들이 그 규정을 의무로 설정하길 원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이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으로부터 그 제3국에 대해 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카이로선언의 조건도 수용했다는 것은 일본 영토의 제한에 관한 상기 선언의 규정을 일본이 수용했다는 뜻이다. 포츠담선언의 이런 규정의 이면에는 1945년 2월 11일자 얄타협정의 제2조와 제3조의 조건, 즉 소련에 대한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서의 반환 및 쿠릴열도의 양도가 각각 존재한다.

1945년 8월 29일 미국 정부가 일본 주둔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발송하여, 1945년 9월 2일 일본에 통보된 훈령 역시 소련, 미국, 영국의 얄타협약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 훈령에서는 일본의 주권이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카이로선언 또는 미국이 체약국이거나 체약국이 될 수 있는 다른 협약들에 의해 제시될 일본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의 도서들'로 제한된다는 포츠담선언의 규정이

상기되어 있다[207쪽 첨부20 참조]. 일본 정부가 이행하도록 일본에 전달된 이 문서에는 항복 이후 일본의 주권 제한을 포함하여 알타협정의 조건을 준수하려는 당시 미국의 초기 대일정책 일반 노선이 천명되어 있다.

일본이 수용한 1943년의 카이로선언에 따라 일본은 침략자로 처벌 받았으며, “일본이 탐욕과 무력으로 점령한 모든 영토로부터” 추방되었다. 일본의 영토는 1945년 포츠담선언에 의해 제한되었다. 더구나 비엔나협약의 제75조에 따라 일본의 동의 없이도 연합국의 국제협약에 의해 침략국(일본의 침략에 대한 책임)으로서 제재를 받게 되었다. 즉 알타협약과 포츠담선언을 이행해야만 했다.

무조건항복은 일본의 군사 및 정치구조의 해체, 그 구조들이 지닌 전권(全權)의 중단 그리고 일부 주권의 상실을 의미했다.

총리, 최고권 군사지휘관, 외교관, 군국주의와 팽창주의 이념가 등이 포함된 전전 및 전시 일본의 최고지도자 28명이 체포되어 국제전범 재판소로 이송되었다. 이 재판소는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를 포함하는 11개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총 2년 6개월 동안 존속했다. 소송절차는 영국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랐다.

일본은 독일 및 이탈리아와 함께 ‘다른 세계에 대한 침략국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피침략국을 착취하려’ 한 국제적 공모라는 죄목으로 피고가 되었다[27의 418쪽].

국제전범재판소의 공소장에는 피고들이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 중국, 영국, 소련 그리고 기타 평화애호 인민들을 상대로 국제법, 조약, 의무와 보장 등을 위반하고 …… 전쟁법과 관습을 위반하여 침략

전쟁을 의도하고 실제로 계획했으며, 준비하여 전개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27의 418쪽].

판결문에서는 1928~1945년까지 일본의 대내외정책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 그리고 소련의 극동과 시베리아 영토마저 점령하기 위해 침략전쟁의 준비와 개전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피고들은 세계를 상대로 한 범죄, 즉 침략전쟁으로 ‘동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그 해양에 위치하거나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도서들에 대한’ 육·해군,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지배의 확립을 목표로 음모를 꾸며 평화에 반한 범죄로서 유죄판결을 받았다[27의 425쪽].

국제전범재판소 판결문의 ‘일본의 대소련 정책’ 부분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대외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던 대소 침략전쟁을 장기간 예정하고 계획했다. 또한 연해주와 프리아무르주, 그 뒤를 이어 자바이칼 지역, 동시베리아와 옴스크(Омск)에 이르는 서시베리아 지역, 몽골 등 극동지역을 점령하려 했던 일본은 소련 공격용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만주를 점령했다. 1942년 1월 18일 일본 최고 사령부와 독일 총참모부 간에 체결된 군사협약에 따르면, 소비에트의 영토 중 옴스크 경도의 동쪽은 일본의 영향권에 편입되었으며, 그 서쪽은 파시스트 독일에 속했다.

전범재판소는 일본이 1941년 소련과 중립조약을 체결한 후에도 소련에 대한 공격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계획의 수행을 용이하게 만들고자 위 조약으로 위장하는 위선을 보여주었다고 규정했다. ‘관동군 특종연습(關東軍特種演習, 관특연-역주)’이라는 작전계획에 따라 194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소련 침공을 위한 전쟁 준비가 진행되었다.

전범재판소의 판결문에서는 일본이 중립조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서 독일의 대소전에 도움을 준 구체적인 사실, 즉 적군(赤軍)의 군사력을 극동에 묶어둔 것, 소련의 군사적 잠재력에 관한 정보를 독일에게 제공한 것, 선박억류 및 명백한 국제법 규정 위반으로 인정되고 있는 선박 격침 등의 방법으로 소비에트 선박의 항해를 방해한 것 등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1941년 4월 13일 소일중립조약 체결 이후 4년 동안 본 조약의 제1조, 즉 “양 체약국은 상호 간의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지해야 하며, 상대 체약국의 영토보전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상호 존중해야만 한다”는 규정과 제2조, 즉 “만약 양 체약국 중 일방이 1개 또는 수개 국 군사행동의 대상이 될 경우, 상대 체약국은 그 충돌이 종결될 때까지 중립을 지킨다”는 규정을 반복해서 노골적으로 위반했다[190쪽 첨부 참조].

동경국제전범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침략을 가장 심각한 국제적 범죄로 인정하면서 일본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제국주의적 군국주의 일본은 히틀러의 파시스트 독일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독일과의 동맹을 통해 수많은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국제전범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본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중국, 소련, 미국, 영국 그리고 여타 국가들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계획하여 개전했으나, 그 상대 국가들에게 패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개전 책임으로 처벌을 받았다. 즉 25명의 중요한 일본 군인 및 정치인들은 개인적으로 평화와 인류를 상대로 한 범죄와 일본에 의해 노예화된 민족을 대량 학살한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중 7명에게는 교수형이 선고되었다.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952년 4월

28일까지, 즉 일본 내 연합국 점령군의 참모부가 폐지되는 그 순간까지의 6년 반 동안 일본에는 연합국 점령정권이 수립되어 있었다. 일본에 대한 사실상의 점령 통치는 히로히토 천황이 포츠담선언의 무조건 항복 조건을 수용한 1945년 8월 14일 이후 거의 2개월에 걸쳐 수립되었다. 미군 지휘부를 통해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전략지점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수립된 것은 1945년 10월이었다.

1945년 8월 18일 미국 정부의 일방적 행위로서 미국의 태평양사령관이었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일본 주재 점령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일본 점령은 영연방(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소속의 병력이 소수 참가한 가운데 사실상 미군에 의해 이루어졌다.

맥아더 장군의 지시에 따라 1945년 10월 2일 최고사령관 참모부가 설립되었다. 참모부 내에는 총 10개 부서가 있었다. 이 부서들은 일본의 대내정책부터 대외정책까지 그리고 경제부터 학문까지 다양한 분야를 담당했다. 점령지 일본을 통치하기 위한 참모부의 명령이행은 각 현지에서, 일본 정부기구 산하의 해당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던 미군의 유관기관에 의해 통제되었으며(1945년 말까지), 이후에는 일본 정부기구가 일본을 통치했다. 즉 독일에서와 같은 점령군에 의한 직접통치가 아니었다. 일본의 정부기구들은 점령군 당국의 지령과 명령을 실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포츠담선언과 일본의 항복문서에 따라 일본 주권에 초헌법적 제한이 가해졌다. 광범위한 범주의 국가 통치기능도 그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법률제정은 점령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재정과 대외통상도 통제 대상이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은 일본에서의 군국주

의 근절, 자주와 평화 애호적 국가로의 변화를 위한 일본의 민주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독일에서는 포츠담선언에서 체결된 협약에 따라 나치국가 그 자체의 파괴가 목표였다.

소련, 미국, 영국 등 3개 열강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국제통제기구인 극동위원회(ДБК)가 미국 워싱턴에, 그리고 대일이사회가 도쿄에 각각 설립되었다. 이 기구들은 다양한 수준의 결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태였지만, 일본을 통제하기 위한 연합국 최고기관이 되었다.

일본이 1945년 9월 2일의 항복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일본을 상대로 한 전후시기의 정치노선, 원칙 그리고 일반 근거 등은 극동위원회에서 규정되고 갖추어졌다. 이 위원회의 지휘 기구는 13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으며, 포츠담선언에 조인했던 4개 열강의 대표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소련,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후일 버마와 파키스탄이 동참). 이 위원회는 극동위원회 소속의 4대 열강인 소련, 미국, 영국, 중국의 만장일치 하에 회원국의 다수득표로 동의를 구해 결정을 내렸다. 그 외에도 극동위원회 회원 중 단 일국의 요구만 있어도 극동위원회는 일본 주재 미국 점령군 총사령관에게 하달된 모든 지령 또는 정치노선과 관련하여 최고사령관이 채택한 모든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극동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미국 점령군 최고사령관을 위한 방침을 수립했다. 그 방침은 극동위원회가 제시한 정치노선에 부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일본 내 점령정책, 일본 헌법, 일본 정부 전체의 교체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지령은 오직 극동위원회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만 공포될 수 있었다[27의 412~413쪽].

극동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집행기능은 점령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에게 일임되었으며, 그의 휘하에 연합국에서 선발된 4명(미국, 소련, 중국에서 각 1명 그리고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와 인도의 공동대표 1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대일이사회가 설립되었다. 이 이사회는 자문과 권고 및 통제 기능을 수행했으며, 최고사령관의 명령 이행을 중지시키고 쟁점을 극동위원회의 논의에 회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의 항복조건과 전후 일본 내 점령체제의 성격과 관련된 자료 및 항복, 점령, 연합국 측의 통제권 실행 등과 같은 조건으로 일본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여 승전 연합국 열강에게 일본 통치를 보장해준 정치메커니즘 관련 자료는 1945년 9월 2일까지 일본에 존재했던 국가의 해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만 인용되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국경을 지닌 새로운 국가체제가 전후시기 승전국 열강의 통제하에 성립되었다. 이 국가는 전후 현실의 산물이었다. 소련과 다른 국가들의 투쟁 상대였던 일본의 전전·전시 국가체제는 반히틀러 및 반일동맹 국가들의 합의에 따라 해체되었다.

연합국의 통제하에 신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새로운 국가조직이 수립되었다. 1946년 7월 2일 극동위원회는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일본의 새롭고 민주적인 헌법의 제정과 수용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으며, ‘일본 신헌법의 주요 원칙’이라는 지령을 승인했다. 이 신헌법은 1946년 10월 일본 의회에서 채택되어 1947년 5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전쟁 이후 일본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는 영토적 팽창을 거부했다. 승전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를 변화시켰다. 일본은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수용한다는 1945년 8월 14일자 천황의 칙서와 1945년 9월 2일자 일

본 항복문서에서 이런 영토변화에 동의했다. 따라서 영토변화에 대한 일본 입법기관(의회)의 차후 승인(비준)이 필요 없다. 연합국이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항복 조건을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수용했다는 것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의 영토변화에 대한 일본의 이견을 무조건 자동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지금의 일본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전쟁 전 일본 영토의 계승자가 아니다. 영토문제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의 원칙 그리고 일본 항복문서의 규정에 따라 전후시기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당시 부분적으로 상실되었던 일본의 국제적 권리능력은 일본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맥아더 장군의 지령에 따라 결정되었다.

크림회의와 포츠담회의의 결정,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규정, 일본 항복문서의 규정 그리고 극동위원회(극동위원회의 1945년 12월 27일 자 권고)의 결정에 따라 일본 주재 미군 참모부는 맥아더 장군의 1946년 1월 29일자 지령 No. 677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 천황 정부에게 보낸 각서’를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212쪽 첨부 24 참조, 214쪽 첨부 24.1 참조, 49 참조]. 본 지령 제3조의 ‘c’에 따라 소쿠릴암맥[하보마이(플로스키예, Плоские)와 시코탄을 포함한 홋카이도 북부 연안 이북에 위치한 모든 도서들이 일본의 국가와 행정당국의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더구나 이 각서에는 이 도서의 일본식 명칭, 즉 ‘쿠릴(치시마)열도, 하보마이(하포마제, Хапомадзе)군도, 수쇼(Сушио), 유리(Юри), 아키유리(Акиюри), 시보츠(Сибоцу)와 타라쿠(Тараку) 그리고 시코탄(Сикотан)’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다[215쪽 첨부 참조]. 이처럼 연합국 열강의 결정에 의해 일부가 아닌 전체 쿠릴열도가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되었다.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1946년 2월 2일자 포고 제1조를 통해

‘1946년 9월 20일부터 사할린 남부 및 쿠릴열도 지역의 모든 토지, 지하자원, 삼림, 수자원은 모두 국유재산, 즉 모든 인민의 재산’이라고 공식 규정하여, 쿠릴열도의 대소 양도에 관한 위 문서들의 효력을 강화했다[216쪽 첨부25.1 참조, 54의 4쪽 참조]. 그와 동시에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 지역에 남사할린 주가 성립되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하바롭스크 변경(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의 일부가 되었다[216쪽 첨부25.2 참조, 55의 4쪽 참조]. 1947년 1월 2일 하바롭스크 변경에서 통합 사할린 주를 분리시키면서 없어진 남사할린 주가 사할린 주에 포함되었다.

1945년 9월 20일부터 소련이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을 수립한 것은 바로 그날 포츠담선언에 따른 천황의 특별명령이 발표되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210쪽 첨부22 참조]. 포츠담선언은 카이로선언과 함께 일본의 주권을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의 결정에 따른 일부 소규모 도서들로 제한했으며, 이 점은 연합국의 최고사령관이 제국주의 일본 정부에 발송한 1946년 1월 29일자 각서 No. 677에서도 지적되어 있다. 따라서 1945년 9월 16일 사할린 남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각각 위치한 소련군 사령부는 천황의 예정된 명령과 관련하여 동년 9월 20일부터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가 소련의 영토로 발표될 것임을 각 도서의 현지 당국에 통보했다[71의 61쪽]. 이런 결정은 “소련의 요구는 일본에 승리한 후 무조건 만족되어야만 한다”고 정확히 규정한 소련, 미국, 영국의 1945년 2월 11일자 알타협정에 따라 행해진 것이지, 일본과의 강화조약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권리는 알타협약을 통해 복구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독일 영토를 박

탈하여 소련,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양도한다는 결정은 강화조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독전쟁에서의 연합국 열강의 1945년 베를린(포츠담)선언(3대 열강의 1945년 8월 1일자 베를린선언 의정서)과 이후 1950년 폴란드인민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967년의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1970년과 1973년의 소련, 폴란드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사회주의공화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조약과 협약 등으로, 그리고 1990년 독일에 관한 최종조정과 관련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영국, 미국, 소련, 프랑스가 체결한 조약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후 일본과의 평화적 조정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52개국이 참가한 평화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의 과정은 그 당시 열강들의 모든 국제적 갈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냉전’ 시기, 한국전쟁 등). 이 회의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전쟁을 치렀던 중국, 버마, 인도 및 일련의 다른 국가들이 참가하지 않았다. 1951년 5월 7일 소련은 대일 강화조약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그리고 크림(알타)협약에 기초하여 대일 강화조약을 작성하자고 진지하게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이 이를 거절했다[216쪽의 첨부26]. 이로써 미국과 영국은 대일전쟁에 참전하여 종전시기를 1.5~2년간량 단축시킴으로써 미국 병사와 장교들 그리고 영국 군인의 인명을 150만 명가량 구해준 자신의 동맹국을 배반했다.

미국과 영국의 대표단은 이미 준비된 강화조약 본문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1951년 9월 5일자 회의의 연설에서 주요 참석자들의 입장이 언급되었다. 즉 소련은 외무부 제1차관 그로미코(A. A. Громыко)가 소련 대표단의 대표로 발언했으며[222쪽 첨부27 참조], 미국

은 국무장관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발언했다[232쪽 첨부28 참조]. 9월 7일에는 일본에 발언권이 주어져, 일본 총리 요시다[吉田茂]가 발언했다[233쪽의 첨부29 참조].

미국이 영국의 동의를 얻어 준비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조문이 표결에 부쳐졌고, 1951년 9월 8일 (소련, 폴란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49개국 대표들이 조인했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위성국가들, 즉 거의 대부분이 일본과의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국가들이 아니었던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조인했다. 21개 라틴아메리카 국가, 7개 유럽 국가 그리고 7개 아프리카 국가가 조약에 조인했다. 1951년 9월 8일자 기자회견에서 소련 외무부 제1차관 그로미코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234쪽 첨부 30 참조].

이 조약[236쪽 첨부31 참조, 73의 337~358쪽]은 7개 장, 27개 조로 구성되었다. 소련, 중국 그리고 일련의 다른 국가들과의 전시상태가 법률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약은 일본과 서방국가들 간의 단독거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 인민공화국, 베트남민주주의공화국, 인도와 버마 등 일본과 투쟁했던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과 일본 간의 관계가 조정되지 않았다. 소련과의 영토문제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이 조인하기 위해 준비하고 제출한 강화조약문에는 권리 보유국인 소련이 의도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쿠릴열도의 지리적 경계 역시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행한 덜레스 발언에서는 ‘하보마이’군도가 쿠릴열도의 구성에서 임의로 누락되었다. 즉 “제2조에서 언급된 ‘쿠릴열도’라는 지리적 명칭에 하보마이군도가 포함

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만 …… 또한 이 문제는 국제연합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232쪽 첨부]. 딜레스는 결론 부분에서 하보마이군도만큼은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은 본 조약의 제22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이미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에서 1945년 9월 20일부터 쿠릴열도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소련을 상대로 향후 일본이 영토적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일본 대표 요시다는 아마도 미국 측의 동의를 얻은 듯, 자신의 연설을 통해 남쿠릴의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그리고 사할린 남부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여 이 두 도서의 귀속 문제를 언급했으며,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일본의 4대 도서 중 하나인 홋카이도의 일부'를 이룬다고 설명했다[234쪽 첨부].

그에 더해 1952년 3월 20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준 당시 미국 상원은 '비준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상원이 성명하는바, 상기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 도서, 쿠릴열도, 하보마이군도, 시코탄군도 또는 여타 모든 지역과 관련하여, 그리고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 및 이익과 관련하여,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느 것도 소련을 위해서 일본이나 연합국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축소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조약에서 유래하는 어떤 권리나 우월권을 소련에 양도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이 조약에 언급된 그 어떤 것도 일본 문제로 1945년 2월 11일에 체결된 이른바 ‘알타협정’에 소련과 관련하여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미국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특별히 언급되었다[242쪽

첨부32 참조].

미국 상원이 위 조약의 비준에 동의하며 내세운 단서는 1941년 12월 7일 당시 일본에 속했던 영토에 대한 소련의 권리와 권리주장이 그 영토에 대한 일본 혹은 조약에 조인한 연합국 열강의 권리와 권리주장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만큼, 미국은 본 조약의 조항으로 그런 권리와 권리주장이 소련에 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준 조건에 대한 미국 상원의 선언에 서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견해에 따르면, 소련에는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 성명된 것이었다. 그러나 대일전 연합국들이 알타협약으로 부과된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조약의 통상적인 국제법 규범과 배치된다. 이 사실은 국제관계의 영역에서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조인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 간에 항구적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은 후자의 조약에 의거하여,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적용 시점 및 미국 점령군 체제의 종료 이후 일본에서 자신의 부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 일본 영토에 군사기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그 군사기지에서부터 극동 및 동아시아에서 군사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확보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안전보장조약은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극동위원회와 대일이사회를 해산했다. 일본열도의 점령상태가 중단되었으며, 일본 국내의 모든 권력은 일본 정부에 이양되었다.

제3장

20세기 후반 양국 간의 영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과 소련의 양국 관계에서 ‘영토문제’는 1950년대 중반 미국의 강력한 압력하에 발생했다. 당시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일본과 소련의 접근을 막으려 했다. 그 이전까지,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 10년 동안 일본에서는 (암묵적 인정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는 당연히 소련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법률적으로 올바른 양자 간 조약의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별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소련, 중국,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논리적 오점’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위 강화조약의 본문에는 일본이 포기한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 및 그 부속도서들에 대한 권리보유자로서 소련을 지목하지 않았다.

미국은 파괴된 일본을 점령한 뒤 소련을 상대로 ‘냉전’을 전개하면서 소·일관계의 궁극적인 국제법적 조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소련과 일

본은 1945년의 전쟁 이후 많은 이유로 인해 강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여기서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한 나라는 과거부터 항상 모든 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이었다. 영토문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복잡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미국은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련은 그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

여기서, 과연 소련(러시아)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 체결(또는 미체결)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사할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일본이 조인하고 비준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조 ‘c’항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에 따라 주권을 획득한 쿠릴열도 및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법적 근거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했다[237쪽 첨부]. 따라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현 시점에서 남쿠릴과 북쿠릴 그리고 사할린 남부 등 모든 지역에 대한 권리를 전혀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일본은 영토문제에 관한 러시아와 일본 간의 1855년, 1875년 그리고 1905년 조약을 인용할 권리도 없다. 일본은 향후에도 자신이 잃어버린 이 지역에 대한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동시에 강화조약에는 ‘극동문제에 관한 3국의 크림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할린 남부와 쿠릴이 소련에 반환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이 의지하고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5조다. 본 조항에 따르면 “이 조약은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부여하지 않는다. 아울

러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 앞에서 정의된 연합국이 아닌 나라를 위해 일본의 어떠한 권리, 소유권, 이익도 제한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조약의 적용상, 연합국이란 일본과 전쟁하고 있던 나라들이다. …… 각 경우 본 조약에 서명하여, 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241쪽 첨부]. 즉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한 쪽이 이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국가에게 아무런 권리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련(러시아연방)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일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36조(제3국에 대하여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에 의거하여, 위 강화조약 중에서 일본은 쿠릴열도 및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서를 포기했다는 제2조의 규정을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비엔나협약의 제1항에는 “조약 당사국이 제3국 또는 제3국이 속하는 국가의 집단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규정을 의도하며, 또한 그 제3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서 그 제3국의 권리가 발생한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의 동의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동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비엔나협약 제37조(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의 제2항에 따르면 “제36조에 따라 제3국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제3국의 동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의도되었음이 확정된 경우에, 그 권리는 당사국들에 의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47의 89쪽].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8조에 의거하여 일본은 ‘연합국이 1939년 9월 1일에 개시한 전쟁상태를 종료하기 위해 현재 또는 향후에 체결할 모든 조약 그리고 연합국이 평화회복을

위해서 혹은 평화회복과 관련하여 체결한 다른 조약의 완전한 효력'을 인정했다는 점이다[239쪽 첨부]. 따라서 1945년 2월 11일에 발표되어 '소련에 사할린 남부와 그 모든 부속도서의 반환'(2조a) 및 '소련에 쿠릴 열도의 양도'(3조)[196쪽 첨부]를 규정하고 있는 크림협약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연합국 열강들에 의해 체결된 조약들' 중에는 1945년 2월 11일자 크림(알타)협약 외에도 1943년 11월 27일자 카이로 선언과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 1945년 9월 2일자 일본의 항복 문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제국 정부에 발송한 1946년 1월 29일자 각서 No. 677, 1946년 일본 주민의 본국송환에 관한 미소협약, 1951년 9월 8일자의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이 있다.

일본의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의 포기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조에 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만큼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구 소련)은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36조에 따라 일본의 포기 사실과 일본이 포기한 지역에 대한 러시아연방(구 소련)의 권리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1980년부터 1969년의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회원이다. 소련은 1986년 4월 4일 이 협약에 가입했다(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포고 4407-XI). 소련이 이 협약에 가입하자, 일본은 1987년 4월 4일 소련 정부에 통첩을 발송하여, 소련의 일부 부대조건(제20조 제3항, 제66조 그리고 첨부)에 반대를 표명한 후, 소·일(현재는 러·일) 관계에서 비엔나협약의 나머지 조항은 효력을 지니지만, 동 협약의 제5부(42-72조)는 러시아와의 조약관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했다[71의 100쪽]. 따라서 현대국제법의 규칙을 규정한 본 협약에서 쿠릴문제 해결에 적용되고 협약 채택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일반법 규범을 법전화

한 결과이자 조약 참가국에게 의무인 새로운 규범의 근거가 되는 제 30~32조, 제36~37조, 제41조, 제75조 등 조약의 적용 및 해석의 규칙에 관한 조항들이 러시아연방(구 소련)과의 관계에서 일본에 의해 인정되었다.

현재 일본 측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c에 의해서 일본이 완전히 포기했던 쿠릴열도와 일본이 위 조약을 통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남쿠릴열도 및 소쿠릴암맥은 지리적·법률적으로 다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렇게 날조된 근거에 입각하여 대쿠릴암맥의 남쪽 도서들을 착복하고, 소쿠릴암맥의 도서들에 존재하지도 않는 ‘북방영토(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일본에서 하보마이라고 명명되는 군도)’라는 지명을 부여함으로써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당시 소쿠릴열도를 포기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자신들이 포기한 땅 ‘쿠릴열도’라는 지리 용어에서 ‘북방영토’라는 모종의 지리 용어를 구분해냄으로써 ‘쿠릴열도’라는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부(조약의 해석)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특정 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했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47의 87~88쪽]. 그러나, ‘북방영토’라는 개념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약 자체 내에 독립된 조항이나 단서의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기 제31조에 따르면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

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제2항)”.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의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제3항)”.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에서는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교섭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언급되어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는 대일전쟁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일본 주민의 본국송환에 관한 1946년 3월 16일자 지령 No. 822와 1946년 5월 7일자 첨부문(지령 No. 927) 그리고 사할린 남부와 쿠릴 주재 일본 주민의 본국송환에 관한 1946년 9월 10일자 지령 No. 1421(1949년 8월 9일에 부가됨) 등을 공포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1946년 소·미 임시협약이 체결되었다. 남쿠릴열도와 하보마이군도 그리고 시코탄으로부터의 본국송환이 위 임시협약 및 일본 정부에 내려진 맥아더 지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지역에 따라 본질적으로 차이 없이 이루어졌다. 당시 남쿠릴과 하보마이군도 그리고 시코탄은 북쿠릴 및 중앙쿠릴과 함께 하나의 단일체인 쿠릴(치시마)열도로 인

정되었다[71의 63쪽].

종전 직후 1951년 7월 5일자 ‘쿠릴(치시마)열도 주민의 이주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공보에 따라 쿠릴열도의 남부에 상주하던 주민의 거의 절반(18,845명 중에서 9,419명)이 그곳을 떠나 일본으로 귀국했다. 1949년 여름까지 (기존 거주지에 남기를 원해 소련 시민권을 취득한 12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본인이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주민 이주에 관한 일본 외무성 공보에서 열거된 쿠릴열도의 구성에는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뿐만이 아니라,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도 포함되어 있었다[68의 563쪽 참조]. 사할린 남부 및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을 포함한 쿠릴열도로부터 일본 주민의 본국송환은 주민들의 의지와 일본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일본의 주권하에 남게 될 일본 영토를 규정한 포츠담선언의 조건 및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1946년 1월 29일자 지령 No. 677에 입각하여 최단 시일에 완수되었다[71의 64쪽]. 이로써 일본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에 대한 주권을 잃었으며, 이 사실은 1949년 여름까지 완전히 이행된 일본 주민의 본국송환에 관한 미소협약에도 삽입되었다. 이 지역은 소련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련의 주권하에 들어갔다.

일련의 일본 국내법규 제정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북쿠릴뿐만이 아니라, 남쿠릴마저 포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일본 수상의 1869년 1월 14일자 포고령 No. 734의 첨부문서는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를 포함하는 쿠릴열도의 남쪽 부분이 쿠릴열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군(郡)으로 치시마(쿠릴) 도(道)에 포함된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243쪽 첨부33.1 참조].

일본 수상의 1876년 1월 14일자 포고령 No. 2에 따라 쿠릴열도의 중

부와 북부(우루프 군, 시무시르 군, 솜슈 군)가 치시마 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은 쿠릴열도의 남부와 함께 일본 법령에 따라 하나의 총체를 형성하게 되었다[244쪽 첨부33.2].

일본 수상과 내무대신의 1885년 1월 6일자 포고령 No. 1에 시코탄 군, 즉 소쿠릴암맥 중에서 시코탄과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후일 수이쇼군도(현재의 하보마이군도)로 불리는 시코탄군도가 치시마(쿠릴열도)도의 구성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역사학자 오쿠마(P. Окума) 역시 이 사실에 주목하여 “시코탄 군에는 가장 중요한 섬인 시코탄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수이쇼, 유라, 아키유라, 시보츠 그리고 타라카 등 현재 하보마이군도를 이루는 섬들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71의 138쪽에서 인용됨].

이후, 일련의 일본 공식문서에서도 하보마이(수이쇼, 플로스키예)군도는 쿠릴열도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 행정 구획에 따라 이투루프와 쿠나시르는 이투루프에 위치한 참모부 및 소쿠릴암맥 군도에 있는 부대와 함께 남쿠릴 군관구에 포함되었다[69의 84~85쪽].

공식적인 지리, 수로도, 백과사전 그리고 안내서 등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그리고 전쟁 당시의 쿠릴열도의 지리적 경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었는가를 증명해준다.

1937년 일본 해군성 산하 수로측량국에서 발행한 ‘사할린 남부와 치시마열도의 수로도’에 따르면, 쿠릴열도의 구성에는 시레토코[知床] 꽃과 홋카이도에 있는 노사푸[納沙布] 꽃을 연결하는 선의 중간에 위치한 지점에서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이어지면서 캄차카 반도의 남단까지 향하는 쿠나시르, 이투루프, 우루프, 파라마시르 및 노사푸 꽃에서 북동

쪽으로 펼쳐져 있는 수이쇼군도와 시코탄 등이 포함된다[245쪽 첨부 34.1 참조]. 이 수로도에 묘사된 쿠릴(치시마)열도의 남부에는 쿠나시르, 이투루프 등 2개의 큰 섬 그리고 시코탄과 수이쇼군도(하보마이 또는 플로스키예) 등이 포함된다.

권위 있는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제14판 제13권)의 1939년도 미국판본에 따르면, 1945년 2월 11일 전후 쿠릴열도의 지위에 관한 얄타 협약에 조인했던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에조(홋카이도)의 동단에 위치한 네무로[根室] 만에서부터 캄차카의 남단과 쿠릴열도를 나누는 치시마(쿠릴)해협까지 북동방향으로 북위 44도45분과 50도56분 사이 그리고 동경 145도25분과 156도32분 사이에 늘어선 도서가 쿠릴열도로 이해되었다. 또한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이투루프 등은 32개 쿠릴열도의 도서에 포함되었다[246쪽 첨부 34.2, 247쪽의 첨부 34.3 참조].

1941년 일본 국립철도국에서 발간한 공식 일본 안내서에 따르면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기다란 맥으로(32개의 도서), 네무로(홋카이도)에서부터 캄차카의 남단과 위 도서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치시마해협까지 약 710마일에 걸쳐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쿠나시르, 시코탄, 이투루프, 우루프, 슝슈, 알라이드 그리고 파라무시르 등 7개의 주요 도서가 쿠릴암맥에 포함되어 있었다[248쪽 첨부34.4]. 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채택된 공식적·법률적 그리고 지리적인 ‘쿠릴(치시마)열도’의 개념에는 대쿠릴암초맥과 소쿠릴암맥이 모두 포함되고,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수이쇼(하보마이 또는 플로스키예)군도 등이 거기에 속했다.

수이쇼에 대신한 ‘하보마이군도’라는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야 일본에 도입되었다. 하보마이는 홋카이도에 있는 마을로서, 홋카이도 현 하보마이 군의 행정 중심지다. 일본 당국은 이런 식의 명칭 변경으로 일본과 세계 공동체에서 소쿠릴암맥이 쿠릴열도에 속하지 않으며, 홋카이도 현의 고유한 일부라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소련에 사할린 남부를 반환하고, 쿠릴열도를 양도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었던 1945년 알타회담에 앞서, 미국 국무부 산하 영토조사과가 자국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준비한 1944년 12월 28일자 비망록에 쿠릴열도의 경계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비망록에는 홋카이도에서 북동방향으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까지의 쿠릴열도에 수이쇼(하보마이, 플로스키예)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880년 무렵 일본이 남쿠릴열도를 점령했다는 사실도 미국 행정기관의 내부 이용을 위해 확인되어 있다[247쪽 첨부34.5 참조].

다음의 일본 국내법 문서들, 즉 천황의 1945년 11월 22일자 칙서 No. 651, 1951년 7월 5일자 ‘쿠릴(치시마)열도 주민의 이주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공보, 1952년 4월 19일자 사법성 산하 민사국 국장의 통보 No. 192, 1956년 5월 26일자 본국송환에 따른 자금교부법의 실행에 관한 대장상의 포고 No. 112, 1961년 10월 30일자 어업문제에 관한 법률 No. 162, 1946년 5월 31일자 일본 국토지리원의 공식 일본 지도와 문부성이 확인한 1951~1955년도 교육용 일본 지도 등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언급된 영토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대[68의 566쪽]. 귀국자 지원청 설립에 관한 히로히토 천황의 1945년 11월 22일자 칙서에도 본질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던 사할린과 쿠릴(치시마)열도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211쪽 첨부23 참조]. 일본 사법성 민사국의 1952년 4월 19일자 통보 No.

A-438에는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 지역은 “강화조약의 발효 이후, 일본국 영토 경계 밖의 지역으로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보마이군도를 제외한 쿠릴열도 남부지역의 주민에 대한 이런 규정은 1961년 11월 14일까지 적용되었다[71의 89쪽]. 1946년 일본 정부의 행정지역과 일본 어업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일본 외무성 제작, 도쿄, 1949), 일본 국토지리원의 1946년 5월 31일판 지역 전도, 문부성의 승인을 받아 제작된 1952년판 중학교용 일본 ‘신사회과부도’ 내 홋카이도 지역 전도 등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하보마이’라는 통칭의 군도를 포기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다[71의 233~238쪽].

1951년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비준할 당시의 일본 정부의 공식 인사들은 의회청문회에서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에 대한 일본의 주권과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성명했다. 요컨대, 정부대표였던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는 1951년 10월 6일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비준할 당시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본은 강화조약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249쪽 첨부 35.1]. 1951년 10월 17일 일본 국회 중의원 내 강화조약과 안전조약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인 니시무라(Э. Нисимура)가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에 대한 일본의 권리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질문했다. 이에 요시다 총리는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포함된 규정에 의거하여 쿠릴(치시마)열도, 사할린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라고 답했다[250쪽 첨부 35.2]. 1951년 10월 19일 정부대표인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니시무라는

일본 국회 중의원의 강화조약과 안전조약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 다카쿠라(高倉)의 질문에 대해 “치시마군도(쿠릴열도)의 영토 경계는 조약에 언급되어 있는 바, 북치시마(쿠릴열도)와 남치시마(쿠릴열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쿠릴열도라는 개념은 그것이 의미하는 그대로 북쿠릴열도와 남쿠릴열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라고 답했다[250쪽 첨부35.3].

따라서 일본 의회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비준할 당시, 일본 최고입법기관은 일본이 전체 쿠릴암맥을 포기했음을 확증했다.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전쟁 직후 일본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포기했으며, 이런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고 전후 미·영·중·소의 4국 사이에, 그리고 이 4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협약들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협약들은 현대국제법 규범,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국제연합헌장에 부합된다.

일본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고 무조건항복문서에 조인한 만큼 자기 스스로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포기한 것을 인정했으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일련의 일본 국내 입법 문서들 속에서 법률적 성격의 부대조건 없이 사실상 재확인되었다. 즉 일본은 영토문제에서 법률상 연합국의 결정에 동의했다. 또한 일본은 전쟁 직후 당시 상황에 동의하여 사실상 위 영토를 포기했다. 따라서 채택되어 실제로 이행된 결정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일본은 알타와 포츠담의 이미 알려진 결정에 따라 1946년부터 소련의 주권하에 있던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 전체를 1951년에 법률적, 실질적으로 포기했다.

이것은 사할린 남부와 쿠릴이 소련의 일부로서 소련과 러시아에 양도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런 사실은 관련 국제법적 문서들, 즉 극동문제에 관한 알타와 포츠담회담의 결정,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관련 규정,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문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조항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확인되었다.

소련(러시아)은 칼리닌그라드(동 프러시아) 주를 보유한 것과 동일한 국제법에 기초하여 쿠릴열도와 사할린의 남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소련에 양도되었다. 더구나 사할린 남부는 1904~1905년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할양되었다가 러시아에 반환된 영토이고, 동프러시아와 쿠릴열도는 침략국 독일과 일본의 침략에 대한 처벌 조치로서 소련 서쪽과 동쪽 국경의 강화와 안보를 위해 몰수되었다.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소련 주권에 양도하는 것이 반드시 강화조약에 규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강화조약 없이 양도된 예로는 1945년의 크림(알타)회담과 베를린(포츠담)회담의 결정에 따라 동프러시아의 인접 지역과 함께 소련 영토가 된 쾨니히베르크(Königsberg)가 있으며, 동프러시아 지역의 일부와 단치히(Danzig), 실레시아(Schlesien) 및 오데르(Одер) 강과 서부 네이스(Нейс) 강 우안의 여타 지역은 폴란드의 영토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독일에 속했던 수데텐란드(Sudetenland)는 체코슬로바키아에 편입되었다.

1956년 소·일 양국 간에는 전시상태의 종료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으며(1945년의 종전 이후 재 개전이 없었다), 1925년에 수립된 정상적 외교관계가 복구되었다.

소련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처리 과정에서 최종적인 법률

적 방점을 찍지 않았다. 즉 극동문제에 관한 알타회담과 포츠담회담의 결정 및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관련 조항들이 고려된 소일강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과의 주요 협상국 중 하나로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공동작성자이자 실질적인 주 작성자였던 미국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러나 극동문제에 대한 알타와 포츠담의 결정이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모두 각각의 법률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3국(소련, 미국, 영국)'의 알타와 포츠담협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모두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몽골의 전후 지위, 전후 한국의 독립 그리고 태평양상의 수많은 도서들과 군도들의 전후 영토적 귀속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 후자의 섬들은 1947년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국을 유일한 통치 권력으로 하는 유엔 신탁통치 체제, 즉 사실상 미국에 양도되었다. 미국은 이런 국제법 문서에 따라, 그리고 이 섬들을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협정을 승인한 1947년 4월 2일자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영해를 포함하는 상기의 도서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 이후,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보복주의자와 실지회복주의자들이 미국의 지원 하에 일방적이고 인위적으로 영토문제를 조작하여, '일본의 북방영토'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쿠릴열도'의 지리적 개념이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인용하여, 일본의 쿠릴열도 포기가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하보마이군도의 포기를 예상한 게 아니라는 성명도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평화적 보복이라는 아이디어를 지지하면서

영토문제에 대한 과거 자신의 입장에서 후퇴했다. 일본의 새로운 정책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추종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소련 대표단은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른 강화조약의 체결을 거부했다. 전후시기 소·일관계가 냉각되었으며, 외교관계를 포함하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관계도 사라졌는데, 이런 현상은 소련과 일본 모두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도 있었다.

1955~1956년 소련과 일본 간의 회담이 이어졌다. 이 회담은 1955년 6월 3일 런던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극동지역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항복조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쿠릴 열도 전체와 사할린 남부에 대한 영토 청구권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요구를 쿠릴 남부로 제한했다. 일본은 회담과정에서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c’항의 쿠나시르와 이투루프가 제외된 ‘쿠릴열도’의 지리적 개념을 강경히 고수했다. 회담기간 내내 미국은 직접적인 위협도 불사하며, 소·일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방해했다. 1956년 8월 19일 국무장관 딜레스는 “만약 일본이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 미국도 ‘류큐’열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보유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영구히 주둔할 수 있으며,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권력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본 외무장관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에게 통보했다[1의 158, 227쪽에서 인용]. 미국은 소련에 대한 일본 보복주의자들의 주장을 복돋우면서, 1956년 9월 7일 일본 정부에 발송한 국무부의 통첩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이투루프와 쿠나시르(홋카이도의 일부인 하보마이군도, 시코

탄)가 항상 일본의 일부였으며,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게 공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48의 226쪽에서 인용]는 성명을 발표하여 알타회담의 규정을 위반했다.

일본과 소련(러시아) 간의 ‘영토문제’는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부산물이라는 주장이 맞다. 더구나 미국은 일본이 소련을 상대로 주장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도 제공했다. 후일 일본에서는 일단의 보복주의자들과 일본 정부에 의해 ‘북방영토’의 반환에 초점이 맞추어진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본 총리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가 수석이었던 일본 대표단과의 회담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강화조약의 체결이 아닌, 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일본 간의 공동선언’에 조인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선언은 1956년 12월 12일부터 적용되었다.

일본 측이 소련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었던 영토 청구권을 제기함에 따라, 회담의 결과 강화조약의 체결이 아닌, 소·일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선언에 조인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강화조약의 체결을 위한 회담은 소련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복원 이후로 연기되었다[252쪽 첨부37.1, 253쪽 첨부37.2]. 1956년 9월 29일 일본 정부의 전권대표 마쓰모토 슌이치[松本俊一]와 소련 외무부 제1차관 그로미코(A. A. Громыко)가 교환한 공한에는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양국 간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복원 이후, 영토문제가 포함된 강화조약의 체결을 위해 회담을 지속하자”는데 소련 측이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공한 교환은 1956년의 공동선언에 조인할 당시 소·일 양국 대표단의 공식협상 이전의 사전작업 자료

를 교환한 것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교환은 궁극적 합의에 도달한 이후, 즉 1956년의 소·일 선언 조인 이후로는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선언서의 조인 이전에 일본 대표단원인 농림대신 고노 이치로[河野一郎]와 소련 대표단의 실질적 수장이었던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원 흐루시초프(H. C. Хрущёв) 사이에 공식회담이 이루어졌다[255쪽 첨부38.1 참조, 262쪽 첨부38.2 참조].

소·일 회담 과정을 분석하면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은 일본 측이 영토문제에서 자신의 이익을 완강하게 주장했다는 점이다. 영토문제는 일본의 의무였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조, 즉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이 불안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던 고노는 “일본은 영토문제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상관없이, 즉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의 개입 없이 해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영토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특별 단서를 달았다 [259쪽 첨부]. 일본 대표는 강화조약의 체결 없이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인 대상 문서를 일본 측에 유리하게끔 편집하고[259쪽 첨부], 향후 다음 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모종의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자 하보마이, 시코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영토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재삼재사 언급했다[256쪽, 259쪽 첨부].

반면, 소련 대표였던 흐루시초프는 “소련 정부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조건하에서 …… 우리 소유인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256쪽, 263쪽 첨부],

이 영토의 양도는 소·일의 우호관계 강화에 입각하여[256쪽 첨부]” 추 후 실질적으로 양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련이 모르는 모종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257쪽 첨부]. 흐루 시초프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완수되었다는 문서의 대 안으로서, 향후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다시 영토문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의 양도를 영토문제의 최종적 해결로 규정 하자고 제안했다. 단 “소련은 오키나와와 다른 지역이 해방되도록 일본에 도움을 주고 싶다[264쪽 첨부]”는 이유에서 “이 두 도서의 실질적 인 양도는 강화조약 체결 그리고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일본의 고유영 토임에도 미국에 의해 점령된 다른 지역이 일본에 양도된 다음에 이루어진다[258쪽 첨부]”는 것을 선언문의 원문에 삽입하자는 단서를 달 았다.

흐루시초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제외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에 관해 “경제적으로 이 지역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 지역 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손실을 안겨주고 있으며, 국고에 무거운 짐이 되 고 있습니다[261쪽 첨부]”.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홋카이도와 매우 인 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런 상황이 향후 양국 간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256쪽 첨부]”라는 전조적 발언을 했다.

소련의 지도자 흐루시초프는 자국 영토를 양보하는 방법으로 일본 과의 우정을 확보하고, 일본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서 하토야마 일본 총리를 지지하려 했으며, 미국에 점령되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제3 조)에 따라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는 일본 영토가 일본에 반환되도록 마음을 썼다. 그러나 그는 양국 관계의 정상화 문제로 일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안과 대외정책에서의 도전을 허용하고 말았다.

강화조약이 체결될 경우 소련의 소쿠릴암맥(시코탄과 하보마이군도)을 일본에 양도하겠다는 흐루시초프의 제안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중 일본이 상기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그리고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던 제2조(c'항), 소련에 쿠릴열도를 양도하는 극동문제에 관한 미·영·소 3국의 1945년 2월 11일자 크림(알타)협약 제3조,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인정하는 1945년 8월 14일자 일본 천황의 칙서 제1조 및 1945년 9월 2일자 항복 선언 제1조에 따라 일본이 수용한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 중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규슈와 시코쿠 그리고 향후 연합국이 지시하는 일부 소규모의 도서들로 제한한 제8조 등이 문체시되었다. 이 문서들에 의해 일본인들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이해의 틀 속에서는 일본이 쿠릴열도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30조(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제1항은[47의 87쪽] 동일한 주제로 계승적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 제103조에 따른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연합헌장 제103조에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국제연합헌장 제107조는 그 어떤 의무나 조약에 우선하는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252쪽 첨부]”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41조(일부 당사국 사이에서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는 “1. 다자조약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그 당사국 간에서만 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a) 그런 변경의 가능성이 그 조약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또는 b) 문제의 변경이 그 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i)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며,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ii) 전체로서의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효과적 수행과 일부 변경이 양립하지 않는 규정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47의 90쪽].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45년 7월 26일자 포츠담선언의 참가국은 미국, 영국, 중국이며, 1945년 8월 8일 소련이 거기에 합류했다. 일본은 일본, 미국, 중국, 영국, 소련,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가 참가한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제1조에 의거하여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였다. 이 선언의 제8조에 따라 일본의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일부 소규모 도서들로 제한되었으며, (소련,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 캐나다 등)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지시를 내리는 기구로서 극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을 이행하던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제국 정부에 발송한 1946년 1월 29일자 각서 No. 677의 3조에 열거된 일부 소규모 도서들 중에서도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일본에게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보한다는 것에 소련이 동의하고, 그 양보를 받아들일겠다는 일본의 동의는 이런 영토 변경의 가능성이 위에 열거된 다자간 국제조약이나 문서에 예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41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선언의 규정에 저

축되는 것이며, 선언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포츠담선언 내용(일본이 주권을 혼수,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동맹국의 규정에 따라 여타 군소 도서들로 제한) 및 선언 목적의 효과적 실행과 양립할 수 없다. 또한 일본, 미국, 영국 및 일련의 다른 국가들이 참가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5조와 제26조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강화조약도 이런 영토변경을 금하고 있다.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조약에 의한 쿠릴열도의 법적 지위 변경은 전후 일본 영토의 구성과 관련된 국제조약이나 국제협약에 조인한 다른 참가국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1956년의 선언은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269쪽 첨부39 참조, 81의 1쪽]. 소련과 일본의 이 선언으로 (1945년의 종전 이후 더 이상 재발하지 않은) 전시상태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으며, 평화와 선린우호관계가 복구되었다(제1조). 외교와 영사관계가 복구되었으며(제2조), 양측은 상호관계에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은 물론 공평무사의 원칙을 준수하고(제3조), 소련은 일본의 국제연합 회원 가입 요청을 지지할 의무가 있었다(제4조). 소련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일본 시민이 석방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제5조), 소련은 일본에 대한 모든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제6조).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 위에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제7조). 일본에 유리한 어업협정 및 해양조난구조협력 협정이 채택되었다(제8조).

우리가 연구 중인 국제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언의 제6조와 제9조가 흥미롭다.

제6조에 의거하여 “소련과 일본은 자신의 국가, 국가 조직 그리고

시민들이 상대 국가, 국가 조직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1945년 8월 9일부터의 전쟁에 따른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본 조항의 내용을 통해 명백해진 것은, 일본국이 소련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했으며, 그중에는 소련이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지역을 획득한 것도 포함된다. 이 선언은 일본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았으며, 제10조에 의거하여 도쿄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당일, 즉 1956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다.

1956년의 선언을 소련과 일본 간의 예비적(사전적) 강화조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실 일본 대표단원 고노는 흐루시초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여, “우리는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상 강화조약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일련의 서류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강화조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259쪽 첨부].

제9조에 따르면, “소련과 일본은 양국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복구된 후,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소련은 일본에 호응하여 그리고 일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한다. 그러나 이 도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일본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일본에 실질적으로 양도된다”는 데 동의했다.

1956년 선언서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은 소연방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 즉 당시와 그 이후에 적용되던 소련 헌법과 러시아공화국 헌법 등 두 헌법적 기준의 관점에서 심각한 법률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소련 헌법 제18조는 “연방 공화국들의 영토는 그 주

체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308쪽 첨부55 참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16조에서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309쪽 첨부 56 참조]. 소련 지도자들이 일본에 향후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방 공화국 들 중 하나(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를 변경하면서 해당 공화국(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사전 동의도 확보 하지 않은 채 일본에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위헌이다. 따라서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게는 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되고 소련 각료회의에서 확인되어 그 회의에서 비준에 상정된 소·일 공동선 언을 1956년 12월 8일자 포고로 비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272쪽 첨부39.1]. 사할린 주 의회의 질문에 의거하여 수령한, 러시아연방국립 문서보관소 부소장 코즐로바(Г. А. Козлова)의 서명이 기재된 러시아연 방국립문서보관소(ГАРФ)의 2001년 9월 4일자 공식 조회문서 No. 469-T에 따르면 “1956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의 자료에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 일본에 시 코탄과 하보마이를 양도하기로 공식적인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이 발견 되지 않았다”[62의 22쪽]. 따라서 이 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과 관련 있는 1956년 선언의 비준 자체가 불법이며, 법률적으로도 무의미하다. 문제는 소련 헌법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라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내법 규범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1969년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만일 각 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내법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으며 저 축되지도 않을 경우, 국가는 조약의무에 대한 동의가 조약체결권과

관련된 국내법들과 상충된다는 상황논리를 펼칠 권리는 없다.”[47의 92쪽].

1956년 선언 제9조의 내용을 보면, 소·일 양측이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을 소련에 속하는 영토로 보고 있으며, 소련은 “일본의 희망에 응하여 그리고 일본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의의 표시로 일본에 (반환이 아니라) 양도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즉 사전에 제시된 일정한 조건이 준수된 다음에 실제로 증여하겠다는 것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유권에 따라 실소유자만이 증여(양도)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동의한 일본 총리 및 다른 일본 대표자들이 1956년 선언에 서명했으며, 이후 일본 의회에서 선언을 비준받는 방식으로 법률적 확인과 인정을 받았다. 요컨대, 이는 일본에 속한 도서의 반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 속한 도서의 양도(증여)에 관한 것이다.

법적으로 증여 행위는 재산이 증여나 양도된 순간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도하는 것은 강화조약의 사전 체결이라는 법률적 전제조건이 있었다. 즉 1956년 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은 법적으로 조건부 의무에 속한다(‘만약 …… 경우, 그러면 ……’). 그러나 당시, 즉 1957~1959년 일본의 조인 연기로 인해 강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1956년 소일선언의 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도서의 증여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화조약의 체결이 일본 측에 의해 결렬된 만큼, 일본에 쿠릴열도를 양도해야 할 조건이 사라졌다.

일본 총리 하토야마는 미국의 압력하에 사퇴했다. 일본 지도부(집권당인 자민당과 정부)에 친미세력이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1960년 1월 19일 일본은 소련에 적대적이자 중국 및 아시아와 극동의 여타 평화에

호적 국가들을 상대로 미일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18의 224~227쪽].

이 조약은 미국의 군사기지를 일본 영토에서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재차 확인해준 것에 더해, 미국의 육·해·공군에게 부대시설, 설비, 구역 등을 제공했으며, 핵무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일본에 반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일본 정부는 미군이 일본 영토에서 공격적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데 동의했으며, 일본 내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공동방어 의무를 졌다. 조약의 적용 범위는 소련과 중국 영토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본 조약으로 미국의 실질적인 대일 점령이 영구화되었으며, 일본 영토는 아시아에서 공격적 성향을 지닌 해외 군사 열강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 주권의 제한이었으며, 일본의 의지와는 별개로 일본이 군사 행동에 말려들게 할 수 있었다. 신군사조약에 따라 일본은 자신의 군사적 잠재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일본에 의한 미국과의 신군사조약 체결은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선언의 제1조에 배치되는 행위였다. 이와 같이 극동에서 그리고 소일관계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1960년 1~4월 소련과 일본 양국 정부 간에는 장황한 통첩식 성명서 성격의 각서 교환이 이어졌다. 소련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1월 27일, 2월 24일 그리고 4월 22일에 총 3개의 각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소련 정부에게 2월 5일과 3월 1일에 총 2개 각서를 수교했다.

여기서 반드시 원전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련 정부는 1960년 1월 27일자 각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즉 “이 조약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고, 항복 이후 일본에 주둔 중인

해외 병력이 계속해서 그곳에 주둔할 것이라는 점에서, 소련 정부가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드는 새로운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다음 위 도서를 일본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소련 정부는 소·일 회담 진행 당시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평화 애호적 의도와 일본의 민족적 이익을 고려하여, 일본의 요구에 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련과 중국에 대응한 새로운 군사조약에 조인한 것을 볼 때, 소련 정부는 위 도서를 일본에 양도함으로써 외국군이 이용할 수 있는 일본 영토를 확장시켜 줄 수 없다. 소련 정부는 이런 사안들을 고려하여, **일본 영토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소련과 일본 간에 강화조약을 조인한다는 조건하에서만,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선언 규정대로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할 것임을 불가피하게 성명한다”[273쪽 첨부40.1 참조, 2의 2쪽 참조].

이와 같이 소련은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간 협약(1956년의 선언)을 파기하지 않았다. 단지 소련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 조인 이외에,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을 양도하는 부대조건을 공식적으로 성명했을 뿐이었다. 양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확히 하는 공식 성명은 중요한 정부 간 혹은 국가 간 문서의 조인 시점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외교 관행이다.

일본 정부는 1960년 2월 5일 소련 정부에게 발송한 통첩(각서)[275쪽의 첨부40.2 참조, 59의 46~47쪽]에서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뿐만이 아니라, 원래 일본의 영토였던 다른 지역’이 반드시 일본에 반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성명하여 영토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이 성명서에서 보복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변경이라는 위험한 성향을 드러

내 보였다.

국제법적 입장에서 볼 때, 일본 정부의 1960년 2월 5일자 통첩은 일본이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서 일본을 위한 영토변경 가능성의 한계(일본식 명칭으로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렇게 사실상 공식적으로 1956년 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의 폐기를 통보했다. 일본은 러시아 영토인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대한 영토적 권리주장을 현재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 측이 1956년 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1960년에도 그리고 현재도 불법이다. 그 부분은 1960년에 법률적 효력을 상실했다.

소련 정부는 1960년 2월 24일자 답변 각서[276쪽 첨부40.3 참조, 또한 9의 2쪽 참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가 이미 오래 전에 해당 국제조약들에 의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청구권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도 소련과 일본 간의 강화 조약 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일본 의회가 비준한 ‘안보’에 관한 미일신군사조약이 1960년 6월에 효력을 발휘하면서 극동에서의 국제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했다. 일본 정부에 발송한 1960년 2월 24일자 소련 각서에 “일본이 미국과 신군사조약을 체결한 것은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선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선언의 제1조를 언급한 것이었다. 상황이 바뀌었다. 따라서 소련 정부는 1960년 1월 17일자 각서를 통해 이런 상황 하에서는 조인된 1956년 선언문에서 소쿠릴암맥에 대한 해당 규정(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새로이 전

개된 국제상황을 고려한 소련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가 소쿠릴암맥(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하는 조건임을 정확히 했다.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전달한 1960년 2월 24일자와 4월 22일자 각서에서는 일본에 소쿠릴암맥을 양도하는 문제의 긍정적 해결은 일본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 다시 확인되었다.

여기서 현대 국제조약법의 규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5부에서는 국제조약의 실효, 종료 또는 효력 정지에 관한 법률적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60조(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에 따르면 [47의 95쪽], 조약은 전부 또는 일부 종료 또는 시행정지될 수 있다. 즉

“1. 양자조약의 일방 당사국에 의한 실질적 위반은 그 조약의 종료 또는 그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하는 권리를 타방 당사국에 부여한다.

3. 본 조의 목적상, 조약의 실질적 위반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b)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

4. 상기의 제 규정은 위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약상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62조(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따르면[47의 96쪽], 조약체결 이후 초기 조건을 근본적 형태로 변경시키거나 재검토하게 만드는 상황의 발생은 조약의 종료 또는 조약으로부터의 탈퇴나 조약 시행정지의 사유가 된다.

“1. 조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한 사정에 관하여 발생하였으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예견되지 아니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원용될 수 없다.

a)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그 조약에 대한 당사국의 지속적 동의를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b) 그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를 그 변경의 효과가 급격하게 변환시키는 경우

3. 상기의 제 조항에 따라 당사국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또는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당사국은 그 조약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변경을 또한 원용할 수 있다”.

제44조(조약 규정의 가분성)에 따르면[47의 91쪽], 조약 당사국은 조약의 타 규정에 폐해를 끼침이 없이 각 규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조약의 부적법화·종료·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는, 아래의 제 조항 또는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3. 그 사유가 특정의 조항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조항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a) 당해 조항이 그 적용에 관련하여 그 조약의 잔여 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며,

b) 당해 조항의 수락이 전체로서의 조약에 대한 1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지속적 동의를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던 것이 그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확정되며, 또한

c) 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본은 1956년의 선언문에 동의할 당시 근거했던 원래의 조건을 일

방적으로 위반했다. 즉 1960년에 미·일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소련을 목표로 하는 미일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언의 제1조를 위반했다. 1960년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각서를 수교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은 소련에 추가적인 영토적 권리주장을 제기했다(“우리나라[일본]는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뿐만이 아니라, 원래 일본의 영토였던 다른 지역도 일본에 반드시 반환되도록 할 것이다”. - 소련 정부에게 수교한 일본 정부의 각서 중에서). 이후 일본은 소련(이후 러시아)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정책에 따라 적대행위를 취한바, 이는 1956년 소일공동선언의 정신 및 문구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는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60조와 제62조가 적용된다. 이 조항에 의해 소련은 상기협약의 제44조에 따라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시행정지(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지녔다. 왜냐하면 제9조는 그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선언의 다른 부분과 별개이고, 제9조 두 번째 부분을 채택했기 때문에 전체 선언의 의무에 일본이 동의한 것도 아니며, 선언의 나머지 부분만을 이행하는 게 불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1969년의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196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조약법의 성문화와 진보적 발전’을 실현했다[47의 78쪽].

일본 정부는 1960년 3월 1일자 통첩을 통해 소련에 귀속된 영토를 상대로 근거 없는 청구권을 다시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선언에 따라 영토문제를 향후 논의의 과제로 보는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자의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1956년의 소일공동선언에서는 쿠나시르와 이투루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의 영토적 귀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법

률적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에게 수교된 소련의 1960년 4월 22일자 답신 각서[279쪽 첨부40.4 참조, 60의 4쪽 참조]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소련 정부는 이런 주장을 무시하는 바다. 그런 식의 협의가 실제로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과 일본 간의 영토문제는 준수되어야 하는 국제조약을 통해 해결되고,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국제조약은 준수되어야만 한다”.

1950년대 중반 소·일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소련 지도부(그리고 개인적으로 흐루시초프)가 근시안적 모습을 보여준바, 공식적인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에 소련 영토의 일부를 일본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행위는 외교적 실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56년 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에 규정된 이 규정은 이후 52년 동안 일본의 보복주의자들이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소일관계와 러일관계의 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본은 이 약속을 소련이 위 영토의 귀속에 대해 국제법적 견지에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심지어는 소련이 쇠약해진 증거로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고르바초프의 1990년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와 그 이후에 보다 명백하게 표출되었던 양국 관계에서의 압력 증가로 이어졌다.

1956년의 선언에 조인한 이후, 일본은 소련과의 양국 관계에서 전후 소련(후일 러시아)과의 국경을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를 실천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업문제에 관한 일련의 공식적인 양국 문서에서 확인되는데, 이 문서에서 일본은 남쿠릴 연해지역에 대한 소련의 주권, 즉 소·일 국경 그리고 러·일 국경을 사실상 인정했다. 요컨대, 소련 인민경제소비에트 산하 국립어업위원회와 전일본어업인연합

사이에 체결된 일본 어부들의 미역채취에 관한 1973년 6월 10일자 협약은 소련이 일본 어부들에게 시그날니(Сигнальный, 카이가라) 섬 구역에서 미역채취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일본 어부들은 그 구역에서 구속력을 지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법률과 규정 그리고 규칙을 준수해야만 했다[281쪽 첨부41 참조].

소련은 ‘소련 해안과 접한 연해 구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과 어업 조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의 1976년 10월 10일자 명령’[283쪽 첨부42]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제연합해양법 제3차 회의의 권고에 근거하여 ‘소련 연안과 접하며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역, 즉 소련 영해’에 특별어업구역을 설정했으며, 본 포고의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존과 어업조정에 따른 임시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소련 해안과 접한 북빙양과 태평양 연해 구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과 어업조정에 따른 임시조치의 도입에 관한’ 소련 각료회의의 1977년 2월 24일자 결의에 의해 ‘1977년 3월 1일부터 이 포고에 규정된 대책들이 베링(Берингов), 오호츠크(Охотск), 동해, 추코트 해(Чукотское Море), 태평양과 북빙양(Северный Ледовитый океан) 그리고 소련 소속 도서의 주변 해역을 포함한 기선(基線)으로부터 200해리, 즉 소련의 모든 영해’에 도입되었다. 또한 “소련의 연안과 접경국 연안 사이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는 해역에서는 1976년 12월 10일자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포고문에 따른 임시 대책의 적용 지역을 제한하는 선으로서 …… 쿠릴열도의 태평양 남부해역에서는 이 도서와 일본 영토 사이의 동등한 거리에서 형성된 선, 소비에트(Совет)해협과 쿠나시르해협에서는 소련의 국경선, 오호츠크 해와 동해에서는 중간선

또는 소련 연안과 인접국 연안에서부터 동등한 거리에서 형성된 선 등이 이용될 것”임을 확인했다[285쪽 첨부43].

강조해야 할 사안은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76년 10월 10일자 명령과 소련 각료회의의 1977년 2월 24일자 결의에 따라 소련에 속하는 특별어업구역의 경계선은 남쿠릴열도의 연안과 홋카이도의 연안 사이에서 양쪽으로 동일한 거리를 두고 지난다는 사실인데(두 연안 사이의 거리는 200해리가 안 된다), 이 경계선은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발표된 1946년 6월 26일자 맥아더의 지령 No. 1033과 No. 1033에 따른 1948년 12월 23일자 개정문에 의해 설정된 ‘맥아더라인’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포츠담선언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그리고 시코쿠로 일본의 영토를 제한했으며, 이는 후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조에서도 확인되었다.

태평양 북서쪽에 위치한 소련 연안에서의 1977년도 어업과 관련하여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1977년 5월 27일자 협약은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76년 12월 10일자 포고문에 의해 규정된 것처럼 탐사, 개발 그리고 보존의 목적을 위해 생물자원에 대한 소련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했다[286쪽 첨부44 참조]. 더구나 일본 정부는 본 협약 및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76년 12월 10일자 포고문 제6조에 의거하여 규정된 태평양 북서부 해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과 조업 조정을 목적으로 소련에서 발포한 규칙과 규정을 일본 시민과 어선이 준수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283쪽 첨부42 참조]. 일본 어부들의 미역산업과 관련하여 소련 어업부와 홋카이도 어로인연합간에 체결된 1981년 8월 25일자 협약의 규정에 따르면 “(소련에 속하는) 지역에서 미역채취업에 종사하는 일본 어부들은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소련의 법률, 명령과 규칙 및 본 협약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288쪽 첨부45 참조]. 소련과 일본 양국 연안어업 분야에서의 상호관계에 관한 소·일 양국 정부의 1984년 12월 7일자 협약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체약 쌍방의 시민과 어선은 상대 구역에서의 어로 중에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상대방의 법률과 규칙에 의해 설정된 규정과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각 체약 측은 “자신의 구역에서 자신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정해진 정책 및 여타 규정이나 조건들을 상대방의 시민과 어선이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대책을 국제법에 따라 수립”할 수 있었다[289쪽 첨부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장

20세기 말~21세기 초 ‘쿠릴 문제’의 정치적 · 법적 측면

이른바 ‘영토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일본 국가 팽창주의의 성장과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변경하려는 일본의 주장 때문에 발생했다. 즉 일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이 ‘문제’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 이전의 모든 소련 국가지도자들은 ‘영토문제’를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소련 측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쿠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이해관계를 망각한 결함투성이 정책은 고르바초프 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사고’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서유럽, 특히 독일에 유리하게 변경한 고르바초프는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알타와 포츠담체제의 국제관계 및 그 국제관계와 관련된 전시 및 종전 직후 국제법적 문서들을 개정함으로써 극동에서의 전쟁 결과도 변경하려 했다.

1988년 셰바르드나제(Э. Шеварднадзе)가 소련 외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

다. 그러나 사실상 이 위원회는 소련에 대한 일본의 영토적 청구권을 논의하기 위한 집단이었다.

‘신사고’ 국제정치를 주창한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전에는 소·일 양국 관계에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1991년 4월 일본 방문 당시 고르바초프는 ‘쿠릴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그로써 소련과 러시아의 국익을 배신했다.

미국의 여류 연구자 번스타인(Л. Бернштейн)이 ‘고르바초프 통치 당시 대일정책 결정’[7과 71의 178~191쪽에서 인용]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의 전반적인 전략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정치적 목적은 쿠릴열도를 극동지역 소련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도서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178쪽).

1990년 말 “양측 최고대표자들 간의 ‘셋 대신 둘’이라는 공식의 협의가 실제 모습을 갖췄다. 이 회담의 상세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만큼, 일부 비밀자료에 기초해서만 그 협의의 전반적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소련의 주요 행위자는 전직 안드로포프(Андропов) 및 체르넨코(Черненко)의 보좌관이자, 소련공산당의 가장 오래된 당원이었던 아르카디 볼스키(Аркадий Вольский)였다. 그의 일본 측 상대는 자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였다”(182쪽). “1990년 12월 …… 양측은 경제적 지원과 투자의 형태로 약 260억 달러에 영토를 양도한다는 합의에 원칙적으로 도달했다”(184쪽).

번스타인이 확보한 ‘소련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준비와 시행 개요’라는 문서의 사본에는 정상회담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고르바초프에게 행해진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1990년 12월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국제분과 소속의 사플린(В. Саплин)이 작성한 뒤, 1991년

1월 19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국제문제 책임자였던 야나예프(Г. Янаев)의 심의를 거쳐 1991년 1월 21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과장의 제1보좌관) 브루텐츠(К. Брутенц) 그리고 야나예프에게 발송된 상기 문서에서는 “양측 대표들 간의 ‘섬 대신 돈’이라는 거래를 포괄하는 협상을 위한 이면통로의 존재”가 특별히 확인되었다(185쪽). 이 문서에서는 “소련 외무부가 작성한 두 개의 대안이 통합되어 있었다. 즉 1) 소련 최고회의에서 비준된 1956년의 소일공동선언 조건으로 회귀한다. 즉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한다(다른 두 개 도서의 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 2) 영토문제의 존재를 즉시 인정하지만, 그 이상은 더 나아가지 않는다”. 특히 “이 두 개의 대안 중에서 후자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국제과의 검토 대상으로 제출된 안과 매우 유사하다. 즉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 영토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줄 것.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을 양국 관계의 공동발전에 합치시킬 것” 등이었다(187쪽). 고르바초프의 경제 고문이었던 과학아카데미 회원 페트라코프(Н. Петраков)가 제출한 세 번째 안은 이 문서에서 가장 급진적인 것으로서, 고르바초프의 방문 중 ‘도서의 실질적 양도가 10년 후인 2000년에나 이행된다는 내용이나, 4개 도서의 공동 이용기간 말기에 양도되도록 실질적 양도 방법과 시간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의정서가 첨부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4개 도서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조건 없이 즉각 인정’하도록 권고했다(188~189쪽).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Институт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에서 제출한 네 번째 안은 ‘(1956년의 공동선언에 따라)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을 일본에 돌려줄 것’과 ‘강화조약 체

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혹은 그 조인 이후에 하보마이군도와 이투루프 문제의 논의에 동의할 것을 제안했다(189쪽). 소련과학아카데미 산하 동방학연구소(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Н СССР)의 다섯 번째 안은 “1956년의 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었던 보증을 반복할 것, 동시에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에 대한 소련의 권리는 논리적으로 알타회담에서 창안되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확인된 조건에 따른 것임. 따라서 일본이 이 도서의 양도를 주장할 경우, 강화조약의 범위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해결할 것”이었다(189~190쪽).

결과적으로, 예정된 협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공식이 작성되었다. 1) 영토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4개 도서의 주권에 대한 일본의 법적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3) 도서의 양도는 일본에 의한 물질적 보상과 광범위한 소·일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한 일본의 책임이 동반된 상태에서,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과 러시아 연방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4) 도서의 양도는 2000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5) 구체적 조건과 양도될 도서의 지위는 특별협약의 대상이다(190쪽). 이 문서에서는 1956년의 공식이 그대로 계승되었고, 4개 도서 전체의 반환을 지지하고 있었다.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소련의 군산복합체, 국방부, 국가보안위원회(KGB), 소련공산당 내의 강경노선 지지자와 옐친을 수장으로 하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새로운 지도부로부터 비판받던 고르바초프는 알타와 포츠담체제의 개정과 소련 영토의 일부를 일본에 양도하는 계획을 실현할 수 없었다.

고르바초프의 공식방문과 소·일 공동선언의 발표로 소련은 강화조약의 작성 및 체결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 소련과 일본 간의 ‘영토문제’

가 ‘영토 경계 확정’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그에 더해 영토 경계 확정의 범위가 상기 언급된 4개 도서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 도서의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은 다음 협의의 과제가 되었다.

1991년 4월 18일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의 자격으로 ‘소·일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의 제4조에서 “하보마이군도, 시코탄, 쿠나시르, 이투루프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가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영토 경계 확정이 포함된” 소·일 강화조약을 작성하여 체결하기로 예정되었다. 또한, “과거에 실행된 공동선언, 특히 정상회담은 일련의 개념적 규정을 확인시켜준다. 즉, 강화조약은 영토문제의 해결을 포함하는 최종적 전후 조정문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291쪽 첨부 47 참조]. 이로써 전후 소·일 관계의 모든 역사에서 모종의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역시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성명 중에서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소쿠릴암맥의 6개 도서 중 일단을 일본에 양도하기로 소련 정부가 약속한 조항을 1991년 4월 18일에 조인된 소일공동선언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991년 4월 18일자 성명에서는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상기 도서를 일본에 양도하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영토문제에 관한 회담 당시 소련 측 입장 설명에서 고르바초프는 1956년 선언의 규정이 조인 이후 거의 35년 동안 법률적 효력과 적법한 국제적 결과를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즉 “그것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기회도 놓쳤다. 역사는 달리 움직였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이 문서의 두 번째 부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법

를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이다[29의 6쪽]. 이것이 기자회견장에서 방 문과 협의 결과를 언급한 고르바초프의 주된 생각이었다. 그는 1991년 4월 26일 소련 최고회의 합동회의에서 일본 공식방문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1956년 소·일 선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 선언에서는 전시상태의 종결과 외교관계의 복구뿐만이 아니라,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일본에 2개 도서를 반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서 중에서 역사적 현실이 되어 국제법적 그리고 물리적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입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화살’과 같은 것이어서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복원시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이후의 현실은 달랐던 바, 바로 그 다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292쪽 첨부48 참조, 64의 1쪽 참조].

국제법적 기준에 따르면 선언은 국제조약과 동등하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언에는 일방적, 쌍방적 혹은 다방적 성명이 있다. 이 성명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원칙을 공표하거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13의 286~287쪽]. 따라서 선언은 국제연합에서의 비준이나 등록 대상이 아니다. 비록 1956년 소일공동선언이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서 예외적으로 비준되고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국제조약의 효력을 획득하지 못한 채 선언으로 남았다. 즉, 이 선언의 9조는 양측의 의도에 관한 성명일 뿐이었다(조건적 의무였다).

그럼에도, 1991년 4월 18일 고르바초프는 소일강화조약을 (과거 소련이 인정하지 않아서 일본의 일방적 행위, 즉 청구권처럼 존재했던) ‘영토문제’ 및 ‘영토 경계 획정’의 해결과 연관시킨 국가 간 문서에서 서명했다.

1991년 4월 18일 고르바초프가 조인한 소일공동성명에서 모종의 ‘영토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극동에서 일본과 관련된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개정이 시작되었으며, 국가적·외교적 압력과 협상을 통해 단 한 발의 총성이나 전쟁 없이 중요한 전략지정학적 승리를 달성하여 획득한다는 일본식의 ‘평화적 보복’ 정책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누군가는 자국의 민족적·국가적 이익을 고수하는 방법을 러시아 정치인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소련 전임 최고지도자들(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의 개선적인 해외 방문의 대가는 자국 대외정책체제의 붕괴, 세계무대에서 소련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의 훼손, 국가조직의 파괴 및 방위력 손상이었다.

이런 대외정책을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면 전 지구적 차원에 서의 전략지정학적 안정성의 전반적인 악화 및 그로 인한 국지적 국제 분쟁은 물론, 러시아에 중요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노선은 영토를 매각하여 자국 영토보전을 위반하는 행위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러시아 국민의 사활적 이익과 국가안보가 이런 식으로 외국 열강들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일방적이고도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은 양보를 통한 민족배반정책의 노선이며, 결국 전략적인 국제적 위치를 양도하는 정책, 러시아 국가이익에 대한 경시와 심지어 배신의 정책,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되고 형성된 것을 헐값에 매도하는 정책노선이다.

국제사회에서 민족배반정책을 실행하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전 인류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국제관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추종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독트린이었던 ‘정치적 신사고’는 지정학적 프로세스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극동과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국제관계체제 전반에 걸쳐 상대적 안정성을 파괴했다.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쿠릴 문제에서 고르바초프식 ‘정치적 신사고’의 실현은 러시아 국민에게 경제적·전략적으로 실로 값비싼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남 좋은 정책은 이런 과정의 시작이었다.

국제관계 분야에서 이 새로운 노선의 결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러시아 외교정책의 지위가 눈에 띄게 약해졌으며, 외교정책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본의 보복주의자들은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주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더구나 미국을 포함한 서구는 공동 블록으로서 이 분쟁에서 확실히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1980년 말~1990년 초 사이, 소련 최고회의에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의원들로 이루어진 ‘지역 간 의원단체’가 소련 정치생활에서 큰 의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1990년부터는 옐친을 수장으로 하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단체가 그들을 대신했다. 이 단체들은 일본에 관한 알타협정과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개정, ‘타협’과 쿠릴열도의 양도를 통한 일본과의 ‘영토논쟁’ 종결 등을 주장했다.

1990년 옐친은 방일 중에 향후 15~20년에 걸쳐 ‘2+ α ’의 공식에 따라 남쿠릴열도를 순차적으로 일본의 경제 및 행정관할로 이관하는 ‘영토문제 해결 5단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1990년 1월 17일 도쿄에서 공개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1단계(1990~1991)는 소일관계에서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련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제2단계는 1단계 이후의 3~5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쿠릴 지역에 일본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 활동 자유지역을 조성한다. 제3단계는 남쿠릴열도의 비

무장화를 포함해야 한다. 제4단계는 시간상 2000년대 초에 해당된다. 4단계에서는 영토문제의 해결 수단과 방법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포함하는 강화조약이 소련과 일본 간에 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국의 다음 세대를 고려한 마지막 제5단계는 ‘시대성의 논리와 선입견에 연관되지 않고’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가능한 해결 대안 중 옐친은 남쿠릴에 대한 소련과 일본의 공동보호와 자유로운 지위를 지닌 남쿠릴열도의 독립을 예언 차원에서 언급했다. 그는 도서의 일본 양도도 배제하지 않았다[43].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직위에 머무는 동안 옐친 본인과 러시아 외부의 실질적 행위는 일부 정정된 면이 있기는 하나, 위의 5단계 계획이 변함없이 이행되었음을 증명해준다.

소련의 해체 이후 1991년 8~12월에 걸쳐 러시아 외무부 장관 코지레프(A. Козырев)가 일본과 ‘영토문제’를 협의했다. ‘쿠릴 문제’에 대한 코지레프의 입장은 1956년 선언 9조로의 회귀, 일본 정부에게 전달한 소련 정부의 1960년도 통첩 포기 그리고 ‘2+ α ’의 공식에 따른 ‘영토문제’의 해결, 즉 소쿠릴암맥의 즉각적 양도 및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의 양도 조건에 관해 일본과의 차후 협의 등이었다. 러시아 대통령 옐친은 이와 관련하여 러일협약에 조인하기 위해 1992년 가을에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애국심에 충만한 러시아 공동체의 광범위한 계층, 러시아 상원의원들, 군부 요인들의 저항으로 방문이 1993년으로 연기되었다.

옐친은 ‘쿠릴 문제’에서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계승했다. 고르바초프는 일본의 영토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문제를 토론하는 데 동의한다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으며, 옐친은 1993년의 도쿄

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을 통해 그 결정을 확인하고 강조했다. 이 문서들을 분석하면 러시아연방이 일본에 심각하게 양보하려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1993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옐친은 러시아가 구소련의 권리승계자로서 법률과 정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구소련의 모든 예전 의무에 기초하여 영토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을 진지하게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성명한 후,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고르바초프보다 더 많은 양보를 했다. 옐친은 방일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은 강화조약에 조인한 다음, 남쿠릴의 일부인 소쿠릴섬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1956년의 소일선언까지 확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성명으로 흐루시초프부터 고르바초프까지 소쿠릴섬의 양도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1956년의 선언에 대한 이전 지도부(정부)의 모든 정책을 사실상 취소시켜버렸는데, 이 노선은 1960~1991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당시 옐친은 1956년의 소일선언이 1960년 소련 정부의 각서와 연관해서 논의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소련 정부는 1960년 1월 27일자 각서를 통해, 소련을 상대로 미일군사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 영토 내에 소련과의 전쟁을 예상한 외국(미국)의 군사기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쿠릴섬의 양도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성명하면서 1956년 10월 19일자 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하여 일본 영토 내에 위치한 모든 외국 군사기지의 철폐라는 정확한 단서를 제시했다. 외국(미국) 군사기지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며 현재까지도 일본 영토에 존재하고 있다.

영토문제는 1993년 10월 13일 옌친과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일본 총리가 조인한 포괄적 선언인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선언’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294쪽 첨부49 참조]. 이 선언 제2조에서 ‘역사적·법률적 사실’과 ‘합법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양측은 “소련과 일본 간의 모든 조약과 다른 국제협약은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계속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쿠릴열도의 일부 양도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그에 더해 도서의 명칭이 반대 방향, 즉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며 언급되었다. 그 외에도 본 선언에서는 위 도서가 단 한 번도 러시아 영토로 명명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종류의 문서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1991년 성명에서도, 1993년의 도쿄선언에서도, 그리고 1998년의 모스크바선언에서도 두 개의 도서, 즉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아니라,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를 포함하는 네 개의 도서에 대한 일본의 청구권이 인정되어 있다. 1956년 선언에서는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의 양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놀라울 게 없는 바, 2장 2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남쿠릴이라는 작은 구역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천연자원이 지닌 가치는 토지와 도서 영토 등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제외하고도 2.5조 US \$ 이상이다. 옌친 시기 러시아 지도부가 어느 나라의 국가적 이익을 옹호했는지 이 부분에서 명확해진다.

5단계 계획의 1단계, 즉 영토문제가 인정되었다.

옌친의 일본 방문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일본의 저명한 연구자 기무라(X. 김우라)는 옌친의 방문을 ‘양국 관계의 돌파’라고 성격 규정지

었다. 즉 그는 “(1991)고르바초프와 (1993)엘친의 도쿄 방문 의미를 개괄하면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고르바초프와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의 만남이 올바른 방향에서의 첫 조치며, 그 덕분에 소련 최고지도자는 일본과 소련 간의 상호관계에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이자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엘친과 호소가와의 만남은 러시아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영토문제의 해결 방법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발걸음이었다”고 기술했다[31의 10~12쪽].

여기서 동방민족 일반, 특히 일본인들의 인식이 지닌 멘탈리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에게서 양보와 개전을 통한 감사, 관대함, 아량과 화해에 대한 답변 등을 기대하면 안 된다. 동방의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연약함으로 평가되어 더 많은 요구와 결국은 적대감의 강화로 불가피하게 이어지게 된다.

1996년 코지레프의 후임으로 프리마코프(Е. Примаков)가 외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쿠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

러시아는 일본의 압박하에 1993년 도쿄선언을 이행하면서 남쿠릴열도에 대한 양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그곳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구역 내에는 일본 사업가들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이 도서에 대한 일본 측 권리주장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대외정책 행위는 위 구역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서서히 확대하다 차후에 전체 또는 일부를 일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측이 일본과의 ‘영토 논쟁’을 해결하려 했음을 증명해주었다.

1998년 2월 21일 러시아연방 부총리 넴초프(В. Немцов)는 해양생물

자원 산업분야 협력에 관한 일부 사안으로 일본 정부와 협약을 체결했다[295쪽 첨부50 참조]. 이 협약은 3년 기간으로 체결되었으며, 만기 후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였다. ‘일본 어선의 어로 종사’를 위한 특별해역이 이투루프, 쿠나시르, 소쿠릴암맥(시코탄과 하보마이, 즉 플로스키예) 구역에 지정되었는데, 이 지역의 내부 경계선은 태평양과 오호츠크 연안(암벽)의 최대 간조선으로부터 3해리의 거리를 따라 지난다. 따라서 이 구역은 러시아의 200해리 경제수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영토인 위 도서 구역에서 연안으로부터 12해리에서 3해리 넓이의 해역으로 형성된 러시아 영해에도 포함된다[69의 172~173쪽].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에 발송한 통첩 편으로 ‘해양생물자원 산업과 관련된 러시아 법률과 규칙을 통보’하면서, “이 법률과 규칙을 홋카이도협회 소속의 수산업자 및 관련 어부들에게 적절한 형태로 통보해달라”고 일본 대사관에 요청했으며[297쪽 첨부50.1 참조], 이에 대해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도 “본 통첩에 첨부된 법률과 규칙을 홋카이도협회 소속의 수산업자 및 관련 어부들에게 통지해줄 의향이 있다”고 통보했는데, 바로 이 점이 특징적이다[298쪽 첨부50.2 참조].

이는, 한편으로는 양측의 평등권을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자신의 영해와 남쿠릴 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러시아연방 헌법 제4조의 위반).

이런 결론은 협약안에서도 바로 도출된다. 즉 본 협약안의 제1조에서 “양측은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하보마이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어로 종사 및 본 협약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 그리고 재생산을 목적으로 협력한다”고 언급되어 있다[296쪽 첨부]. 이 경우 러시아는 자신의 영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외

국과 협력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국제적 현실처럼, 상응하는 대금을 받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게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다.

그에 더해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서는 일본 어부들이 러시아 영해가 아닌, 신고의 절차를 밟아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익명의 ‘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실제로 이 해역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1998년 2월 21일자 협약에는 일본 선박의 어로행위에 대한 러시아 어족보호기관이나 국경수비대 측의 통제에 관해서 단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본 선박이 러시아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달리 표현하면,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따른 공식적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1998년 2월 21일자 협약에 관한 ‘양해각서’에서는 러시아 명칭과 함께 곳의 명칭마저 일본식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69의 172~173쪽). 지명은 자국 영토의 주권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러시아에 속하는 영토가 국제조약에서 러시아 명칭과 함께 일본식 지명으로 표기되었다면, 러시아가 남쿠릴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법률적 공동관리 체제를 인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공식문서에서는 자국의 지명만 이용도록 규정한, ‘지리적 객체의 명칭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일본 어업회사는 일본이 권리를 주장하는 남쿠릴 해역의 러시아 영해에 통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은 자국 회사들에게 어로 관련 러시아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일본 어업에 유리하도록 1998년 협약에 따라 남쿠릴열도의 해역에서 존재하던 1977년의 협약 규정을 삭제했다. 더구나 일본 영해에서는 러시아 어업회사에게 동일한 권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협약은 상호주의에 따라 체결된 것도 아니다. 이 협약은 매년 자동 연장된다.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외무부와 러시아연방 주재 일본 대사관 사이에 수교된 무비자 방문에 관한 통첩도 그와 유사한 조치에 포함된다. 1998년 9월 18일자 러시아연방 외무부의 통첩에서 일본 시민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무비자 방문과 섬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의 일본 무비자 방문이 언급되었다[52의 13쪽]. 1999년 9월 2일자 일본 주재 러시아연방 대사관의 통첩에 따라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에 거주했던 일본인과 그 가족은 단체일 경우, 복수방문용 예치금만 지불하면 여권 없이 개인증명서만으로도 위 도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1945년 말까지) 위 도서에 거주했던 일본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가장 간소화된 방식의 4개 도서 방문 절차에 합의했다[52의 21~23쪽]. 그러나 방문단 현지 입국 시의 출입국 절차 이외에는 '자유방문'에 대한 승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국경관리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32의 111쪽].

2000년 9월 4일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에서 공동경제활동의 발전을 위한 러일협력계획'이 채택, 조인되었다. 러시아에서는 외무부 차관 로슈코프(A. П. ЛОСЬКОВ)가 조인했다. 이 계획은 '각 도서에서 공동경제활동의 단계적 발전 …… , 양자 간 강화조약 협의의 진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 조성, 러·일 관계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 등을 규정했다[52의 24~25쪽]. 즉 일본의 실질적인 통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법률적인 통제로 이 도서들을 서서히 이전하면서 일본 사업이 남쿠릴 경제에 서서히 착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10의 101쪽].

이와 같이 5단계 계획의 둘째 단계, 즉 남쿠릴과 러시아 영해에 속하는 해역에서의 기업활동 자유지역 조성 및 그 지역에서 일본 사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엘친식 5단계의 제3단계, 즉 남쿠릴열도의 비무장화도 2단계에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현재 쿠릴열도에는 실질적으로 국경초소와 소규모 해군 부대만이 남아 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하여 홋카이도에 배치된 일본군은 축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강되었으며, 최신식 무기가 보강되어 더 강력해졌다.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하원 의회청문회에서 2002년 3월 18일 사할린 주의회 의원 포노마레프(C. A. Пономарев)는 극동에서 러시아 군사력의 일방적 축소와 쿠릴의 완전한 비무장화, 그리고 일본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그 지역에 배치된 몇 배나 우월한 군사력에 관한 통계를 거론했다. 즉 “이게 쿠릴과 홋카이도에서의 힘의 상관관계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단의 경우 일본이 4:1, 병력은 6:1, 탱크는 거의 14:1, 포병 7.7:1, 전투기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공격용 헬기는 16배나 일본이 월등합니다”[96의 31쪽]라고 보고했다.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와 1998년 4월 (도쿄에서부터 서쪽으로 100km 지점에 위치한) 가와나[川奈]에서 러시아 엘친 대통령과 일본 하시모토 총리 간에 비공식 회동이 이루어졌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는 엘친의 발의에 따라 “1993년 도쿄선언에 기초하여 2000년까지 강화조약 체결을 목적으로 최대한 노력한다”는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합의가 어떤 공식 각서나 협약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가와나에서 정상 회동 중 일본 측은 러일국경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즉, 국경선이 이투루프와 우루프 사이를 지나게 함으로써 남쿠릴열도를 일본 영토에 귀속시키자는 것이었다.

하시모토의 계획은 일본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의 4개 도서로부터 북쪽 방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일·러 양국 국경선을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하시모토는 남쿠릴에서 불특정 기간 동안 러시아 행정기관을 남겨두되, 국경선은 이동하자는 생각이었다. 옐친은 국경선을 위 도서의 북쪽에서 설정하되, 그 도서의 실질적인 양도는 보다 먼 훗날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하시모토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즉 일본이 논쟁을 일으킨 도서들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었다[12의 22~27쪽].

그러나 가와나에서 회담을 마친 뒤, 옐친과 하시모토 간의 이 은밀한 회담 내용이 공식적으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의 성명도 없었다. 즉 위 사항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이 문서로서 확인되지 않았다. 1998년 7월에 하시모토 총리가, 그리고 1999년 12월에 옐친 대통령이 각각 사퇴함에 따라 공식적인 각서나 협약으로 확인되지 못한 옐친 대통령과 하시모토 총리 간의 개인적인 비밀 회담과 옐친 대통령의 약속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의 비공식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 양국 외무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러일강화조약체결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러·일 양국 간의 강화조약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11월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일본 총리 오부치 게이조[小淵

惠三]는 동월 13일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선언에 조인함으로써 러일관계의 질적 개선에 관한 합의에 공식적으로 도달했다[298쪽 첨부51 참조]. 러시아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모스크바선언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와 가와나에서의 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도쿄선언과 협약에 기초하여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명령을 자국 정부”에 하달했다. 또한 양국 지도자는 ‘2000년까지 강화회담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존하는 러·일 강화조약체결위원회 내에 국경선 획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으며, “위에 언급된 도서들 내에서 국경선 획정을 위한 소위원회와 함께 활동하면서 양국의 법적 지위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도 공동경제활동이 가능한 유형들을 파악하는,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선언서 ‘양국관계부’의 제2조).

1999년 1월부터 국경선 획정을 위한 소위원회와 남쿠릴열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소위원회 내에서 적극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모든 협의는 ‘영토문제’, 즉 남쿠릴열도의 귀속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비공식적 정보에 따르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러시아 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차관과 기술지원 등을 일본에서 제공받고 경제협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연방 지도부와 일본 정부 간에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도서 양도 조건을 실제 교섭 중이라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외무부 관료의 발언에 따르면, 외무부 최고지도부는 2001년 가을 푸틴(В. Путин)과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회동에서 논의되었고, 후일 러시아 외무부 장관 이바노프(С. Иванов)가 조인한 ‘2001년 각서’라는 비밀문서에 관한 정보를 누출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문서 내에는 쿠릴암맥의 도서를 일본에 양도하는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 ‘각서’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쿠릴암맥 도서의 귀속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영토문제가 러·일 양국 간의 소중한 우호관계 수립을 방해하는 원인이라고 최초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주장했으며, ‘쿠릴 문제의 단계적’ 해소를 통해 소중한 관계를 복구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이 과정에 5~7년의 시간이 걸린다). 또한 국민투표는 전 러시아적 규모가 아니라, 그 무렵 이미 일본에 실질적으로 포함될 것이고 따라서 도서의 양도를 환영하게 될 ‘영유권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내에서만 실행될 계획이라고 한다[40의 1쪽 참조].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3년에 조인된 공동선언은 러·일 정상 회동에서의 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2000년 9월 도쿄에서 그리고 2001년 3월 이르쿠츠크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의 회동이 이루어졌다.

2000년 9월 5일 도쿄에서 조인된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에서[300쪽 첨부52 참조], 양측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즉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시에서 있었던 러·일 정상 회동 중, 도쿄성명에 기초하여 2000년까지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사전협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크라스노야르스크 협약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그 협약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계속해서 공고히 하는데 최대한 부응할 것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으며, “1993년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성명서와 1998년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선언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체결된

모든 협약에 따라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강화조약을 작성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2001년 5월 25일에 조인된 강화조약의 협상 지속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수상 간의 이르쿠츠크성명[303쪽 첨부53 참조]에서 양측은 “1956년 소일공동성명서, 1993년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성명서, 1998년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성명, 2000년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 그리고 현재의 성명 등, 현 시점까지 채택된 문서에 기초하여 강화조약 체결에 관한 향후 회담을 지속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한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성명서가 양국 간의 외교관계 복구 이후 강화조약 체결에 관한 회담의 개시에 단초를 제공하는 초석과 같은 법적 문서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런 점에 의거하여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자 향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함으로써 1993년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성명서에 기초하여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한다는 데 동의했다”.

도쿄와 이르쿠츠크에서 진행된 협의의 주요 대상은 일본이 러시아에 제시한 영토적 권리주장과 러·일 영토분쟁의 논의였다.

2000년 9월 도쿄에서 일본의 모리 총리는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열린이 2000년 이전에 강화조약에 조인하자고 약속했던 것을 잡고 늘어지면서, 1998년 가나와에서 양국 정상 회동 당시 하시모토 총리가 열친에게 제안한 조건으로 일본에 4개 도서를 양보하는 데 즉각 동의해달라고 푸틴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푸틴은 일본 총리(하시모

토와 오부치)와 옐친이 조인한 공동성명들에는 2000년 내에 강화조약을 반드시 조인해야 한다는 양측의 엄격한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목해주었다. 즉 이 문서에는 “2000년까지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양측의 결의만 언급되어 있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푸틴은 양국 국경선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우루프와 이투루프 두 도서 사이를 지나게 함으로써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이 일본 국경 내에 들어가게 하자고, 과거 하시모토 총리가 제시했던 러·일 국경 설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거부했다. 또한 푸틴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과거 조인된 러일성명에는 하시모토 총리가 옐친과의 비밀회담에서 제안했던 양국 간의 국경 ‘설정’ 계획에 모스크바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2001년 3월 이르쿠츠크에서의 회담 중에 모리와 그의 참모들은 일반적으로 해석한 1956년의 공동선언을 러시아에 대한 영토적 권리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일본 측은 1956년 공동선언 제9조에 마치 강화조약의 조인 이전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서 위 공동선언 제9조의 내용을 왜곡시키고자 했다. 협의 과정에서 일본 대표단은 그보다 더한 것을 주장하여 제9조에서는 물론, 공동선언의 다른 부분에서도 쿠나시르와 이투루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이 9조가 그 도서의 운명에 관해서도 양국이 협상할 것을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4개 도서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을 재차 거부했다. 이르쿠츠크에서의 회담 결과에 관한 지난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1956년 소일 공동선언 제9조의 규정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도출하려면 전문가들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르쿠츠크에서 러·일의

영토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즉 모스크바는 1956년 공동선언에 의해 용인된 범위 내에서 일본에 대한 영토 양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다.

일본 정계는 도쿄와 이르쿠츠크에서의 협상 결과에 대해 러시아 측이 지난 협의에서 제9조를 포함하여 1956년 선언의 모든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56년 선언의 제9조는 소련과 일본 간에 강화조약이 조인된 이후 일본에 소쿠릴암맥의 도서를 양도한다는 소련의 약속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화조약이 조인될 경우 소쿠릴암맥의 도서(시코탄과 하보마이군도)를 양도하는 것에 러시아가 동의한 사실마저 일본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일본은 1956년 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에서 약속된 대로 위의 두 도서는 물론, 1991년 소일공동성명, 1993년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선언, 1998년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 협력자 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선언, 2000년 강화조약 문제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 그리고 2001년 강화조약 협상의 지속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이르쿠츠크성명 등에서 언급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의 두 도서마저 양도받는 것으로 자신의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었다.

2003년 1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일본 총리 고이즈미의 회동이 이루어졌다. 회동의 결과 2003년 1월 10일에 조인된 러일 행동계획의 채택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공동성명 및 이 공동성명의 부속문인 러일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305쪽 첨부54.1 참조]. 이 공동성명에서는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화조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그런 방법으

로 1956년 소일공동선언, 1993년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성명, 1998년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 협력자 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선언, 2000년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 그리고 2001년 강화조약 협상의 지속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이르쿠츠크성명 등 현시점까지 체결된 협약에 기초하여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하고자 양측이 노력하자는 언급이 재차 이루어졌다. 러일행동계획에서는 집중적인 협상의 결과 “이런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준비하기 위한 기구가 설립되었다. 즉 강화조약 체결에 관한 러일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양국 외무부 장관이 그 수장을 맡았다. 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국경선획정과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산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1956년 소일공동선언, 1993년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성명, 2001년 강화조약 협상의 지속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이르쿠츠크성명 그리고 다른 협약들은 도서(島嶼)의 귀속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화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삼는 회담 및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되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003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의 회의석상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남쿠릴열도(이투루프, 쿠나시르 그리고 소쿠릴암맥, 즉 시코탄, 젤론니, 탄필리에바, 폴론스코보, 유리, 아누친)가 1945년 전쟁으로 소련에 점령된 것인 양, 일본에서 ‘북방영토’로 불리는 위 지역을 재차 요구했다. 일본 총리는 귀국에 앞서 ‘본인과 푸틴 간의 우호적 관계는 강화조약의 문제와 남쿠릴암맥에 속하는 도서들의 귀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성명했다. 고이즈미와 푸틴의 협의 이후 조인된 러일행동계획에서는

일본 측이 남쿠릴열도의 양도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강화조약 체결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영토문제가 우선적으로 강조되었다.

1956~2003년의 선언과 성명을 분석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1956년의 선언과 1991년의 성명에서는 ‘공평무사’ 그리고 ‘무사’의 원칙에서 양자의 국제적 논쟁거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던 것에 반해 [270쪽, 291쪽 첨부], 1993년의 선언에서는 ‘역사적·법률적 사실에 기초하여’ 그리고 ‘합법성과 정의의 원칙’[294쪽 첨부]에 기초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91년의 성명부터는 모든 양자 간 문서에서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이 언급되어 있다[376·379·384·387·391·392쪽 첨부]. 1956년 소일공동 선언 및 1991년의 성명과는 달리 1993~2003년의 러·일 문서에는 ‘무사’의 원칙이 국가 간 문서의 용어에서 삭제된 게 아니라, ‘합법성과 공평’의 원칙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타와 포츠담의 협약에 따라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플로스키예)는 ‘무사’의 원칙에 근거하여 극동에서 소련의 안보 강화를 위해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소련에 양도되었다.

2001년 9월 12~13일 유즈노사할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에서는 쿠릴열도의 일부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으로 야기된 러시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1956년 소일선언과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안전문제’라는 주제로 의회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사할린 주 의회와 사할린 주 행정부가 주관한 이 포럼에는 1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그중에는 러시아연방 하원과 상원의 대표들, 연방조직과 주의 기관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 사할린 주 기업과 조직의 지도자들, 모스크바

와 극동 학술단체의 대표들이 있었다.

의회청문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쿠릴열도의 귀속문제에 관한 30개가 넘는 외교사 관련 보고서였다. 그중에는 소쿠릴암맥과 쿠릴열도의 발견 및 획득의 역사, 이 구역 연해 수역의 유용한 광물자원과 생물자원 등 천연자원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으며, 쿠릴열도에서의 경제성과와 경제활동의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80 참조].

의회청문회에서 쿠릴열도의 자원 잠재력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었다. 탄화수소 원료, 은, 티타늄, 철, 다금속 광물, 황 등의 매장량과 러시아에 유일하게 매장된 희귀금속 레늄 층 등, 이 모두의 현재 가치가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다. 과거 러시아를 위해 쿠릴의 ‘장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천과 풍부한 어장이었을 것이다. 의회청문회를 마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국가에 필요 없다고 오해했던 이 지역을 매각할 게 아니라, 중요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 남쿠릴이라는 지역경제의 발전 전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쿠릴 경제상황의 안정화 방안의 모색 필요성 등을 이해하게 되었다.

의회청문회 참석자들의 입장은 러시아에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 지도부의 입장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본 측이 ‘영토 문제’로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러시아에 강요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회청문회에서 채택된 권고에는 “쿠릴열도의 도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섬에는 수천 명의 러시아 시민이 거주 중이고, 각 도서는 개발이 용이하면서도 지하와 대륙붕 그리고 인근 수역에 값비싼 대규모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쿠릴열도 일부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은 국가 안보에 위협

요소가 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 도서의 양도는 그 양도로 인한 전례가 있는 위험의 감수이자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실질적인 개정”[66 18쪽]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채택된 의회청문회 권고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러시아연방정부와 러시아연방 상원, 러시아연방 주체 정부의 입법기관, 사할린 주 의회와 사할린 주 행정부 앞으로 각각 발송되었다.

2002년 3월 18일 러시아연방 하원에서 “남쿠릴: 경제, 정치 그리고 안보의 문제”라는 주제로 의회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본 청문회는 하원 안보위원회,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하원 지정학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청문회에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러시아연방 대통령 행정실 소속의 각 대표, 러시아연방정부 각 대표, 연방정부 부처의 각 대표, 사할린 주 국가기관 각 대표와 쿠릴열도 지방자치체 각 대표, 전문 학술기관과 사회조직의 각 대표 등 쿠릴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활동하는 이들이 참석했다.

발표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의 평가에서 남쿠릴을 일본에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회청문회 결과 러시아연방의 영토보전과 남쿠릴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상원, 정부, 러시아연방정부 부처들에 발송할 상세한 권고문이 채택되었다. 의회청문회 참석자들은 채택된 권고문에서 “남쿠릴열도를 포함하는 쿠릴열도는 국가정책적·전략적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67의 86쪽].

사할린 주 의회가 ‘1956년의 소·일 선언과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 문제’라는 주제로 실시한 의회청문회와 러시아연방 하원이 ‘남쿠릴: 경제, 정치 그리고 안보의 문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의회청문회에서 각각

채택된 권고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쿠릴의 섬(이투루프)과 사할린 주 산하 남쿠릴 지역 도서(쿠나시르와 소쿠릴암맥의 군도)의 대륙붕에 매장된 탄화수소 자원이 16~18억 석유환산톤에 달하며, 쿠릴열도에는 금 1,867톤, 은 9,284톤, 티타늄 3,970만 톤, 철 2억 7,300만 톤 등이 매장되어 있고, 지열, 다금속 광물 그리고 1억 1,700만 톤의 황이 매장되어 있다. 또한 남쿠릴에서 채굴되는 유용 부존자원의 총 발견량은 현재 국제시세로 458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남쿠릴 어로수역에 위치한 어류와 여타 해산물(재생가능 생물자원)의 총량은 5백만 톤이 넘고, 매년 총 어획량이 약 80만 톤 정도다. 러시아아가 이 식량 자원 기지를 상실하면 국가의 식량안보가 위협해질 것이다[66 18쪽, 67 86쪽].

남쿠릴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정학적 이동, 그 결과로서의 새로운 세계분할과 제2차 세계대전 결과의 개정이 시작될 것이다. 그 뒤를 이어 북쿠릴과 사할린 남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쿠릴열도와 동일한 국제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칼리닌그라드 시와 칼리닌그라드 주,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 포함된 다른 영토와 지역들이 불가피하게 그 뒤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위해 필요한 ‘국제법적 근거’가 만들어질 것이다.

국제법은 각국과 국민들의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경제적) 관계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은 그 자체로 모든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특히 상부조직의 일부를 규제하는 부분으로서, 정치적 상위조직의 파생적 요소(부분)이자, 그보다 더 큰 단계에서는 경제적 기초에서 파생한 것이다. 이처럼 법은 경제적 수요

라는 경제적 기초와의 관계에서 부차적이거나 심지어 3차적인 것이다. 국제법은 일부 의미에서 그 자체로 국가 간의 관계나 국민 간의 관계를 어떻게든 상호 조정하고 정상화해야만 하는 주권국가들의 합의(다자간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법이 국내법의 파생물이라는 사실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부차적이며, 정치적 상부구조와의 관계에서는 3차적이고, 각국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발전 요구와의 관계에서는 4차적이다. 정부가 체결한 모든 국가 간 조약이 국민 대표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입법기관의 비준(승인)에 부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국가 간 문제해결의 기초는 '합법성과 공평'의 원칙이 아니다. 대외정책의 토대가 되는 기초는 나라와 국민의 국익이며, 그 국익에서 경제적 구성요소인 경제적 이익은 국가안보라는 이익처럼 결코 최하위가 아니라 종종 수위를 차지한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국제법적 규칙과의 변증법적 조화, 그리고 대외정책과 구체적인 대외정책적 수단, 대외정책의 방침과 주의(doctrine) 등의 효율성 평가에 근거한 러시아 및 현세대와 향후세대 러시아 국민의 국익이 국제관계에서 '쿠릴 문제'와 다른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정의의 원칙에 따른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법률적 이익의 상호관계'에 대해 언급하자면, 이런 상호관계가 언제나 러시아 국민에게 유리할 수는 없다. 지난 한 세기의 역사 발전 과정 도중 러시아는 극동, 서부 그리고 남부에서 막대한 영토를 획득했으며,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지정학적 구조, 즉 지구의 1/6이 넘는 공간을 점유한 러시아 제국이 탄생했다. 러시아 차르의 정책과 탐험가들의 희생적 헌신은 러

시아 후손들에게 훌륭한 삶의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결과적으로, 발전을 위한 세계 자원이 불규칙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희박한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자원은 거의 미개발 상태다. (일본을 포함한)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발전을 위한 자원의 세계적 분포와 소유가 역사적으로 '불공정'했다. 세계 공동체의 관점에서도 러시아는 자신의 자원을 배분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바, 이 자원은 허상이 아니라, 실용적 측면에서 유일하게 현실적인 '전 인류의 귀중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종전 이후 63년이 흐른 지금 러일관계에서 일본이 '영토문제'와 '분쟁 도서'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고수할 경우, 러·일 간의 강화조약 체결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일본은 1956년의 소일공동선언이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일본에 남쿠릴열도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강화조약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강화조약은 일본에나 필요한 것일 뿐, 러시아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체결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에 강화조약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련과 독일 간의 전시상태 중단에 관한' 1955년 1월 25일자 포고령에 의거하여 소련과 독일 간의 전시상태가 중단되고 양국 간에 평화관계가 수립되었다[47의 793쪽 참조]. 더욱이 일본에서는 '영토문제'에 관한 논의가 대체로 (일본 국민의 민족적 감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팽창주의적 토대로 일본 국민을 규합하려고) 국내질서를 위한 선전적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인접국에 대한 대외적 권리주장 및 그 주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엇 하나라도 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남쿠릴섬에 속한 도서의 귀속문제 해결은 보다 더 먼 미래로 연기해야 한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러·일 양국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이런 현실에서는 서로 깊은 대화를 진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호 이익한 결정에 도달할 수도 없다. 그에 더해 이 논쟁은 러일관계의 모든 분야에 상처를 남겨 러시아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도쿄는 러시아와의 통상 및 경제관계의 발전을 강화조약 체결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강화조약이 목표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독일과 그런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양국의 통상 및 경제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고 있다. 사업의 법칙에 따르면,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상호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협력은 발전하지 않는다. 투자의 부재나 유입은 한 국가, 즉 이 경우에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 풍토에 달려 있다. 러일관계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본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 강화조약의 존재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며, 조약의 조인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국제조약으로 러시아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도쿄에게 중요하다면, 선린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조약을 작성할 수 있다. 러일강화조약의 조인 역시 보다 먼 미래로 연기하거나 혹은 그것이 전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양국 간의 전시상태는 1956년의 소일선언이 조인되면서 중단되었다.

1956년의 공동선언은 그 내용상(1~6조) 예비적이지 궁극적인 강화조약과 유사하다. 이 선언으로 소련과 일본 간의 전시상태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와 선린우호관계가 복구되었기 때문이다(제1조). 그 외에도 강화조약 고유의 다른 문제들, 즉 외교와 영사관계의 복원

(제2조), 양국관계에서 국제연합헌장 원칙의 채택에 관한 합의(제3조), 일본의 국제연합 회원가입에 대한 소련의 동의(제4조), 제2차 세계대전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소련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모든 일본인의 석방과 일본으로의 송환(제5조), 1945년 8월 9일부서의 전쟁으로 발생한 모든 권리주장에 대한 상호 포기 및 일본을 상대로 소련이 지닌 모든 배상과 권리주장의 포기(제6조) 같은 문제도 해결되었다. 1956년 선언이 예비적 강화조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소련과 일본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 지속’을 규정하고 있는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1956년 선언의 조인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를 동안 양측이 강화조약의 내용에 합의하지 못하여 조약이 체결되지 못하면서 이 선언은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강화조약으로 변했다.

1956년의 선언에 따라 소쿠릴섬을 일본에 양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필수조건이 반드시 이행된 상태라야 한다. 즉 일본영토 내에 어떤 형태로든 외국군 기지와 외국군의 주둔이 일소되어야 하며, 일본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중립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의 영토 변경과 관련된 국내 헌법 규정이 모두 준수되어야만 한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주권에 관한 1990년 6월 12일자 선언 제5조에는 “러시아의 국가적 부의 소유, 이용 그리고 처분에 대한 인민의 배타적 권리가 …… 확립된다”고 되어 있는데, 러시아 영토가 이 규정과 가장 먼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위 선언 제8조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는 국민투표에 의한 인민의 의지표현 없이 변경될 수 없다”[16의 45쪽]. 따라서 남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도하려면 쿠릴지역과 남쿠릴지역 현지의 주민투

표, 러시아연방 주체인 사할린 주의 투표 그리고 전(全) 러시아의 국민 투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러시아연방에서 시행 중인 헌법 규정도 준수되어야 한다. 연방헌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 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제4의 제3항),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보전,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 기관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관 간의 관할 및 권한의 한계, 러시아연방 국민의 평등과 자결에 기초한다”(제5조 제3항), “러시아연방의 제 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주체이며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다”(제3조 제1항), “인민은 자신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제3조 제2항),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다”(제3조 제3항). 그리고 그 이외에도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 기관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국가권력 기관 간의 관할 및 권한의 한계는 이 헌법, 연방조약 및 관할과 권한의 제한에 관한 다른 조약에 의해 수립된다”(제11조 제3항)는 규정이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c) 토지, 지하자원, 수자원, 기타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제72조 제1항)와 같은 규정도 존재한다[311쪽 첨부58 참조]. 또한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연방조약, 즉 러시아연방 국가권력 기관과 변강, 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국가권력 기관들 간의 관할과 전권 대상의 분계에 관한 조약에 첨부된 각서 제1조의 ‘b’항에 따르면, “각 변강과 주의 경계 변경은 러시아연방 당국의 연방기관과 각 변강과 주 당국 기관의 공동관할에 …… 속한다”[310쪽 첨부].

일본에 남쿠릴열도를 양도할 수 있는 국제법적 상황 중 중요한 하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6조에 따르면, “일본은 1942년 1월 1일의 국제연합 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의를한 …… 이 조약의 서명국이 아닌 어떤 국가와 본 조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양자 간 강화조약을 체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단 이런 일본의 의무는 본 조약이 최초로 발효되고 3년 뒤에 소멸된다. 일본이 어떤 나라와 이 조약에서 규정한 것보다 많은 이익을 그 나라에 부여하는 평화적 해결이나 전쟁청구권을 처리할 경우에는 그런 이익은 본 조약의 당사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242쪽 첨부]고 규정되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련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서명국(참가자)이 아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강화조약의 제2조에 따라 쿠릴열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사할린 남부를 포기했지만, 그것이 누구의 구체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

따라서 (남쪽에 위치한 쿠릴암맥의 일부분을 제외한)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을 일본이 인정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 양자 간 강화조약이 체결된다면, 위에 인용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6조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이 조약의 제26조에 따르면, 러시아에 의한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의 영토적 획득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이 조약의 참가국에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 영토는 (일본을 제외하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한 48개국과 종전 이후 63년의 시간이 지난 뒤 일본과의 강화조약에 조인한 러시아의 공동소유(공동통치)가 될 것이다. 이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영국, 베네수엘라, 베트남, 아이티,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스,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란,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라오스, 라이베리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니카라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

아, 미국, 터키, 필리핀, 프랑스, 실론, 칠레, 우루과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 국가 중 다수 국가의 노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갈라졌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태평양 북서부의 도서에 있는, 작아도 자신의 영토를 보유하고 싶어 하며, 자신의 통상 기지와 근거지를 보유하고, 도서의 자원과 그 주변 200해리 경제수역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현재 러시아의 실질 영토인 쿠릴과 사할린 남부지역은 법적으로 국제통치를 받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일본과 ‘영토문제’로 협의를 진행할 때, 이 국제법의 법률적 충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가 리일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일본에 대한 ‘반환’에 동의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영토가 아니게 될 남쿠릴열도 일부의 국제법적 지위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참가국들에 의한 특별국제회의의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이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고 강화조약 그 자체의 조인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그 회의에서 배제될 것이다. 결국 이곳은 ‘무주지’가 될 것이며, 그 운명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한 48개 국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그러나 본 조약의 제2조에 따라 그 지역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과 ‘청구권’을 포기한 일본은 제외된다). 그 이후에는, 이 조약의 제22조에 따라 “본 조약의 어떤 당사국이 볼 때, 특별청구권재판소나, 다른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어떤 분쟁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그러한 분쟁에 대한 결정을 얻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된다”[240쪽 첨부]. 아마도 국제법상의 공동통치가 되면서, 일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현재도 적용되는 무기한 국제조약이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쿠릴열도와 부속도서를 포함한 사할린 남부를 포기했다. 그러나 그 조약에는 위 영토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공식적인 국제법적 규칙의 관점에서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는 법적 공백상태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지역이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미래로 떠넘긴 나라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주된 공동저자였던 미국이었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형편없는 법률가, 정치인, 외교관들에게는 일을 주지 않으며, 도박 같은 대외정치를 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미국은 공동통치 혹은 신탁통치일지라도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를 자기가 점유하길 원했다. 전후시기 미국의 법률가들과 정치인들도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계획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처럼 수많은 걸림돌을 설치한 바, 국제정치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945년 전쟁 이후 소련과 일본 간에는 강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여기서 적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미국이었다.

미국은 항상 모든 면에서 자신의 국익을 추구했으며, 추구하고 있다. 영토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복잡하게 만들려 했던 미국은 소련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상대로 개전하여 승전한 이후 자신과 영국의 보장하에 '극동문제에 대한 3대 열강'의 알타회담 규정에 따라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한다는 조항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소련은 이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조에 따라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위 지역은 소련(러

시아)에 의해서 획득된 것이 아니고, 조약에 따른 국제법적 절차에 의해 법적 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법적 소유권이 완결되지 않았다는 법률적 입장에는 동의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소유권을 완결하고자 일본과 협상할 수도 없는 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제2조와 제26조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하고 그것을 비준하는 방식으로 그 조약에 가입할 수도 없다. 이미 조약이 발효되었고 조인도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조약에 사할린 남부와 쿠릴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규정된 것도 아니어서, 조약에 가입한다 해도 러시아는 위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의한 어떤 국가, 일본과의 전쟁상태에 있는 어떤 국가 또는 이전에 본 조약의 서명국이 아닌 제23조에 명명된 어떤 국가의 영토 중 일부를 이루고 있던 어떤 국가와 본 조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양자 간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본의 권리를 언급하면, “이런 일본의 의무는 본 조약이 최초로 발효되고 3년 뒤에 소멸된다”[242쪽 첨부]. 일본 측의 이런 의무는 1955년에 사라졌으며, 1956년의 소일공동선언 제1조에 따라 소련과 일본 간의 전시상태는 이 선언이 발효된 날로부터 중단되어, “양국 간에는 평화와 선린 우호의 관계가 복구되었다”[270쪽 첨부]. 따라서 ‘영토문제’의 위와 같은 해결방안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일종의 독특한 법률적 교착상태로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즉 이 문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관련조항을 변경해야 해결될 수 있겠지만, 본 조약에는 그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조약 기간도 무기한이어서 불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소련의 일부이자 권리 승계자로서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를 효과적으로 점령한 상태에서, 법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실질적으로 위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따라 이 지역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나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무력으로 획득한 지역이 효과적인 점령(작동하는 국가권력 기관이나 조직의 존재, 경제활동 인구의 상주, 즉 경제개발) 치하에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이전의 권리보유자가 그 지역을 포기한 경우, 그 지역은 강화조약이 없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이전된다[92의 259쪽 참조, 78의 177쪽].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실질적 점유(사할린 남부는 40년 이상, 북쿠릴은 70년 이상 그리고 남쿠릴은 90년 이상)는 일반적인 국제법 규칙에 따라 위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강화시켜준다. 이 경우 러시아와 일본 간의 국경선은 협의에 따른 국경의 지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국경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시간은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러일관계에서 쿠릴열도(그리고 사할린 남부)의 귀속에 관한 ‘영토문제’는 실질적인 국제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일본 내 일정 부류의 영토적 권리주장은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권리주장은 역사와 국제법 규범 그 어느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의라는 사실 그 자체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묵인이자, 전쟁 결과의 수정이다. 정치학자와 역사학자의 몫은 국제법학자 및 국제정치학자들과 함께 러시아의 극동영토인 쿠릴에 대한 일본의 권리 주장이 지닌 불법성을 러시아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데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 2부

의미 남쿠릴 지역의 경제 전략적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장

러시아 국가안보를 위한 ‘쿠릴 문제’의 지정학적·방위적 측면

최근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국민의 필요와 이익을 희생하여 인류의 필요와 이익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런 주장은 쿠릴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에 쿠릴문제와 관련된 대외정책의 결과들이 지정학적, 방위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러시아 국가안보의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만일 예상할 수 있는 남쿠릴열도의 8개 도서의 양보(양도 혹은 매각)를 염두에 둔다면, 쿠릴열도의 일부를 잃는 것이 실제로 러시아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그림 2〉 참조) 문제는 언론매체와 정부요인들의 발언에서 자주 확인되는 바와 같이 남쿠릴열도의 4개 도서가 아니라 8개 도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적 개념에서 남쿠릴에 포함되는 도서에는 대쿠릴암맥에 위치한 길이 약 200km에 최대폭 27km 그리고 면적 6,725km²의 이투루프[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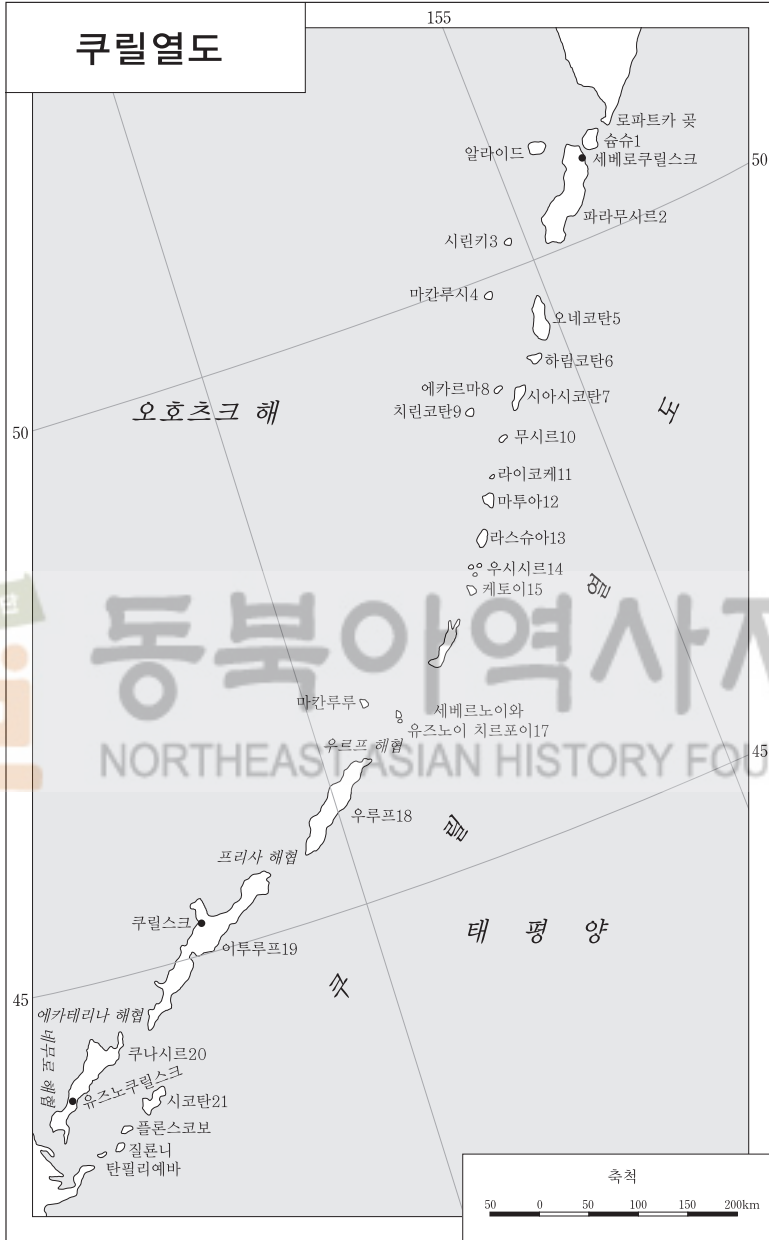


그림 2 쿠릴열도

번 199쪽, 29번 469쪽]와 길이 123km에 면적 1,550km²의 쿠나시르 등 두 개의 큰 섬, 그리고 소쿠릴암맥에 위치한 6개로 이루어진 소규모 섬인 시코탄, 질론니, 탄필리에바, 플론스코보, 유리, 아누친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역시 소쿠릴암맥에 들어가는 일련의 소규모 암초인 데미나(Демина), 리시이(Лисьи), 시시키(Шишки), 시그날니(Сигнальный), 스토로제보이(Сторожевой)와 수면 위로 올라온 암초인 페세르나야(Пещерная), 우디비텔나야(Удивительная) 그리고 소쿠릴암맥에 분포한 다른 섬들이 있다. 소쿠릴암맥에 포함되는 도서와 암초의 총 수는 20개가 넘는다.

대쿠릴암맥과 소쿠릴암맥이라는 지명은, 러시아 저술을 비롯하여 일본 지리학 대백과사전, 일본 지도, 지리학 교과서, 일련의 전공 논문[83의 2~4쪽] 등 해외저술을 참조하여 1944년 소련과학아카데미 지리학연구소에서 출판 준비를 마친 ‘쿠릴열도’라는 연구서 안에 쿠릴군도의 지리적 위치와 구성의 묘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세계 지리학계와 지도제작계에서 인정받았다.

소쿠릴암맥에서 가장 큰 섬은 평균 길이와 폭이 각각 28km와 9km 그리고 면적 182km²의 시코탄이다[83의 174쪽, 95의 556쪽, 96의 1371쪽]. 일본인들은 시코탄을 제외한 소쿠릴암맥의 도서들을 홋카이도 동부에 있는 군의 군청 소재지이자 군과 이름이 같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하보마이라고 명명했다. 러시아의 지명에서는 18세기부터 이 섬들이 (그 길 모습을 따라) 플로스키예군도로 명명되었다. 질론니 섬은 길이와 폭이 각각 9.2km이며 면적은 85km²다. 탄필리에바 섬은 길이 8.3km, 폭 6.4km에 폭 60km²다[83의 174쪽]. 플로스키예군도(하보마이군도)의 총 면적은 150km²가 넘는다. 시코탄을 포함한 소쿠릴암맥의 전체 면적은

340km²다.

소쿠릴암맥은 노사푸 곶의 동단에서 홋카이도의 네무로반도(根室半島)까지 총 105.5km에 걸쳐, 대쿠릴암맥에서 남동쪽으로 48km 더 나아가간 곳에서 그 암맥과 평행하게 북동쪽으로 뻗어 있으며, 남쿠릴해협으로 대쿠릴암맥과 나뉘어 있다.

전문서적과 공식적인 백과사전에 따르면 남쿠릴열도의 총면적은 약 8,600km²다. 위 정보에 의거한 쿠릴열도의 총면적은 약 15,600km²다 [83의 4쪽, 77의 10쪽, 42의 267쪽, 43의 611쪽].

남쿠릴열도의 면적에 관한 정보는 정보원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일본: 강화조약으로 향하는 길에서 간과한 단계들(편저자 알라딘/B. В. Аладьин)』이라는 책은 “남쿠릴의 면적(5,036km²)은 쿠릴열도 총면적(약 10,000km²)의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플로스키예군도(하보마이군도)의 면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탄필리에바(수이쇼) 20km², 아누친(아키유리토) 5km², 유리(유리) 10km², 질론니(시보츠) 45km², 폴론스코보(타라쿠) 20km² 그리고 시코탄(시코탄) 255km²”라는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71의 12쪽]. 즉 이 출처에서는 소쿠릴암맥의 면적이 355km²로 규정되어 있다. 포노마레프(C. A. Пономарев)는 사할린 주의 토지자원 및 경지정리위원회 소장 자료에 따라 부속도서를 포함한 시코탄의 면적은 264km², 시코탄을 포함하여 소쿠릴암맥의 총면적은 361km², 쿠나시르의 면적은 1,495km², 이투루프 3,319km², 사할린 주에 속하는 쿠릴과 일본이 권리주장하고 있는 남쿠릴 등 2개 지역에서의 면적은 5,174km²라고 했다[62의 24쪽].

이 지역에서 사할린 주 소속의 쿠릴열도로 대표되는 러시아연방과 홋카이도로 대표되는 일본 양국의 국경선은 쿠나시르해협, 이즈메나

(Измена)해협, 소비에트해협을 따라 이어진다.

소쿠릴암맥의 지리적 귀속문제는 국제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대표는 이 암맥에 속한 도서에 단서를 달았다. 즉, 미국 대표 텔레스는 “하보마이가 제2조 c에 언급된 쿠릴열도라는 지명에 포함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232쪽 첨부28 참조, 25의 32쪽 참조]. 일본 총리 요시다는 본 회의에 출석하여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홋카이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성명했다[234쪽 첨부29 참조, 26의 38쪽 참조].

마지막 주장은 우스꽝스러울 따름이다. 홋카이도든, 시코탄이든 혹은 하보마이군도에 속하는 조그마한 섬이든, 심지어 소쿠릴열도 그 자체든 소쿠릴암맥에 속한 섬은 모두 섬일 뿐이다. 따라서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동일하다.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만조 시에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 공간이다”[47의 519쪽]. 『대백과사전(Большо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의 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모든 방면에서 대양, 바다, 호수, 강 등의 물로 둘러싸인 육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규모로 대륙과 구별되며, 대양이나 바다에 위치한 섬은 (대륙에서 분리된) 대륙형 섬, 화산섬, 산호섬, 충적섬으로 구분된다[57의 858쪽]. (즉 전면이 물로 둘러싸인 육지 부분이라는) ‘섬’의 지리적 개념 정의에 따르면, 시코탄과 소쿠릴암맥의 다른 섬 모두 원칙적으로 홋카이도라는 섬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표의 주장에 관해 언급해보자. 소련 국방부 산하 항해 및 해양학 총국의 항해도 No. 62272(〈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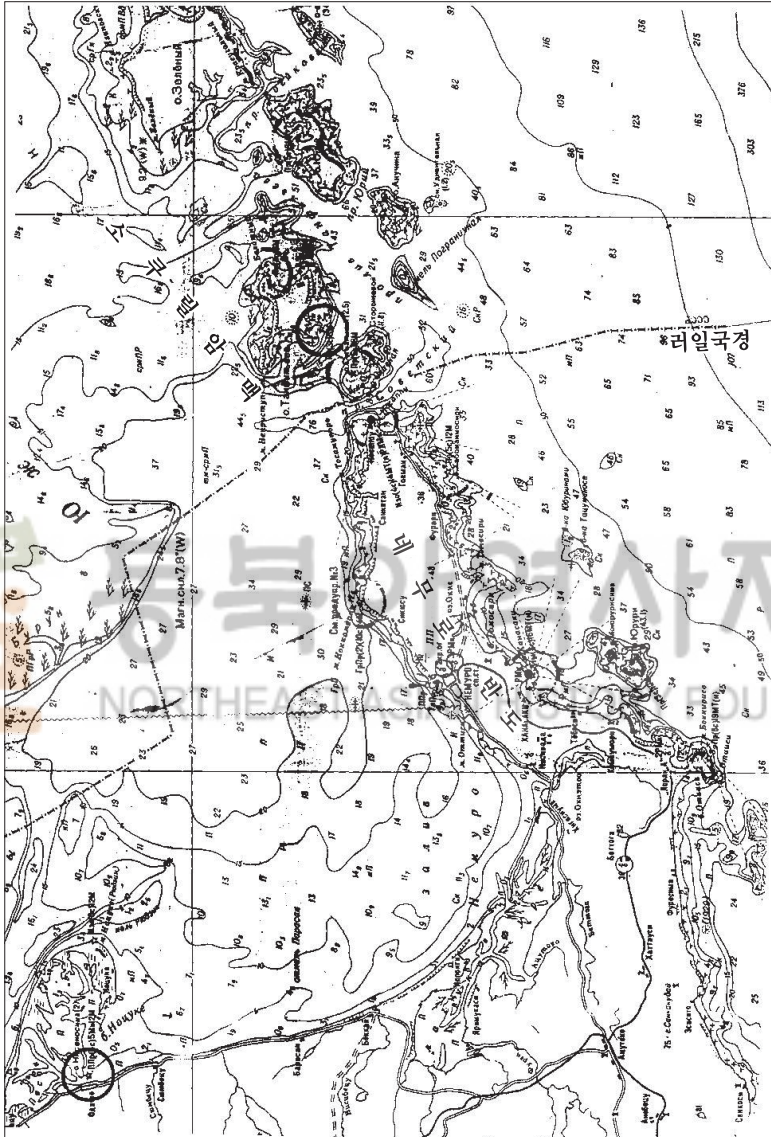


그림 3 소쿠릴암맥과 훗카이도에 위치한 네무로 반도 지역의 지도 일부

참조)에 따르면 소쿠릴암맥의 도서들은 쿠릴암맥의 연장이다. 20m 이하의 여울이 쿠나시르와 소쿠릴암맥에 속한 일단의 도서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수심이 60~76m 또는 그 이상(최고 89m)인 소비에트해협은 소쿠릴암맥의 도서들을 홋카이도의 네무로 반도와 구분하고 있다.

남쿠릴을 일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쿠릴 문제’를 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와 군사전략적 결과들을 복합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있다.

남쿠릴을 일본에 양도할 경우 러시아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다. ‘1995년 러시아 국가안보개념’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군사적·환경적 가치 그리고 정신적 가치와 지적 가치를 포함하는 다른 가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하고 있다[34의 81쪽].

2000년 1월 10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승인된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개념’에서는 세계에서 러시아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의 약화 위협,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지근거리에 외국군 기지와 대규모 군부대의 등장 가능성, 러시아연방 영토에 대한 권리주장 등을 국제적 범위에서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 ‘개념’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다극화된 세계의 중심세력 중 하나인 러시아의 강화에 반대하고, 국익의 실현을 방해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약화를 원하는 다른 국가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했다[35].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쿠릴열도가 방위력 유지, 주권과 독립의 보장 유지, 러시아 국익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우리 러시아는 21세기에 대해 언급할 것도 없이 당장 향후 5년의 역사 과정이 어떤 것이며, 어떤 위협이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

을 기다리고 있을지 현실점에서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전문가의 계산에 따르면 2030년대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될 것이며, 서구 역시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즉 자원이 향후 30~40년 동안 이용할 양밖에 안 남았다는 것인 바, 생존을 위한 국가와 국민들의 세계적 충돌이 예상된다. 에너지, 원료 그리고 환경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정치는 영토문제의 경우 특히 자기 나라의 국가적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

19세기에 쿠릴열도는 오직 지지학(地誌學)의 관점에서만 관심을 받았을 뿐, 러시아 극동지역의 방어를 위한 군사지리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그런 이유에서 알렉산드르 2세(Александр II) 당시 러시아는 일본이 사할린 남부에 대한 권리를 양보한 것과의 ‘교환’ 조건으로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에서 쿠릴열도의 18개 도서를 포기했다. 20세기의 역사는 러시아 방어력을 위해 쿠릴열도가 갖는 중요성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을 반박해주었다. 1904~1905년의 러일전쟁과 1941~1945년 태평양에서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이 그런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19세기 말에 이미 일본인들은 북방으로부터 일본열도의 방어를 위한 핵심고리라는 군사적 의미를 쿠릴열도에 부여했다.

19세기 말 일본의 저명한 학자 류노스케(O. Рюносукэ)는 쿠릴열도의 전략적 의미에 관해, “일본제국의 북쪽 국경 방어에서 치시마(Цисима, 쿠릴열도)는 …… 전진요새며, 홋카이도는 이 요새의 후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치시마가 강력하게 보강된다면, 홋카이도는 그 요새에 의지하여 견고한 보루가 될 것이다. 만약 홋카이도마저 후위요새의 역할을 한다면, 혼슈의 평원과 안전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서

술했다. 류노스케는 지리적 측면에서도 쿠릴열도가 적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 “쿠릴열도암맥을 점령하는 자는, 태평양과 오호츠크 해 사이의 출입구를 점령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이들의 움직임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우월권을 항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83의 4~5쪽에서 인용]고 기술하여, 쿠릴열도의 점령자가 오호츠크 해와 태평양 사이의 군함과 상선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 위치한 광범위한 수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태평양에서의 해군력 제한에 관한 1922년 워싱턴조약에 따라 쿠릴열도는 태평양의 비무장지대로 선포되었다. 일본은 이 조약에 조인했음에도, 경제개발의 형태로 비밀리에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다. 1934년 쿠릴열도의 비무장 지위를 거절한 일본은 쿠나시르, 이투루프, 슝슈, 파라무시르 등지에 수비대와 비행장이 포함된 대규모 보루지역을 갖춘 군사용 북방전진기지를 쿠릴열도에 지속적으로 건설했으며, 해협에는 포대를 설치했다. 제2차 세계대전 개전 당시 쿠릴열도는 객관적으로도 소련의 극동과 미국의 하와이에 대응한 강력한 군사교두보가 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알류산열도 서쪽의 아투(Attu)와 키스카(Кыска) 등 2개 섬을 점령할 때, 그리고 진주만의 미 해군 주력 기지를 공격하고 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개전할 때 모두 쿠릴열도의 군사기지를 이용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방어력의 중요 요소로서 쿠릴열도의 군사적 의미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은 최근 50년 동안 쿠릴암맥에 속하는 도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군사전략적 측면부터 시작하자. 오호츠크 해에서 태평양으로 향하

는 모든 해협은 쿠릴열도를 통과한다. 일본에 이투루프, 쿠나시르, 소쿠릴암맥을 양도할 경우 일본은 ‘예카테리나,’ 쿠나시르, 이즈메나, 소비에트 등의 해협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 해군의 대잠용 잠수함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해협들을 통행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전략핵 능력, 특히 이 지역에서 전투 초계임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잠수함의 전투수행능력이 저하될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쿠릴열도의 일부 지역을 상실하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기반시설과 극동에서의 통일된 전략방어체계가 침해받게 된다고 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방어에서 남쿠릴의 의미에 대한 러시아 여론의 대표자들인 숙련된 전문가들의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즉, “일본에 남쿠릴을 양보하면 대륙 방어력과 군사시설 보급로의 안전이 동절기에 특히 심각하게 제한받을지 모른다. 위협을 받을 경우 태평양양함대는 모든 쿠릴열도를 따라 대잠전을 전개해야 한다. 이 경우 러시아 전략해군 남측(南側)의 전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남쿠릴 구역에 부동해협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남쿠릴의 상실은 극동에서의 단일 레이더망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오호츠크 해상과 상공의 통제 역시 힘들어진다”[71의 14쪽].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1930년대 군국주의 일본이 쿠릴열도를 소련의 극동지역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교두보로 평가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쿠릴이 대소전쟁의 수행을 위한 강력한 교두보로 변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본군이 쿠릴의 모든 해협을 완전하게 통제하게 되면서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었다.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역사적 권리가 복구된 다음에야 소련 선박이 아무

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해협들을 통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러시아 극동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과의 정상적인 교통 역시 보장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던 (소련, 미국, 중국, 영국 등) 연합국의 면전에서 일본의 국가와 군사 대표들이 무조건항복문서에 조인한 이후, 소련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스탈린은 1945년 9월 2일 소련 인민에 대한 메시지에서 “오늘 일본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여 무조건항복문서에 조인했습니다. 이것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가 소련에 되돌아오면서, 이제부터는 이 도서들이 소련과 대양을 차단하는 수단이자 우리의 극동을 상대로 한 일본의 공격기지가 아니라, 대양과 소련을 직접 연결시키는 수단이자 일본의 공격에서 우리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기지로 이용될 것임을 의미합니다”라고 강조했다[56의 1쪽].

쿠릴열도의 남쪽 섬들(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은 군사력, 특히 인접한 러시아를 목표로 한 미사일방어체제와 대잠방어체제를 배치하기에 좋은 천혜의 지역이다. 일본 함대는 1941년 진주만의 미 해군을 기습공격하기 전에 군사정치적 관점에서 특별한 장소이자 수심이 깊은 이투루프의 카사트카(히토카푸) 만에 은밀히 주둔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지역이 군사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상대로 이용되어 동일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는 과거의 군사적 적국들을 동맹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매우 역동적이다. 매 순간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장래에 어떤 위험이 어디에서 러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공개된 해외의 군사자료를 통해 일본 방어력 운용계획체제를 알 수

있다. 일본 자위대 작전집단체계의 ‘다목적군 및 군사행동지휘체계의 조직’이라는 88작전집단 계획에 따르면, “북방영토의 무력점령 전술의 기초는 기습공격으로 최단시간 내에 북방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며, 쿠릴열도 전체의 귀속문제를 최종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북방영토에 있는 적군의 주력이 이투루프에 주둔 중인 바, 우선적으로 주력을 일소한다는 과제에 따라 1차 집단을 그곳으로 파견하고, 그 후 쿠나시르를 점령하기 위해 도호쿠[東北] 지역에서 진공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북방영토 반환을 위한 군사행동의 『군지연구(軍事研究)』 지 특별판, 도쿄, 1986, No. 7, 27쪽, 71의 14쪽에서 인용].

만약 남쿠릴의 일부일지라도 도쿄의 권리주장이 만족될 경우, 그 즉시 그곳에 위에서 언급한 탄도미사일방어체제와 대잠방어체제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상대로 배치될 것임을 예상하기에 이론적으로 힘들지 않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알래스카, 알류산 그리고 하와이군도뿐만 아니라, 남쿠릴에도 배치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미국은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극동에 배치된 현시점에서 유일하고 현실적인 억지요소인 전략 핵로켓의 발사지점과 인접한 곳에서 자신의 미사일방어체제로 태평양 상공과 우주공간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게 된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위해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자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 그런 종류의 무기 배치에 적극 참가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소를 피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증명해준다.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쿠릴열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뿐만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태평양 북서지역과 극동 전

체 지역에서 ‘힘의 중심’으로서 러시아가 무력화됨을 의미할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 극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일본과 미국의 군사력이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군사·정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편리한 교두보가 형성될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박사와 기자 그리고 과학아카데미 회원과 최하 소장 계급까지의 군인 등으로 이루어진 총 95명의 저명한 공동저자들이 준비한 지정학적 전망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이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에 대한 대외정책적 위협을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34의 91쪽].

“러시아 대외정책의 위상 약화, 한층 심화된 외교와 경제위기는 일본 보복주의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쿠릴암맥의 도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때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을 포함하는 서구가 일본 측에 가담할 것이고, 무력시위를 통해 자신의 친일 자세를 강화할 것이다. 국경분쟁이 전적으로 가능하며, 그 분쟁이 러시아와 일본 혹은 러시아와 반러 서구동맹 간의 제한적 군사충돌로 발전할 수도 있다.

새로운 러시아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향하는 지전략적 출구를 유지하는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와 일본 이익 간의 전통적 대립을 심화시킨다. 쿠릴열도 수역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러시아가 마지못해 포기하는 것은 극동지역 ‘세력 중심’으로서의 러시아가 무력화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 결과 ‘제3국’(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의 군사주둔용 지전략적 공간이 러시아의 국경과 가장 인접한 곳에서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전략미사일탐재 원

자력잠수함 기지와 전투대상수역으로 전개하는 태평양함대 소속 러시아 전함의 항로를 미·일 해군이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쿠릴 지역은 러시아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군 지도부의 견해에 따르면[71의 122~124쪽 참조], 쿠릴열도 중에서 이 지역은 면적이 크고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며, 외국 선박이 태평양에서 오호츠크 해를 거쳐 하바롭스크 주와 연해주로 입항할 때 러시아의 자연경계선이 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연방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이 작은 지역이 러시아 대륙의 방어구역을 수백 km나 확장시키며, 캄차카에 위치한 러시아 군사기지에 안전하게 보급품을 조달하고 오호츠크 해역과 상공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남쿠릴을 일본에 양보하면 비상시 쿠릴열도를 따라 대잠선을 전개할 때, 태평양에서 러시아 전략해군(전략미사일잠재 원자력잠수함)의 전장수행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그 외에도 남쿠릴은 그 길이상으로도 러시아 태평양해군과 공군의 전진보급거점을 설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계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상실은 오호츠크 해로부터 (부동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향하는 출구에 대한 통제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며,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군함은 물론, 전략물자 수송용 선박을 포함한 러시아 민간선박의 연중 자유로운 해협 통행이 힘들게 될 것이다.

이 도서는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외해로 나가기 위해 오호츠크 해에서 전개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의 남쿠릴 상실은 일본의 방어 작전 계획 수립에 포함된 비상사태 발생시, 이곳의 러시아 해군이 태평양으

로 전개할 수 없게 되면서 쿠릴열도의 나머지 도서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잠재적 적군에게 심각한 우월권을 제공함으로써 감차카 방어와 해군 전략핵 전력의 전투수행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는 미일의 육·해군 군사협력의 발전에 따라 홋카이도가 위에서 언급한 쿠릴열도 상륙 작전계획에 맞게 현대화되고 있는 일본 군사력의 전개를 위한 주요 군사교두보로 변화된 상황하에서 발생할 것이다.

일본에 남쿠릴을 양도하면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전력이 두 개의 고립된 부분으로 분리되고, 부동해협을 통해 외해로 출항할 수도 없게 되며, 러시아의 잠재적 적국이 오흐츠크 해의 러시아 연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북방영토’ 반환운동 뒤에는 일본의 현실적인 군사적 목적이 숨어 있다. 남쿠릴을 보유하지 못한 일본은 북부지역 방어 및 비상사태 발생시 러시아 극동영토의 다른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 수립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 지역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인 만큼 일본에 남쿠릴을 양도할 경우 그 지역에 미일합동군의 새로운 전진배치선이 설정될 것임을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호협력과 안전에 관한 1960년 미일조약 제4조에 의거하여 일본 영토는 물론, 극동 전 지역이 이 조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따라서 일본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더구나 제6조에 의해 미국의 육·해·공군은 일본 내의 시설과 일본 영토 이용권을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았다[18의 225~226쪽]. 일본에 남쿠릴을 양도할 경우 일본 헌법과 다른 법률들이 그 지역에 적용될 것이다. 일본 헌법 제98조는

일본은 자신이 체결한 모든 국제조약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쿠릴 지역 및 그곳과 연한 오호츠크 해 그리고 태평양의 수역에서도 상호협력과 안전에 관한 1960년 미일조약이 적용될 것이다.

쿠릴열도의 일부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으로 인해 조성된 러시아의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시키고자 ‘1956년의 소일선언과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문제’라는 주제로 2001년 9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의회 청문회가 열렸다. 이 청문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소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 일본연구센터의 대표 글레브(Г. В. Глеб)는 러·일 간의 영토문제가 지닌 군사전략적 측면을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규명했다[11의 58~59쪽].

미·일 군사협력 차원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진기지에 일본 군사력의 작전과 전투준비 및 미군 주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활성화될 것이다.

최근 미·일 지휘부는 소규모 훈련들을 대규모 합동훈련들로 통합시키고 있다. 이 훈련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통합작전으로 진행된다. 이런 대규모 합동훈련에는 ‘카이엔(Кайэн)’이라 불리는 해군훈련, ‘소엔(Соэн)’, ‘코우프 노트(Коуп Норт)’, ‘킹 스워드(Кинг sword)’ 등으로 불리는 공군훈련, 육군의 ‘야마사쿠라(Ямасакура)’, ‘오리엔트 실드(Orient Shield)’ 그리고 일본의 연례 훈련인 ‘북방에서의 특별기동’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군의 전투행동을 예정한 미·일 군사훈련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홋카이도에서 실시되는 ‘북방에서의 특별기동’이라는 하절기 훈련에는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 해병대 일원을 포함하여 일본열도에 주둔 중인

미군 작전 그룹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 북부에는 가장 강력한 일본군이 배치되어 있다. ‘전진선’ 개념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이 일본열도에서 상당 거리 떨어진 곳에서도 군사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위 개념의 범위 내에서 북부지역 군사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이 부여되고 있다. 북부에 대규모 부대가 창설될 예정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미 완료되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북부군에는 사거리 150km의 대함미사일 SSM-1이 배치되어 있다. 이 미사일 장비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위치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만약 남쿠릴에 이 장비를 배치할 경우, 러시아군은 비상상황시 작전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일본군은 일본의 북부에 탱크 부대의 60%까지 집결시킬 수 있다.

북부군에는 3개 보병사단과 1개 탱크사단, 1개 독립탱크연대, 1개 포병여단, 1개 지대공미사일 ‘호크(Hawk)’ 여단, 1개 공병여단, 1개 육군항공대대, 병참부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부군 연합부대와 단독부대들이 28개의 대규모 주둔지에 배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홋카이도의 치토세[千歳]에는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가 있다.

남쿠릴을 일본에 양도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태평양 작전지역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일본은 쿠릴열도에서의 지속적인 비무장화와 관련하여 책임 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병력 감축이라는 발언은 현재 정원 내에서 북부 중인 병력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 방위청 산하 부대들의 병력 미충원율은 약 3%다.

러시아 시민 중에는, 얼마 전 자민당 지도자 오자와 일본 총리가 (중

국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로) 발언한 ‘다량의 핵무기 제작’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남쿠릴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 경우 사할린과의 인접지역에 핵무기시설 혹은 사용 후 핵폐기장이 배치될 것인바 사할린 주민은 그것을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일본에서의 핵무기 제작은 아시아태평양 북동부 전체의 안보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열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한다는 사실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만을 고려하면 양도될 남쿠릴열도가 미군의 재배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치는 러시아 국경 부근 야우스베츠[矢臼別] 훈련장에서 미국 해병대가 훈련한 사실에 이미 불안해하고 있는 사할린 주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남쿠릴 지역은 일본 정부에 의해 오키나와에 위치한 미국 군사기지의 이전 부지로 이용될 수도 있다. 미국 펜타곤은 자국 부대의 재배치를 위해 일본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일부 시설과 지역의 할지를 일본 정부에 강청하고 있다. 즉 미국은 1997년 전술훈련을 시행하고, 미 해병대 소속 부대가 러시아 쪽을 향해 155mm 곡사포의 전투포격을 실행하기 위해 러시아 국경 및 남쿠릴 지역과 인접한 홋카이도 북부의 야우스베츠 훈련장에 있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시설 중 일부를 제공하려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1996년 4월에 21세기를 목표로 조인된 안보에 관한 미일공동선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병력이 10만 명으로 증강될 계획이었다. 따라서 남쿠릴의 대일 양도와 동시에 미·일 연합부대의 군사훈련 활동지역이 확대될 것이다.

태평양 연안에서 러시아의 군사전략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쿠릴열도는 극동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유일한 해상운송 노선이자 관문이다. 물론 캄차카도 출구가 될 수 있으나, 이곳을 통한 화물의 유통량은 그 지역의 경제 규모 및 러시아의 아시아 대륙에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항공교통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떨어진다. 쿠릴열도에 형성된 해협들이 러시아 영해 중에서 유일하게 태평양으로 향하는 출구다. 둘째, 태평양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해주는 부동해협들이 오직 남쿠릴열도에만 있다. 셋째, 이런 자연적 요소들로 인해 이 해협에 대한 통제는 동해와 호호츠크 해 연안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 나호트카(Находка), 보스토츠니(Восточный) 등의 대규모 항구를 통한 화물유통의 통제를 의미한다. 일본에 남쿠릴을 양도하면, 러시아 해군의 함대, 상선단 그리고 여객선단은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출항할 수 없게 된다. 태평양을 거쳐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유일한 관문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이 러시아 극동과 접한 태평양 지역을 전략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일본 영해를 통과하는 러시아 선박들의 통상적인 예를 볼때, 남쿠릴군도 내의 해협이 일본의 영해가 될 경우, 일본한테 통행허락을 받고 통행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이 선박들의 통과 횟수와 통과 화물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되고, 세계적 경쟁이 가열되어 시장쟁탈전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런 요소들을 이용할 것이다. 다섯째, 호호츠크 해의 남쪽에서 남쿠릴과 접하고 태평양 수역과 연해 있으면서 매우 값비싼 어족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희생되는 반면,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수십만 km²나 확장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 기업의 해양생물자원 어획량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남쿠릴과 오희츠크 해 남부수역에서 어류를 비롯한 해산물 채취를 위해 일본의 허가를 받아야만 될 것이다.

‘1956년 소일선언과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안전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러시아연방 교통부 대표 예고로프(М. И. Егоров)는 이런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성격 규정했다[20의 109~110쪽].

“남쿠릴열도의 귀속문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남쿠릴열도를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해운을 포함한 교통은 언제나 정치와 경제 양자 간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통로로서의 쿠릴의 협들은 항상 극동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남쿠릴열도의 상실은 10만 km²가 넘는 수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곳 어로수역의 자동적인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수역의 면적은 사할린과 쿠릴의 육지면적을 합한 것보다 더 넓습니다.

이 수역은 세계의 해양 중에서 가장 풍부한 생산성을 갖춘 곳에 속합니다. 이곳의 어류 어획량과 무척추동물 및 해조류의 채취량은 연간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어족자원의 가공물 가격은 훨씬 더 비쌉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해양생물자원은 재생되는 것이어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사실상 영구 자원이 됩니다.

남쿠릴열도의 어획량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연간 극동지역 연어 총 어획량의 10~2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남쿠릴은 사할린의 남동부와 함께 연어 인공양식에 가장 적당한 기

후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의 경험과 러시아의 일부 경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태평양산 연어 양식업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극동 연어떼의 대부분을 이루는 고르부샤(Горбуша)와 케타(кета)의 산란 회귀로가 쿠릴의 남부와 중부에 형성된 해협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쿠릴에 형성된 해협은 독특한 통과지점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을 통제하지 못하면 향후 극동지역 연어사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집니다.

쿠릴에 형성된, 수심이 깊고 결빙되지 않는 해협들이 지닌 수문학적 특징을 고려할 때, 극동의 해상교통에서 태평양과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들로 향하는 편리한 출구인 이 해협들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국제상황이 복잡해지고 군사적 대립상황이 격해질 수도 있는 조건 속에서 남쿠릴열도의 귀속과 그로 인한 쿠릴해협들의 귀속은,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해협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절기에는 쿠릴에 형성된 모든 해협들이 항행에 이용됩니다. 태평양함대의 군함은 물론, 교통선, 어선, 학술조사선, 스포츠용 선박 등 모두 이 해협을 이용합니다.

사할린에서 채취된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관해서도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바, 쿠릴의 해협들 이외에는 이 유조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항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 중부와 북부 쿠릴 구역 그리고 라페루즈해협의 결빙과 부빙들로 인해 쿠나시르, '예카테리나', 프리자

(Фриза) 등 남부에 있는 3개 해협이 의미가 몇 배나 더 커집니다.

1~4월까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주 그리고 사할린과 마가단(Магадан) 등지의 항구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상가르(Сангар)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연히 위에 언급된 남부의 3개 해협 중의 한 곳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북방영토’가 일본에 귀속되고 이 해협들이 일본의 내해가 되어 그곳의 통행이 유료화되거나 제한될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고 계산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시점에서 러시아를 위한 남쿠릴의 지정학적 그리고 전략지정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980~1990년대의 경계에서 소련 해체로 인해 러시아연방은 21세기에 자신의 북서부, 서부, 남서부, 남부 국경에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지정학적 구조와 접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구조 속에서 러시아는 발트 연안과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통해 각각 발트 해와 흑해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상실했으며, 과거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과 발트 3국이 나토(NATO)에 가입했다. 미국은 군사기지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과거 소련의 공화국이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로 전진해 들어왔다. 그 결과 현재의 러시아(러시아연방)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북지역에 갇히게 되었다. 러시아연방의 서쪽 국경은 미국과 나토로 불리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 견고하게 통제되고 있다. 북빙양의 러시아 연안과 쉬지 않고 이동하는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지역을 제외할 경우, 외해로 향하는 러시아의 자유로운 출구로는 남쿠릴열도와 그 안에 형성된 부동해협이 제공하는 태평양 연안만이 남게 된다. 이 출구는 극동, 태평양과 북극 지역에서 미국의 세계정책에 맞서는 전진지이다. 남쿠릴이 일본(그리고 미국)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 순간, 극

동에서는 새로운 지정학적 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그로 인해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상황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부의 지정학적 국경이 차단되면, 러시아의 지정학적 원형 고리는 폐쇄될 것이다.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구의 지정학적 블록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구했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대륙해양열강에서 열악한 기후 조건에 발전과 지정학적 기동을 위한 역량이 제한된, 독특한 대륙열강으로 점차 변할 것이다.

러시아연방과 남쿠릴의 국가안보 문제로 2001년 9월 유즈노사할린스크와 2002년 러시아연방 하원에서 개최된 의회청문회에서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하원 산하의 지정학위원회 대표인 샤바노프(A. A. Шабанов)는 남쿠릴의 지정학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즉 “주된 문제는 전략지정학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입니다. 1951년부터 소련과 대립하다 지금은 러시아를 상대로 같은 대립상태에 있는 미국인들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국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핵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발의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행동에 소련 정부가 어떤 비대칭 대응을 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 동부와 서부국경에서 소비에트 원자력잠수함의 지속적 초계활동이 비대칭 대응이었습니다. 이런 초계활동의 출구가 우리의 태평양 연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모든 쿠릴 문제는 곧 영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무부는 이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연히 실수를 배가시킵니다. 사실상 1956년의 선언은 그 선언과 모순되는 문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련 외교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일본의 비무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영토에서의 미군 주둔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1960년대에 채택된 소비에트 외교가 실행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93의 52쪽]. ‘북방영토’ 문제에서 일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부동해협을 차단하는 전진초소와 우리의 극동국경에서 형성 중인 체제에 대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항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실로 명백한 것은, 오직 그런 이유에서 쿠릴이 미국인들에게 중요하고, 일본은 그런 쿠릴의 소유자로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용주의, 힘 등의 이런 구조는 명백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자본과 무기가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본과 자원이 세계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어떻게 흘러들어 가는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될 때, 철저하게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의 삶 역시 통제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남쿠릴 문제가 최고의 지정학적·전략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96의 66~67쪽].

안전보장 분야에서 러시아연방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규정하는 주요 정책문서인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개념’[이것과 이후의 것은 모두 35번 참조]에서 안보는 ‘러시아연방 내 모든 삶의 활동 영역에서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러시아연방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자 주권의 소유자인 러시아연방 제 민족의 안보’로 이해되고 있다. 다음에 인용된 자료는 러시아의 국가안보에서 남쿠릴열도가 지닌 지정학적 그리고 방어적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특징지어 준다.

이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개념’에서는 “일련의 국가들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약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러

시아의 국익은 경제, 국내정치, 사회, 국제, 정보, 군사, 국경, 생태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개인, 사회, 국가의 균형 잡힌 이익의 총체다. 이런 이익의 성격은 장기적이며, 국가 대내외정책의 주요 목표와 전략적 과제 및 현재의 과제를 규정해준다”는 점이 뚜렷하게 명시되었다. 또한 “국익은 항구적인 러시아의 헌법체제, 주권 그리고 영토보전에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것은 ‘헌법’에 의거해서 러시아 국익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다양하게 계획된 노력이 필요한데, 그중 국제 분야의 국익은 ‘위대한 열강 러시아의 주권 보장, 지위 강화’에 있으며, 군사 분야의 국익은 ‘러시아의 독립, 주권, 국가적 통일성과 영토보전, 러시아를 상대로 한 군사 침략의 예방’으로 구성되고, 국경 분야의 국익은 ‘러시아연방 국경선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정치적·법적·조직적 그리고 여타 조건을 형성’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특히 남쿠릴 지역에서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위 약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고, 극동에서 러시아의 국익과 국가적 통일성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2장

러시아 국가안보를 위한 ‘쿠릴 문제’의 경제적 측면

남쿠릴 열도를 일본에 양보할 경우 야기될 부정적인 결과들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일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러시아 국가안보의 입장에서든 매우 중요한 문제다.

모든 국가에게 미래의 주요 자산은 바로 토지다.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지구의 토지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거주에 적당한 모든 지역의 의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쿠릴열도(소쿠릴암맥, 쿠나시르, 이투루프)의 총면적은 8,600km²로, 쿠릴열도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이 면적은 사이프러스, 레바논, 자메이카 등의 면적과 유사하며,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작다(2부 1장에서 인용된 다른 정보에 따르면 남쿠릴열도의 면적은 5,036km²와 5,147km²인데, 이 역시 거기서 인용된 쿠릴열도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그 외에도 남쿠릴열도 지역은 자연, 휴양, 영토자원이 매우 독특하게 조합된 곳이다. 또한 2001년 초의 현황에 관한 사할린주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 14,100~15,700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라는 사실에도 유의해야만 한다(1990년 초에는 25,000명이 거주했다)[80의 216·222쪽].

이런 자원의 경제적 잠재력은 거대하다. 쿠릴은 실로 다양하고 유용한 광물자원의 저장고다. (여기와 이 뒷부분에서 남쿠릴열도의 광물원료기지를 묘사하는데 ‘새천년의 경계에 선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광물원료기지’에 게재된 실제 자료를 자주 인용했다[50번 참조]).

사할린 지리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쿠릴열도에 있는 귀금속은 은을 함유하고 있는 금광석 산지에서 채굴된다. 남쿠릴 금광석 산지의 금 잠재 매장량은 사할린의 잠재 매장량과 비슷하다. 이 지역의 전망이 밝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금은 대쿠릴 섬 호(弧) 광산(鑛床)의 주된 매장광물이다. 관심을 가질 만한 금광석 광화(鑛化)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서 이미 발견되었다. 일본은 1937~1943년에 집중적으로 금광석 발굴 작업을 추진했으며, 가장 풍부한 광맥을 선택적으로 개발하여 원광석을 광물선광 공장으로 운반했다.

남쿠릴 내에는 두 개의 금광석 지역이 있다. 즉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지역에 각각 16개와 8개의 광산이 있다. 그 총량에 따라 가장 전망이 밝은 곳은 북쿠나시르 복합 광산, 남쿠나시르 구역, 북이투루프 복합 광산 등이다.

금과 은의 산지는 쿠나시르에서 발견되었다. 북쿠나시르 복합 광산이 쿠릴열도에서 가장 전망이 밝고 충분히 조사된 금광맥이다. 예상 자원량은 북쿠나시르 복합 광산에서만 금 475톤과 은 2,160톤 정도다. 프라솔롭스키(Прасоловский) 산지의 일부 구역에서는 원광석 1톤에 금 함유량이 1kg 또는 그 이상, 은은 5kg 또는 그 이상이다. 셀레늄과 텔루륨은 톤당 250g에 달한다. 프라솔롭스키 산지의 예상 자원량은 실로

상당하여 금 26.6톤에 은 135.4톤이다. 잠재적으로 전망이 밝은 금광은 남쿠나시르 구역이다.

금과 은이 함유된 광상 중에 두 번째로 전망이 밝은 곳은 이투루프 광산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면적 800km²의 북이투루프 복합 광상이다. 이 광상에는 6개의 광산이 포함되어 있다. 북이투루프 복합 광상의 예상 자원량은 금 370톤, 은 2,540톤이다.

대쿠릴의 광상 지역의 총 예상 자원량은 매우 막대해서 금 1,900톤, 은 9,300톤 정도다.

남쿠릴에서 발견된 매장량과 예상 자원량에 대한 가치평가에 따르면 금이 약 12억 달러, 은이 약 34억 달러다(1988년 초의 국제시장가에 따름[5의 2쪽]).

사할린 지리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남쿠릴에는 아연 최대 20%, 구리 최대 12%, 납 최대 15% 등을 함유한 다금속 광물이 매장된 지역이 존재한다. 이들 예상 자원의 총 가치평가 액수는 97억 달러에 이른다[5의 2쪽].

현실적으로 가장 개발 전망이 높은 곳은 쿠나시르 중심지의 발렌티나 호수 지역에 있는 발렌티나(Валентина) 산지다. 일본의 산업가들은 1945년까지 이 산지에서 탐사와 개발 작업을 수행했다.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채광 장소, 즉 완경사 경도, 광산 구조물, 채굴된 광물 더미 등이 이를 증명해준다. 채광 장소에서 접안시설이 갖춰진 해안까지 협궤 철도가 부설되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인들이 이 지역의 전망을 매우 높게 보아 이곳에서 대규모의 채광작업을 진행했음을 말해준다. 쿠나시르에 있는 발렌티나 다금속 광물산지에 있는 주 광맥에 함유된 아연은 최대 14%, 구리 약 4%, 납 약 0.5%, 바륨 최대 20%, 스트론튬 최대

3%, 은은 원광석 1톤당 최대 100g, 금은 원광석 1톤당 최대 2g 등이다. 그 이외의 광물에는 카드뮴, 게르마늄, 인듐, 백금(Platinum), 루테튬 등이 있다. 이 광물산지에서 조사된 아연의 매장량만 해도 18,000톤에 달하며, 구리는 5,000톤이다. 발렌티나 산지에 매장된 광물자원의 총량은 아연 12,000톤, 구리 161,000톤, 납 39,000톤이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지질학 관련 사건 중의 하나는 러시아 학자가 (이투루프 섬에 있는) 쿠드랴프(Кудряв) 화산에서 레늄의 황화물을 발견한 것이다. 광상에 매장된 레늄의 총량은 2.7톤인데, 이를 평균 함유량으로 계산하면 원광 1톤당 211g에 달한다. 그 외에도 레늄이 화산가스 안에서도 발견되었다. 가스 분출량은 연간 2.3톤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화산 가스에서 직접 레늄 정광(精鑛)을 채취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었다. 레늄은 다금속 광물과 금은 광물에도 함유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있는 몰리브덴 광에서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이투루프 섬에 위치한) 노보예(Новое) 황(黃) 산지에서 채굴되는 몰리브덴 광에서의 레늄 함유량은 1.36%에서 최대 4.64%(평균 3.18%)에 달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레늄과 몰리브덴 복합산지의 개발 전망은 매우 밝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우수한 레늄 산지에 존재하는 매장량은 총 1,000톤이다. 지각(地殼)에 매장된 레늄의 양은 금 매장량보다 다섯 배나 적고, 텅스텐의 매장량보다는 1천 배나 적다. 이 광물은 지구상에 극히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만 채광되는 산지가 없다. 레늄은 금보다 훨씬 비싸다. 즉 레늄으로 만든 제품(철선, 호일)의 가격은 1g에 610달러나 한다. 그럼에도 레늄의 수요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 추세인데, 로켓장비 제조업체들이 레늄에 관심을 보인 최근 수년 동안에 특히 더 그렇다. 레늄은 초음속 비행기와 로켓부품에

쓰이며, 부식과 마모로부터 금속을 보호해준다. 2000년 레늄의 전 세계 채굴량은 약 30톤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연간 레늄 수요는 2.5톤 정도다. 러시아에는 다른 레늄 산지가 없다[80의 226쪽].

대쿠릴암맥에 매장된 자연 황은 이투루프에 집중되어 있다. 이투루프에서는 대규모 화산 황 산지(노보예)의 개발이 준비된 상태다. 이 구역 중 한 곳(서부)에서만 개발된 자연 황의 산업용 매장량만 해도 5백만 톤이 넘는다. 따라서 연간 20만 톤의 과립형 황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에 충분하다[80의 226쪽]. 이 지역 광물에 있는 자연 황의 평균 함유량은 24.3%다. 이 구역은 노바야(Новая) 강과 초르나야(Черная) 강 양편의 깊은 계곡 사이에 있는 날카로운 봉우리로 된 분수계라서 노천광 형태로 광물을 채취하기에도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황의 예상 자원은 남쿠릴에서만 316만 톤에 달한다[80의 223번]. 이 원료는 러시아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자원이다. 이 자연 황의 평가 금액은 약 56억 달러에 달한다[5의 2쪽].

매장된 광물자원(금, 은, 아연, 구리, 납, 철, 바나듐, 마노, 황)의 총 평가액은 산화철광물을 제외하고도 국제시장가로 최소 44억 달러에 달한다[4의 2쪽 참조].

이곳 지층에 매장된 주요 광물자원은 지구 희귀요소가 혼합된 층적 광상(沖積鑛床)의 형태로 나타나는 산화철이다.

쿠릴열도에서의 지리탐사와 지리측량 작업과정에서 오호츠크 해와 태평양 연안을 따라 형성된 수십 개의 연안·해양 층적광상이 발견되었다. 사할린 지리학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총 매장량 및 철과 티타늄의 함유량에서 가장 대규모의 광상은 이투루프 섬에 위치한 프로스토르(Простор), 루차르스코예(Ручарское), 레이돍스코예(Рейдовское), 제르

칼니 플라시(Зеркальный пляж) 광상과 로크(Рок) 만의 광상이다.

이 모든 티탄철광과 자철광(magnetite)의 연안·해안 층적광상의 특징은 지질학적 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이다. 모든 층적광상은 해변에서 최근 형성된 지층, 해안의 제방이나 모래여울 등과 일치한다. 바다모래는 육지 방향으로 밀려오면서 20~25m 높이의 모래 언덕으로 바뀐다.

위 광물의 양과 모래 속에 함유된 양, 철과 티타늄의 매장량에 따르면 가장 전망이 밝은 곳은 이투루프 섬이다. 이 섬의 특징은 대·소규모의 만(灣)이 많다는 점인데, 그 만의 연안을 따라 가장 풍부한 티탄철광과 자철광 지층이 분포되어 있다. 쿠릴열도에 매장된 전체 철과 티타늄의 80%가 이 지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투루프의 북쪽에는 최대 규모의 자철광과 티탄광 층적광상들이 있으며, 쿠릴열도에서 잘 알려진 지층 중에서도 가장 큰 철광층이 분포해 있다.

사할린 지리학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루차스코예 산지가 쿠릴열도에서 가장 대규모며, 지질탐사를 통해 가장 잘 조사된 곳이기도 하다. 이 산지의 지질학적 구조는 쿠릴열도에 있는 자철광과 티탄광의 가장 표준적인 연안·해양 층적광상이다.

산지는 이투루프의 북동쪽 끝 부분인 베티로보이(Ветровой) 지협인 오흐츠크 해 연안에 있다. 가채매장량의 계산에 포함된, 연안지대를 따라 형성된 광상의 길이는 약 5.5km다. 모래 지층의 폭은 양측 끝에서 100~200m이며, 중간 부분에서는 최대 600m다. 산지의 총면적은 약 3.5km²다. 자철광과 티탄광에는 오산화바나듐(V₂O₅)도 존재한다.

로차스코예 산지의 모래를 선광(選鑛)하려고 개발된 계획에 따르면 철 57.5~59.7%, 이산화티탄 9.8~10%, 오산화바나듐 0.41~0.43%가 함유된 티탄자철광의 선광을 얻을 수 있다.

지질학적 그리고 기술적 연구를 완수하고 나면, 쿠릴 층적광상은 흑색금속, 즉 고품질 바나듐주철을 생산하는 유력한 광산·원료 공급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티탄자철광산 매장량의 경제적 잠재력은 다음과 같이 예상 평가된다.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지역 광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투루프의 프로스토르(Простор) 만에 위치한 티탄자철광 층적광산에서 발견된 매장량만 해도 모래로 2억 4,880만 톤인데, 그중에서 4,880만 톤이 해변 지역에 있고 1억 7천만에서 최대 2억 톤까지는 이 광상의 연안·해양 부분에 매장되어 있다. 게다가 남쿠릴열도는 물론, 이투루프에 있는 티탄자철광 모래의 자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발견된 위 매장량 중에서 3,731만 톤의 선광을 추출해낼 수 있으며, 그것의 가치는 44억 7,700만 달러다. 이 중에서 얻을 수 있는 티탄자철광과 티탄철광의 선광은 각각 2,985만 톤과 746만 톤이며, 금액으로는 1992년의 국제시세로 각각 29억 8,500만 달러와 14억 9,200만 달러였다(톤당 각각 100~120달러와 200~250달러).

채광과 제련 과정에서 일상적인 각각의 정련을 거치면, 티타늄 원료에서 추출한 생산물 가격이 여러 배 상승한다. 광물의 정련가공 이후에는 1,791만 톤의 철금속 가루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가격은 21억 4,920만 달러다. 또한 373만 톤의 금홍석(金紅石)을 얻을 수 있으며, 가격은 83억 1,300만 달러다. 이 가격은 1992년의 국제시세(1톤당 각각 1,200달러와 2,230달러)에 따른 것으로, 전체 가격은 298억 1천만 달러다.

이투루프의 프로스토르 만에 있는 단 한 곳의 산지에서 채굴된 티탄 원료의 최종 가공단계에서 223만 톤의 티탄금속이 추출될 것으로 보이

며, 그 가격은 2조 2,300억 달러다. 또한 제련산업에서 합금혼합물로 사용되는 오산화바나듐은 13만 8천 톤에 가격은 1992년 국제시세로 7억 8,500만 달러가 된다(즉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kg에 1천 달러, 1톤에 6천 달러). 또한 약 7천만 톤의 건축용 모래가 생산된다. 이 외에도 티탄 원료의 마지막 정련가공 단계에서는 지구 희귀요소 중에서 매우 값비싼 귀금속으로 원자력 산업에서 사용되는 지르코늄이 나온다.

이와 같이 남쿠릴열도의 일원인 이투루프에 있는 산지의 티탄자철 광 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종 생산물 중에서 티타늄, 철분말 그리고 바나듐 등 금속류(지구 희귀요소는 계산하지 않는다)만으로도 총 가격이 1992년의 국제시세로 2조 2,522억 7,700만 달러다.

티타늄은 21세기의 금속이라고 한다. 일본, 일본 자본가와 사업자들은 ‘논쟁 중인’ 도서들을 획득하여 티타늄과 다른 광물자원, 생물자원들을 자국의 재산으로 만든 다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최소한의 지출로 일본 경제의 이익을 위해 그 자원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들의 이익은 자연·경제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현재 이 소구역의 경제적 잠재력은 육지뿐만 아니라, 200해리 경제수역과 도봉(島棚)을 포함하는 인근 해역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가치평가다. 즉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200해리 경제수역의 면적은 약 21만 km²에 달한다. 이 중 소쿠릴암맥 주변이 약 10만 km²이며,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주변이 11만 km²다. 유럽에는 이보다 작은 국가들이 많다. 모든 평가에 따르면 3대 열강의 극동문제에 관한 1945년 2월 11일자 얄타협약으로 소련(러시아)에 편입된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 주변 경제수역의 면적은 약 1백만 km²다.

1990년대 초반 세계의 어획량과 어류생산품은 매년 약 7천만 톤에

달했다. 그중 1991년 기준으로 소련의 비중이 1,100만 톤인데, 위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전체의 10%가 넘었다(비교를 위해 인용하면, 당시 발트 3국의 총 어획량이 약 34만 톤 정도였다).

러시아수산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소련 붕괴와 국가 전반의 경제적 와해로 인해 1994년 러시아연방에서의 어류 및 해산물 총 어획량은 약 340만 톤 정도였다. 이에 러시아 수산업선단의 입장에서 극동연안의 역할이 급격히 성장했다. 즉 1994년 기준으로 러시아 총 어획량의 70~80%, 수치로는 270만 톤 정도가 극동에서 생산되었다. 2000년 남쿠릴 어로구역에서의 어획량은 80만 톤이었는데, 그중 소쿠릴암맥 해역에서 48만 톤,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해역에서 32만 톤을 어획했다. 러시아는 남쿠릴을 상실할 경우 총 5백만 톤이 넘는 어류와 해산물 보유량을 잃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보유량은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경우 최소한 1.5배 더 증가할 수 있다[80의 225쪽]. 또한 이 해역에서의 지속적인 잠재적 생물생산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남아 있게 될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남쿠릴열도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그 자원이 지닌 가치에 대한 고정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소쿠릴암맥과 쿠나시르 사이의 수역은 어족자원의 재생산에 특히 유리한 수생 생물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가장 짧은 산란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비싸면서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용되지 않고 있는 연어 어족이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1980년대 남쿠릴암맥의 200해리 경제수역에서 연어과에 속하는 가장 비싼 어종 그리고 무척추동물과 해산물의 매년 어획량이 최고 50만 톤에 달했다. 이런 어종에는 콩치, 정어리(иваси, iwashi), 연어류, 각종

게, 오징어 그리고 기타 어류가 있다. 이곳에서 매년 잡히는 수산가공업 원료용 어종의 국제가격은 총 40억 달러 정도다. 이처럼 이곳의 해산물은 러시아 국민을 위한 식료품일 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의 원천이다.

남쿠릴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가공장이 있다. 그에 더해 남쿠릴의 200해리 경제수역 중 일부가 오흐츠크 해에 들어가고 사할린 해 역시 러시아 어족자원을 제공하는 수역인 만큼, 러시아 경제에서 이 수역의 어족자원과 다른 자원이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더 크며, 그런 점에서 남쿠릴 구역이 어업을 위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향후 이 지역에서의 양식업 및 미역 생산업 전망이 밝으며, 러시아에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적조류 산지가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생물공학용 자원은 전체 극동지역에서 사용되는 양의 89%를 차지한다[72의 40쪽].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1세기는 생물공학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미 세계 생약제조공장의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의 소유로서 수입기준으로 군사산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열도의 도봉은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 매장지다.

사할린 주 지리과의 자료에 따르면 탄화수소 종류의 원료는 대쿠릴 암맥과 소쿠릴암맥 사이에 위치한 도봉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1993년 10월 13일 열린이 서명한 도쿄선언의 규정이 실현되면, 소쿠릴암맥이 일본에 양도될 것이다. 과거에는 쿠릴열도의 도봉에 석유나 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진탐사작업으로 입수된 결과물, 홋카이도 경계에서 탄화수소 지층의

발견 그리고 태평양 연안 정면의 일부 다른 만(灣)들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석유 및 가스탐사 작업 등으로 남쿠릴열도 해역의 도봉에 석유와 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할린 지질학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대 규모이자 근시일 내에 채굴이 가능한 곳은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두 섬의 태평양 방향 연안에서 정확히 동쪽에 위치한 스투딘노쿠릴(Срединно-Куриль) 협곡이라고 한다. 이 협곡의 면적은 약 1만 4천 km²이며, 상부 침전물의 두께는 최대 5.5km에 달한다. 현재 스투딘노쿠릴 협곡의 총 예상 자원량은 1km²당 평균 자원밀도가 3만 1천 톤일 때, 3억 8,600만 석유환산톤으로 평가된다.

만약 위 여울에서 향후 다른 천연광물자원이 발견되어 개발될 가능성을 계산한다면, 이 지역에 위치한 도서들의 경제전략적 의미는 극동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사할린 주 행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티탄자철광을 제외한) 광물자원, 어족자원 그리고 해양지질 자원의 총 매장량이 870억 달러를 상회한다 [72의 4쪽].

남쿠릴은 뛰어난 휴양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곳에는 실질적으로 원시기의 생태가 남아 있으며, 가치가 높은 광천수와 치료용 진흙 등이 있어서, 치료와 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다. 또한 관광과 휴양상품을 만들고, 극동 노동자들을 위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화벌이에 이용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남쿠릴의 기타 자원들 중에서 삼림자원, 특히 건축용 목재로 이용하

기에 좋은 쿠나시르의 삼림자원, 모피용 짐승, 조류, 지역 특산 건축자재 등이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할린 지질학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쿠릴열도의 지하에는 다양한 건축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마그마, 변성암(變成巖), 퇴적암(堆積巖) 등 실질적으로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 최대 규모로 매장되어 있다. 이 지역의 독특한 지질구조 덕분에 여러 종류의 천연 건축자재가 생성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점토류(점토, 모래가 섞인 점토), 이회토(泥灰土), 석회암, 경석(輕石), 화산암 등이다. 이런 건축용 광물 원료의 확인된 부존량과 예상 자원량은 현재 수요는 물론, 먼 미래에 늘어날 수요를 계산해도 충분하다. 건축용 석재와 모래의 산지는 쿠릴 지역(이투루프)과 남쿠릴 지역(쿠나시르)처럼 접근이 힘든 곳에서도 발견되었다. 그 덕분에 현지 건축회사들은 현지에서 천연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경석은 가벼운 콘크리트와 화산암 벽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천연 경량충전제로 주목받고 있다. 사할린 주 내에서 경석은 오직 쿠릴열도에만 있다. 특히 대규모 지층이 이투루프의 베티로보이(Ветровой) 협곡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십 km²의 크기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며, 그 두께가 수백 m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자원량은 무한하며, 수요에 관계없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남쿠릴의 다양하고도 유용한 광물 중에서 지하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지하수는 가장 이용이 쉽고 중요한 원료다. 첫째, 이것은 깨끗한 음료용 수원이다. 둘째, 치료용과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광천수다. 셋째, 이것은 호(好) 요오드성 산업용수로 개발하면 전망이 밝다. 판매용 생수와 요양용으로 유용한 이 광천수의 예상 부존량

은 1일 4만 4천 m³에 달한다[80의 226쪽].

최근 난방과 전기에너지의 대체원으로 온천수와 증기열수력이 전문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쿠릴의 지하에 매장된 이런 열에너지 이용은 최신 사업이다. 자연은 이 오지에 전통적 열에너지 연료인 석유, 가스, 석탄이 매장된 대규모 지층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상해주었다. 새롭고도 막대한 양의 지열 에너지는 전통적인 화석연료와 경쟁할 수 있다. 가열된 온천수의 예상 자원량은 매일 8만 6천 m³이며, 물과 증기의 혼합물은 매일 8만 6천 톤에 달한다. 이것은 최대 6~8만 메가와트의 발전능력에 달하는 양이다 [80의 226쪽]. 쿠릴에서 공업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열에너지 자원은 현재의 화산활동 및 그에 따른 열수력활동과 관련이 있다.

사할린 지질학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쿠릴열도에는 두 개의 지하담수원이 존재하며, 부존량도 입증되었다. 즉 쿠릴(이투루프) 수원과 (쿠나시르의) 테라사(Терраса) 수원이 그것이다. 사할린과 쿠릴의 지하에는 유기성분의 물을 제외하고는 이미 알려진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물이 존재한다. 쿠릴열도의 지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광천수는 최근의 화산활동 시작과 관련이 있다. 분화구, 칼데라 그리고 경사지나 활화산의 산기슭에 있는 깊은 열하(裂隙)와 같은 곳에서 뜨거운 광천수가 분출된다. 이 물에는 화산광의 침출과정에서 철, 칼슘, 나트륨, 붕소, 플루오르 그리고 치료에 특효를 지닌 다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용으로서의 실용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현재는 (이투루프의) 고랴치예 클류치(Горячие ключи), 자르키예 보디(Жаркие воды) 그리고 (쿠나시르의) 고랴치 플라시(Горячий пляж) 등지의 극히 일부 수원에서 온천용으로 한정된 양만 이용되고 있다.

남쿠릴 지역에는 치료용 진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사할린 지질학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쿠릴열도에는 (쿠나시르에) 유사화산(열수, 熱水) 유형의 지층 3개와 침전물(유기부식) 유형의 지층 2개가 존재한다. 상기 모든 유형 지층의 두께는 최소 0.3m~최대 3m로 다양하다. 알려진 모든 광물 진흙 산지와 개발지의 총 자원량은 1999년 기준으로 쿠릴열도에서만(침전물 진흙) 202만 5천 m³다(쿠릴열도에 있는 유사화산 유형의 자원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 이탄도 매장되어 있다. 쿠릴열도에 축적된 산업용 이탄은 쿠나시르와 소쿠릴암맥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 지질학자들의 정보에 따르면, 쿠릴에 있는 이탄층의 면적은 대체로 500~2,200ha를 넘지 않는다. 쿠릴열도에 매장된 이탄원료의 총 매장량은 5,100만 m³다. 이곳에서 유명한 산지는 쿠나시르에 있는 것으로 매장량이 820만 m³이며, 질론니 섬의 매장량은 1,740만 m³다. 일부 이탄은 그 상태로도 연료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석탄산지가 없는 쿠릴열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탄을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사업의 전망은 무한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탄을 화학 산업과 에너지화학 산업의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열처리과정을 거쳐 이탄에서 코크스, 활성탄, 역청, 밀랍, 부식산(酸), 사료용 효모, 에틸알코올, 상이한 종류의 염료, 합성물질, 플라스틱 그리고 다른 유사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해낸다.

현재로서는 이 모든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의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그것들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도서를 양도할 경우, 그것은 그 도서와 연한 200해리 경제수역 및 그 도서를 둘러싼 도봉의 양도를 의미하고, 그로써 러시아는 막대한 부

와 상당한 규모의 도서자원, 해양생물자원, 광물자원, 전략적 해협 그리고 오호츠크 해가 지닌 자원의 일부를 잃게 된다. 더구나, 남쿠릴열도가 일본 관할로 양도되면, 일본은 자국 주민에게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해 남쿠릴에서의 어획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다. 만약 이 도서가 양도된다면, 러시아 수산업회사(즉 러시아)는 이 해역에서의 어업허가를 받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상황 및 러시아와 극동지역 주민에 대한 수산식량의 공급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 외에도 러시아 선박은 일본에 양도되는 해협을 따라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때도 통과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일본 수산업회사들은 러시아가 남쿠릴열도를 일본에 양도함으로써 일본이 확보하게 될 경제수역에서만 매년 최소 200만 톤의 어류와 어류가공품을 획득하게 된다. 일본이 남쿠릴을 상대로 권리주장을 하는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이 구역에서 러시아의 연간 어획량은 국제시세로 7억 5천만 달러에서 최대 20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현대 기술로 어류를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의 가격은 매년 50~7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남쿠릴열도 해역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 경제거래에서 육지를 제외한 해양생물자원만으로도 최소 220~450억 달러에서 최대 600~1,500억 달러에 달한다[24]. 이게 바로 위 도서를 양도하여 러시아가 겪게 될 장래 해양생물자원의 손실에 대한 전문적 평가다.

이 도서들의 전략적·군사적·경제적 의미는 어마어마하다. 이 수역에 있는 해양의 생물자원과 석유, 가스 그리고 해상(海床)에 있는 망간,

철 응고물 등이 지닌 예상 부존량의 가치를 고려한 예상 손실액의 계산은 현재와 미래(즉 이런 해양자원의 개발이 가능하고 실증되었을 때)에나 가능할 것이다. 순수한 예상 평가에 따르면 남쿠릴 구역에 있는 자연자원의 총체는 각 도서들의 토지가격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외하고도, 최소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치평가는 세계의 자원이 고갈되는 정도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서의 양도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손실(도서와 200해리 경제수역 내의 도봉에서 발견되어, 사용 중인 화석자원과 생물자원 그리고 그 자원들의 잠재적 부존량의 손실, 또한 대륙붕 자원과 휴양자원의 손실, 일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양도된 도서 자체 토지가격의 손실, 해군함대와 상선단을 포함한 다른 측면들)과 양도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상환해야 하는 차관, 일부 기술적 지원 등의 형태)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쉽다. 여기에 생각해볼 것이 있다.

일본에 도서를 양도하여 얻게 되는 ‘상품(賞品)’에 대한 단순하고 어리석은 계산과 일시적 이익은 조만간 러시아에 광대한 물질적·정신적 손실로 되돌아올 것이다. 쿠릴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어족자원과 천연자원이 없다면, 우리는 실로 가난해질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영토를 양보하는 대가로 차관을 도입하여 장기계획에서도, 중기계획에서도, 심지어 단기계획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반면 전쟁도 치르지 않고 행복했다는 기억만 강하게 남을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일본의 영토적 권리주장을 만족시키는 것은 현재와 멀지 않은 미래의 세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극동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전략지정학적·경제적 지위를 급격히 약화

시킬 것이다. 일본에 쿠릴을 양도하는 행위는 러시아 국내경제와 사회 정치적 상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쿠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관심은 일본의 급속한 발전과 현재의 국경 내부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인구과잉 상태라서, 37만 2천 km²의 영토에 근 1억 3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공간을 확대해야 하는 지금의 일본은 21세기 일본 민족의 생존이라는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 중인데, 영토 확장이 그 방법 중 하나다. 더구나 일본은 ‘분쟁 중인 영토’의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계산했다. 따라서 일본이 ‘무사공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더욱 강력하게 ‘영토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로 당연하다. 현 세대와 후손을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은 자국 경제의 입장에서 ‘수지타산이 맞는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다른 서구 국가들과 동일하게 형편없는 법률가와 외교관을 유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외정책에서 자기 것을 다 내주지 않는다.

러시아 정치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해외차관의 도입은 언젠가는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그 당사자가 정치인이 아닌 장래의 후손들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국가적 문제를 배가시킬 따름이다.

모든 국가의 정상적인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언제나 국익을 위한 정책을 행한다. 민족을 생각하는 현명한 국가 지도자들은 항상 전반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민족주의 성향의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전반적인 이익을 먼저 고려하여 현 세대의 국민과 후손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또한 분별력 있는 모든 정상적인 민족주의 정부는 현실적 국제관계 행위에서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더 적

절한 가치인) 도덕이나 추상적인 '전 인류의 가치'가 아니라, 전략지정학, 경제, 군사 그리고 다른 사활적으로 중요한 민족적 이익과 국가안보라는 이익에 따른다. 해당 국가의 모든 국민은 민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국제법 규칙과 조화를 이루고 외교정책과 구체적인 외교정책 조치의 효율성 평가에 기초하여 러시아의 국익, 현 세대와 후손으로 구성된 러시아 국민의 이익 등이 '쿠릴 문제'와 국제관계 분야의 다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러시아 영토에 대한 일본의 권리 주장, 러·일 양국 간 영토·국경 '문제'의 정치적 권리의 측면에 관해 인용된 자료들 그리고 일본에 남쿠릴열도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초래되는 러시아의 영토적·경제적 손실에 관한 평가 자료들이 한편으로는 극동과 동북아에서 일본의 대외정책과 외교가 지닌 견인성, 지구력, 활동성 그리고 높은 잠재적인 경제적 효율성을 생생하게 구명해주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50년대부터 극동에서 '쿠릴 문제'라는 사안에 대한 러시아 대외정책의 우유부단, 근거 없는 순종, 유약함 그리고 잠재적인 손실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가 대외정치상의 주요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해하려면, 상기 내용을 통해 반드시 실질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며, 소련과 러시아가 외교적 실수를 어떻게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첫째, '쿠릴 문제'는 많은 면에서 소일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소쿠릴암맥에 속한 도서를 일본에 양도하기로 한 소련 정치지도부와 흐루시초프 개인의 잘못된 결정에 기인한다.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러시아)의 권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와 전쟁 이후 연합국 열강들의 국제법 문서(1945년의 카이로선언, 알타협약, 포츠담선언, 일본의 항복문

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기타 문서들과 그 문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복구된 것이다(반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현대 국제법(국제연합헌장,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부합된다. 일본에 남쿠릴열도의 일부(소쿠릴암맥)를 양도하겠다는 소련 정치지도부의 동의는 1950년대 후반과 그 이후 시기 러시아의 국가안보라는 이익과 모순된 것이었다. 이후 1960년 소련 지도부(소련 정부)는 1956년 소일공동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결정은 당연히 소련 최고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1956년 소일공동선언의 비준 과정에서, 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의 경우 1936년 소련 헌법과 1937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내법 규정을 위반했다. 즉 러시아연방의 영토가 변경(축소)됨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선언의 비준은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에서 폐기되었다. 국제법적 관점(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제46조)에서 1956년 선언의 비준은 그 두 번째 부분으로 인해 러시아연방의 입장에서는 무효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셋째, 1956년 소일공동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은 1945년 포츠담 선언,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등의 국제법 문서와 모순된다. 1960년 일본은 소련의 극동을 상대로 확대된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일방적 절차에 따라 이 선언을 위반했다. 이후 1960년에 각서를 수교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소련에 이른바 ‘북방영토’에 대한 영토적 권리주장을 제기했는데, 이 용어가 일본에서는 남쿠릴은 물론, 북쿠릴 심지어 사할린 남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일본은 하보마이와 시코탄뿐만 아니라, 여타 시원적 일본 영토를 반드시 반환받을 것이다”). 국제

법적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소련 정부에게 발송한 위의 1960년 2월 5일자 각서는 영토변화와 관련이 있는 1956년 소일공동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일본이 먼저 공식적으로 폐기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에 대한 추가적인 영토적 권리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실효 상태에 있는 위 선언의 제9조를 정지시키고 있다.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제60조, 제62조, 제44조)은 조약 참가국 일방이 조약을 위반하거나 조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한 경우, 그 조약의 종료 또는 전반적 혹은 부분적 시행정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56년 소일공동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은 선언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선언의 다른 부분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정지가 된다.

넷째, 러시아연방 주체인 사할린 주 산하 소쿠릴암맥에 속한 도서 구역 내의 경제적·인구통계학적·지정학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즉 이 도서들이 러시아에 귀속되어 최근 60년 동안 여러 세대가 그 도서에서 자라고 생활했다(영토의 실효지배 요인). 그 외에도 선의의 행위 절차로서 일본에 이 도서를 양도하겠다는 소련 정부의 약속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오키나와에서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고 일본과 조속히 강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1950년대의 구체적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계산은 실현되지 않았다. 반(反)소련에 기초하여 일본과 미국 간의 군사동맹이 확대되었으며, 강화조약은 일본 측의 잘못으로 인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1956년 소일공동선언 제9조의 두 번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상황이 변했다.

다섯째, 1990년대에 소련과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변하면서, 국제관계의 독립적 주체가 된 러시아연방의 정치지도부가 채택한 새로운 대

외정책 노선으로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 노선은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지정학적 국익의 분야에서 부조리한 양보를 대가로 양자 간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런 노선의 극동정책은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 문제를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 문제’와 서로 ‘묶어놓음으로써 러·일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한다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는 러시아 외교 최초로 1991년 4월 18일자 소일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하보마이군도, 시코탄, 쿠나시르, 이투루프의 귀속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토경계 확정 문제’를 ‘일본과 소련 간의 강화조약 작성과 체결 문제’와 연결시켰다. 이로써 쿠나시르와 이투루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1956년 소일공동선언의 범위를 벗어난 위와 같은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양자 관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 1990년 이후 러시아 지도자들의 행동은 사실상 옐친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의 점진적 실행이었다.

여섯째, 1990년대와 그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의 양자 간 협의 과정에서 ‘쿠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극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위를 약화시키려 했다. 흐루시초프와 고르바초프 시기의 소련 지도부와 옐친 시기의 러시아 정치지도부는 일본 측과 ‘쿠릴 문제’를 논의하면서, 남쿠릴열도의 러·일 국경에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긴장된 지역이 발생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일곱째,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승인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개념’에 따라 주권,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통일성, 영토보전, 경제적·군사적 안보, 러시아 국경지대 안보 등의 확보가 장기적 성격을 지닌 대내외정

책의 전략적·현재적 과제의 주요 목표로서 규정되었다. 더구나 이 ‘개념’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러시아에 사할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으로 직접 언급되었다. 러시아연방 주체인 사할린 주의 영토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은 국제관계에서 러시아연방의 영토·경제·군사·국경 등에 적용되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쿠릴 문제’는 아래와 같은 상황 때문에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 및 이익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국경지역에서 일본 경제의 팽창,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광대한 구역의 주권에 대한 일본의 권리주장,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남쿠릴열도 해역의 대륙붕에 있는 자원에 대한 권리주장 등에 관한 것이다. 일본은 해양생물자원산업 분야의 협력을 위한 일부 문제로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협약에서 러시아 측의 동의를 구하여 1998년부터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해양구역에서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조업권과 다른 생물자원산업에 대한 일본 어선의 어로권을 획득했다. 일본 어부들은 이 수역을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여겨 사실상의 밀렵을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현재 시행 중인 국제조약에 따라 러시아연방 소유의 위수역 내 조업권을 외국의 다른 수산업회사에게 판매하라고, 국제관계 차원에서 부조리하게 러시아 당국을 강요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행동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침범한 것은 물론, 남쿠릴 구역에서 러시아 고유의 해양 경제 영유권역(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제적 경계 그리고 국경에 대한 러시아의 합법적 권리가 국가적 수준에서 의심받도록 만들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드러운 힘’의 사용, 독특한 정책인 ‘평화적 복수’의

실행, 국가외교적 압박 심지어 공갈 등으로 극동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결과를 변경함으로써 러시아연방 시할린 주에서의 영토 팽창을 위한 일본의 권리주장과 가장 풍부한 육상 자원을 상대로 일본이 제기한 권리주장이다. 일본은 일정한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무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에서, 우선적으로는 ‘쿠릴 문제’에 관한 협의라는 외교적 방법으로도 위의 중요한 영토를 단호히 획득한다는 목적을 정하고 그것의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적 권리주장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남쿠릴열도의 육지와 바다에 있는 막대한 양의 실질적 그리고 잠재적 광물자원과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이용 권리를 현재와 미래에 앗아가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21만 km²에 달하는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 그 경계 밖에 위치한 대륙붕에 대한 권리, 지구 희귀요소를 함유한 층적광상의 형태로 연안과 해상(海床)에 매장된 티탄자철광, 금·은 그리고 기타 유용한 화석자원의 가채매장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남쿠릴열도 또는 그중 일부 지역이 일본에 양도될 경우 러시아연방의 군사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위 지역에 러시아의 극동과 태평양함대를 목표로 한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가 배치되고 대잠방어체제가 구축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극동은 물론,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안보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그 외에도 미국과 일본의 해군은 ‘예카테리나’와 ‘프리즈’해협을 통해 아무런 통제 없이 오호츠크 해 수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태평양 방면에서 군사력을 전개하는 데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여덟째, 러시아가 남쿠릴열도를 포기하면, 현 시점에서 러시아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잠재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국제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알타와 포츠담체제가 파괴될 경우, 유럽지역 국경을 포함하는 러시아 국경 전체를 둘러싸고 러시아를 상대로 한 영토적 권리주장이 부활되어 격화될 것이다. 통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독 연합국 열강(미국, 소련, 영국)의 결정으로 양도된 동프러시아(현재의 칼리닌그라드 주)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핀란드(핀란드)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핀소전쟁으로 소련에 양도된 카렐(카렐) 협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남쿠릴의 양도는 국제적인 불안정 상황 및 유럽과 극동에서의 또 다른 전후 국경개정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참가국들이 본 조약의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하여 쿠릴열도의 중부와 북부 및 사할린 남부의 법적 귀속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조약 제22조에 따라 일본에 의한 이 조약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기구가 갖추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은 본 조약 제2조 c항에 따라 자신이 포기한 영토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또한 청구에 따른 특별재판부나 다른 합의된 방법에 회부하는 방식,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 참가국(러시아를 제외한 49개국)의 국제회의 소집이라는 방법으로 이 논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이 논쟁은 위 강화조약에 참가한 다른 일방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회부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2조에 따라 1946년 10월 15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위 조항에 명시된 성격을 지닌 모든 문제를 재판부 사법권의 특별한 합의 없이 수락하는 일반선언서에 동의했다.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의 러시아연방 귀속 문제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으며, 국제적인 법적 심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아홉째, 러시아연방의 남쿠릴열도 포기는 러시아 사회 내에서 윤리적·심리적 상황의 급격한 악화 및 러시아 국민의 민족적 굴욕과 관련된 국내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열째, 위에 언급된 모든 사실들은 러시아 극동 영토의 일부를 일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강화조약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쿠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1991~2008)에 걸친 러·일 간의 협의를 지속하게 러시아에 극히 불리하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일본의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협상 목적은 강화조약의 체결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적 권리주장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은 러시아가 과도기에서 직면했던 문제들을 이용하려 했다. 예상하고 있어야 할 사실은, 상기 러시아 영토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문장이 빠진 상태로는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열한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당시 소련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채택하는 구조의 근간이 된 것은 국민과 국익에 따른 국제관계 문제의 효율적 해결이 아니라, 소련의 국익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고르바초프 집단을 통해 대외정책에서 실현되었던 정치적 이념의 이익에 목적 지향적으로 예측시킴으로써, 고르바초프가 국가 이데올로기적 독트린으로 선포한 '전 세계를 위한 정치적 신사고'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사안을 이런 식으로 실행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전 인류적 가치를 자신의 국익보다 상위에 둔, 최근 러시아에서 실현되었던 이념적 독트린과

관련이 있다.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불만족스러운 구조에 입각하여 ‘국제평화와 조화’를 위해 일본의 호의를 얻어내고자 영토를 양보하면서 ‘쿠릴 문제’를 협상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러시아연방의 국익과 안보에 불리한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열두째, 일본은 협상에서 일본의 국가적 이익을 방어했으며, 방어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행위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연적으로 비이념화된 대외정책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일본인들은 국제협상에서 정상적인 상대국으로 행동했으며, 행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러시아) 참석자들은 일본 측과의 상호관계에서 상대방의 법률적 약점을 이용하여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고수했어야만(해야만) 한다. 정치적 의지의 부재, 국익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양보의 대가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모습 등은 해외의 협상 상대국들에게 국제협상에서의 유약함과 비전문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열셋째, 영토를 양보하여 이른바 ‘쿠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정학적, 경제적, 국방의 이익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런 결정은 현 시점에서(조업과 해산물 채취) 그리고 미래에도[해상(海床)과 그 해상하부 그리고 육지에 있는 자원의 이용] 지정학적·영토적·경제적으로 명확히 러시아에 손해다.

열넷째, ‘쿠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려면, 영토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기초하여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해결되었으며, 그것은 전쟁 중에 그리고 전후시기에 영토문제에 관한 현대 국제법의 규칙에 맞게 체결된 국제협약으로 확인되었다는 입장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 ‘문제’로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부응하지

않는다.

열다섯째, 러시아의 국가안보와 영토보전을 보장하려면, 러시아연방 영토의 강탈 불가에 관한 규정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동의 없이는 연방 주체의 영토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으로 러시아연방 헌법을 보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연방 헌법 제4조는 규범적인 것이 아닌, 일정 정도 선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러시아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과거에 적용되었던 1978년 러시아연방 헌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정확하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즉 “러시아연방의 영토는 보전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도 양도되지 않는다”(제70조), “변강과 주의 영토는 그 보유 주체의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제84조 9항).

열여섯째,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법률적·조직적 조치들을 명기해놓아 러시아의 모든 공식적 인물, 국가기관, 정당, 사회, 종교기구, 개별적 시민들이 러시아 영토보전을 위반하는 선전이나 실질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러시아연방의 이익을 위한 이성적이고도 책임 있는 행동일 것이다.

결론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아래의 사실을 반드시 언급하고자 한다.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익이다. 국가와 정부는 개별민족과 개인의 이해관계 혹은 별개의 사회단체와 인종들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영토에 거주하고 국민과 그 후속세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만 하고 나아가 현재의 정치상황과 얽매이지 않는 국가와 민족의 전통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익들은 군사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민족·인종적, 문화적, 종교적인 다양한 요구와 이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외교정책은 국가의 내적 기능(경제, 국내정치와 사회생활, 인종문화와 민족이념)에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대외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일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바, 국가적 규모 뿐만 아니라 지역적 규모의 대외정책에도 적용된다.

경제적 효율성을 포함한 외교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확실한 근거에 입각하여 외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런 결정은 국가의 내적 기능(경제, 국내정치와 사회생활, 인종문화와 민족이념)을 위해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해주고, 국제관계 범위에서 국익을 보장해준다. 국제문제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정책은 바로 국익을 위한 정책이다. 이는 탈이념적 외교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대외정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

외교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국가의 전략과 전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활동에 근거한 해석이 들어가고, 구성요소로서의 경제적 효율성도 포함하는 외교정책의 효율성을 광범위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모든 형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치로 지출하면서도 국제적 범위에서 국가의 민족적·국가적 요구와 이익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는 외교정책을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어떤 대가로 자신의 지정학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보장하며, 대외정치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해 사회는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따라서 외교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 문제는 외교정책 독트린, 외교정책 방향, 경제적 기준의 평가에 기초한 구체적인 외교정책적 조치 등의 의도적인 경제적 선택이라는 문제로서 반드시 제기된다.

일본이 과거에는 소련 그리고 현재는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적 권리주장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쿠릴 문제’를 경제적 평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검토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실례에 입각하여 러시아가

장래에 입게 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을 제시했다.

인용된 실례들은 영토·국경 문제에 따른 러·일 상호관계에 관한 것
이자 극동과 동북아에서 러시아 대외관계의 효율성 분석 문제를 설명
해주는 것으로서,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이익
이라는 측면에서 자국의 경제를 위해 보다 ‘채산성이 있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주요 경제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도출된 이 결과는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이익과 국제적 범위에서 양국
의 외교정책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
동과 일본에 대한 대외정책에서 소련과 러시아의 외교정책 구상을 비
교분석할 수 있었다.

이 책의 부록은 외교정책과 외교실무 분야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극
동지역 문제를 보다 더 근거 있게 분석 조사하는 것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Аллисон Г., Кимура Х., Саркисов К. О. От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к трехсторонн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М.: Наука, 1993.
2. Американо-японский военный договор — угроза миру. Памятная записка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от 27 января 1960 года // Правда. 1960. 29 января, № 29.
3. Англо-америка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Атлантическая хартия) от 14 августа 1941 года //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1.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46.
4. Анохин П., Линьков А. “Спо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вызывают споры в России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992. 30 июля, № 171.
5. Бабурин С., Павлов Н. Родиной не торгуют //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1991. 17 октября, № 197.
6. Безоговорочная капитуляция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45. 15 августа, № 194.
7. Бернстайн Л. Принятие решений по Японии в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М. Горбачева // Регио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7. 15, 22, 29 ноября.
8. Бондаренко О. Неизвестные Курилы. Серьезные размышления о статусе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М., 1992.
9.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Памятная записка

-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от 24 февраля 1960 года // Правда. 1960. 26 февраля, № 57.
10. Вехи на пути к заключению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Россией. 88 вопросов от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М.: Материк, 2000.
 11. Глеба Г. В. Военно-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аспект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проблемы //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1.
 12. Гушер А. Бег с препятствиями //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1998. № 11.
 13. Декларация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В 3-х т. 4-е изд., перераб. и доп. Т. I. М.: Наука, 1984.
 14. Декларация // Правда. 1941. 14 апреля, № 103.
 15. Декларация //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5—1905 гг.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Пб., 1906.
 16. Декларац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уверенитете Российской Советской Федеративн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Ведомости Съезда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РСФСР 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СФСР. 1990. 14 июня, № 2. Ст. 22.
 17. Декларац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ССР на Межсоюз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Лондоне от 24 сентября 1941 года //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I.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46.
 18. Договор о взаим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ежду США и Японией 1960 года // Бунин В. Н. Япон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оюз безопасности: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К 50-летию со

- дня основания). М.: ИДВ РАН, 2000.
19. Договор о торговле и мореплавании, заключенны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27 мая (8 июня) 1895 года //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5—1905 гг.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Пб., 1906.
 20. Егоров М. И. Перспектива реализации положений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1956 года и ее возмож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торгового мореплавания 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ихоокеанском морском бассейне //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1.
 21. Заявление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Соединенн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и Китая (Потсда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 6. Берлинская (Потсдам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трех держав — СССР,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М., 1980.
 22. Зая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послу СССР в Токио от 10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Каир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Крым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тсда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решение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щания 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капитуляцией Японии) 1943—1946 гг. М.: МИД СССР, 1947.
 23. Зая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45. 9 августа, № 189.
 24. Зиланов В. Курильская ловушка // Рыбак Приморья. Владивосток, 1993. 20 августа, № 34.

25. Из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ША Дж. Даллеса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Сан-Франциско 5 сентября 1951 г. //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26. Из выступлени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 Йосида в Сан-Франциско 7 сентября 1951 г. //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27.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В 12-ти томах. Том одиннадцатый. Поражение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Окончани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М.: Воениздат, 1980.
28. Итуруп //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азвания. 2-е изд., доп.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9.
29. Итуруп // Большо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 перераб. и доп.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8.
30. К новым отношениям.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М.С. Горбачева в Токио // Правда, 1991. 22 апреля, № 96.
31. Кимура Х. Курильская проблема. М., 1993.
32. Коваль И. М. Роль безвизовых обменов как одной из форм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пособствующей ускорению подписания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1.
33. Коммюнике совещания (Каир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34.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в 1995 году. 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издательское агентство “Обозреватель”, 1995.
35.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 24 от 10 января 2000 года. См.: <http://www.navy.ru/today/konc.htm>.
36. Косов О. А., Юшин А. А. Альтернативы политике в вопросе о южных Курилах должны быть конструктивными // Южные Курилы: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ки,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атериалы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й. 18 марта 2002 года. М.: Изд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2003.
37. Кошкин А. Россия на Курилах //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07. № 1.
38. Крым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Трех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по вопрос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Известия. 1946. 12 февраля, № 38; Правда 1946. 13 февраля, № 37.
39. Кунашир //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азвания. 2-е изд., доп.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9.
40. Кунашир // Большо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 перераб. и доп.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8.
41. Курилы проданы! Российский МИД скрывает секретный план передач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Японии // Завтра. М., 2002. Март, № 10.
42.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 словарь.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азвания. 2-е изд., доп.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9.
43.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 Большо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 перераб. и доп.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8.
44.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острова в океане проблем. М: Наука, 1998.
45. 16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 не деньг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потерь и ущерб Росс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введения санкций ООН // Правда. 1992. 15 декабря, № 188.
46. Линник В. Хакари для России по-kozyревски. Ущерб от присоединения МИД к санкциям ООН огромен // Правда. 1993. 24 февраля, № 37.
47.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2000.
48.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Т. 1. М., 1978.
49. Меморандум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его союзных держав япон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 677 от 29 января 1946 года // Сборник важнейших документов, касающихся оккупации и контроля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в Японии (на англ. языке). Т. 2. Токио: МИД Японии, 1949.
50.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ая баз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на рубеже третьего тысячелет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алин. кн. изд-во, 2000.
51.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заключенный в Портсмуте 23 августа 1905 г. № 5 // Рус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

- ния. 1689—1916.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М.: Изд-во вост. лит-ры, 1958.
52. Новое из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сборника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2001.
53. О денонсаци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го пакта о нейтралитете // Правда. 1946. 6 апреля, № 82.
54. О национализации земли, банков, промышленных и коммун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 вод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средств связи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2 февраля 1946 г. // Ведомост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1946. 16 февраля, № 5.
55.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ставе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СФСР: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от 2 февраля 1946 г. // Ведомост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1946. 16 февраля, № 5.
56. Обращение И. В. Сталина к советскому народу 2 сентября 1945 г. // Правда. 1945. 3 сентября.
57. Острова // Большо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 перераб. и доп.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8.
58. Пакт о нейтралитете между Союзом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Японией //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ССР.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Т. 4. М., 1946.
59. Памятная запис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у СССР от 5 февраля 1960 года //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60. Памятная записка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от 22 апреля 1960 года // Правда. 1960. 24 апреля, № 115.
61. Подписание акта о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45. 3 сентября, № 211.
62. Пономарев С. А.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й взгляд из провинции //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1.
63.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е сообщение //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5—1905 гг.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Пб., 1906.
64. Президент СССР о поездке в Японию // Известия. 1991. 29 апреля, № 101.
65. Разъясн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Красной Армии о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45. 16 августа, № 195.
66. Рекомендации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й, проведенны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ой по теме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1.
67. Рекомендации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й “Южные Курилы: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ки,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Ведом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41.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2.

68.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69. Русские Курил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й границы. 2-е изд., расшир. и доп. / Зиланов В. К., Кошкин А. А., Латышев И. А., Плотников А. Ю., Сенченко И. А. М.: Алгоритм, 2002.
70. Рус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по изучению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VIII века. М., 1989.
71.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пропущенные вехи на пути к мирному договору. М.: Бимпа, 2001.
72. Россия — Япония. А между ними Курилы. Стенограмма закрыт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й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конституционная проблема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8 июля 1992 года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992. 14 августа, № 182.
73. Сан-Францисский мирный договор с Японией от 8 сентября 1951 года // История войны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В пяти томах. Том V. Мирный договор / Перевод с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М.: Изд-во иност. лит-ры, 1958.
74.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Каир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Крымское совещание, Потсда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решение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щания 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капитуляцией Японии) 1943—1946 гг. М.: 2-й ДВО МИД СССР, 1947.
75. Севе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Японии. Посольство Японии в Москве. 1992.

76. Севе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Япо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Японии. 1996.
77. Сергеев М. 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М.: Гос. изд-во географ. лит-ры, 1947.
78. Славинский Б. Ялтин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и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ых территорий. М., 1996.
79. Сноу Д. Курильская гряда. Заметки капитана Сноу (перевод с английского издания 1897 г.). Записки Общества изучения Амурского края, т. VIII, вып. 1. Владивосток, 1902.
80.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1.
81.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56. 20 октября, № 294.
82. Совместное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е заявление // Правда. 1991. 20 апреля, № 95.
83. Соловьев 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М.; Л.: Изд-во Главсевморпути, 1945.
84. Сообщение ТАСС // Правда. 1946. 27 января, № 23.
85. Сообщение ТАСС об ответе правительств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и Китая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от 10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17—1957.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 131. М.: Изд-во вост. лит-ры, 1959.
86.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проблема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Россией.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Отпечатано в Японии. 2003.
87. Ткаченко Б.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Владивосток: ДВО РАН, 1993.

88. Ткаченко Б. И. Проблемы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во Дальневост. ун-та, 1996.
89. Трактат о торговле и границах, заключенный в Симодэ 26 января 1855 года // Договоры России с Востоком.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торговые. С.-Петербург, 1869.
90. Трактат, заключенны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в Петербурге 25 апреля 1875 г. // Сборник пограничных договоров, заключенных Россией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Пб., 1891.
91. Файнберг Э. Я.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1697—1875 гг. М.: Изд-во вост. лит-ры, 1960.
92. Федросс А.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М., 1959.
93. Шабанов А. А. Надо в России снимать курильскую проблему раз и навсегда //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1956 года и проблемы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1.
94. Шеварднадзе Э. А. Отчет на XVIII съезд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 Правда. 1990. 5 июля, № 186.
95. Шикотан //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азвания. 2-е изд., доп.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89.
96. Шикотан // Большо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2-е изд., перераб. и доп. М.: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8.
97. Южные Курилы: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ки,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атериалы парламентских слушаний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8 марта

2002 года // Ведом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41.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첨부(문서와 자료)

(조약문은 축약된 형태로 인용되었으며, 그중에서 러·일 국경선 형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항, 각 조항의 개별 규정 등은 제외되었다)

첨부 1

1855년 1월 26일(2월 7일) 체결된 통상과 국경에 관한 시모다[下田]조약 (발췌)

러시아와 일본 간에 평화와 우정을 포고하고 본 조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전(全) 러시아의 위대한 황제이자 전제군주이신 폐하께서는 폐하의 시종무관장 해군소장 엠피미 푸타틴(Евфимий Путятин)을 전권으로 삼으셨으며, 전 일본의 위대한 주권자 천황폐하께서는 쓰쓰이 히젠노 카미를 자신의 전권으로 삼으셨다. 위 전권은 다음의 조항을 규정했다.

제1조. 이제부터 앞으로는 러시아와 일본 간에 지속적인 평화와 진정한 우정이 존재할 것이다. 양국 영토에서 러시아인과 일본인은 개인의 안전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보호받을 것이다.

제2조. 러시아와 일본 간의 현 국경은 이투루프와 우루프 양도 사이를 지날 것이다. 이투루프의 모든 부속도서는 일본에 속하며, 우루프의 모든 도서와 그 이북에 위치한 쿠릴열도의 나머지 도서는 러시아의 영토를 이룬다. 가라후토(사할린)는 현재와 같이 러시아와 일본 간에 미분계 상태로 남는다.

제4조. 러시아 정부는 위에서 언급된 두 항구(시모다[下田]와 하코다테[函

館) 중 한 곳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국의 영사를 파견한다.

이 조약은 전 러시아의 전제군주이신 황제폐하와 전 일본의 위대한 주권자 천황폐하의 비준을 받거나 혹은, 첨부된 특별 조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전권에 의해 비준될 것이다. 비준서는 9개월 이후 또는 상황이 허락할 때 시모다에서 교환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양국 전권의 서명과 인장이 기재된 본 조약문의 사본이 교환될 것이며, 본 조약의 모든 조항은 서명된 날로부터 구속력을 지니고, 양 체결국에 의해 올바르게 그리고 신성하게 보존될 것이다. 서기 1855년 1월 26일, 일본력 안세이[安政] 12월 21일 시모다에서 체결되고 서명되었다.

조약의 원본과 그 부속 조항은 러시아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그리고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러시아어 원본에는 러시아 전권이, 그리고 일본어 원본에는 일본 전권이 각각 서명했다. 나머지 두 개의 조약 원본에는 양국 통역관이 서명했다.

출처: Договоры России с Востоком.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торговые / Составитель Т. Юзефович, С.-Петербург, 1869. С. 276~279.

첨부 2

1875년 4월 25일(5월 7일)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페테르부르크조약
(발췌)

제1조

일본의 천황폐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현재 자신이 보유

하고 계신 사할린(가라후토) 도(島)에 대한 자신의 모든 주권을 전 러시아 황제 폐하께 그 영토의 일부를 양보하니, 이제부터 상기 사할린(가라후토) 전도(全島)가 러시아제국에 귀속되면서 러시아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국경선은 라페루즈(Лаперуз, 宗谷) 해협을 통과하게 된다.

제2조

제1조에 언급된 사할린 도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 전 러시아의 황제 폐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쿠릴열도에 대한 자신의 모든 주권을 일본 천황폐하께 양보하니, 이제부터 상기 쿠릴열도가 일본제국에 귀속될 것이다. 이 열도에는 아래와 같은 18개 도서가 포함된다. 즉 1) 슴슈(Шумшу), 2) 알리이드(Алайд), 3) 파라무시르(Парамушир), 4) 마칸루시(Маканруши), 5) 오네코탄(Онекотан), 6) 하림코탄(Харимкотан), 7) 에카르마(Экарма), 8) 시아시코탄(Шиашкотан), 9) 무시르(Муссир), 10) 라이코케(Райкоке), 11) 마투아(Мауга), 12) 라스투아(Рауга), 13) 스투드네바(Среднева)와 우시시르(Ушисир), 14) 케토이(Кетой), 15) 시무시르(Симусир), 16) 브로우톤(Брогон), 17) 체르포이(Черпой)와 브라트 체르포예프(Брат Черповев) 군도 그리고 18) 우루프(Уруп) 등이다. 이로써 본 해역에서 러시아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국경선은 로팟카(Лопатка) 꽃과 캄차가 반도 그리고 슴슈 도(島) 사이의 해협을 지나게 된다.

제3조

위 2개 조에 언급된 영토의 상호 양도는 본 조약의 비준교환 즉시 이루어질 것이며, 상기 지역은 점유되는 그 시점부터 모든 수입과 함께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관될 것이다. 그러나 직접 점유권을 동반한 상호 양보는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공식 양도는 위대한 양 체결국에서 각각 임명한 한 명 또는 수 명의 관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 의해 이행될 것이다.

제4조

앞의 조항들에 의해 상호 양보된 영토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점유되지 않은 모든 국유지, 국유구조물, 요새, 막사, 여타 건물들에 대한 재산권과 현재 양국 정부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재산권이 포함되며, 그 재산에 대한 평가는 제3조에 명시된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평가된 금액은 양보된 영토를 소유하게 될 정부가 지불한다.

제5조

체약국 일방이 타방에게 양보하는 영토의 주민, 즉 러시아와 일본 신민은 자신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기 조국으로 귀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보될 영토에 잔류할 경우, 영토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국가의 법률과 사법권에 따르는 동시에, 자신의 고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및 원주민과 동일한 재산권과 신교의 권리를 유보하게 된다.

제6조

사할린의 양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이익을 고려하여 전 러시아의 황제폐하께서 허여하시니,

1.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10년 동안 항구세나 해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코르사코프 항을 기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일본 선박에게 제공한다. 위 기간이 만료되면, 이 이권의 폐기나 연장 여부는 전 러시아 황제폐하의 결정에 따른다. 그에 더해 전 러시아 황제폐하께서는 코르사코프 항에 공사 혹은 영사관원 임명권을 일본 정부에 부여하신다.
2. 오호츠크 해와 캄차카 항구에서의 항행과 무역, 이 해역에서의 연안 어업을 위해 러시아제국에서 최혜국의 선박과 상인이 누리는 권리와 혜택을 일본 선박과 상인에게 부여하신다.

제8조

이 조약은 전 러시아 황제폐하와 일본제국 천황폐하에 의해 비준될 것이며, 그 비준서는 조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혹은 가능할 경우 그 이전에 도쿄(에도)에서 교환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전권은 본 조약에 서명하고 양국 문장을 조인했다.

서기 일천 팔백 칠십 오년 사월 이십오일/오월 칠일, 즉 메이지 팔년 오월 칠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부 작성되었다.

서명: 고르차코프(Горчаков),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제1조

러시아 황제의 정부는 오늘의 조약으로 러시아에 양도되어야만 하는 건물과 동산 평가액을 일본 정부에 지불하기 위한 근거로서 일본 정부가 통보한 액수, 즉 건물 194개 동의 가격으로 칠만 사천 엔(일본 화폐), 동산의 가격으로 일만 구천팔백십사 엔을 받아들인다.

제2조

금일 제3조에 규정된 공동위원회는 러시아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만 하는 건물과 동산 가격의 확인과 명시에 공동으로 착수한다. 영토, 건물, 동산의 공동 양도 및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으로서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것과 관련된 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산출된 금액은 상

호 양보하는 영토, 건물, 동산의 공식적 양도 이후 6개월 내에, 같은 근거에 따라 산출되어 러시아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공제한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주재 일본 공사관의 외교대표 또는 적절한 형태로 이 사안에 대한 전권을 갖춘 천황의 다른 어떤 대리인에게 지불될 것이다.

제3조

오늘 서명한 이 조약 중에서, 상호 양보되는 영토에 잔류하게 될 양국 국민과 해당 지역 토착민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제5조를 보완하고 설명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게 될 도쿄(에도) 주재 러시아 변리공사 사이에 부가조항이 작성되어 체결될 것이다.

제4조

위 3개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은 오늘 서명된 조약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측의 전권은 본 선언에 서명하고, 문장으로 조인한다.

서기 일천 팔백 칠십 오년 사월 이십오일/오월 칠일 그리고 이와 같은 날 짜인 메이지 팔년 오월 칠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부 작성되었다.

서명: 고르차코프, 에노모토 다케아키

첨부 2.2

1875년 8월 10일(22일) 도쿄에서 채택된 페테르부르크조약 부가조항

1875년 4월 25일/5월 7일(메이지 8년 5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

인된 선언 제3조에 의거하여, 그리고 같은 날 조인된 조약에서 상호 양보되는 영토에 잔류하게 될 양국 국민 및 해당 지역 토착민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제5조의 보완과 설명으로 전 러시아 황제와 일본제국 천황께서는 아래의 인물을 자신의 전권으로 임명하셨다.

전 러시아 황제 - 폐하의 시종, 4등관, 일본 주재 변리공사 카를 스트루베(Карл Струве)

일본 천황 -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양 전권은 선의로 적절한 형태의 전권을 상호 교환한 후,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a) 양측이 양보한 영토의 주민, 현재 자신이 점유 중인 장소에서 영구히 거주하길 원하는 러시아와 일본 신민은 자신의 고유 업무에 종사할 완전한 자유를 지닌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속한 공간 내에서 어업권과 수렵권을 보유하며, 사망과 동시에 자신의 사업에 대한 모든 세금에서 면제된다.

b) 쿠릴열도에 남게 될 러시아 신민과 사할린에 남게 될 일본 신민은 현재와 같은 재산권의 자유를 지닌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부동산에서 창출된 수익의 사용권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제공될 것이다.

c) 쿠릴열도에 거주하는 러시아 신민과 사할린에 거주하는 일본 신민 모두 자신의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교회, 사찰 그리고 사원 경내 묘지 등은 불가침 대상으로 남는다.

d) 쿠릴열도와 사할린의 원주민은 그들이 현재 점유 중인 거주지에서 영구 거주하면, 기존의 국적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정부의 신민으로 남기를 원할 경우,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자신의 군주에게 속한 영토로 가야 한다. 만약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거주지에 영구히 남기를 원할 경우, 시민권을 바꿔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현 부가조항이 주민들에게 공포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이 3년 동안 주민들은 현재까지 쿠릴열도와 사할린에서 자신들이 향유했던 것과 동

일한 조건의 우선권이나 의무를 보유한 상태로 자신의 어업권, 수렵권 그리고 현재까지 종사했던 다른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현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3년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상호 양도되는 영토에 거주 중인 모든 원주민들은 영토 소유권을 이양 받는 정부의 신민이 된다.

e) 쿠릴열도와 사할린의 모든 원주민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 사찰과 사원 경내 묘지 등은 불가침 대상으로 남는다.

f) 상기 5개 항에 포함된 규정은 1875년 4월 25일(5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명된 조약의 원문에 포함되는 즉시 효력과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계약국 전권은 본 부가조항에 서명하고 자국 문장을 조인했다.

서기 일천 팔백 칠십 오년 팔월 십일/이십이일 및 이와 같은 일자인 메이지 팔년 팔월 이십이일 도쿄에서 2부 작성되었다.

출처: Сборник пограничных договоров, заключенных Россией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Пб., 1891. С. 292~299.

첨부 3

1895년 5월 27일(6월 8일)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통상과 항해에 관한 조약
(발췌)

전 러시아의 황제폐하와 일본제국의 천황폐하께서는 양국 간에 순조롭게 성립된 우호관계를 양국 간의 관계 확장과 발전의 방법으로 지지하고자 하는 바램을 동일하게 지니고 계시며, 이런 목적은 양국 간에 현재 적용되

고 있는 조약들의 개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공정성과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개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자신의 전권으로 다음을 각각 임명하였다.

러시아 황제 - 상서 겸 1등관, 상원의원, 외무대신, 알렉세이 로바노프 로스토프스키(Алексей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공(公)과 3등관 재무대신 비테(Сергей Витте)

일본 천황 - 러시아 주재 특명공사 및 전권대신 유삼미 니시도쿠지로(西德二郎)

상기 양자는 적법한 형태로 임명된 자신의 전권을 통해 통보받은 아래와 같은 조항을 규정하여 체결했다.

제XVIII조

본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안세이 1년 음12월 21일, 즉 1855년 1월 26일에 체결된 조약, 안세이 5년 음7월 11일, 즉 1858년 8월 4일에 체결된 조약, 케이오 3년 음11월 28일, 즉 1867년 12월 11일 체결된 선언 그리고 양 체약국 간에 체결되었거나 혹은 현존하는 모든 부가 협약이나 선언은 이 조약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상기 조약, 협약 그리고 선언서 …… 들이 지닌 구속력이 없어진다.

제XX조

현 협약은 양 체약국에 의해 비준될 것이며, 본 협약의 비준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혹은 가능하다면 그보다 이른 시점에 도쿄에서 교환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양 전권은 프랑스로 2부 작성된 본 협약에 서명했으며, 거기에 조인했다.

1895년 5월 27일(6월 8일), 즉 메이지 28년 6월 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작성되었다.

(조인) (서명): 로바노프 로스토프스키 공

(조인) (서명): 니시

(조인) (서명): 세르게이 비테

출처: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5~1905 гг.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Пб., 1906. С. 27~44.

첨부 3.1

선언

아래 서명한 이들은 오늘 작성된 협약의 제XVIII조가 1875년 4월 25일 (5월 7일) 전 러시아 황제와 일본 천황 간에 체결된 조약은 물론, 동년 8월 10일(22일) 도쿄에서 서명된 부가조항과도 관련이 없으며, 그 조약과 조항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공포한다.

1895년 5월 27일(6월 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서명): 로바노프 로스토프스키 공

(서명): 니시

출처: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5~1905 гг.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Пб., 1906. С. 52.

정부통첩

1895년 5월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본과 체결한 조약 XIX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협약은 “최소한 4년이 경과한 후에 구속력을 지니게 되며, 일본 천황의 정부가 전 러시아 황제 정부에게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한 자신의 의도를 통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통첩은 본 협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언제든지 이행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언급된 성명은 일본 정부에 의해 협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1898년 7월 5(17)일에 실제로 이행되었다. 따라서 이 협약은 금 1899년 7월 5(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본 협약의 제XVIII조에 근거하여 그날로부터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이전의 모든 조약과 협약들은 적용되지 않게 되며,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 사법권 역시 폐지되면서 모든 사법권이 일본 사법 당국으로 이관된다.

출처: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5~1905 гг.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Пб., 1906. С. 54~55.

1905년 8월 23일(9월 5일)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포츠머스강화조약
(발췌)

전 러시아의 황제의 일방과 일본 천황의 다른 일방은 그들의 국가와 인

민들을 위해 평화의 은혜를 복구하고자 강화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전권을 아래와 같이 임명했다.

전 러시아의 황제 - 상서 겸 러시아제국 대신회의 대표, 세르게이 비테와 러시아 황제의 궁정관 겸 미국 특명전권대사 로만 로젠(Роман Розен) 남작 각하

일본 천황 -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와 미국 주재 특명전권대사 다카히라 고고로 각하[高平小五郎]

이와 같은 양국 전권은 적절한 형태의 전권을 교환한 후 아래의 조항들을 규정했다.

제1조

전 러시아 황제와 일본 천황 그리고 그들의 국가와 인민들 간에는 이제부터 평화와 우호가 있을 것이다.

제9조

러시아제국 정부는 사할린 남부 및 그 부속도서와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공공건물 및 재산에 대한 영구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일본제국 정부에게 양도한다. 북위 50도를 그 양도 지역의 북방경계로 한다. 이 지역의 정확한 국경선은 본 강화조약에 첨부된 부가조항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다.

러시아와 일본은 사할린과 그 부속도서에서 자신의 점유지 내에 그 어떤 형태의 보루 혹은 그와 유사한 군사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점에 상호 동의한다. 동일하게 양 체약국은 라페루즈와 타타르(Татар) 해협에서의 자유항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군사시설도 갖추지 않을 상호 의무를 지닌다.

제12조

무역 및 항행에 관한 러일협약의 적용이 전쟁으로 취소된 바, 러시아와 일본 양국 정부는 현 전쟁 전까지 적용되었던 조약의 원칙에서 무역 및 항행에 관한 새로운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해관 절차, 통관 및 용적톤수 관세 그리고 타 체약국의 경계 내에서 한 체약국에 속한 관원, 신민, 선박의 입국 및 체류 조건 등을 포함하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상호호혜를 자국 무역관계의 원칙으로 받아들인다.

제14조

본 조약은 전 러시아와 일본 양 제국의 황제에 의해 비준될 것이다. 이 조약의 비준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명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대사와 도쿄 주재 프랑스 공사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 양국 정부에 각각 상호 통보될 것이며, 이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이 조약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비준서의 공식적 교환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제15조

본 조약은 프랑스어와 영어로 2부 작성되어 서명될 것이다. 양 조약문은 전적으로 동일하나, 그 해석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프랑스어 전문에 따르기로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측 전권은 본 강화조약에 서명했으며, 자국 문장으로 조인했다.

포츠머스(뉴햄프셔)에서 일천 구백 오년 팔월 이십삼일(구월 오일), 즉 메이지 삼십 팔년 구월 오일에 체결되었다.

(서명): 주타로 고무라

(서명): 세르게이 비테

(서명): 타카히라

(서명): 로젠

출처: Сборник договоров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95~1905 гг.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Пб., 1906. С. 741~750.

첨부 4.1

1905년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포츠머스강화조약의 첨부 No. 10

(발췌)

일본과 러시아 간의 모든 무역협약이 전쟁으로 폐기된 현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 양 제국은 무역과 항행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예견하여 최혜국대우의 호혜적 체제를 양국 무역관계의 근거로서 승인하는데 합의했으며
.....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С. 580.

간행본: 일본외교문서, 8권. 첨부. 도쿄, 일본 외무성, 1960. С. 294.

소련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상호관계의 주요 원칙에 관한 1925년 1월 20일자 협약
(발췌)

제1조

위대한 양 체약국은 본 협약의 효력 발휘와 함께 외교 및 영사관계가 수립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2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에서 체결된 조약이 완전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위에 언급된 포츠머스조약 이외에 1917년 11월 7일까지 일본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조약, 협약 그리고 합의들은 양 체약국 정부 간에 향후 개최될 회담에서 재고될 것이며, 변하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 이 조약, 선언 그리고 합의들은 변경되거나 혹은 폐기될 것으로 약정되었다.

제5조

위대한 양 체약국은 상호 평화우호 속에 살고자 하는 각자의 바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체약 각국의 사법권 내에서 각국만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각국 정부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인물이나 양 체약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 등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나 일본 영토의 모든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질서와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공개적 또는 은밀한 모든 행위를 취하지 못하도록 자제시키고 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상호 선의로써 존중한다.

양 체약국 중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 체약국의 사법권 내에 위치한 영토에서 아래와 같은 것의 체재를 허락하지 않는다. 즉

a) 상대 체약국 영토의 그 어떤 지역에 위치한 정부가 요구하는 조직 또는 집단, 혹은

b) 위와 같은 조직이나 집단을 위해 실질적으로 정치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외국 신민이나 시민.

제6조

양 체약국의 경제관계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정부는 일본 신민, 회사 그리고 이권조합에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모든 영토 내에서 광물, 임업 그리고 다른 천연자원의 개발 이권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명): 카라한(И. Карахан)

1925년 1월 20일, 베이징

출처: Документ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ССР, Т. 8,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63, С. 70~73.

첨부 5.1

선언

금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일본 간에 상호작용의 근본 원칙에 관한 선언에 서명하면서, 아래에 서명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전권은 자국 정부가 1905년 9월 5일자 포츠머스강화조약의 합법성을 인

정하는 것이 소련 정부가 앞에 언급된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과거의 차르 정부와 함께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한다.

(서명): 카라한

1925년 1월 20일, 베이징

출처: Документ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ССР, Т. 8,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63, С. 77.

첨부 6

일본과 소련 간에 체결된 1941년 4월 13일자 중립에 관한 조약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와 일본 천황은 양국 간의 평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자 중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국의 전권을 임명하였다. 즉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전권:

인민위원소비에트 의장 겸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외무인민위원부 대표 바체슬라프 미하일로비치 몰로토프(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Молотов), 그리고

일본 천황의 전권:

외무대신, 주삼미, 1등급 육일장 수상자,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주재 특명전권 대사, 중장, 주삼미, 1등급 육일장 및 4등급 금치훈장, 요시쓰구 다테가와(Иосицугу Татегава).

양 전권은 적법한 형태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된 자신들의 전권을 상호 제출한 후,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제1조

양 체약국은 상호 간에 평화 우호관계를 지지해야 하며, 상대 체약국의 영토보전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상호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2조

양 체약국 중 일방이 1개 또는 수개 국 군사행동의 대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상대 체약국은 그 충돌이 종결될 때까지 중립을 지킨다.

제3조

본 조약은 양 체약국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향후 5년간 유효하다. 양 체약국 중 일방이 기간 만료 1년 전에 조약의 실효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이 조약은 차기 5년 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4조

본 조약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에 부쳐진다. 비준서 교환은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도쿄에서 이루어진다.

몰로토프

요스케 마쓰오카
요시쓰구 다테가와

출처: Пакт о нейтралитете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 Правда, 1941, 14 апреля, No. 103, С. 1.

간행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ССР.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Т. 4. М., 1946. С. 550.

첨부 6.1

선언

1941년 8월 13일 소련과 일본 간에 체결된 중립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따라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국 간 평화우호관계의 보장을 위하여, 소련은 만주국의 영토보전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본은 몽골인민공화국의 영토보전과 영토적 불가침성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성명한다.

1941년 4월 13일, 모스크바

소련의 전권에 의거하여
몰로토프

일본 정부를 위해
요스케 마쓰오카
요시쓰구 다테가와

출처: Декларация о взаимном уважен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и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и границ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Манчжоу-Го // Правда, 1941, 14 апреля, No. 103, С. 1.

1941년 8월 14일자 영미선언(대서양헌장)

(발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폐하의 정부대표 처칠 수상은 공동논의 후 양국 정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일반 원칙을, 각국이 보다 나은 미래 세계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기초할 수 있는 원칙으로 공표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했다.

1) 미국과 영국은 영토나 다른 것을 획득하려들지 않는다.

2) 양국은 당사국 인민들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영토적 변화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8) 양국은, 국경 밖으로의 침략을 자행하거나 자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육군, 해군, 공군력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장래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현실적 그리고 정신적 이유에서 무력의 사용을 거부해야만 한다고 본다.

처칠과 루스벨트는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제가 성립되는 시점까지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과 미국은 지원을 할 것이며, 무장의 중압에서 평화애호 인민들이 손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을 장려할 것이다.

출처: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1.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46. С. 166.

런던 연합국 회의에서 발표된 소련 정부의 1941년 9월 24일자 선언

(발췌)

소련은 국가 독립과 자국의 영토적 불가침성에 대한 모든 인민들의 권리와 각 인민들이 자국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개화를 위해 합목적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회체제를 구축하고 그런 통치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위에 언급된 원칙과 수많은 법령과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표현에 의거하여 꾸준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 정부는 현재의 국제적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와 영국 처칠 수상 등 양자가 선언한 원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바, 그런 원칙에 동의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위에 언급된 원칙들의 실질적 적용이 모든 국가가 처한 다양한 상황, 필요, 역사적 특수성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소련 정부는 이런 원칙들의 일관적인 실행이 소련 정부와 소련 인민들의 가장 역동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임을 반드시 성명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1,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46, С. 167.

1943년 11월 27일자 회담 공보(카이로선언)

미국, 중국, 영국 대표들은 자신의 군사 및 외교 관련 자문들과 함께 북

아프리카에서 회담을 종결지었다. 아래와 같은 성명이 발표되었다.

“군사사절단의 일부는 일본을 상대로 한 향후의 군사작전에 관해 협의했다. 3개 열강의 동맹은 해상, 육상, 공중에서 자신의 잔혹한 적들에게 가차 없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압박은 이미 강화되고 있다. 3개 열강 동맹은 일본의 침략을 중단시키고 응징하고자 이 전쟁을 수행 중이다. 동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영토적 확장에 관한 그 어떤 의도도 지니고 있지 않다. 동맹의 목적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함께 일본이 태평양상에서 침략했거나 혹은 점령한 모든 도서(島嶼)들을 일본에서 박탈하고,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탈취한 지역, 예를 들면, 만주, 대만 그리고 평후열도 등을 중화민국으로 반환하는 것에 있다. 일본은 무력을 동원했거나, 자신의 탐욕으로 침략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추방될 것이다. 위에 언급된 3개 열강은 예측된 한국 민족을 기억하며,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목적들을 고려하여 3개 열강은 일본과 전쟁 중인 연합국들과의 동의하에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진지하고도 장시간에 걸친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출처: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С. 18.

간행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Washington, 1961, pp. 293~455.

소련 주재 미국 대사 해리먼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발신한

1944년 12월 15일자 전문 No. 761.93/12-1544

(발췌)

극비

1944년 12월 15일, 모스크바.

어제 저녁 저는 스탈린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금년 10월 스탈린이 거론한 문제들 중에서 러시아의 대일 개전과 관련하여 어떤 정치적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냐고 말했습니다. 스탈린은 다른 방으로 나갔다가 지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가 반드시 러시아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성명했습니다.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С. 582.

간행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 Washington, 1955. p. 378.

극동문제에 관한 3개 열강의 1945년 2월 11일자 크림(알타)협정

소련, 미국 그리고 영국 등 3개 열강의 지도자들은 독일의 항복과 유럽에서의 종전 2~3개월 후 소련이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일본을 상대로 개전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1. 외몽골(몽골인민공화국)에서의 현상유지.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침략으로 위배된 러시아에 속하는 권리의 복구. 즉

a) 사할린 남부와 그 모든 부속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b) 상항(商港)인 다렌 항에 대한 소련의 우월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항구를 국제화하며, 소련의 군항으로서 뤼순 항에 대한 조차권을 복원한다.

c) 소련의 우월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소중합자회사의 조직 원칙에 입각하여 증동철도와 다렌으로의 출구를 제공하는 남만지선을 공동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이 만주에서 완전한 주권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3. 쿠릴열도를 소련에 양도한다.

외몽골과 위에 언급된 항구 및 철도에 관한 협약은 장제스 총통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스탈린 원수의 조언에 따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3개 열강 정부의 수뇌들은 소련의 이런 주장이 일본에 승전한 이후 무조건적으로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에 소련은 일본의 압제로부터 중국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 간의 우호 및 동맹에 관한 조약을 중화민국과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명했다.

1945년 2월 11일,

스탈린

프랭클린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출처: Крым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Трех Великих Держав по вопрос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Правда, 1946. 13 февраля, No. 37. С. 1.

간행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일본과의 중립조약 폐기에 관한 소련 정부의 1945년 4월 5일자 성명

소련과 일본 간의 중립 조약은 1941년 4월 13일, 즉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전에 그리고 일본을 일방으로 하고 영국과 미국을 상대방으로 하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체결되었다.

이후부터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으며,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은 소련을 상대로 개전함으로써 독일에 도움을 주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소련의 동맹국인 미국 및 영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소련 간의 중립에 관한 조약은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이 조약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해졌다.

위에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그리고 위에 언급한 조약에서 5년의 조약 적용기간 1년 전에 본 조약의 실효 선언의 권리를 규정한 제3조에 따라, 소련 정부는 이 선언을 통해 1941년 4월 13일자 조약의 실효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에게 천명한다.

출처: О денонсации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го пакта о нейтралитете // Правда, 1945, 6 апреля, No. 82, С. 2.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 등 3개 정부 수뇌의 1945년 7월 26일자 성명(포츠담선언)

1. 미국 대통령, 중화민국정부 대통령 그리고 영국 수상 등, 우리의 수백만 동포를 대표하는 이들은 회의를 통해 일본을 상대로 종전의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2. 서방의 병력과 공군력으로 수차례 증강된 미국, 영국, 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일본에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군사력은 일본의 저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모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될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이 쫓겨난 힘에 대한 독일의 무모하고도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인민의 면전에 매우 명백한 선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 집결되고 있는 강력한 힘은 나치스트들의 저항을 상대로 사용되어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산업을 파괴했으며, 모든 독일 인민의 삶의 형태를 왜곡시켰던 그런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우리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의 완전한 사용은 일본 무력의 불가피하고도 최종적인 괴멸과 일본 본토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황폐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4. 무분별한 계산으로 일본제국을 파멸의 급류로 몰아가고 있는 집요한 군국주의자들의 영향력 하에 이전처럼 남아 있던가, 아니면 이성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일본에 다가왔다.

5. 아래에 우리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 조건들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선택은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6. 우리는 무책임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로부터 추방되기 전까지는 세계의 안전과 정의를 위한 새로운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일본 인민을 기만하여 전 세계에 대한 침탈의 길을 열어가도록 만들고, 또 이런 실패로 이끈 자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영원히 제거되어야만 할 것이다.

7. 이런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고 일본의 전쟁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동맹국들이 지정하게 될 지점들은 여기에서 우리들이 언급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점령될 것이다.

8. 카이로선언의 조건들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우리들이 지정할 나머지 소규모 도서들로 제한될 것이다.

9. 일본 군대는 해체된 후, 자신의 가정으로 귀가하여 평화로운 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0. 우리는 일본인들의 인종적 노예화나 일본 민족의 파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포로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행위를 자행한 자를 포함한 모든 전범자들은 준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인민들 내에서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하고 강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이 확립되어야 한다.

11. 일본은 자신의 경제를 유지하고 자연이 준 공평한 보상을 수확하는 산업만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전쟁수행을 위해 채무장할 수 있게 해 주는 산업분야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는 안 되나, 그것의 입수는 허용될 것이다. 당연히 일본은 세계 무역유통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2. 연합국 점령군은 위의 목적이 달성되고, 일본 인민이 자유롭게 표명한 의지에 부응하는 평화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가 수립되는 즉시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다.

13.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에게 모든 일본 군대의 무조건항복을 선언하고, 선의에서 항복을 적절하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그 이외에는 신속하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

출처: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ях период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 6. Берлинская (Потсдам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трех держав — СССР, СШ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М., 1980. С. 382~384.

첨부 14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행한 1945년 8월 8일자 성명

히틀러의 독일이 파괴되고 항복한 이후, 일본은 아직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유일한 열강으로 남게 되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3개 열강이 행한 일본 군사력의 무조건항복에 관한 금년 7월 26일자 요구는 일본에 의해 거절되었다. 그로 인해 소련 정부에게 극동에서의 전쟁을 중재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모든 근거를 상실했다.

일본의 항복 거절을 고려하여, 동맹국들은 소련 정부에게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참전함으로써 종전 시기를 단축시키고, 피해를 줄이며, 전반적인 평화의 조속한 복구에 부응해줄 것을 호소했다.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한 소련 정부는 동맹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금년 7월 26일자 동맹열강의 성명에 동참했다.

소련 정부는 이런 자신의 정책이 평화의 도래를 가깝게 만들고, 계속된 희생과 고통에서 인민을 해방시키며, 무조건항복을 거절한 이후 독일이 경험해야 했던 그런 모든 위협과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 인민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에 서술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소련 정부는 내일, 즉 8월 9일부터 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개전할 것임을 성명한다.

출처: Зая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45. 9 августа, No. 189. С. 1.

간행본: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17~1957.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No. 128. М.: Изд-во вост. лит-ры, 1959. С. 194.

첨부 15

일본 정부가 도쿄 주재 소련 대사에게 행한 1945년 8월 10일자 성명

언제나 돈독한 세계평화를 지향하시며, 향후 전쟁의 지속으로 인류에게 닥쳐올 고통으로부터 인류가 벗어날 수 있도록 군사행동의 조속한 종결을 달성하고자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 천황의 자비로운 하명에 복종하여, 일본 정부는 수주일 전, 즉 당시 소련과 중립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적대적 열강들 간에 평화를 복구하기 위해 우호적 지원의 제공을 소련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평화를 위한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반적 평화를 복구하시려는 천황의 존엄한 의제에 부응하고, 전쟁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가능하면 조속히 종말을 고하고자,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는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 정부의 수뇌들에 의해 발표되고, 그 뒤를 이어 소련 정부가 동참한 공동선언에 열거된 조건들을, 위에 언급된 선언이 주권적 통치자로서 천황의 특권을 손상시키는 요구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하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부대조건이 채택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가능한 한 빨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앙망하고 있습니다.

출처: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Каир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Крым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тсда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решение Московского совещания и другие доку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капитуляцией Японии) 1943~1946 гг. М.: МИД СССР, 1947. С. 29.

첨부 16

소련, 미국, 영국, 중국 정부가 1945년 8월 10일자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발송한 답변에 관한 타스(TACC) 통신의 보도

8월 11일 미국 국무부는 8월 10일자 일본 정부의 성명에 대한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중국의 답변을 발송했다.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 일본 정부의 성명에는 ‘위 선언이 주권적 통치자로서 천황의 특권을 손상시키는 요구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하에서’라는 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즉

항복의 순간부터 일본 천황과 정부의 국가 통치권은 항복조건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연합국 최고군사령부에 귀속된다.

천황은 포츠담선언의 조건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항복조건에 일본 정부와 일본제국 대본영이 조인하도록 재가하고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황제는 모든 일본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당국에게 그리고 현재 배치된 장소를 불문하고 그 당국에게 속하는 모든 군사력에게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기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황제의 명의로 하달해야 한다. 또한 최고사령관이 항복조건을 실행을 목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다른 명령들을 하달해야만 한다.

항복 직후 일본 정부는 군사 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들을 안전한 지점으로 이송해야만 한다. 그 지점은 군사 포로와 민간인 피억류자들이 연합국 수송선단에 신속하게 승선할 수 있는 곳으로서 향후 제시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형태는 당연히 포츠담선언에 부응하여 일본 인민이 자유로이 표명한 의지에 따라 설정될 것이다.

연합국 군사력은 포츠담선언에 서술된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까지 일본에 체류할 것이다.

일본 정부에 대한 답변은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출처: Печатается по: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17~1957.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No. 131. М.: Изд-во вост. лит-ры, 1959. С. 195~196.

신문: Известия, 1945. 12 августа, No. 189.

포츠담선언의 항복조건 수용에 관한 일본 정부의 1945년 8월 14일자 성명

8월 14일 미국 정부는 스위스 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접수했다.

즉 포츠담선언의 조건 수용과 관련하여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번스(James Francis Byrnes)가 발송한 8월 11일자의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정부의 답변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가 8월 10일에 발송한 통첩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4개 열강의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천황은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일본이 인정한다는 황제의 칙서를 공표했다.

2) 천황은 포츠담선언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에

자신의 정부와 제국 참모사령부가 조인하도록 재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천황은 일본의 모든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당국에게 그리고 현재 배치된 장소를 불문하고 그 당국에게 속하는 모든 군사력에게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기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황제의 명의로 하달하고, 또한 최고사령관이 항복조건의 실행을 목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다른 명령들을 하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출처: Безоговорочная капитуляция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45, 15 августа, No. 194, С. 1.

간행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М.: Госполитиздат, 1947, С. 380.

동북아역사재단

첨부 18

포츠담선언의 조건을 일본이 인정하는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1945년 8월 14일자 칙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문본

EMPEROR HIROHITO'S BROADCAST TO THE JAPANESE PEOPLE
ON SURRENDER

August 14, 1945

New York Times,

TO OUR GOOD AND LOYAL SUBJECTS:

After pondering deeply the general trends of the world and the actual conditions obtaining in our empire today, we have decided to effect a settlement of the present situation by resorting to an

extraordinary measure.

We have ordered our Government to communicate to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at our empire accepts the provisions of their joint declaration.

To strive for the common prosperity and happiness of all nations as well as the security and well-being of our subjects is the solemn obligation which has been handed down by our imperial ancestors and which we lay close to the heart.

Indeed, we declared war on America and Britain out of our sincere desire to insure Japan's self-preservation and the stabilization of East Asia, it being far from our thought either to infringe upon the sovereignty of other nations or to embark upon territorial aggrandizement.

But now the war has lasted for nearly four years. Despite the best that has been done by every one — the gallant fighting of the military and naval forces, the diligence and assiduity of our servants of the State and the devoted service of our 100,000,000 people — the war situation has developed not necessarily to Japan's advantage, while the general trends of the world have all turned against her interest.

Moreover, the enemy has begun to employ a new and most cruel bomb, the power of which to do damage is, indeed, incalculable, taking the toll of many innocent lives. Should we continue to fight, it would not only result in an ultimate collapse and obliteration of the Japanese nation, but also it would lead to the total extinction of human civilization.

Such being the case, how are we to save the millions of our subjects, or to atone ourselves before the hallowed spirits of our imperial ancestors?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ordered the accept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powers,

We cannot but express the deepest sense of regret to our allied nations of East Asia, who have consistently cooperated with the Empire toward the emancipation of East Asia,

The thought of those officers and men as well as others who have fallen in the fields of battle, those who died at their posts of duty, or those who met with death [otherwise] and all their bereaved families, pains our heart night and day.

But now the war has lasted for nearly four years. Despite the best that has been done by everyone — the gallant fighting of the military and naval forces, the diligence and assiduity of our servants of the state and the devoted service of our 100 million people—the war situation has developed not necessarily to Japans advantage, while the general trends of the world have all turned against her interest.

Moreover, the enemy has begun to employ a new and most cruel bomb, the power of which to do damage is, indeed, incalculable, taking the toll of many innocent lives. Should we continue to fight, it would not only result in an ultimate collapse and obliteration of the Japanese nation, but also it would lead to the total extinction of human civilization.

Such being the case, how are we to save the millions of our subjects, or to atone ourselves before the hallowed spirits of our Imperial Ancestors?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ordered the accept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powers,

We cannot but express the deepest sense of regret to our allied nations of East Asia, who have consistently cooperated with the Empire toward the emancipation of East Asia.

The thought of those officers and men as well as others who have fallen in the fields of battle, those who died at their posts of duty, and those who met with death and all their bereaved families, pains our heart night and day.

The welfare of the wounded and the war sufferers, and of those who have lost then — homes and livelihood is the object of our profound solicitude. The hardships and suffering to which our nation is to be subjected hereafter will be certainly great.

We are keenly aware of the inmost feelings of all you, our subjects. However, it is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time and fate that we have resolved to pave the way for a grand peace for all the generations to come by enduring the unendurable and suffering what is insufferable. Having been able to save and maintain the structure of the Imperial State, we are always with you, our good and loyal subjects, relying upon your sincerity and integrity.

Beware most strictly of any outbursts of emotion that may engender needless complications, and of any fraternal contention and strife that may create confusion, lead you astray and cause you to lose the confidence of the world.

Let the entire nation continue as one fami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ver firm in its faith in the imperishableness of its divine land, and mindful of its heavy burden of responsibilities, and the long road before it. Unite your total strength to be devoted to the construction for the future. Cultivate the ways of rectitude, nobility

of spirit, and work with resolution so that you may enhance the innate glory of the Imperial State and keep pace with the progress of the world.

All you, our subjects, we command you to act in accordance with our wishes.

Hirohito

출처: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미국 총영사관 제공 자료.

첨부 19

일본의 1945년 8월 14일자 항복 성명에 관한 적군 총참모부의 설명

일본의 항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문들을 고려하여 적군 총참모부 사령관 육군 상급대장 안토노프(Антонов)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즉

1. 일본 천황이 일본의 항복에 관하여 행한 8월 14일자 통보는 무조건 항복에 관한 일반적인 성명에 불과하다.

전투행위 중단에 관한 명령이 군사들에게는 아직 하달되지 않았으며, 일본 군사들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군사력의 실질적인 항복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2. 일본 천황이 자신의 군사력에게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하달하는 순간, 그리고 이 명령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순간부터 오직 일본의 군사력이 항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위에 서술된 바를 고려하여 극동에 배치된 소련의 군사력은 일본을 상대로 한 자신의 진공 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다.

출처: Разъяснение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Красной Армии о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45. 16 августа, No. 195. С. 1.

간행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М., 1947. С. 384.

첨부 20

미국 정부가 일본 주재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발송한 1945년 8월 29일자 훈령 (발췌)

이 문서는 항복 이후 초기 대일관계에서의 일반적인 정책 노선에 관한
성명이다. 이 문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으며,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물론,
지침을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미국 내 각 부처에도 발송되었다.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일본 국경 밖에 위
치하면서 카이로선언 및 미국이 참가한 또는 참가할 수 있는 다른 조약들에
따라 제시될 여타 비교적 소규모 군도들로 제한될 것이다.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С. 584.

간행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 at Berlin, 1945. Washington, 1961, p. 933.

1945년 9월 2일자 일본의 항복문서

1. 황제와 일본 정부 및 일본제국 참모부의 명의로 내려진 명령에 따라 활동한 우리들은 미국, 중국, 그리고 영국 정부의 수뇌들에 의해 포츠담에서 7월 26일 발표된 선언의 조건들을 수용한다. 후일 포츠담선언에 합류한 소련을 포함하여 앞의 4개 열강을 이하에서는 연합국으로 명칭한다.

2. 이에 의하여 우리는 연합국에게 일본제국 총참모부, 전체 일본 군사력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불문하고 일본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의 무조건항복을 성명한다.

3. 이에 의하여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든지 모든 일본군과 일본 인민에게 명하노니, 지체 없이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선박, 비행기 그리고 다른 군사 및 민간 재산을 보존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또는 그 사령부의 명령에 따른 일본 정부기관에 의하여 제시될 수 있는 모든 요구들을 이행하라.

4. 이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제국 총참모부에게 명하노니, 전 일본군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불문하고 일본의 통제를 받는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려 개인적으로 무조건항복하게 하라. 또한 그들의 지휘를 받는 모든 부대원들의 무조건항복을 책임지도록 하라.

5. 모든 민간, 육군 그리고 해군의 공식적 인사들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이번 항복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최고사령관이 직접 발령하거나 혹은 그 전권에 의하여 발령될 모든 지시, 명령 그리고 지도에 복종하고 그것들을 이행하라. 우리는 이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 자신의 직책에 남아 이전처럼 자신의 비전투 임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한다. 단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의하여 또는 최고사령관의 전권에 의하여 발표된 특별 명령에 의하여 자신의 직무로부터 면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이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 정부와 그 후계자들이 포츠담선언의 조건들을 정직하게 이행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혹은 연합국에 의해 임명된 다른 모든 어떤 대표가 이 선언을 이행하고자 요구하는 모든 명령을 하달하고 모든 행동을 실행하라.

7. 이에 의하여 우리는 일본제국 정부와 일본제국 총참모부에게 명하노니, 현재 일본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동맹국의 군사포로와 피억류 민간인을 지금 즉시 방면하고, 그들의 보호, 부양과 간호를 보장하라. 또한 지시된 장소로 그들을 즉시 이송하라.

8.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권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종속되며, 최고사령관은 항복조건의 이행을 위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1945년 9월 2일 9시 04분에 도쿄 만에서 서명되었음.

대일본제국 및 일본 정부의 천황 명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다.

시케미쓰 마모루[重光葵]

일본제국 최고사령관 명의의 명령에 기초하고 있다.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1945년 9월 2일 오전 09시 08분 미국, 중화민국, 영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위해 그리고 일본과 전쟁 중이었던 다른 연합국들을 위하여 일본 도쿄 만에서 채택되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미국 대표

니미츠(*Chester William Nimitz*)

중화민국 대표

수윤잔(*Су Юнчан*)

연합왕국 대표

브루스 프레저(*Брус Фрээ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대표

쿠지마 니콜라예비치 데레반코(*Кузьма Николаевич Деревянко*)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인 오스트레일리아군 총사령관 토마스 블레미
(*Thomas Albert Blamey*) 장군,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표들
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출처: Подписание акта о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45. 3 сентября,
No. 211, С. 4.

간행본: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период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 3, М., 1947. С. 480~481.

포츠담선언에 따른 황제 특별칙령의 효력 발생에 관한

히로히토 천황의 1945년 9월 20일자 칙유

영문본

Emperor Hiroshito Announces Japan's Surrender

As the war against Japan entered its fourth year in January 1945, U.S. naval forces began to close in on Japan's outer island defenses. In April a huge armada converged on Japanese territory — the island of Okinawa — some 350 miles south-east of Japan. After nearly three months of bitter fighting in which over 12,000 Americans and over 100,000 Japanese defenders died, the island fell to American forces who now had secured a jumping-off point for the invasion of the home islands. Conscious also of the fanatical resistance and capacity to inflict high casualties that had been displayed by small numbers of Japanese soldiers in recent battles on Guam and Saipan, American military leaders could only expect much higher bloodletting when the U.S. forces would come to face the last-ditch stand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on the Japanese mainland. Despite heavy destruction of Japanese cities by long-range bombers and the looming defeat that now faced the country, it seemed unlikely that there would be a voluntary surrender in view of the “unconditional surrender” demands of the Allied forces and the apprehensions of the military regarding the person of the emperor. So both sides were prepared for the worse.

What came to the rescue of the U.S. forces, of course, was the

atomic bomb, the successful test of which had taken place on July 16, 1945. Exactly three weeks later, and without prior warning other than the promise of “prompt and utter destruction” should the surrender terms be refused, a B-29 bomber dropped the bomb that instantly incinerated some 100,000 people in the city of Hiroshima and left death and destruction in its wake. Two days later a similar fate befell the city of Nagasaki. Though these terrible events failed to induce the military leaders to concede defeat, their resistance was overcome by the emperor who pushed for acceptance of the surrender terms, since amended to leave some hope for retention of the imperial system in a democratic Japan. The decision to surrender was broadcast to the nation by the emperor — an unprecedented event in itself — on August 15 while further rescripts were issued to the armed forces ordering them to lay down their arms. The formal surrender took place on Sep. 2 as Japan came under the occupation of American forces and the administrative fiat of General MacArthur.

To our good and loyal subjects: After pondering deeply the general trends of the world and the actual conditions obtaining in our Empire today, we have decided to effect a settlement of the present situation by resorting to an extraordinary measure.

We have ordered our Government to communicate to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at our Empire accepts the provisions of their joint declaration.

To strive for the common prosperity and happiness of all nations as well as the security and well-being of our subjects is the solemn obligation that has been handed down by our Imperial Ancestors,

and we lay it close to the heart.

Indeed, we declared war on America and Britain out of our sincere desire to ensure Japan's self-preservation and the stabilization of East Asia, it being far from our thought either to infringe upon the sovereignty of other nations or to embark upon territorial aggrandizement.

The welfare of the wounded and the war sufferers and of those who have lost their home and livelihood is the object of our profound solicitude. The hardships and sufferings to which our nation is to be subjected hereafter will be certainly great.

We are keenly aware of the inmost feelings of all of you, our subjects. However, it is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time and fate that we have resolved to pave the way for a grand peace for all the generations to come by enduring the [unavoidable] and suffering what is unsufferable. Having been able to save *** and maintain the structure of the Imperial State, we are always with you, our good and loyal subjects, relying upon your sincerity and integrity.

Beware most strictly of any outbursts of emotion that may engender needless complications, of any fraternal contention and strife that may create confusion, lead you astray and cause you to lose the confidence of the world.

Let the entire nation continue as one fami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ver firm in its faith of the imperishableness of its divine land, and mindful of its heavy burden of responsibilities, and the long road before it. Unite your total strength to be devoted to the construction for the future. Cultivate the ways of rectitude, nobility of spirit, and work with resolution so that you may enhance the

innate glory of the Imperial State and keep pace with the progress of the world.

출처: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미국 총영사관 제공 자료.

첨부 23

피억류자 지원처 설립에 관한 히로히토 일본 천황의 1945년 11월 22일자 칙유 No. 651
(발췌)

각 지방에서 피억류자 지원처는 보건성 소속으로, 대동아전쟁의 종전 결과 일본의 고유영토(일본의 고유영토에서 사할린, 오키나와, 쿠릴열도[치시마, 千島]는 제외)가 아닌 지역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인 지역으로 귀환하는 피억류자들과, 일본의 고유영토인 지역에서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닌 지역으로 귀환하는 피억류자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 제공과 예방접종을 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С. 585.

간행본: Кампо (“Вестник правительства”), 1945. 22 ноября, No. 5661. С. 180.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제국 정부에 발송한 1946년 1월 29일자 각서 No. 677
영문본

SCAPIN No. 677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29 January 1946)

AG 091(29 Jan. 46) GS

(SCAPIN — 677)

MEMORANDUM FOR: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THROUGH: Central Liaison office, Tokyo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1.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2. Except as authorized by this Headquarters,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with any other persons outside of Japan for any purposes other than the routine operation of authorized shipping, communications and weather services.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E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E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 are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b)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Korea, and (d) Karafuto.

5.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7.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submit to this Headquarters a report of all governmental agencies in Japan the functions of which pertain to areas outside a statement as defined in this directive. Such report wi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each of the agencies concerned.

8. All records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will be preserved and kep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is Headquarters,

FOR THE SUPREME COMMANDER:

(sgd.)

H.W.ALLEN

Colonel, AGD

Asst. Adjutant General

출처: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미국 총영사관 제공 자료.

간행본: Сборник важнейших документов, касающихся оккупации и контроля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в Японии (на англ. языке). Т. 2. Токио: МИД Японии, 1949.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첨부 24.1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일본제국 정부에 발송한 1946년 1월 29일자 각서 No. 677

러시아어 번역본

연합국 최고사령관 참모부

일본제국 정부에게 보내는 각서

일본에서 떨어진 일부 외곽지역의 정부 및 행정 지부

1. 일본제국 정부에게 내려진 본 각서에 따라, 일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국가 권력 또는 행정권을 실행하는 것 또는 실행하려는 시도가 금지되며, 정부관원이나 근무자 또는 위 지역 내에 위치한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일본제국 정부는 최고사령관 참모부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나 근무자

들과 연락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일본 외부에 위치한 다른 모든 인격들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일상적인 항행, 통신 그리고 기상업무 등은 예외로 한다.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해 일본의 영토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즉 일본의 주요 4대 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그리고 시코쿠)과 약 1,000개의 소규모 부속도서들로, 여기에는 쓰시마와 북위 30도 이상의 류큐(난세이[南西, 여기서 구치노시마[口之島]는 제외된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의 섬들은 제외된다. 즉 a) 우추료(울릉도), 리앙쿠르(다케시마) 그리고 켈파르트(사이슈 또는 제주도), b) (구치노시마를 포함한)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난세이), 이주군도, 난포, 보닌(오가사와라) 그리고 볼카노(카잔 또는 이오), 또한 다이토(오히가시 또는 오아카리)와 파레스 벨라(오키노토리), 마르쿠스(미나미도리)와 간제스(나카노토리) 등을 포함하는 태평양의 원거리에 위치한 여타 도서들, 그리고 c) 쿠릴열도(천도열도), 하보마이군도(하보마제)를 비롯하여 수시오, 유리, 아키우리, 시보츠와 다라쿠 그리고 시코탄 등이 포함된다.

4. 다음 지역은 일본제국 정부의 국가 및 행정 관할권에서 특별히 제외된다. a)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함께 명령에 의하여 침략했거나 점령한 지역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본이 획득한 지역, b) 만주, 대만 그리고 평후[澎湖]열도, c) 가라후토.

5. 본 지시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영토의 규정이 어떤 형태로든 폐기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은 향후 최고사령관 참모부의 모든 지시, 각서 그리고 명령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6. 본 지령에서 그 어느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서 언급된 소규모 도서들의 최종적 결정과 관련된 동맹국의 정책에 대한 방침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7. 일본제국 정부는 일본 내 모든 정부 기관의 보고서를 준비하여 최고사령관 참모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의 기능은 이 지령에 규정된 것으로서의 성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상기 7항에 언급된 기관들의 모든 보고서는 참모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보존되고 유지될 것이다.

총사령관
(서명) 알렌
군무국장 보좌관
국무국장 국

첨부 25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46년 2월 2일자 포고

출처: Ведомост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1946, 16 февраля, No. 5. С. 4.

첨부 25.1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의 토지, 은행, 산업과 공기업, 철도, 수상운송수단
그리고 통신시설의 국유화에 관하여
(발췌)

1. 1945년 9월 20일부터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의 모든 토지와 그 지하자원, 삼림 그리고 수역(水域)은 소련의 국유재산이다. 즉 모든 인민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의장
칼리닌(М. Калинин)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비서
고르킨(А. Горкин)

1946년 2월 2일 크레믈린, 모스크바.

첨부 25.2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하바롭스크 변강 산하 남사할린
주의 성립에 관하여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의 영토에 도요하라(豊原, 현 유즈노사할린스크)를
그 주도로 삼아 유즈노 사할린스카야 주를 구성하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하바롭스크(Хабаровск) 변강에 편입시킨다.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의장
칼리닌(М. Калинин)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비서
고르킨

1946년 2월 2일 크레믈린, 모스크바.

미국의 1951년 5월 7일자 대일강화조약 안에 관한 소련 정부의 의견

금년 3월 29일 소련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대일강화조약 안을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과의 전쟁이 종료되고 5년이 넘게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제의 평화적 조정 의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은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가 취한 태도, 즉 미국이 여러 구실을 들어 강화조약의 체결뿐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것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관련 국제협정들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나라 정부들과 공동으로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준비하지는 소련 정부의 제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그 결과 외국군의 일본 점령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화되었다.

1. 무엇보다 먼저 소련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의 잘못된 준비를 지적하는 것이다.

미국 측 대일강화조약 안이 포함되어 있는 외교 각서에서 미국 정부는 이 조약 안이 미국 정부 대표자들과 소련을 포함한 일련의 다른 나라 정부 대표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작성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소련 정부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소련 정부는 금년 3월 초에 이미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의 개별 교섭을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소련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의 준비는 어떤 한 나라 정부의 사안이나 그 한 나라가 다른 관련국 정부들이 가지는 견해를 질문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으며, 관련 국제협약들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모든 나라 정부들의 공동 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의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여타 이해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련, 영국, 프랑스와 공동으로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해야 하는,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만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으려 개별적으로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했다.

1945년 8월 2일자 포츠담협정에 따라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이 참여하는 5개국 외상회의가 창설되었다. 게다가 포츠담협정에서는 5개국 외상회의가 우선적으로 ‘평화적 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창설되고, 관련 강화조약들을 작성할 경우 ‘5개국 외상회의는 당해 임무와 관련된 적국에게 강요되는 항복의 조건에 합의하고 서명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등과의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미국, 소련, 중국, 영국에 대일강화조약의 작성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앞서 언급한 포츠담협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소련 정부는 1947년에 이미 대일강화조약에 착수하기 위해 중국, 미국, 소련, 영국 대표들로 구성된 외상회의의 특별회의를 소집하고자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자기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나라들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 안을 작성하는 준비작업의 개시가 예정되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기 위한 외상회의의 소집뿐 아니라 이 조약을 검토하기 위한 평화회의의 소집의 필요성마저도 도외시하면서, 이 제안뿐 아니라 대일강화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재개되었던 소련 정부의 다른 노력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소련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오랜 기간 군국주의 일본의 무자비한 침략을 당했고,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수행했으며,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 인민들의 유일한 합법적 대

표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고 극동에 항구적인 평화를 건설하는 문제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 없이 극동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미 점령권력에 대한 현 일본 정부의 종속성을 활용하면서 불공정한 조약을 통해 미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강화조약 조건을 일본에 강요하기 위해 소련,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대일강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이 사안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두 번째로, 소련 정부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이 강대국들 간의 기존 협정들과 부합하지 않는 일련의 잘못된 입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 1945년 알타협정 등과 같은 잘 알려져 있는 국제협약들을 통해 미국, 영국, 중국 및 소련 정부는 장래 체결될 대일강화조약 문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들을 통해 일본의 국경선이 확정되었고, 일본에 “평화의 의지와 일본 인민들의 의지가 자유롭게 반영된 책임 있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며, 그 후에 점령군이 일본에서 철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협약들, 그리고 이후에 강대국들이 체결한 협정들에서는 일본에서 “일본 인민들 사이의 민주주의 의식 부활 및 강화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제거”해야 하고, 나라의 평화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들에서는 정권에 대한 군국주의자들의 영향력 제거 및 일본의 비무장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은 앞서 언급한 협약들에 규정된 이와 같은 강대국들의 의무를 상당부분 무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영토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는 타이완 섬과 평후열도가 중국 측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조약 안에서는 일본

이 타이완과 평후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타이완과 평후열도의 중국 반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조약 안은 타이완과 평후열도의 중국 반환에 대한 카이로협정을 위반하여 사실상 중국과 분리되어 있는 타이완과 평후열도의 현재 지위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조약 안은 류큐제도[琉球諸島],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Bonin Islands], 로사리오(Rosario), 가잔열도[火山列島], 오키노도리[沖ノ島, Parece Vela], 미나미토리지마[南鳥島, Marcus Island] 등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박탈하고, 이 도서들에 대한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수립이라는 명목 하에 이 도서들을 미국이 통치하도록 이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들 간의 협정이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상기 도서들을 일본에서 탈취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탈취는 아무런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문제가 앞서 언급한 국제협정들에서 후퇴한 점은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조약 안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방지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력 규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일본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침략국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와의 강화조약에 이탈리아군 정원, 해군 병력 수, 그리고 공군의 수 등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미국의 조약 안에는 일본 군사력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이탈리아에 비해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말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이른바 “자위”를 위해 자신의 군사력 규모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련 정부는 이것이 일본에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입장은 일본의 비무장화에 대한 강대국들의 어떠한 협정 과도 부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조약 안은 일본에서의 점령군 철수 기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았고, 강화조약 체결 이후에도 미국 점령군과 군사기지의 유지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심지어 “평화적 조정”이 완료된 후에도 일본에 대한 군사적 점령은 종료되지 않고, 미국이 일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탈리아와의 강화조약에서는 이탈리아로부터의 점령군 철군이 강화조약 체결 후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일본은 이탈리아와 비교하여 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고, 미국은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이후 일본에 대한 점령을 무기한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1945년 포츠담선언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정부가 미군의 일본 점령을 일본의 항복문에 서명한 나라들 사이에 합의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기에 덧붙일 필요가 있다. 미국 점령군은 일본 영토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일본의 영토, 일본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한국에서의 군사적 간섭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를 실현하는 목적으로만 미군에게 일본 점령 권한을 부여한 국제협정들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조약 안은 일본 평화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나라의 평화경제 발전 및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통상관계가 없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일본 인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불가능하다.

소련 정부는 이해당사국들의 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하고자 계획 중인 다른 의견서와 조약 안도 가지고 있다.

3. 대일강화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는 소련 정부는 강화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연합국들 간에 체결된 국제협정들에 의거하여 만들어지고, 조약 안의 작성은 해당 국가들(국동위원회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소련 및 영국 정부들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강화조약 안을 평화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회부하기 위해 일본과의 전쟁에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했던 모든 국가의 대표들을 대일강화조약 안 작성 준비 작업에 참여시킬 것을 염두에 두면서, 대일강화조약 안의 작성을 개시하고자 1951년 6월 혹은 7월에 미국, 중국, 영국, 소련 대표들이 참여하는 외상회의를 소집한다.

둘째. 다음과 같은 기본목적들을 지침으로 하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알타협정에 입각하여 대일강화조약 안을 작성한다.

a) 일본은 평화를 애호하고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

b) 일본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탈리아와의 강화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인민들에게서 민주주의의 권리를 박탈할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 군사조직 혹은 군사화된 조직들의 존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c) 이탈리아와의 강화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군사력 규모를 자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d) 일본의 평화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일본에 부과하지 않는다.

e) 일본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교역과 관련한 모든 제한 조치들이 해제될 것이다.

셋째. 조약에는 일본이 군국주의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자신의 군사력을 참여시켰던 나라들 중 한 나라를 적대의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조약에는 대일강화조약 체결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점령군이 일본 영역에서 철군하고 어떠한 외국도 일본에 군대나 군사기지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한 나라들은 일본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합의한다.

모스크바, 1951년 5월 7일

출처: Совет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1917~1957.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No. 171. М.: Изд-во вост. лит-ры, 1959. С. 260~264.

신문: Известия, 1951, 23 мая, No. 118.

첨부 27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행한 소련 제1외무차관 그로미코의 1951년 9월 5일자 연설

(발췌)

의장님, 대표분들.

소련 대표단은 가장 먼저 대일강화조약 의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을 포함하여 금번 회담에 참여한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침략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이 의제의 중요성은 이미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1931년에 이미 만주를 침략하였습니다. 군국주의 일본은 자신에 의해 아시아대륙으로의 침략을 확장하기 위한 군사적 교두보로 변형된 만주를 6년 동안 점령한 후에 1937년에 중국 중심부를 침공하여 중국의 핵심부를 점령하였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일본 침략자들에 맞선 투쟁에서 막대한 물질·인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였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군국주의 일본이 하산 호수 인근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소련을 침공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타격을

당했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소련에 대한 자신의 침략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39년 일본 침략군은 소련 영토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 몽골인민공화국 지역에 있는 할힌골 인근의 다른 지역에 대한 침공을 재개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이 소련군으로부터 정당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소련의 극동을 차지하는 게 자신들의 목적임을 숨기지도 않은 채 소련에 대한 자신의 침략계획을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아, 버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극동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인민들도 그와 같은 일본의 침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태평양의 미국 해군기지(진주만)를 공격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련 대표단은 금번 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재차 침략의 길로 나아가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일강화조약 의제의 중요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이 회담에 제출한 대일강화조약 안은 이 조약 안의 작성자들이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고 일본을 또다시 침략과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마음을 쓰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I. 대일강화조약이 의거해야 할 원칙들에 대하여

대일강화조약 의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먼저 이 조약의 기반이 되어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일본이 또다시 침략국으로 전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들의 모험주의적 계획들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일본에서 이미 자신들의 고개를 들고 있는 군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일본의 운명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회담 참여국들이 일본과 관련한 주요 국제협정들에서 표명되었던 원칙들에서 출발하고 그 원칙들의 실현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게 된다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대일전의 수행뿐 아니라 일본의 평화적 조정 및 일본의 평화애호적·민주적 국가로의 전변과 관련하여 일련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던 1943년의 카이로선언, 1945년의 포츠담선언, 1945년의 알타협정 등과 같은 협정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제연합이 일본을 포함한 적대국들과 개별적 강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기로 했던 1942년 1월 1일자 국제연합헌장, 대일전 종료 후에 이미 채택되었던 새로운 대일정책에 대한 소련, 영국, 미국,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디아, 필리핀 등이 참여한 극동위원회의 결정 등의 협정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본과 관련한 연합국들의 협정들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청산과 특히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이웃 나라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 및 인민들과의 정상적 관계를 지지하는 평화 애호국으로의 전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 재개를 용인하지 않고 일본과 다른 나라들 간의 평화적 관계를 보장하고자 노력하려 한다면, 이상과 같은 목적들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후 모든 점령군이 일본에서 철군해야 하고, 일본 영역을 외국군 기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당연한 것입니다. 강화조약에 이러한 조항이 정확하고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일본의 주권 회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일본과의 평화적 조정 목적과 배치될 뿐 아니라, 극동의 평화를 지지한다는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합국 협정들에서는 일본을 민주국가로 전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일강화조약을 통해 일본과의 평화적 조정과 관련된 일련의 영토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의무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그리고 알타협정에서 표명되었습니다.

이 협정들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탈취당한 채로 남아 있는 영토에 대한 중국,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포르모사), 평후열도, 난사군도[南沙群島] 및 중국의 여타 영토 등과 같은 중국 고유의 영토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소련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사할린 남쪽 부분과 그곳에 연한 모든 섬들, 그리고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불가침적 권리도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무력으로 탈취한 영토들에 대한 불가침적 권리에서 출발한다면,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면서 영토문제를 결정할 경우 어떠한 불명확성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Ⅱ.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은 강화조약이 아닌 전쟁준비조약이다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이 일본에 대한 연합국들의 관련 협정들에서 표명되었던 원칙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극동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에서는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목적을 가진 미국의 비호 아래 창설된 군사집단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화조약 안에 일본과 다른 나라들 간의 군사협정을 예정한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강화조약 자체에 이미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정 체결 의제가 사전에 규정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본의 운명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규정되도록 하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은 일본의 이웃나라들,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칼끝을 겨누는 군사동맹에 가입할 의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강화조약 안에 규정된 군사협정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군사집단에 대한 일본의 가입 의무를 통해 일본에 족쇄를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는 이러한 요구의 진정한 성격은 일본을 상대로 이웃나라들에서 어떠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개별적 및 집단적 방위”권에 대한 어떠한 조작된 문구로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자위를 목적으로 어떤 군사집단에 가입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자국의 자위를 위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협정 및 동맹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00여 년 동안 일본이 어떤 나라로부터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진정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토문제 관련 부분에 대해 언급하자면, 소련 대표단은 이 조약 안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중국에서 탈취한 중국 고유의 영토인 타이완, 평후열도, 난시군도 및 여타 도서들을 중국이 반환받을 고유한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약 안에는 일본이 이 영토들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 영토들의 그 후 운명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앞서 언급한 섬들은 사실상 미국에 의해 점령되어 있고, 미국은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약 안을 통해 자신의 이와 같은 침략행위를 합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토들의 운명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영토들은 그 땅의 주인인 중국 인민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은 현재 이미 소련의 주권하에 있는 남사할린과 그곳에 연한 섬들 및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마저도 난폭하게 침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조약 안은 이 영역들의 역사적 귀속성과 소련 영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일본의 의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 영역들에 대한 일본의 권리, 소유권, 청구권을 부정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해시기에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그리고 알타협정에 서명했던 미국과 영국이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그와 같이 제안하면서 이러한 국제협정들에서 받아들였던 의무를 가장 난폭하게 침해하는 길로 나섰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은 류큐제도, 오가사와라제도, 로사리오, 가잔열도, 오키노도리, 미나미토리지마, 다이토제도[大東諸島] 등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박탈하고, 이 섬들에 대한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확립이라는 명목하에 이 섬들을 미국이 통치하도록 이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앞서 언급한 연합국들 간의 협정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서는 상기 섬들을 일본에서 탈취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략적 의미를 지닌 이런저런 영토들에 대하여 신탁통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에 포함된 요구가 독단적이고 불법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은 공고한 평화의 확립과 새로운 전쟁 위협의 제거를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지하는 어떠한 나라에게도 만족을 주지 않으며, 만족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조약 안은 특히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극동에서 이웃나라들과의 평화적 공존에 상시적인 위협을 가하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인민들의 나라인 아시아와 극동의 나라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디아, 버마 및 몇몇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강화조약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조약 안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및 일본의 침략국으로의 전변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담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약 안은 군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의 안전보장에 대한 담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약 안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일본에 의한 침략 재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조약 안은 사실상 외국 점령군의 철군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약 안은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외국군의 일본 영토 내 주둔과 일본 내 외국 군사기지의 유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약 안은 일본의 자위라는 명목하에 미국과의 침략적 군사동맹에 일본을 참여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약 안은 군국주의 일본을 상대로 한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 중 특정국가에 적대적인 어떠한 동맹에도 가입하지 못한다는 일본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그 반대로, 미국의 비호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극동의 침략적 블록에 일본을 참여시키기 위한 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4. 조약 안은 일본의 민주화 및 일본 인민들의 민주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일본에 전쟁 이전의 파시즘 체제를 부활시키는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조약 안은 타이완(포르모사), 펑후열도, 난사군도 및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에서 분리된 다른 중국 고유의 부분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법적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6. 조약 안은 소련에 사할린을 반환하고 쿠릴열도를 양도한다는 알타협정에 따라 미국과 영국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에도 배치됩니다.

7. 많은 수의 경제 조항들은 외국,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독점가들을 위해 점령 기간 중에 그들이 획득한 특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 외국 독점가들에게 노예적으로 종속되게 될 것입니다.

8. 조약 안은 일본에 점령당했던 나라들이 제기하는 일본으로 인해 발생

한 해당국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합법적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약 안은 일본 인민들의 직접적인 노동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면서 일본에 배상의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9.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은 강화조약이 아니라, 극동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조약입니다.

III. 대일강화조약 준비 규범에 대하여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거해야 할 규범은 소련,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의 5개국 외상회의에서 확인된 포츠담협정 및 연합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한 나라들과는 개별적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1942년 1월 1일자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되었습니다. 포츠담협정에서는 5개국 외상회의가 우선적으로 “평화적 조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해 창설되고, 관련 강화조약들을 작성하면서 “5개국 외상회의는 이번 임무, 즉 일본이라는 적대국에게 강요되는 항복의 조건에 서명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회원들로 구성될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문제에는 어떠한 불명확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협정들에서 채택한 자신의 의무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준수하는 나라들은 이 협정들에 적시된 대일강화조약 준비 규범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자신들의 임의대로 강화조약을 준비하고, 지금과 같이 다른 나라들에 자신들이 준비한 개별적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하라고 선동하는 것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했던 다른 모든 나라들도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데 참여시켜야 합니다. 소련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1947년 12월 30일자 중국 정부에 보내는 각서와 1948년 1월 4일자 영국 정부에 보내는 각서를 통해 1947년에 이미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강화조약 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지 않고는 대일강화조약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조약을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이 두 나라의 참여를 배제하면서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인디아와 버마는 샌프란시스코회담 참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주요 나라들인 중국과 인디아가 미국 및 영국에 의해 이번 회의의 참가국들에게 강요된 대일강화조약 안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배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조약 안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일 뿐더러, 이것이 그와 같은 정책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련은 샌프란시스코회담 참석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과 관련한 의심의 여지없는 진실을 숨김없이 뚜렷하게 밝히며, 극동에서의 평화 조정이라는 이익에 실제로 부합하고 보편적 평화의 강화에 기여하는 대일강화조약을 위 조약 안과 대비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IV. 소련의 제안

소련 대표단은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이 대일강화조약에 제기되고 있는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미국과 영국이 회담에서 토의하도록 제출한 강화조약 안에 다음과 같은 수정을 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제2조

a) “b”와 “f” 항 대신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킨다.

“일본은 만주, 타이완(포르모사)과 이에 연한 모든 섬들, 평후열도, 동사군도[東沙群島, 프라타스(Pratas)제도], 시사군도[西沙群島], 중사군도(中沙群島) [파라셀(Paracel) 제도, 선덕군도(宣德群島), 임피트리테군도(Amphitrite Group), 맥스필드 뱅크를 포함],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를 포함한 난사군도 등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이 조에 언급된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b) “c” 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일본은 사할린 섬 남쪽 지역과 이에 연한 도서들 및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이 영토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2. 제3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일본의 주권은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및 류큐제도, 오가사와라 군도, 니시노지마, 가잔열도, 오키노도리 섬, 미나미토리 섬, 쓰시마 및 제2조에 언급된 영토 및 도서를 제외하고 1941년 12월 7일까지 일본에 속했던 여타 도서들로 이루어진 영역에 미친다”.

3. 제6조

“a” 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연합국의 모든 군병력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동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90일 이내에 일본에서 철군하며, 그 이후 어떠한 연합국 혹은 외국군도 일본에 자신의 군대나 군사기지를 보유하지 않는다”.

5. 제23조

“a”와 “b” 항 대신에 다음과 같은 항을 포함시킨다.

“이 조약은 일본을 포함하여 이 조약에 서명하는 나라들에 의해 비준된다. 비준서가 일본 및 미국,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영국,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기탁되었을 때 이후에 비준한 모든 나라, 즉 오스트레일리아, 버마, 캐나다, 실론, 프랑스, 인디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몽골인민공화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영국, 북아일랜드,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미국에 대해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후에 이 조약을 비준하는 나라들에서는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9. 새로운 조 (제3장에 포함)

“일본은 자신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한 국가를 상대로 한 동맹 혹은 군사연합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13. 새로운 조 (제3장에 포함)

“1. 라페루즈해협(소아해협)과 네무로해협[根室海峽]의 모든 일본 해안, 상가르스키해협(쓰가루해협), 쓰시마해협은 비무장화되어야 한다. 이 해협들은 항상 모든 나라의 교역선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다.

2. 동 조의 제1항에 언급된 해협들은 동해에 연한 나라들의 군사용 선박들에게만 개방되어야 한다”.

소련 대표단은 회담 참가국들이 소련 정부의 이 제안을 논의하기를 요청합니다.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행한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의 1951년 9월 5일자 연설
(발췌)

제1장은 전쟁 상태를 중단하고, 이로부터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 인정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인정된 주권을 “일본 국민들의 주권”으로 기술힌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제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규정이 일본과 관련하여 사실상 6년 전에 효력을 발생시킨 영토 규정에 대한 포츠담 항복조건의 규정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츠담 항복조건은 일본과 관련된 모두와 연합국 전체가 받아들이는 유일하게 확정된 평화의 조건입니다. 몇몇 연합국들 간에 개별적 규범에 대한 일련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디만, 일본도, 다른 연합국들도 이 합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약에 일본의 주권이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몇몇 작은 섬들로 국한된다는 제8조 항복조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제2장 제2조에 따른 일본의 권리 포기는 이 항복조건에 엄격하고 정확하게 합치되는 것입니다.

하보마이 섬이 제2조 c)에 언급된 쿠릴열도라는 지리적 명칭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연합 국제재판소에서 추가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석:

*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연합 국제재판소에서 추가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문은 발췌한 원전자료에는 생략되어 있음.

출처: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С. 32.

첨부 29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행한 요시다[吉田] 일본 총리의 1951년 9월 7일자 연설
(발췌)

회담에서 제안된 강화조약은 징벌적이거나 억압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에 어떠한 항구적 제한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조

약은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 평등 및 자유를 회복시키고, 일본을 국제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회원으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의 조약이 아니라 “평화 및 신뢰”의 조약입니다. 일본 대표단은 이 공정하고 관대한 조약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며칠 동안 바로 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이 조약에 반대하는 몇몇 대표단의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자간 평화조정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조약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일본인들마저도 조약에서 우리에게 아픔과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몇몇 조항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약의 공정성과 역사상 유례없는 아량, 그리고 일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하의 조항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영토적 귀속의 문제

쿠릴열도 및 남사할린과 관련하여 나는 일본이 침략의 결과로 이 영토를 장악했다는 소련 대표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남쿠릴의 2개 섬(이투루프와 쿠나시르)을 소유하게 되었던 시기에 차르 정부로부터 어떠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북쿠릴(우루프 섬의 이북)과 사할린의 남쪽 절반은 일본과 러시아 주민들에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1875년 5월 7일 일본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평화적 교섭을 통해 남사할린을 러시아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토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교환”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이 러시아에 남사할린을 양보했을 뿐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중재 덕분에 체결된 1905년 포츠머스조약에 따라 남사할린도 일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인 1945년 9월 20일 사할린과 남쿠릴은 러시아에 의해 일방적으로 점령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4개 주요 섬 중 하나인 홋카이도에 속한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일본군이 그곳에

수비대를 배치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직도 소련군에게 점령되어 있습니다.

출처: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С. 37~38.

첨부 30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행한 소련 제1외무차관 그로미코의 1951년 9월 8일자 성명
(발췌)

소련 대표단은 회담에서의 성명을 통해 이미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소련 대표단은 이 조약 안이 극동에서의 진정한 평화적 조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련 정부는 일본과의 개별적 조약 체결을 허용할 수 없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회담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른바 개별적 대일강화조약의 체결입니다. 건전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지 않고는 극동에서의 진정한 평화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진정으로 극동에 평화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양국 정부는 대일강화조약 문제를 중화인민공화국과 합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대일강화조약 안의 작성자들이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소련 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평등한 구성원으로 회담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이 제안은 미국의 난폭한 압력으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자신들의 양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중국 인민들은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일강화조약 문제는 일본을 상대로 한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나라가 대다수인 회담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일강화조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을 참여시키고 중국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회담 조직자들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을 조성했는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장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회담에 참석한 나라들 중 어떤 나라들이 대일강화조약에 서명할 것 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중국 하나만이 회담에 불참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두 번째로 국토가 넓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디아와 버마도 회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2개국이 아시아 인민들의 이익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정부와 논의했다는 미국 대표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소련은 대일강화조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일강화조약과 관련하여 소련 정부가 이런저런 의견이나 제안을 제기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의견이나 제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비록 소련과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련과의 협상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소련의 참여 없는 극동의 평화적 조정 역시 불가능합니다.

솔직하게 말해, 미국과 영국의 조약 안은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으므로 인해 일본 인민들의 견해를 표명할 수 없는 현 일본 정부간의 거래입니다.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영토문제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영국의 대일강화조약 안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이 강탈당했던 중국

고유의 영토인 타이완(포르모사), 평후열도, 시사군도 및 여타 도서들에 대한 중국의 불가침적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 안의 작성자인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통해 이 영토에 대한 중국의 불가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자신들이 이 권리를 실현시키는 의무를 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소련 대표단은 대일강화조약 안에 일본이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진술하였습니다. 조약 안은 이 영토와 관련하여 알타 협정에서 미국과 영국이 지기로 했던 의무와 근본적으로 배치됩니다.

소련이 그와 같은 교섭의 자리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소련이 이와 같은 극동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계획과 결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일강화조약을 강요하는 자는 인민들 앞에서 그 같은 시도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숨김없이 뚜렷하게 선언하지 않는다면 소련은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출처: Правда, 1951, 10 сентября.

첨부 31

일본과 체결한 1951년 9월 8일자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발췌)

연합국과 일본은 향후 양자 관계는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그들의 공동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결의하거나, 그들 간에 전쟁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여

전히 미해결 중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강화조약을 체결하기를 바라는 까닭에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어떤 상황하에서도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연합헌장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이자, 전후 일본의 입법에 의해 이미 시작된 안정과 복지에 관한 조건들을 일본 내에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적 및 사적 무역과 통상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정한 관행들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하는바, 연합국들은 위에서 언급된 일본의 의사를 환영하므로, 연합국들과 일본은 이 강화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서명자인 전권대사들을 임명했다. 전권대사들은 자신들의 전권위임을 제시하여 그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확인된 후 다음의 조항들에 동의했다.

제1장

평화

제1조

- a) 일본과 각 연합국들 간의 전쟁상태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조약이 일본과 관련 연합국들 간에 시행되는 날부터 종료된다.
- b) 연합국들은 일본과 일본의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제2장

영역(領域)

(발췌)

제2조

-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평후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 인접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d)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전에 일본의 위임통치 하에 있던 태평양의 도서에까지 신탁통치제도를 확대하는 1947년 4월 2일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수용한다.

e)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남극 지역의 여하한 부분에 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f) 일본은 난사군도와 시사군도에 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3조

일본은 북위29도 이남의 (류큐제도 및 다이토제도를 포함한) 난세이제도[南西諸島], 소후칸[小婁岩] 남쪽의 (오가사와라군도, 니시노지마[西之島] 및 가잔열도를 포함한) 난포제도[南方諸島], 그리고 오키노토리 섬과 미나미토리 섬을 유일한 통치당국인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두고자, 미국이 국제연합에 제시한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한다. 미국은 그런 제안과 그에 대한 긍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영해를 포함한 그 섬들의 영토와 주민들에 대한 모든 행정, 입법,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장

보장

(발췌)

제5조

a) 일본은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언급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의무를 받아들인다.

i) 국제평화와 안전, 정의가 위협받지 않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적 논쟁을 해결할 것.

ii) 일본의 국제관계에서 어떤 나라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국제연합의 목적에 상반되는 위협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금하는 의무.

iii)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국제연합을 지원하고, 국제연합이 예방 또는 제재행동을 취하는 어떤 나라도 지원하지 말아야 할 의무.

b) 연합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제연합헌장 제2조의 원칙을 지침으로 할 것을 확인한다.

c) 연합국은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언급된 개별적 및 집단적 고유자위권을 소유하며, 집단안보조약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6조

(발췌)

a) 연합국의 모든 점령군은 본 조약의 시행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 후 90일 내에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다. 단 이 규정으로 1개 혹은 그 이상의 연합국을 일방으로 하고 일본을 다른 일방으로 하여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상호간, 혹은 다자간 협정에 의해 외국 군을 일본 영토 내에 주둔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제4장

정치 및 경제 조항

(발췌)

제8조

(발췌)

a) 일본은 연합국이 1939년 9월 1일에 개시한 전쟁상태를 종료하기 위해 현재 또는 향후에 체결할 모든 조약 또는 연합국이 평화회복을 위해서나 평화회복과 관련되어 체결한 다른 조약의 완전한 효력을 인정한다. 또한 일본은 종전의 국제연맹 및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를 폐지하기 위해 행해진 모든 협약들을 수용한다.

제11조

일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일본 국내 및 국외의 여타 연합국전쟁범죄법정의 판결을 인정하고, 일본에 구금되어 있는 일본 국민에게 선고된 형량을 집행한다. 구금된 이들에 대한 사면, 감형 및 가석방 권한은 정부 또는 사안별로 형량을 선고한 연합정부의 결정에 따라 혹은 일본의 권고에 기초한 경우 이외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극동군사재판소에서 선고받은 피고의 경우 재판소에 대표자를 출석시킨 정부 중에서 다수의 결정이 있을 경우 혹은 일본의 권고에 기초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장

청구권과 재산

(발췌)

제19조

(발췌)

a)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전쟁상태의 존재로 말미암아 취해진 조치들로부터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고, 본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일본 영토 내에서 연합국 군대나, 당국의 존재나, 직무수행 혹은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청구권

을 포기한다.

제21조

중국은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10조 및 제14조 a) 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이 조약의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장

분쟁의 해결

제22조

이 조약을 체결한 어떤 당사국이 특별청구권재판소나, 다른 합의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본 조약의 해석 혹은 실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동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분쟁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회부한다. 일본과 아직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국이 아닌 연합국은 각각 본 조약을 비준하고, 1946년 10월 15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 조항에 명시된 성격을 지닌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부 사법권의 특별한 합의 없이 수락하는 일반선언서를 동 재판소 서기에게 기탁한다.

제7장

최종조항

제23조

a) 본 조약은 일본을 포함하여 이 조약에 서명하는 나라에 의해 비준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일본에 의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령국으로서의 미국을 포함하여 다음의 나라들, 즉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실론, 프랑

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과반수에 의해 기탁될 경우 그 당시까지 비준을 완료한 모든 나라들에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후일 이 조약을 비준한 나라들에서는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 본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b)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 이후 9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조약을 비준한 나라는 일본이 비준서를 기탁한 날 이후 3년 이내에 일본 정부 및 미국 정부에 그 취지를 통고하여 자국과 일본 간에 본 조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24조

모든 비준서는 미국 정부에 기탁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기탁 사실, 제23조 a)에 의거한 본 조약의 효력 발생일 및 본 조약의 제23조 b)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통고를 모든 서명국에 통보한다.

제25조

본 조약을 적용할 때, 연합국이란 일본과 전쟁을 수행했던 나라 또는 이전에 제23조에 열거된 나라의 영역 중 일부를 이루고 있던 나라를 의미한다. 단 각 경우 당해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21조 규정을 유보하여, 이 조약은 여기에 정의된 연합국의 일국이 아닌 여하한 나라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도 일본의 어떠한 권리, 소유권 및 이익도 앞에서 정의된 연합국의 일국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제26조

일본은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의한 어떤 국가와 일본과의 전쟁상태에 있는 어떤 국가, 또는 이전에 본 조약의 서명국이 아

년 제23조에 명명된 어떤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어떤 국가와 본 조약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양자 간 강화조약을 체결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이런 일본의 의무는 본 조약이 최초로 발효되고 3년 뒤에 소멸된다. 일본이 어떤 나라와 이 조약에서 규정한 것보다 많은 이익을 그 나라에 부여하는 평화적 해결이나 전쟁청구권을 처리할 경우에는 그런 이익은 본 조약의 당사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27조

이 조약은 미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미국 정부는 인증된 사본을 각 서명국에 교부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이하에 거명된 전권위원들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일본어로 작성되었다.

출처: История войны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В пяти томах / Под общей редакцией Усами Сэйдзиро, Эгути Бокуро, Тояма Сигэки, Нохара Сиро и Мацусима Эйити. Том V. Мирный договор / Перевод с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Под редакцией Б. В. Поспелов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8. С. 337~358.

1952년 3월 20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비준서 당시 이루어진 미국
상원의 조건

상원이 성명하는 바, 상기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할린 남부와 그 부속도서, 쿠릴열도, 하보마이군도, 시코탄군도 또는 여타 모든 지역과 관련하여 그리고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었던 권리 및 이익과 관련하여,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느 것도 소련을 위해 일본이나 연합국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축소하거나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그 조약에서 유래하는 어떤 권리나 우월권을 소련에 양도해서도 안 된다. 또한 이 조약에 언급된 그 어떤 것도 일본 문제로 1945년 2월 11일에 체결되어 ‘얏타협정’이라 불리는 것에 소련과 관련하여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미국 측으로부터의 승인을 확인하지 않는다.

출처: Congressional Record, 82-nd Congress, 2-nd Session, 1952, March 20, p. 25~44; Congressional Records, 1952, July 29, Vol. 98, Part 5, p. A4888~A4889. См. также: Госдепартамент США, Бюллетень, 1952, No. 671, С. 688; Американский журнал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раву, 1952, No. 3, С. 96~97.

일본 입법에 따른 쿠릴열도의 구성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С. 579.

일본 수상의 1869년 8월 15일자 포고문 No. 734의 첨부
(발췌)

치시마(쿠릴) 도(道)는 쿠나시르, 이투루프, 후루베츠(Фурубэцу), 사나(Сяна) 그리고 시베토로(Сибэгоро, 蘂取郡) 등 5개 군(郡)으로 구성된다.

출처: Хорэй Дзэнсё(법령전서), 1869 (Полный сборник законов за 1869 г.),
Токио, 1887. С. 300.

일본 수상의 1876년 1월 14일자 포고문 No. 2
(발췌)

지역 개간업무를 담당하는 총독의 치하에 있는 쿠릴열도는 이 시점부터 치시마 현에 복속되며, 우루프, 시무시르 그리고 솅슈 등의 3개 군으로 구성된 이 현의 하위 단위가 된다.

출처: Хорэй Дзэнсё, 1876 (Полный сборник законов за 1876 г.), Токио,
1890. С. 3.

일본 수상과 내무대신의 1885년 1월 6일자 포고문 No. 1
(발췌)

이 시점부터 네무로 현의 하나카시(Ханакаси) 군에 속한 시코탄 섬은 치시마 현에 속하여 시코탄 군이라는 명칭을 부여받는다.

출처: Хорэй Дзэнсё, 1885 (Полный сборник законов за 1885 г.). Токио, 1904. С. 3.

일본 해군성 산하 수로측량국에서 1937년에 발간한 사할린 남부와
치시마의 수로도에 의거한 쿠릴열도
(발췌)

제1부. 치시마

쿠릴열도 - 화산에서 형성된 높은 산악으로 이루어진 도서들의 암초맥으로 두 개의 대규모 도서들이 맥처럼 형성되어 있다. 도서로 형성된 첫 번째 맥에는 쿠나시르, 이투루프, 우르프, 파라무시르 등이 포함된다. 이 섬

들은 그 중심에서 북동방면과 남서방면으로 이어지는 선을 이루면서 홋카이도에서 시레토코 곶과 노사푸 곶을 연결하고 있으며 캄차카 반도의 남단에 까지 이른다. 도서로 형성된 두 번째 맥은 위 첫 번째 맥과 평행하게 남동쪽 방향으로 향하면서, 브로우톤(Броутон), 라이코케, 치린고탄(Чиринкотан), 에카르마, 마칸루시, 시린키, 알리아드 등의 도서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노삽푸 곶에서 북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수이쇼(Суйсё)군도와 시코탄 역시 여기에 속한다.

제3부. 치시마군도의 남부

본 3부에는 치시마군도의 남부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2개의 대규모 섬, 즉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수이쇼와 시코탄이 포함된다.

제5부. ‘홋카이도와 사할린 남부 수로도’

쿠나시르, 이투루프 그리고 우루프 섬이 수이쇼군도, 아키유리, 유리(Юри), 시보츠(Сибоц) 그리고 타라쿠(Тараку) 그리고 시코탄과 함께 쿠릴열도의 남부를 이룬다.

출처: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пропущенные вехи на пути к мирному договору.
М.: Бимпа, 2001, С. 74.

첨부 34.2

‘브리테니커백과사전’의 ‘쿠릴열도’ 조

영문본

KURILES, a chain of small islands belonging to Japan, stretching

in a north-easterly direction from Nemuro bay, on the extreme east of the island of Yezo, to Chishima-kaikyo (Kuriles strait), which separates them from the southernmost point of Kamchatka. They extend from 44° 45' to 50° 56' N. and from 145° 25' to 156° 32' E. Their coasts measure 1,496 m.; their area is 6,159 sq. m.; their total number is 32, and the names of the eight principal islands counting from the south, are Kunashiri, Shikotan, Etorofu (generally called Etorop, and known formerly to Europe as Staten island), Urup, Simusir, Onnekotan, Paramoshiri (Paramusir) and Shumshiri. From Noshapzaki (Notsu-no-sake or Notsu cape), the most easterly point of Nemuro province, to Tomari, the most westerly point in Kunashiri, the distance is 7 1/3m., and the Kuriles strait separating Shumshiri from Kamchatka is about the same width. The name "Kurile" is derived from the Russian *kurit* (to smoke), in allusion to the active volcanic character of the group. The islands lie entangled in a vast net of sea-weed; are the resort of innumerable birds, and used to be largely frequented by seals and sea-otters, which, however, have been almost completely driven away by unregulated hunting.

Near the south-eastern coast of Kunashiri stands a mountain called Rausunobori (3,005 ft. high), round whose base sulphur bubbles up in large quantities, and hot springs as well as a hot stream are found. On the west coast of the same island is a boiling lake, called Ponto, which deposits on its bed and round its shores black sand, consisting almost entirely of pure sulphur. This island has several lofty peaks; Ponnobori-yama near the east coast, and Chachanobori and Rurindake in the north, Chachanobori (about 7,382 ft.) is described by Chamberlain and Mason as "a cone within a cone,

the inner and higher of the two being — so the natives say — surrounded by a lake.” The island has extensive forests of conifers with an undergrowth of ferns and flowering plants, and bears are numerous. The chief port of Kunashiri is Tomari on the south coast. The island of Shikotan is remarkable for the growth of a species of bamboo (called Shikotan-chiku), having dark brown spots on the cane. Etorofu has a coast-line broken by deep bays, of which the principal are Naibo-wan, Rubetsu-wan and Bettobuwan on the northern shore and Shitokap-wan on the southern. It is covered almost completely with dense forest, and has a number of streams abounding with salmon. Shana, the chief port, is in Rubetsu bay. This island, the principal of the group, is divided into four province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namely, Etorofu, Furubetsu, Shana and Shibetoro. Its mountains are Atosha-nobori (4,035 ft.) in Etorofu; Chiripnupari (5,009 ft.) in Shana; and Mokoro-nobori (3,930 ft.) and Atuiyadake (3,932 ft.) in Shibetoro. Among the other islands three only call for notice on account of their altitudes, namely, Kettoi-jima, Rashua-jima and Matua-jima, which rise to heights of 3,944, 3,304 and 5,240 ft. respectively.

Not much is known about the aborigines. By some authorities Ainu colonists are supposed to have been the first settlers, and to have arrived there via Yezo; by others, the earliest comers are believed to have been a hyperborean tribe travelling south-wards by way of Kamchatka. The present population aggregates about 4,400, or 0.7 per sq. m., of whom about 600 are Ainu (*q.v.*).

출처: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Fourteenth Edition, New survey of

universal knowledge, Volume 13. London: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company, ltd., 1939. p. 522. (Printed in the U.S.A. by R. R. Donnelley & Sons Co).

첨부 34.3

‘브리태니카백과사전’의 ‘쿠릴열도’ 조

러시아어 번역본

(발췌)

쿠릴. 일본에 속한 소규모 섬들의 맥으로 에조(홋카이도 - 저자 주)의 최 동단에 위치한 네무로(Немуро) 만에서 북동방향으로 이어져 치시마해협(쿠릴해협)까지 이어져 있으며, 이 치시마해협에 의해 캄차카와 쿠릴열도가 나뉜다. 쿠릴열도는 북위 44도 45분에서부터 북위 50도 56분까지 그리고 동경 145도 25분에서 156도 32분까지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쿠릴열도의 연안선 길이는 1,496마일에 달하며, 총면적은 6,159평방마일이다. 도서의 총 수는 32개지만 주요 명칭은 8개다. 즉 남쪽으로부터 쿠나시르, 시코탄, 에토로후[일반적으로 에토로프로 불리지만 과거 유럽에서는 시타토프(Шитатовъ)로 잘 알려져 있었다], 우루프, 시무시르, 온네코탄(Оннекотан), 파라모시리(Парамошири, 파라무시르[Парамусир]) 그리고 슴시리(Шумшири) 등이다. …… ‘쿠릴’이라는 명칭은 러시아어 ‘쿠리티(연기를 피우다)’에서 유래했는데, 이 군도의 활화산에서 암시를 받았다고 한다.

에토로후. 이 섬은 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에토로후, 후루베츠, 사나(Шана) 그리고 시벤토로 등 총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토착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 않다. 권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 이누 이주자들이 이곳의 첫 정착민으로 에조를 거쳐 이곳에 도착했다고 한다. 다른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가장 최초의 정착민은 캄차카를 거쳐 남쪽

으로 길을 뚫고 내려온 북방인들이었다고 한다. 현재 주민은 약 4,400명으로, 1평방마일당 0.7명이다. 이 중 약 600명이 아이누다.

첨부 34.4

1941년(도쿄) 일본 국립철도국의 공식 일본 안내서에 나타난 쿠릴(치시마)열도
(발췌)

치시마(천개의 섬) 또는 쿠릴열도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기다란 맥으로 (32개의 도서), 네무로(홋카이도)에서부터 캄차카의 남단과 위 섬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치시마해협까지 약 710마일에 걸쳐 있다. 쿠릴열도의 명칭은 러시아어 '담배(연기)를 피우다'에서 유래했으며 ……

쿠릴암맥에는 쿠나시르, 시코탄, 이투루프, 우루프, 슴슈, 알라이드 그리고 파라무시르 등 7개의 주요 섬이 속한다.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C. 580.

첨부 34.5

미국 국무부 산하 영토조사과의 1944년 12월 28일자 각서
일본. 영토문제. 쿠릴열도
(발췌)

쿠릴열도는 거주민이 많지 않은 47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

본 4대 섬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홋카이도로부터 북동방향으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까지 근 690마일에 걸쳐 이어져 있다. 총 면적은 약 3,944평방 마일이다. 상주인구는 17,550(1940)명이며,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절기에는 어로기 노동자들로 인해 주민의 수가 2~3만 명으로 증가한다.

일본은 남쿠릴열도를 1880년 무렵부터 점유했으며, ……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С. 583.

간행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Malta and Yalta, 1945. Washington, 1955. pp. 378~379.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비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쿠릴열도와 사할린에 대한 일본의 주권과 소유권 포기에 관한 일본 정부 소속 공식적 인사들의 성명

첨부 35.1

1951년 10월 6일 일본 중의원에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 대표인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니시무라 구마오[西村熊雄]의 성명
(발췌)

일본이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일본은 쿠릴열도의 귀속에 관한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 일본은 강화조약

에서 이 지역에 대한 주권 포기에 동의한 바, 강화조약이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출처: Кошкин А. А. Японский фронт маршала Сталина.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тень Цусимы длиною в век. М.: ОЛМА-ПРЕСС, 2004. С. 310.

자료: Акахата. Токио, 1969. 6 марта.

첨부 35.2

1951년 10월 17일 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에 대한 일본의 권리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절적한가에 대한 일본 중의원의 강화조약

및 안전조약 특별위원회 소속 니시무라 에이이치[西村英一]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본 수상 요시다의 답변

(발췌)

(강화)조약 내의 규정에 따라 일본은 쿠릴열도(치시마), 사할린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현재 일본에는 이 지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С. 585~586.

자료: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парламента Японии, 12 сессия, специ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мирному договору и договору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седание 17 октября 1951 г. С. 11.

1951년 10월 19일 일본 중의원의 강화조약 및 안전조약 특별위원회 소속
다카쿠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본 정부 대표 외무성 조약국장
니시무라 구마오의 답변
(발췌)

본인은 조약에도 언급되어 있는 치시마(쿠릴열도)군도의 영토적 경계에는 치시마(쿠릴열도)의 북부와 남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합니다. …… 강화조약은 1951년 9월에 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언급되고 있는 ‘쿠릴열도’라는 개념하에 어떤 지역이 들어가는가는 시대성의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본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조약에 게재되어 있는 쿠릴열도의 개념은 쿠릴열도 북부와 쿠릴열도 남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두 지역은 역사적 관점에서 전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다는 정부의 관점은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출처: Русская тихоокеанская эпопея. Хабаровск: Хабар. кн. изд-во, 1979.
С. 586.

자료: Протоколы заседаний парламента Японии, 12 сессия, специ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мирному договору и договору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седание 19 октября 1951 г. С. 21.

1945년 6월 26일자 국제연합헌장

(발췌)

제77조

제1항.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적용된다.

- a)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 b)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 c)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하에 두는 지역

제2항. 위의 범주 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제80조

제1항.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에 의하여 체결되고, 각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개별적인 신탁통치협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국가 또는 국민의 어떠한 권리, 또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당사국으로 되는 기존 국제문서의 조항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경하는 것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항. 이 조 제1항은 제7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임통치지역 및 기타 지역을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기 위한 협정의 교섭 및 체결의 지체 또는 연기를 위한 근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03조

국제연합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

는 경우에는 이 현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제107조

이 현장은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현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출처: Уста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от 26 июня 1945 года //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М.: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2000. С. 128~129, 133, 134.

첨부 37

1956년 공동선언 서명 이전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공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첨부 37.1

일본 정부 전권대표 마쓰모토가 소련 제1외무차관 그로미코에게 발송한
1956년 9월 29일자 공한

제1외무차관 님,

하토야마 총리의 1956년 9월 11일자 서한과 소련 각료회의 대표의 동년 9월 13일자 서한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하토야마 총리의 상기 서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시점에

서 강화조약의 체결 없이 소일관계의 정상화 문제로 모스크바에서 협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본 협의의 결과 외교관계가 복구된 다음에도 일소관계가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강화조약에 기초하여 보다 공고한 발전에 도달하는 것이 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우리 양국 간에 외교관계가 복구된 이후에도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강화조약에 관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하토야마 총리의 서한에 따라 협의에 임하는 이 시점에서, 만약 소련 정부 역시 이런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해준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 전권대표

마쓰모토

출처: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С. 41.

첨부 37.2

소련 제1외무차관 그로미코가 일본 정부의 전권대표 마쓰모토에게 발송한
1956년 9월 29일자 공한

전권대표님,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귀하의 1956년 9월 29일자 공한을 접수했음을 확인해드리는 바입니다.

“하토야마 총리의 1956년 9월 11일자 서한과 소련 각료회의 대표의 동년 9월 13일자 서한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하토야마 총리의 상기 서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강화조약 체결 없이 소일관계의 정상화에 관하여 모스크바에서 협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지금의 협의 결과 외교관계가 복구된 이후에도 일소관계가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강화조약에 기초하여 보다 공고한 발전에 도달하는 것이 실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우리 양국 간에 외교관계가 복구된 이후에도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강화조약에 관한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토야마 총리의 서한에 따라 협의에 임하는 이 시점에서, 만약 소련 정부 역시 이런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정부도 위에 언급된 일본 정부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양국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의 복구 이후에도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는 데 동의한다고 성명할 것임을 소련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보해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권대표님에게.

소련 외무부 제1차관

그로미코

출처: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С. 42~43.

1956년 공동선언 서명 당시 소련과 일본 대표단의 공식 회담

호루시초프와 고노 사이에 진행된 1956년 10월 16일자 회의록

10월 16일 14시부터 15시 45분까지 좌담이 이어졌다.

고노. 일본의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해 도쿄 주재 소비에트 대표인 티흐빈스키(Тихвинский) 씨께서 호루시초프 씨께 잘 보고해주기를 바랍니다.

하토야마 수상과 우리 전체 대표단의 소비에트 방문에 일련의 정파들이 심각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토야마 총리와 우리들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끝까지 협의를 진행하기로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업 문제로 회담이 진행되었던 금년 5월에 소련 정부가 보여주시는 우호적 의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소련 정부가 우리의 복잡한 국내 상황을 아직도 완전히 고려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정당들 내부에서 각 정파들이 첨예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시가와 장관을 통해 소련 각료회의 대표인 불가닌(Булганин)에게 하토야마 총리와 고노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본 서한에는 일본 측의 일부 요구가 상술되어 있는데,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루시초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고노. 어제 저는 이시가와를 다시 만나서 제 견해를 자세하게 언급했습

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요?

흐루시초프. 그렇다고 답했다.

고노. 만약 제가 앞에 언급한 것에 무언가 부언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상과 저는 소련과 일본 간의 관계 정상화가 하토야마 총리의 서한에 기술된 5개 항목과 불가닌의 답변에 기초하여 달성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한을 교환한 후, 협의를 조직하는 것에 관해 우리 관점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권 마쓰모토를 모스크바로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협의가 언급된 5개 항목의 정신에서 완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과 집권정당 내부에서의 날카로운 대립이(요시다 정파를 고려하고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의 입장을 실로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일련의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가능한 빨리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계 정상화가 후유증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후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5개 항목에서 약간 어긋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흐루시초프. 우리 양측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는 단시일 내에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양측이 공통의 관점에 도달했던 문제들과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옳게 이해하고 있다면, 관계 정상화를 지체시키는 주되고도 유일한 것은 영토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논의되었고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영토문제에 따른 가능한 난점들을 고려했으며,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모든 조건들을 규정하는 강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이미 제안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일본에 응하여 우리의 소유인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

도서가 홋카이도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런 상황이 향후 양국 간 불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위 도서의 양도는 우호관계의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런던에 있는 마쓰모토 씨를 통해 일본 측에 통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측은 일본 정부가 각 정당에 대한 일정한 의무에 구속되어 있으며, 국내 정치적 상황이 관계 정상화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화조약 조건이 일본에는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이런 성명을 고려하여, 일본에서 소련과의 평화와 우호를 위한 세력이 승리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조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 강화조약의 체결 문제를 연기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당시 모스크바에 체류 중이던 일본의회대표단에게 소련 정부의 관점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게미쓰(シゲミツ) 씨가 외무부 장관 셰필로프(Шепилов)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재차 명쾌하고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강화조약을 체결할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협의의 원수 형식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가 소비에트 각료회의 대표 불가닌에게 발송한 서한에 서술된 5개 항목이라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련 정부는 이 서한의 주요 명제들에 동의를 표명했으며, 하토야마의 5개 항목이 논의의 출발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영토문제는 결정짓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닌의 답신에 언급되었습니다.

어제 일본 대표단에게 교부된 문서들은 명확히 위 5개 항목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노 씨가 성명한 것처럼 왜 일본이 새로운 협상 원수 조건을 용인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일본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노 씨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양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직 강화조약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런데 일본 측은 일본이 그런 조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성명했습니다. 관계를 조정하는 중요 조약 없이 영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측은 강화조약의 체결 없이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얻고자 하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어떤 영토문제, 그러나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영토문제를 차후에 해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소련 정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일본과 협약을 체결하고 싶은 것이지 영토문제를 흥정에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다시 한 번 단호하고 명확하게 성명하는 바, 하보마이와 시코탄 이외의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제안도 토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소련 정부의 이런 제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우리가 영토문제에서 크게 양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더 많은 양보를 하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 국가의 소유인 새로운 영토를 일본에 양도하면, 우리 인민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다른 양보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보마이와 시코탄이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에 양도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 도서의 양도로 영토문제는 모두 완전하게 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일본이 이런 조건을 전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본 국민은 양국의 전시상태 종결, 관계 정상화, 통상 발전, 문화업적의 교류 등으로 양국 인민들 간의 우정을 위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강화조약을 위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일본 인민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본인은 현재와 미래의 일본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지금 관계정상화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애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상화를 위한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

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양측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하토야마 총리가 제시한 조건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어제도 말했고 오늘 또 반복합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고령과 병환 등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협의를 완수하고자 모스크바를 방문하셨습니다. 고노 씨, 우리는 귀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귀하께서는 소련과 일본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정상화의 결과로서 일본이 소련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일본 측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용인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즉 우리는 소련이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을 문서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양도가 영토문제의 최종적 해결인 만큼, 양자 간의 강화조약 체결 시점에서 영토문제에 대한 협상 진행이라는 확실한 명제가 삭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일본에 상기 두 도서를 양보하고, 이런 제안을 성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조약의 체결 및 미국에 의해 점령된 오키나와와 일본 고유 영토를 미국의 일본에 양도한 이후에야 상기 영토의 실질적인 대일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련 측은 이런 식의 문제 해결로 일본 대표단의 입장을 개선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측은 5개 항목으로만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 5개 항목에 부가 항목의 형태로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고노. 일본 측이 여러 부탁으로 귀하를 귀찮게 해드린 점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귀하께서 제시하신 공동성명 안과 의정서를 검토했습니다. 영토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서들과 관련하여 일련의 부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소비에트 측이 전달해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행방불명이 된 일본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조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본 측은 일본의 국제연합 가입에 관한 문제로 소련 정부가 보여준
입장에 감사를 표명합니다. 저는 시게미쓰처럼 문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
다. 따라서 귀하께서 금년 국제연합 정치총회에서 일본의 가입 요청을 지지
하실 거라고 보장만 해주시면 제게는 충분합니다.

호루시초프. 행방불명된 일본 국민에 관해서는 이전에 이미 언급된 것
이상으로 제가 귀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하께
드린 명단에 기재된 사람 이외의 일본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본 대
표단이 자신의 입장 개선을 위해 보편적 문장을 선언문에 기재하는 것이 유
익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미 통보해준 사람들 이외에 우리나라에는 일본인
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두지만, 우리가 그 요청에 반대하지 않
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일본인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그들을 모스크바로 이송했을 것입니다.

고노. 그런 문장을 선언문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루시초프. 일본의 국제연합 가입에 관한 요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일본에 달려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의 국제연합
가입 문제가 제기될 때까지 관계 정상화에 관한 문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법률적으로 작성되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고노. 영토문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
토문제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상관없이, 즉 미국이나 다른 동맹국 열
강의 개입 없이 해결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영토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용상 조약과 그 무엇도 다를 것이 없는 일련의 서류에 서
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통해 강화조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ऐ석하게도 우리들은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영토문제에서 소련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련 정부가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다른 문제와 연관시키지 말고,

즉시 우리에게 반환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머지 영토의 귀속에 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소련이 위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만큼, 근 시일 내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양도 문제를 선언문 일반에 포함시키고,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한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위의 두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귀하의 제안은 일본 사회의 여론과 국민들에게 실로 좋지 못한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강화조약 체결시 위 지역을 일본에 양도하겠다고 이미 동의했으며, 이에 대해서 모든 일본인들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지역의 양도가 미국의 오키나와 및 다른 지역 반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귀하의 성명은 우리를 매우 실망시켰습니다. 우리는 상기 언급된 일본의 영토들이 동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요청을 반복하오니, 소련 정부는 지체 없이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우리에게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 정상화가 지금 순간에 반드시 완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토야마 총리가 더 이상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지금의 호기를 놓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향후 장기간 동안 우리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호루시초프. 어떠한 오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대일 양도에 관해 본인이 언급한 사실을 정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소련 정부는 지금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만,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는 데 동의합니다. 양도 그 자체는 본 조약의 비준 이후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양도와 관련되어 어떤 기술적 난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 모릅니다. 명확한 사실은 이 섬들에는 철수하든가 아니면 양도해야 하는 그 어떤 재산이 있지만, 저는 이 지역의 양도가 조약의 비준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싶다는 점입니다. 만약 강화조약을 조인하지

않고, 일본 측이 어제 우리가 수교한 그 문서들에 동의한다면, 아마도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소련 정부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 해당 문서에 기록해두고 공개적으로 공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련 정부는 상기 언급된 도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법률상 포기한다. 그러나 실질적 양도는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그리고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오키나와와 다른 영토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 불평등한 지위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의 도서들을 장악하고 그곳에 우리를 상대로 하는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서 우리 영토를 일본에 양도하라고 요구하는가? 이걸 공평하지 않다. 우리는 이런 차별에 항의한다. 소련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 측에 통보된 그 정도 이상으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고노 씨, 우리는 한 번 더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조건은 두 개의 해결 방안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을 개선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노, 흐루시초프 씨, 미국이 언제 일본에 오키나와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흐루시초프, 미국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제안하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관한 결정이 오키나와의 해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는 데 부응하는 조건이 이행되는 순간, 언제든지 이 도서들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조만간에 오키나와와 다른 일본 영토를 일본에 되돌려줄 것입니다. 당연히 그게 언제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노, 만약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철수한다면, 소련 정부는 우리에게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를 반환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호루시초프. 저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완고한 줄 몰랐습니다. 귀하께서는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력투구하시는군요.

고노. 당연합니다.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일본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대 열강이 일본 소유의 영토를 동시에 일본에 반환한다는 논거가 실로 신뢰할 만하다는 점에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의 반환 문제와 연관지어서 오키나와와 다른 지역의 반환 운동을 국내에서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호루시초프.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지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지역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손실을 안겨주고 있으며, 국고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략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노. 우리의 제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오늘 언급한 요청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루시초프. 우리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관한 문제를 문서상으로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외무부 장관과 상의할 것입니다.

고노. 만약 귀하께서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호루시초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하토야마 씨와 불가닌 동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노. 저는 그 만남이 있기 전에 귀하를 또 뵙고 싶습니다. 내일 10시에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루시초프. 동의했다.

고노. 결론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쿄에서 동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 의사가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대표단은 모든 결정을 도쿄의 승인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런 이유에서 일본 대표단의 입장이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조인하는 모든 결정에 동의하

도록 일본 의회와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련 정부의 지지를 심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Источник (Приложение к журналу “Родина”). М., 1996, No. 6 (25). С. 116~121.

첨부 38.2

호루시초프와 고노 사이에 진행된 1956년 10월 17일자 회의록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전 10시 50분에 종결되었다.

고노. 저는 오늘 지나치게 많은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모스크바에서의 협상 중에 우리의 행동 노선과 관련된 일부 상황만을 서술하고 싶습니다.

하토야마와 제가 속한 자유민주당은 새로운 협의 노선을 고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노선이 생겨난 이유와 상황을 귀하께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당 내에는 우리의 모스크바 방문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스크바에 있을 경우, 반드시 협약이 조인될 텐데, 그들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의 당원들은 이런 명제에 기초하여 관계 정상화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조직적으로 교란하며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토야마와 저는 당의 다수와 정부가 우리 노선을 채택하고 우리의 모스크바 방문을 승인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성했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즉 지난번 제가 어업협상차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당시, 저는 각료회의 대표 불가닌 씨를 방문하여, 그와 영토문제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불가닌 씨는 저에게 성명하시길, 소련 정부는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런던에서 수차

레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양도는 소련이 영토문제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불가닌 씨는, 자신은 일본인들이 쿠나시르와 이투루프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상기 지역을 일본에 양도하는 것은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불가능하다. 사안은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나중에 해결하자. 당분간은 견해가 일치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만 양측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가닌 씨 성명은 대체로 이상과 같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자유민주당이 그 무렵에 소련 측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이런 가혹한 회담방침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담진행 방침과 노선을 고안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새로운 방침은 앞에서 언급한 불가닌 씨의 성명에 전적으로 기초한 것으로, 저는 이 성명을 정당과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하도야마 총리와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불가닌 씨의 성명에 서술된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라는 이야기가 제게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문제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루시초프, 고노 씨, 불가닌 동지의 회담을 일부 정확하지 않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소련 정부는 영국 주재 말리크(Малик) 동지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 측에게 통보한 적이 있으며, 모스크바에서의 수차례에 걸친 회담에서도 강화조약의 체결과 양측 간에 외교관계의 수립이라는 조건하에서만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자유민주당에는 협의에 관한 통일된 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측은 당분간 영토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전시상태의 타파와 외교관계 정상화의 복구에 한정짓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우리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대안에 동의하면서도, 우리는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에만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기로 고려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제안입니다.

일본 대표단에 응하기 위해, 저는 어제 일본에 유리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비공개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심지어 선전을 위해서도 우리의 대안을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일본에 위 지역을 양도해야 하는 약속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오키나와와 다른 지역을 반환하라는 압력을 미국에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그리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오키나와와 다른 지역의 반환 이후 하보마이와 시코탄 양도를 일본에 양도한다는 조항을 공동선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이 지역을 양도할 것이며, 이 지역의 양도와 오키나와 및 다른 지역의 반환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문화가 아니라 구두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키나와와 다른 지역이 해방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영토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결방안이 가장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은 이 경우 소련을 예로 삼을 수 있으며, 이 예에 따라 오키나와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과 국제여론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고노 씨께서는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양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미국은 이 지역을 반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인민들이 반환 투쟁을 전개한다면, 미국은 일본의 소유인 그 땅을 일본에 돌려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관계 정상화 이후 강화조약 체결의 이익과 필요성을 곧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즉 조약의 체결 이후 우리는 오키나와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반환하겠습니다.

고노. 귀하의 의도를 잘 이해했습니다. 이에 저는 영토문제에 관한 조항의 수정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아래와 같은 대안이 수교되었다). 즉

“일본의 바람에 응하여 그리고 일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소련은 일

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한다.

소련과 일본은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상을 지속하며, 양국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가 복구된 이후, 양국 간의 전시상황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의 전면적 조정을 보장한다”.

위 도서들의 양도 기간에 관해서는 지금 합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루시초프.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양도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의 표현이 잘못 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매우 무조건적인 형태로 서술 되어 있으며, 이런 표현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상기 지역을 즉시 양도하지 않으면, 일본의 여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도 수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식으로 소련 정부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론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련은 자신이 지기로 한 모든 의무를 정직하고 조심스럽게 이행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지킵니다.

고노. 만약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시다면, 귀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루시초프. 고노 씨께서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의 제안이 오키나와와 다른 지역의 반환 투쟁을 위해 일본에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우리의 협상에 불만을 지닌 친미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면, 일본이 미국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토는 투쟁 없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노. 일본 측은 귀하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합니다. 하토야마와 저는 본국 정부와 의논하지 않고 서류에 조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루시초프. 고노 씨. 이 점만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즉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일본 영토의 반환 투쟁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 지역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양도 자체가 일본에 이익이 되는 것만이 관심입니다. 전시상태의 타파 이후 우리 양측 간에는 이전처럼 우리를 갈라놓았던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합의합니다. 그 이후 우리는 강화조약을 체결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겠습니다. 소련이 일본에 이 도서를 양도하는 순간, 귀하는 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일본 영토의 반환 투쟁에 이 상황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소련은 이미 일본에 약속한 지역을 반환했을 것임에 반해, 미국은 이전처럼 과거의 점유상태를 고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련의 예에서 미국이 일본의 영토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재검토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노, 제 대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귀하께서 그 대안을 수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문제로 귀하와 다시 한 번 만나고 싶습니다.

흐루시초프, 우리 의견을 명문화해서 귀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고,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내일 언제든지 귀하를 맞이하겠습니다.

출처: Приложение к журналу “Родина”. М., 1996. No. 6 (25). С. 122~124.

호루시초프와 고노 사이에 진행된 1956년 10월 18일자 회의록

회의는 16시 15분에 시작되어 16시 55분에 종결되었다.

고노. 일본 측은 어제 저녁 수교된 영토문제에 관한 소비에트 안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귀하의 제안 중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오키나와를 반환한다고 언급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소련 측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련 안에 기초하여 작성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본과 소련은 양국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수립한 후, 영토문제를 포함하는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해 협의를 지속하는 데 동의한다.

이에 소련은 일본의 제안에 호응하고 일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도서를 일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일본과 소련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한다”.

호루시초프. 소련 측은 수정대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호응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오키나와와 다른 지역을 양도하라고 언급된 그 부분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순수하게 편집이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즉 일본 측 대안의 첫 부분에서 ‘영토문제를 포함하는’이라는 부분을 제외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이 표현을 남겨둘 경우, 일본과 소련 간에는 하보마이와 시코탄 이외에도 다른 어떤 영토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품문과 함께 우리가 체결하려는 문서를 곱해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노. 일본 측은 애석하게도 귀하께 오늘 제시한 대안을 이미 도쿄에 통보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모든 변경은 당연히 정부

의 재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만약 도쿄에 문의해야만 한다면 내일 이 문서에 조인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호루시초프. 귀하께서 이미 본국 정부로부터 조인에 대한 재가를 받았더니,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도 이미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편집을 통한 개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의미상 내용은 변하지 않고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노. 저도 전적으로 귀하에게 동의합니다. 소련 측의 수정이 우리 대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안에 동의한 도쿄로부터도 확실한 재가를 받은 만큼, 모든 것이 이미 동의를 받은 다음에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은 실로 곤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루시초프. 제가 생각하기에, 귀하께서는 이 문제로 본국 정부에 문의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토문제에 관한 조항이 일본의 이익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 심지어 귀하의 정적들에게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고노 씨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대안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막대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순수하게 편집상 명확하게 해두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고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확고한 결정에 구속되어 있어서, 무엇인가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루시초프. 한 번 더 반복합니다만, 우리는 이 협약의 해석에서 장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몇 단어만 삭제하자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1년짜리 문서를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문서가 10년, 아니면 100년 동안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잘못된 해석이 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듯이, 우리의 협약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

해서 조그마한 부주의, 심지어 편집상의 부주의마저 이용하려드는 이런 궤변들이 발견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맙시다. 이 몇 단어를 삭제해달라는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주십시오. 우리는 귀하와 협약을 체결하여, 소·일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마련합니다.

고노. 애석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그 어떤 수정도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총리와 도쿄 사이에 모든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차 도쿄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명의 시기를 연기시킬 따름입니다.

호루시초프. 편집상의 수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귀하께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계십니다. 총고의 말씀을 드리건대, 이대로 방치해두지 마시고, 우리의 수정대안을 받아들여시고 문서의 조인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노.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총리와 논의해보겠습니다. 만약 총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명백한 것은 도쿄에 문의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호루시초프. 필요한 것은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영토문제를 포함하는'이라는 표현의 삭제를 주장할 것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노. 귀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도쿄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소련에 억류되어 있는 어부 100명을 석방해달라고 귀하께 부탁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석방이 우리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문서에 서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루시초프. 약속드리건대, 제가 정부에서 어부들의 석방에 관한 귀하의 요청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귀하께서는 일본 민족으로 지난번 소련 측이 수교했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소련 영토에 존재하지는 않는지의 여부를 밝혀내도록 추가 조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확인해본 결

과 우리나라에 아주 소규모의 일본인 집단이 실제로 발견되었으며, 이들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을 일본으로 송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노. 귀하의 성명에 실로 감사드립니다. 하토야마 총리의 명령에 의거하여 불가닌 씨에게 발송될 서신을 귀하께 수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불가닌 씨와 하토야마 총리 간에 이루어진 회담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Приложение к журналу “Родина”. М., 1996. No. 6 (25). С. 127~129.

첨부 38.4

호루시초프와 고노 사이에 재개된 1956년 10월 18일자 회의록

18시에 회담이 이루어졌다.

고노. 하토야마 총리와 논의한 후, 우리는 ‘영토문제를 포함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는 호루시초프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루시초프.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조인에 관해 합의할 수 있겠군요.

고노. 우리는 상당히 급합니다. 10월 20일 문서에 조인했으면 합니다.

호루시초프. 20일경에 조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10월 21일에 조인식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요인 일부가 잠시 동안 모스크바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 측이 매우 급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조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이 역사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반드시 동참하고 싶습니다.

고노. 우리는 매우 급합니다. 정부가 총리의 빠른 귀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한테 달린 것이 아닌, 특별한 상황과도 연관되

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톡홀름에서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를 사전에 예약해 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의의 완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신 흐루시초프 씨가 안 계신 상태에서 조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흐루시초프. 우리의 모든 정부 요원들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문제에 대해 통일된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고노. 총리와 논의한 다음 조인식 일자에 대한 우리의 최종 제안을 귀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Приложение к журналу “Родина”. М., 1996. No. 6 (25). С. 129.

소련과 일본의 1956년 10월 19일자 공동선언

1956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소련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 간에 협정이 이루어졌다.

소련 측에서 협의에 참석한 이는 아래와 같다.

소련 각료회의 대표 불가닌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회원 흐루시초프

소련 각료회의 제1부총리 미코얀(А. И. Микоян)

소련 외무부 제1차관 그로미코

소련 외무부 차관 표도렌코(Н. Т. Фёдоренко)

일본 측에서 협의에 참석한 이는 아래와 같다.

총리 하토야마 이치로

농림대신 고노 이치로

중의원 의원 마쓰모토 순이치

상호이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협의 과정에서, 소련과 일본의 상호관계에 대한 광범위하고 진솔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소련과 일본은 양국 간의 외교관계 복원이 세계와 극동의 안전을 위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소련과 일본 대표단 간의 위와 같은 협의 결과 아래의 내용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1. 소련과 일본 간의 전시상태는 본 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로부터 중단되며, 양국 간에는 평화와 선린우호관계가 복구된다.

2. 소련과 일본 간에는 외교와 영사관계가 복구된다. 여기서 양국은 대사급 외교대표가 즉시 교환될 것이며, 그에 따른 소련과 일본 영토에서의 영사관 설립은 외교적 수순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고려되었다.

3. 소련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국제연합헌장의 원칙, 특히 헌장 제2조에 서술된 아래의 원칙들에 의거하기로 확인했다.

a)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b)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소련과 일본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따라 각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을 지지했다.

소련과 일본은 경제, 정치 혹은 이념적 성격의 어떤 동기로도 상호 내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4. 소련은 국제연합 회원 가입에 관한 일본의 요청을 지지한다.

5. 소련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모든 일본 국민은 본 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석방되어 본국으로 송환된다.

생사가 불분명한 모든 일본인들의 경우, 일본의 요청에 의거하여 소련이

그들의 행방을 계속해서 밝힌다.

6. 소련은 일본에 대한 모든 배상과 청구권을 폐기한다.

소련과 일본은 자신의 국가, 국가 조직 그리고 시민들이 상대 국가, 국가 조직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1945년 8월 9일부터의 전쟁에 따른 모든 청구권을 폐기한다.

7. 소련과 일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상, 무역항행 그리고 다른 상업적 상호관계 분야에서의 궁구하고 우호적인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조약 또는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다.

8. 소련과 일본 간에 위치한 태평양 북서 구역에 있는 외해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1956년 5월 14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조난선원 구조 협력에 관한 소련과 일본 간의 협약은 본 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을 지니게 된다.

천연어족자원의 보호와 여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에 대한 소련과 일본의 관심을 고려하여, 양국은 협력의 정신에 따라 어족자원의 보존과 개발, 또한 외해에서 어획량 조정과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9. 소련과 일본은 양국 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복구된 후,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서 소련은 일본에 호응하여 그리고 일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도서는 소련과 일본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일본에 실질적으로 양도된다.

10. 이 공동선언은 비준에 상정된다. 이 선언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비준서의 교환은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도쿄에서 이루어진다.

위에 서술된 것을 증명하고자 아래 서명한 전권들이 본 공동선언에 조인했다.

러시아어와 일본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양 선언문은 모두 동일한 효력

을 지닌다.

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전권
불가닌
세필로프(Д. Шепилов)

일본 정부
전 권
하토야마 이치로
고노 이치로
마쓰모토 슌이치

1956년 12월 8일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비준되었으며, 1956년 12월 8일 일본 정부에 의해서 비준되었다. 비준서의 교환은 1956년 12월 12일 도쿄에서 이루어졌다.

출처: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56, 20 октября, No. 294, С. 1.

간행본: Декларации, заявления и коммюнике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1954~1957, М., 1957, С. 313~316.

첨부 39.1

소련과 일본의 1956년 9월 8일자 공동선언 비준에 관한
소련 최고상임위원회의 명령

소련 각료회의에서 확인된 그리고 1956년 10월 19일 모스크바에서 조인

되어 비준에 상정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과 일본의 공동 선언문을 비준한다.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대표

보로실로프(К. Ворошилов)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서기

고르킨(А. Горкин)

첨부 40

1956년 공동선언 서명 이후 소련과 일본 양국 정부의 공식 교신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첨부 40.1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송한 1960년 1월 27일자 각서

금년 1월 19일 일본과 미국 간에 ‘미일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었다. 본 조약의 내용은 극동과 태평양 연안, 따라서 이 광대한 구역에 위치한 국가들, 당연히 우선적으로 일본, 소련, 중국 등과 같은 직접적인 이웃 국가의 지위에 심각하게 저촉된다.

이 조약으로 인해 향후 장기에 걸친 일본 영토에서의 외국인 기지의 유지, 군사력의 체재, 병력 주둔 등이 일본 정부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재차 확인되었다. 상기 조약의 제6조에 의거하여 미국은 “육·해·공군이 일본의 시설과 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약에 규정된 조약 이행을 위한 조연이라는 부대조건을 보면, 일본이 자국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군사적

총독에 개입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조약에 따른 영구하고도 실질적인 일본 점령, 외국 열강의 지휘 밑으로 자신의 영토를 넘기는 것, 일본에서의 오키나와와 보닌(Бонин)의 탈취, 조약의 규정에서 불가피하게 유래한 일본의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종속 등은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 즉 조약이 발효된 이후 일본의 주권 중에서 실제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 향후에도 외국군이 일본에 주둔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 나라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짐을 의미한다.

소련 정부는 일본의 평화롭고도 독립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는 행보로써 일본을 전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전처럼 소련은 타 열강들과 함께 일본의 중립을 반드시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소련 정부는 소련, 중국, 일본 간의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표명했으며, 미국 및 다른 태평양 국가들의 동참에 동의했다. 소련 정부는 소련이 일본과 진실로 우호선린관계를 수립하고, 일·소 인민을 위해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상호 유리한 통상, 문화 및 여타 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소련 정부는 일본이 극동에서의 기반을 놓여버리고 소·일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을 만드는 새로운 군사조약을 체결한 그런 행보를 지나칠 수 없다. 이 조약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고, 항복 이후 일본에 주둔 중인 해외 병력이 계속해서 그곳에 주둔할 것이라는 점에서, 소련 정부가 일본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실행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강화조약을 체결한 다음 위 도서를 일본에 양도하겠다고 약속한 소련 정부는 소·일 회담 진행 당시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평화 애호적 의도와 일본의 민족적 이익을 고려하여, 일본의 요구에 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련과 중국에 대응한 새로운 군사조약에 조인한 것을 볼 때, 소련 정부는 위 도서를 일본에 양도함으로써 외국군이 이용할 수 있는 일본 영토를 확장시켜줄 수 없다. 소련 정부는 이런 사안들을 고려하여, 일본 영토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소련과 일본 간에 강화조약을 조인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선언 규정대로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할 것임을 불가피하게 성명한다.

출처: Американо-японский военный договор — угроза миру. Памятная записка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60, 29 января, No. 29, С. 2.

첨부 40.2

일본 정부가 소련 정부에 발송한 1960년 2월 5일자 각서

(발췌)

일본 정부는 소련 외무부 장관 그로미코가 얼마 전 체결된 '미일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과 관련하여 소련 주재 일본 대사 가도와키(Кадоваки)에게 1월 27일에 수교한 각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 소련 정부가 자신의 각서에서 새로운 미일조약과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양도 문제를 연관시킨 상황을 설명하기 매우 곤란하다. 소일공동선언에서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즉 “소련은 일본에 호응하여 그리고 일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이 도서는 소련과 일본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일본에 실질적으로 양도된다”.

상기 공동선언은 소일관계의 근간을 조정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선언은 양국 최고 기관에 의해 비준된 공식적인 국제문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 공식적인 국제의무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굳이 언급해야할

필요성은 없다. 그 외에도 소일공동선언에 조인할 당시에도 이미 안보조약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조약의 적용 기간에도 제한이 없었다. 당시 일본에는 이미 외국 군대가 주둔 중이었다. 공동선언은 이런 사실들을 고려하여 체결되었다. 이런 사실들만으로도 위에 언급된 상황들이 소일공동선언에서 결정된 상호 동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성명하기에 충분하다.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에서 공동선언의 규정 이행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선언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소련의 입장을 승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하보마이와 시코탄뿐만 아니라, 원래 일본 영토였던 다른 지역을 반드시 반환받을 것이다.

출처: Совместный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1992, С. 46~4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첨부 40.3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송한 1960년 2월 24일자 각서

1월 27일 소련 외무부 장관 그로미코는 '미일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보낸 소련 정부의 각서를 소련 주재 일본 특명전권대사 가도와키에게 수교했다.

2월 5일 일본 외무성은 위 각서에 대한 답신 각서를 도쿄 주재 소련 대사관에 수교했다.

일본의 각서에서는 소련, 중국 그리고 다른 평화 애호적 국가들의 안전에 저촉되는 위 조약의 체결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각서는 일본과 미국 간의 새로운 군사조약이 방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고 소련과 일본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야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양도할 것이라는 소련 정부의 성명을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선언의 위반인 것처럼 취급하려 한다.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하보마이와 시코탄뿐만 아니라, 여타 '원래 일본 영토'였던 지역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성명했다. 2월 24일 소련 외무부 차관 푸시킨(Г. М. Пушкин)은 소련 주재 일본 특명전권대사 가도와키를 접견하여 일본 정부의 2월 5일자 각서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소련 정부의 각서를 수교했다.

“일본 정부의 금년 2월 5일자 각서를 확인한 소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즉 이 조약은 소련 정부가 지적인 바와 같이 소련, 중국 그리고 아시아와 극동의 다른 평화 애호적 국가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며, 국제적 긴장의 터파라는 노선에 장애물을 추가로 형성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조약의 실제 성격을 은폐하여, 그것이 방어적 조처인 것처럼 가장하려 들고 있다. 그러나 '방어의 필요성'이라는 구실은 전혀 새롭지 못하다. 악명 높은 '반코민테른 조약'이라는 공격 수단 역시 당시에는 방어조약인 것처럼 묘사되었던 점을 기억할 수 있다.

새로운 군사조약은 일본 영토 내의 외국군 기지를 공고하게 유지시켜준다. 사실들은 이 기지가 결코 방어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기지들은 일본의 방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이용되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자국 영토를 외국 군대에게 제공하는 노선을 고수하려 한다.

이 조약의 적용 범위는 중국, 소련의 연해주와 쿠릴열도까지 확산된다고 한, 외무성 장관 후지야마의 1959년 11월 16일자 성명과 기시 총리의 2월 8일자 성명이 새로운 군사조약의 공격성을 증명해준다. 이후 이에 대한 일

본 정부 대표들의 설명은 불명확하고 모순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조약을 체결한 양측은 이기적 목적에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이 조약을 이용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과 새로운 군사조약을 체결한 행위는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선언과 모순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양측은 선언에 따라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양국 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만 했다.

소련 정부는 공동선언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일본의 요청대로 일본의 국제연합 가입을 지지했으며, 일본군 전쟁포로 전원을 사면·석방하여 본국으로 송환했다. 또한 소련 영토에 거주 중이던 일본 국적의 사람들을 본국으로 귀국시키고, 일본에 이익이 되는 태평양 북서구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평등과 상호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통상조약을 출산하여 체결했다. 그 외에도 문화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등을 제안했다. 이런 것에서 확인되듯이 소련 정부는 일본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신에게 선의의 표명을 요구하는 공동선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영토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해당 국제조약들에 의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그 문제에 대한 청구권을 제시하면서 현재도 소련과 일본 간의 강화조약 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일본 측은 소련의 안전에 반하는 군사조약을 미국과 체결함으로써, 위에 언급된 선언에 따라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지지하기 위해 소련과 협력하고, 양국 간의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자신의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했다. 따라서 공동선언의 조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일본의 시도가 오직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 뿐이다. 실제로 일본의 1956년 소일공동선언 위반으로 야기된 모든 결과를 종식시키는 것은 모두 일본 정부에 달려 있다.

일본은 하보마이와 시코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토를 반드시 반환받겠다는 일본 정부의 각서에 포함된 성명을 소련 정부는 위협한 보복주의 경향의 등장이라고 달리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향은 소련 및 다른 국가들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

진정으로 일본과의 선린관계 발전과 공고한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소련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행 중인 정치적 방침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 정부는 이웃의 권리로써 일본 정부의 현재 방침, 특히 최근의 행동이 극동에서의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변경시키는 것임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소련 정부는 1960년 1월 27일자 각서에 서술된 자신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새로운 미일군사조약의 체결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성명한다”.

1960년 2월 24일, 모스크바.

출처: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 Правда, 1960, 26 февраля, No. 57, С. 2.

첨부 40.4

소련 정부가 일본 정부에 발송한 1960년 4월 22일자 각서

금년 2월 21일 소련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미일군사조약의 체결에 관한 소련 정부의 각서를 일본에 발송했다.

3월 1일 일본 외무성은 도쿄 주재 소련 대사관에게 자신의 답변 각서를 전달했다. 지난 2월 5일자 각서에서와 같이 이 각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위

조약이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며, 그 어떤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근거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소일공동선언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의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22일 소련의 외무부장관 그로미코는 모스크바 주재 일본 특명전권 대사 가도와키를 접견하여 3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각서에 대한 답변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소련 정부의 각서를 수교했다.

“일본 정부의 금년 3월 1일자 각서에서는 미일조약의 방어적 성격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이 이 조약의 군사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은폐할 수 없음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일본 정부는 누구도 일본을 위협하지 않는데, 과연 누구로부터 방어하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침묵으로 넘기려 한다. 반면 이웃 국가인 소련과 중국은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 전 지역에서의 사실적 안전보장에 맞추어진 실질적 방안을 연속적으로 제안했다.

이 점에서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군사조약 체결은 결코 방어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평화 애호적 국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확실한 군사블록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확인된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의 이웃 국가들을 목표로 한 외국 군대와 군사기지가 일본 영토에 장기간 유지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이 조약에서 일본 주둔 외국 군대를 위한 치외법권이 강화되었다.

이 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은 과거 일본에 부과된 점령 조건의 유지뿐만 아니라, 외국 군대에게 ‘추가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위 협정에 첨부된 의정서에서 ‘모든 종류의 무기’를 일본 영토에 반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외국군에 부여했다. 과거에 이미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어와 통하는 것이 전혀 없는 군사작전을 일본 영토에서 실행

하는 데 동의를 표명했었다.

소련 정부가 이전 각서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일본 정부 대표들의 성명을 통해 조약의 적용 범위가 의도적으로 일본열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일본 국경에서 먼 지역까지 확대되며, 확대된 지역에 소련과 중국의 영토가 포함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다음에 있다. 즉 어떤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는 타국 영토의 '방어'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소련이 방어라는 핑계하에 다른 여러 국가들과 일본 영토 전체 또는 그 일부로 효력이 확산되는 조약을 체결할 경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련 영토와 일부 인접국의 영토를 미일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 모든 계획의 불합리성과 조약 체결국이 지닌 목표의 공격성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접국 및 다른 모든 평화 애호적 국가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소련 정부의 이전 각서에 이미 지적된 것처럼 위 조약에 조인한 일본의 행동은 극동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소련과 일본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발전에 종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1956년 10월 19일자 소일공동선언의 정신 및 자구와 모순된다.

일본 정부는 소련에 속한 영토를 상대로 근거 없는 권리주장을 재차 제기하면서, 영토문제가 공동선언에 따라 향후의 논의사항으로 각서에서 합의된 것처럼 독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소련 정부는 그런 식의 합의가 실재하지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만큼, 그런 주장을 무시하는 바다. 소련과 일본 간의 영토문제는 준수되어야만 하는 해당 국제조약들에 의해 해결되고, 확인되었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저의에 의해 부풀려진 선전이 소일관계의 침체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 정부는 금년 1월 27일과 2월 24일자 각서에 서술된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며, 상기 군사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다.

1960년 4월 22일.

출처: Памятная записка Совет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Японии // Правда, 1960, 24 апреля, No. 115, С. 4.

첨부 41

시그날니(Сигнальный, 카이가라) 섬 구역에서 일본 어부들의 미역채취와 관련하여 소련 인민경제소비에트 산하 국립어업위원회와 전일본어업인연합 사이에 체결된 1973년 6월 10일자 협약

(발췌)

소련 인민경제소비에트 산하 국립어업위원회를 일방으로 하고 전일본어업인연합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양측은 소련과 일본 간의 선린관계와 협력의 발전과 강화에 부응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자신의 전권을 임명했다. 양측 전권은 타당한 형태와 완전한 절차에 따라 전권을 교환한 후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제1조

소련 인민경제소비에트 산하 국립어업위원회는 홋카이도의 네무로 반도에 거주하는 일본 어업인들의 요청에 호응하여 그들에게 시그날니(카이가라) 섬 구역에서 미역채취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에 동의한다. 이 업무는 다음의 지점을 관통하는 위도와 경도 내부로 한정된다.

- a) 동경 145도 50분 26초, 북위 43도 23분 40초.
- b) 동경 145도 51분 48초, 북위 43도 24분 23초.
- c) 동경 145도 54분 20초, 북위 43도 22분 36초.

d) 동경 145도 51분 30초, 북위 43도 22분 06초.

제6조

제1조에 제시된 지역에서 미역채취에 종사하는 일본 어부들은 미역채취업을 조정하는 규칙 및 본 협약의 조례들을 포함하여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소련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기 언급된 법률, 규정과 규칙들에 관해서 또한 그것들이 변경과 부가 사안에 대해서 소련 측은 전일본어업인연합에 통보해줄 것이다.

본 협약의 조례를 위반하는 일본 어부들은 소련 당국에 의하여 또는 전일본어업인연합에 의해 이 지역에서의 조업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출처: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й, заключенных ССС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пуск XXIII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70. С. 430~43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첨부 42

소련 연해 구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과 어업 조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76년 10월 10일자 명령

(발췌)

소련 최고위원회 간부회는 최근 소련의 인접국들을 포함하는 다수 국가들이 국제연합해양법 제3차 회의에서 준비 중인 국제협약의 체결을 기다리지 않고서 자국 연안에 폭 200해리의 경제수역이나 어업수역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으로 소련은 국제적 기반에서의 세계 해양에 대한 권리체계 문제를 조

정하기 위해 위 협약을 체결할 것이다. 본 협약에서는 연안 생물자원의 이용과 같은 문제들이 각국의 합법적 이익을 고려하여 그 문제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복합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런 협약의 체결까지 소련 연안과 접해 있는 해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번식 그리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소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지체 없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소련의 연안과 접하며 통상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역, 즉 소련 영해에는 본 포고의 조례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존과 어업 조정을 위한 임시 대책이 도입된다.

이런 임시대책의 수립은 소련 영해의 이해를 침범하지 않는다.

2. 소련은 본 포고 제1조에서 조건 지어진 해역 내에서 조사, 개발 그리고 보존의 목적에서 어족 및 다른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 소련의 이 권리는 소련의 통과수역 내에 있는 회귀성 어족에게도 적용된다. 단 이런 어족이 소련에 의해 타국의 영해, 경제수역 또는 어로수역으로 인정된 수역에 체류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어류 및 다른 생물자원의 포획, 또는 조사와 위의 포획과 관련된 다른 활동 등, 이후 '어획'이라 불리는 행위는 소련과 외국 간의 협약 또는 다른 동의를 기초한 경우에 한해 본 포고 제1조에 의해 조건 지어진 해역 내에서 외국 법인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있다.

4. 본 포고 제1조에서 조건 지어진 해역 내에서 어족자원과 다른 생물자원의 적절한 이용은 상응하는 과학적 자료나 필요한 경우 유관 국제기구의 권고에 기초하여 이행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a) 각 어종 및 기타 생물자원의 연간 총 어획량.

b) 채취 어종의 총 허용 어획량이 소련의 어획능력을 상회할 경우, 어족 및 기타 생물자원의 연간 어획량의 일부는 외국 선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c) 합리적 어획의 보장 및 생물자원의 보존과 재생산을 위한 조치.

5. 본 포고 제2조, 제3조, 제4조의 조례를 준수하면서 외국인용 어획 쿼터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쿼터에 따라 외국 선박에게 어획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다. 허가서가 없는 외국 선박의 어획은 금지된다.

6. 생물자원의 보존과 어업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의 조건과 실행 기간은 소련 연안의 구체적인 인접 수역에 따르며, 본 포고의 조례 준수를 위한 통제책의 수립과 본 포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적용 절차는 소련 각료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8. 본 포고의 조례는 국제연합해양법 제3차 회의의 업무를 고려하여, 본 포고 제1조에서 언급된 해역의 체제를 규정하는 소련의 다른 법률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 대표

포드고르니(Н. Подгорный)

소련 최고회의 비서

게오르가제(М. Георгдзе)

출처: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й, заключенных ССС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пуск XXXII. Действующие договоры, соглашения и конвенции, вступившие в силу между 1 января и 31 декабря 1976 года. Приложения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78, С. 581~583.

다음에 출판되었다. Ведомости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1976, No. 50.

북빙양과 태평양의 소련 측 연해 구역에서 생물자원의 유지와 어업 조정에
따른 임시조치 도입에 관한 소련 각료회의의 1977년 2월 24일자 결의

소련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의 1976년 12월 10일자 포고문 '소련 연안
해역에서의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 조정에 대한 임시 조치에 관하여'의 제6
조에 따라 1977년 3월 1일부터 위 포고문에서 규정된 조치를 실행한다. 대
상 해역은 베링 해, 오호츠크 해, 동해, 추코트 해, 태평양과 북빙양 그리고
소련 소유 도서의 주변 해역을 포함하며, 그 폭은 모든 영해를 계산하는 통
상기선에서 200해리, 즉 소련의 모든 영해다.

상기 수역에서 소련 연안과 접경국 연안 사이의 거리가 400해리를 넘지
않는 해역, 즉 베링 해와 추코트 해 그리고 북빙양에서는 1867년 3월
18(30)일자 러·미 회의에서 규정된 선, 태평양의 쿠릴열도 남부해역에서는
열도의 섬들과 일본 영토 양자로부터 동등한 거리를 두고 형성된 선, 소비
에트해협과 쿠나시르해협에서는 소련의 국경선, 오호츠크 해와 동해에서는
중간선 또는 소련 연안과 접경국의 연안으로부터 동등한 거리에서 형성된
중간선 등이 1976년 12월 10일자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포고문에 따른
임시 조치의 적용 지역을 제한하는 선으로서 사용된다.

소련 각료회의의 대표

코시킨

소련 각료회의의 업무총괄

스미르튜코프(М. Смиртюков)

1977년 2월 24일, No. 163 크레믈린, 모스크바.

출처: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й, заключенных ССС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пуск XXXIII. Действующие договоры, соглашения и конвенции, вступившие в силу между 1 января и 31 декабря 1977 года. Приложения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79. С. 487.

간행본: Собрание Постановл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ССР. 1977. No. 11.

첨부 44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소련 연안에서의 어업과 관련하여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1977년 5월 27일자 협약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는, 태평양 북서부 해역 어족자원의 보존과 최적의 이용에 공동의 관심을 표하며, 자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해양법 제3차 회의에서의 논의를 고려하며,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의 1976년 12월 10일자 포고문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이 탐사, 개발 그리고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소련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며, 태평양 북서부 해역 소련 연안에서 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던 일본 국민과 어선들을 고려하며, 어업분야에서 소련과 일본 간의 상호 유익한 협력의 발전을 희망하며, 소련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대상이자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생물자원의 이용 규칙과 조건을 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즉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은 태평양 북서부 소련 연안과 접해 있는 해역 중에서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의 1976년 12월 10일자 포고문 ‘소련 연안 해역

에서의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조정에 대한 임시 조치에 관하여’의 제6조와 소련 정부의 결정으로 정해진 해역에서 일본 국민과 일본 어선들에 의한 조업 규칙과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제1조에서 언급된, 일본 국민과 일본 어선들의 조업권은 소련 국민과 어선들이 일본 해안에서 전통적으로 종사했던 조업권을 보존해주는 상호 이익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공된다.

제5조

1. 소련의 유관 기관은 상기 제1조에 언급된 해역에서 조업을 원하는 일본 어선에게 조업권을 제공한다. 조업 허가를 받지 못한 일본 어선은 제1조에서 언급된 해역에서 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신청서 제출 절차와 제1항에 언급된 허가서 발급 절차, 일본 조업에 관한 정보 제공 절차, 일본 어선에서의 조업일지 기록 절차는 본 협약의 첨부에 제시되어 있다. 이 첨부는 본 협약의 고유한 일부다.

3. 소련 유관 기관은 제1항에 언급된 허가서의 발급에 대해 합당한 규모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어선이 본 협약의 규정 및 제1조에 언급된 해역에서의 생물자원 보존과 어업조정을 위해 소련이 발표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상기 조례 또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일본 국민과 어선은 소련의 법규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의 그 어떤 조항도 국제연합해양법 제3차 회의에서 검토 중인 해

양법 문제와 상호관계의 문제로 체약 상대방의 지위나 관점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

1. 본 협약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에 부쳐진다.

2. 본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발효되어 197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자국 정부의 전권을 부여받아 아래에 서명한 이들이 본 협약에 조인했다.

1977년 5월 27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와 일본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양 협약문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1977년 6월 10일 본 협약이 발효되었다.

출처: Сборник действующих договоров, соглашений и конвенций, заключенных СССР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ыпуск XXXIII. Действующие договоры, соглашения и конвенции, вступившие в силу между 1 января и 31 декабря 1977 года, No. 2541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ССР,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1979. С. 261~265.

일본 어부들의 미역채취업과 관련하여 소련 어업부와 홋카이도 어로인연합
간에 체결된 1981년 8월 25일자 협약

소련 어업부와 홋카이도 어로인연합은 소련과 일본 간의 우호관계와 협력의 발전·강화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제1조

소련 측은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일본 어로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그들이 아래 규정된 지점을 통과하는 위도와 경도로 한정된 구역에서 미역채취업에 종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 a) 동경 145도 50분 26초, 북위 43도 23분 20초.
- b) 동경 145도 51분 48초, 북위 43도 24분 23초.
- c) 동경 145도 51분 30초, 북위 43도 22분 06초.

제5조

본 협약의 제1조에 제시된 구역에서 미역채취업에 종사하는 일본 어로인들은 그 구역에서 적용되는 소련의 법률, 명령, 규칙 및 본 협약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상기의 법률, 명령, 규칙 및 그것들의 변경과 추가에 대해 소련 측은 홋카이도 어로인연합에 통보해준다.

출처: Сборник двусторонних соглашении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ыболовства 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 1987. С. 300~302.

소련과 일본 양국 연안어업 분야에서의 상호관계에 관한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1984년 12월 7일자 협약
 (발췌)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는, 태평양 북서해역 생물자원의 보존과 최적의 이용에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제연합해양법협약(Конвенции ООН по морскому праву)의 채택을 고려하여, 소련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의 1984년 2월 28일자 '소련의 경제구역에 관한' 포고령에 따라 생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위한 소련의 주권적 권리와 일본법에 기초한 1977년 5월 2일자 어로수역에 대한 임시조치에 따른 일본의 어업 분야 사법권을 인정하고, 1977년 5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된 1977년도 태평양 북서해역에 위치한 소련 해안에서의 조업에 관한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약에 따른 관계 및 1977년 8월 4일 도쿄에서 조인된 1977년도 일본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약에 따른 관계, 그리고 어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통적 관계를 감안하여, 태평양 북서해역에 위치한 양국 연안어업 분야에서의 상호관계에 관한 규정과 조건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항에 합의했다.

제1조

각 체약 측은 상호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의 해당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이하 '구역'이라 명명되는 태평양 북서해역의 자국 연안에 접한 200海里 구역 이내에서 상대방 국민과 어선에게 조업을 허락한다.

제4조

1. 각 체약 측은 자신의 국민과 어선이 상대 체약 측의 구역에서 어업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법률과 규칙 내에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정해진 정책과 여타 규정이나 조건들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한다.

2. 각 체약 측은 자신의 구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자신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정해진 정책과 여타 규정이나 조건들을 상대방의 국민과 어선이 준수하도록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책을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다.

상대방의 어선을 나포 또는 억류할 경우 각 체약 측은 유관 관청은 외교적 통로를 통해 취해진 조치와 향후의 처벌에 관해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7조

본 협약의 그 어떤 조항도 해양법 문제나 상호관계의 문제로 체약 상대방의 지위나 관점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Сборник двусторонних соглашений СССР по вопросам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ыболовства и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 1987. С. 290~293.

첨부 47

1991년 4월 18일자 소·일 공동성명

(발췌)

1. 일본 정부의 초청에 의거하여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16일부터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소련 외무부 장관 베스스메르트니흐(A. Бессмертных)와 다른 공식 인사들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수행했다.

2. 4월 16일 천황 궁에서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그의 영부인 그리고 일본 천황과 황후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3.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일본 총리 가이후 도시키와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를 포함하여, 상호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국제문제와 소·일 관계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4. 일본 총리 가이후 도시키와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하보마이군도, 시코탄, 쿠나시르, 이투루프의 귀속에 관한 양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본과 소련 간의 영토경계 획정 문제와 양국 간의 강화조약의 작성 및 체결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상세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이전에 연기되었던 공동작업, 특히 정상 간의 협의는 일련의 개념적 명제들을 규명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강화조약은 영토문제의 해결을 포함하여 최종적인 전후 조정의 문서가 되어야 하며, 우호에 기초한 소·일 관계에 장기적 전망을 열어주고 상대방의 안전에 피해를 주는 요소를 제거해야만 한다.

소련 측은 일본 국민과 위 도서(島嶼) 주민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일본 국민이 위 도서들을 손쉽게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며, 위 지역에서 상호 유익한 공동경제활동을 수립하고, 위 도서에 배치된 소련 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근시일 내에 실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 측은 이 문제로 계속해서 논의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총리와 대통령은 일본과 소련이 전쟁상태의 종결과 양국 간의 외교관계 복구를 공동으로 선언했던 1956년부터 각기 다른 시기의 양국 협의에서 축적된 모든 긍정적 요소들을 이용하면서, 강화조약의 준비를 마치기 위한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위해 건설적이고 역동적으로 행동하겠다는 확고한 희망을 표명했다.

그와 동시에 일본과 소련 그리고 일본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간의 상호 관계에서 선린우호, 상호 이익 및 신뢰의 분위기 속에 양국 국민들 간의 무역과 경제, 정치 분야, 공동체, 문화, 교육, 여행, 체육 그리고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교류의 영역에

서 건설적 협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인정되었다.

1991년 4월 18일, 도쿄.

소련 대통령

일본 총리

출처: Совместное советско-японское заявление // Правда, 1991, 20 апреля,
No. 95. С. 5.

첨부 48

1991년 4월 26일자 소련 상원에서 행한 고르바초프의 연설

(발췌)

우리의 방일 준비는 양국 관계의 변화 과정을 강제로 촉진하거나, 역사 자체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현존하는 문제에서 손을 떼고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이 존재했다면, 그것들을 논의하고, 검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들은 서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정치적·지적·경제적 손실이 축적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누구에게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이후 총리와의 협의는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협상이 매우 쉽지 않았으며, 간혹 극적인 반전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전쟁과 관련된 난점들을 예견했었습니다. 그것은 영토

획정 문제 혹은 일본식 호칭으로 ‘북방영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장시간 동안 그런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의 역사를 배우고, 그 문제의 법적·정치적·심리적 측면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함에 따라 더더욱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토획정을 포함하여 중국적인 전후 조정을 강화조약으로 향하는 길에서 상호이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협상은 힘들었습니다. 각자가 단호하고 사리에 맞게 자신의 입장, 즉 자신의 국익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우리는 광범위한 테두리 내에서 많은 문제들에 동의한 공동정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이후 총리는 1956년의 선언이 성명서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언에서는 전 시상태의 종결과 외교관계의 복구뿐만이 아니라, 강화조약의 체결 이후 일본에게 2개 도서를 반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서 중에서 역사적 현실이 되어 국제법적 그리고 물리적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입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화살’과 같은 것이어서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복원시키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이후의 현실은 달랐던 바, 바로 그 다른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출처: Президент СССР о поездке в Японию // Известия, 1991, 29 апреля, No. 101, С. 1.

러일관계에 관한 1993년 10월 13일자 도쿄선언

(발췌)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양국 관계에서 과거의 힘든 유산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공통으로 이해하며,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하보마이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 진지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역사적·법률적 사실들에 의거하여 그리고 두 국가들 간의 협약을 위해 작성된 문서에 기초하여, 합법성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화조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고, 그럼으로써 양측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는 러시아연방이 소련을 승계하여 소련과 일본 간의 모든 조약과 여타 국제협약이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도 계속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는 현시점까지 양측 간의 강화조약에 따라 노동자 집단 내에서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1992년 9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획정 역사에 관한 공동문서집’이 러·일 양국에서 공동으로 출판된 것이 그 결과 중의 하나임을 지목했다.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는 상호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일련의 행보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행보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상기 언급된 도서의 상주 주민과 일본 주민들의 상호 여행을 향후 증진시키는 여행으로서, 양측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이 여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1993년 10월 13일, 도쿄.

러시아연방 대통령
엘친

일본 총리
호소가와 모리히로

출처: Новое из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сборника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2001, С. 6~9.

간행본: Бюллетен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М., 1994, No. 2, С. 67~68.

첨부 50

해양생물자원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일부 문제에 관해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1998년 2월 21일자 협약

이하 양측이라 하는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는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선린관계 발전과 강화에 부응하길 희망하며, 1984년 12월 7일 도쿄에서 체결된 양국 연안에서 어업분야의 상호 관계에 관한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약과 1985년 5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어업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소련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약에 기초한 관계를 포함하여 어업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통적·상호 호혜적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심화를 추구하면서, 1993년 10월 13일자 러·일 관계에 관한 도쿄선언 및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무역·경제관계와 과학기술관계의 전망에 관한 선언에 기술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해양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여 생물자원의 보존, 합리적 사용과 재생산을 위한 협력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본 협약에 제시된 해역 내에서 일본 어선들에 의한 일시적 상업어로의 조건을 비롯하여, 생물자원의 보존, 합리적 사용과 재생산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제1조

양측은 본 협약에 따라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그리고 하보마이의 지점들과 첨부에 제시된 좌표들을 연결하는 직선 측지선으로 한정된 해역에서 일본 어선들의 어업과 생물자원 보존, 합리적 사용, 재생산을 목적으로 협력한다.

제2조

1. 제1조에 제시된 해역에서 일본 어선들의 어업은 양측 기관들 간에 매년 체결되는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된다. 양측은 이 기관들의 규정을 외교적 통로로 상대 체약국에게 통보한다.

2. 양측은 본 협약 제1조에 언급된 양측 기관들 간에 체결된 협약의 승인에 관해 양해각서의 형태로 외교 통첩을 교환하여 상대 체약국에게 통보한다.

3. 일본 측은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일본 기관이 본 협약 및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양해각서에 따라 어업, 생물자원 보존과 재생산 등과 연관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일본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다.

제6조

본 협약과 본 협약에 따른 행위와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관된 모든 행위와 조치들은 상호 관계의 차원에서 양측 중 어느 일방의 관점이나 지위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

1. 본 협약은 본 협약이 효력을 지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내 절차를 양측이 이행했다는 사실을 외교적 통로로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만약 체약국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효력의 중단을 6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기 이전에는 3년 동안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2. 본 협약이 적용되는 3년의 기간 동안, 만약 일방이 상기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본 협약의 적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한, 차기 유효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1988년 2월 21일 모스크바에서 각각 러시아어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양 원문 모두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러시아연방 정부

일본 정부

출처: Бюллетен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1999, No. 2, С. 53~56.

첨부 50.1

러시아연방 외무부가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에 발송한
1998년 5월 21일자 통첩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해양생물자원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일부 문제에 관해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거하여, 러시아 해양생물자원산업과 연관된 법률과 규칙을 통보합니다.

외무부는 또한 위에 언급된 법률과 규칙을 수산업자 및 이해관계를 지닌 어부들이 속한 홋카이도협회에 필요한 형태로 통보해줄 것을 대사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1998년 5월 21일, 모스크바.

첨부: 상기 422면에 언급된 것.

출처: Ждакаев И.А, Зиланов В.К., Плотников А.Ю. “Курильский вопрос”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М., 2000. С. 63.

첨부 50.2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이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제2국에 발송한
1998년 5월 21일자 구두통첩
일본어 번역본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은 러시아연방 외무부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1998년 5월 21일자 No. 3168-н/2да 통첩의 접수를 러시아 측에 확인해 드리며, 본 통첩에 첨부된 법률과 규칙을 수산업자 및 이해관계를 지닌 어부들이 속한 홋카이도협회에 통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

1998년 5월 21일.

출처: Ждакаев И.А, Зиланов В.К., Плотников А.Ю. “Курильский вопрос”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М., 2000. С. 63.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1998년 11월 13일자 모스크바선언

(발췌)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1993년 10월 13일자 러·일 관계에 관한 도쿄선언과 현재의 선언에 기초하여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유, 민주주의, 법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통합된 현재의 러시아연방과 일본이 양국의 전략적 및 지정학적 이익에 부응하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고자 소집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다.

건설적 협력관계 수립의 토대가 된 도쿄선언에 기초한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는 결의가 이행될 것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와 가와나(Кавана)에서의 비공식 정상급 회담을 포함해서 양국 지도자들 간의 건설적 대화의 결과, 현재 양국 간에는 급속한 관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쿄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과거의 힘든 유산을 극복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공통의 이해를 확인했다.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공고화를 위해서, 또한 중요한 세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I. 양국 관계

1.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관계가 양 선언국의 대외정책 노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상호 이익, 장기적 전망, 긴밀

한 경제협력에 기초하여 건설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2.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러시아 측이 금년 4월 가나와에서의 정상회담 당시 이루어진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제안에 답변을 전달한 것을 고려하여, 크라스노야르스크와 가나와에서의 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도쿄선언과 협약들에 따라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명령을 각 정부에 하달했다.

양국 지도자는 2000년까지 강화회담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결정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현존하는 러·일 강화조약 체결 위원회 내에 국경선확정 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는 국경선확정 소위원회와 동시에 활동하면서 위 도서들 내에서 양국의 법적 지위에 침해하지 않고도 가능한 공동경제활동의 종류들을 규정하는 공동경제활동 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명령도 하달했다.

대통령과 총리는 인도적 이유에서 과거 위 4개 도서의 주민이었던 일본 국민과 그 가족들이 상기 도서를 자유 방문할 수 있게 한다고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그런 방문 절차를 위한 법률적·실질적 측면을 고안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3.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러·일 양국의 인근 지역 주민들 간의 심도 있는 상호이해와 강화조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조건 수립에 부응하기 위해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와 관련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총리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긴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한 양국 간의 협력범위 확대를 반기고 있다.

양국 지도자들은 해양생물자원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일부 문제에 관해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협약과 그 협약에 기초한 산업의 정상적인 실행 역시 높게 평가하며, 이것이 양국 간의 신뢰관계 강화라는 사안에 큰 보증이 될 것임을 확인했다.

1998년 11월 13일, 모스크바.

러시아연방 대통령
엘친

일본 총리
오부치

출처: Новое из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сборника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2001, С. 14~20.

신문: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1998, 14 ноября.

첨부 52

강화조약 문제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2000년 9월 5일자 성명

1. 일본 총리와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일본과 러시아 간에 양국의 전략적·지정학적 이해에 부응하는 점진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고자 금년 9월 4일과 5일 양일 동안 도쿄에서 강화조약 문제를 포함하여 양국 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관해 상세한 회담을 가졌다.

2. 양측은 1997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있었던 일·러 정상회담 중 도쿄성명에 기초하여 2000년까지 강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사전협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아래와 같은 긍정적 결과에 도달했다.

- 외무부 장관 수준의 강화조약 체결에 관한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다.
- 국경선획정 소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내부에서 적극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공동경제활동 소위원회가 설립되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투

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이하 도서라고 한다)에서의 공동경제활동 발전 분야에서의 일·러 협력 프로그램'이 체결되었다.

- 해양생물자원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일부 문제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성공적으로 실현되었다.

- 최대한 간편화된 절차에 따른 자유로운 도서 방문으로 명명된 조약이 이행되고 있다.

- 1998년부터 1991년의 협약에 따라 도서의 주민들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 이행 중인 상호 여행에 참가하는 이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1994년의 지진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인본주의적 원조의 범위에 긴급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3. 양측은 크라스노야르스크협약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그 협약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계속해서 공고히하는 데 최대한 부응할 것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4. 양측은 1993년 리일관계에 관한 도쿄성명서와 1998년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성명을 포함하여 현재 까지 체결된 모든 협약에 따라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강화조약을 작성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협상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위원회 내의 자국 대표들에게 강화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 강화조약 체결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 및 국경선 획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향후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창안할 것.

-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토획정 역사에 관하여 특히 1993년 이후 시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되는 공동문서집의 새로운 출판을 준비하기 위해 보조를 취할 것.

- 강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을 각국 여론에게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활성화

화할 것.

5.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강화조약 협상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В. В. Путин)은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를 공식 초청했다.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는 감사를 표하며 초청을 수락했다. 방문기간은 외교적 통로를 거쳐 결정될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도 가장 다양한 가능성을 이용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게 유익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6. 협상은 솔직하고 신뢰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 9월 5일, 도쿄.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

출처: Новое из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сборника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2001, С. 26~27.

첨부 53

강화조약 협상의 지속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2001년 5월 25일자 이르쿠츠크성명

2000년 4월 일본 총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과 2000년 9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도쿄 방문 이후,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2001년 3월 25일 이르쿠츠크에서의 정상회담 중 러·일 관계의 역동적 발전을 기꺼이 확인했다.

2000년 9월 5일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에 부응하는 조목에 기초하여 강화조약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측은 90년대에 회담과정의 질적 강화와 서로의 입장에 관한 상호 이해가 심화된 것을 확인했다. 1993년 러·일 관계에 관한 도쿄성명에 기초하여 2000년까지 강화조약 체결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크라스노야르스크 협약이 이 회담에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다. 양측은 크라스노야르스크 협약의 실현을 위한 업무가 비중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으며, 그 업무의 창조적 잠재력은 향후에도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강화조약의 체결이 향후 러·일 관계의 진보적 발전 강화에 부응할 것이며, 질적으로 새로운 양국 관계의 단계를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지침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성명서, 1993년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성명서, 1998년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성명, 2000년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 그리고 현재의 성명 등, 현시점까지 채택된 문서에 기초하여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회담을 향후 지속한다.

-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성명서가 양국 간의 외교관계 복구 이후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한 회담 개시에 단초를 제공하는 초석과 같은 법적 문서라는 점을 확인했다.

- 이런 점에 의거하여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자 향후 회담을 조속히 개최함으로써 1993년 러일관계에 관한 도쿄성명서에 기초하여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한다는 데 동의했다.

- 상호 수용 가능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담을 진행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시일 내에 강화조약의 체결을 향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 강화조약의 조속한 체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2001년 1월 16일 외무부 장관 이바노프(И. С. Иванов)와 고노(Է. Коно)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획정 역사에 관한 공동문서집의 새로운 출간 및 강화조약의 체결이 지닌 공공성의 설명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각서의 실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측은 회담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일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다양한 방면에서의 폭넓고 서로에게 유익한 협력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

2001년 3월 25일, 이르쿠츠크.

러시아연방 대통령
푸틴

일본 총리
모리 요시로

출처: Новое из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сборника доку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межева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Японией. МИ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Д Японии, 2001, С. 26~27.

첨부 54

러일행동계획 채택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2003년 1월 10일자 공동성명

(발췌)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당면한 세계 문제,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국제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양국 관계에서 과거의 곤란한 유산을 최종적으로 극복하고 폭넓은 러·일 협력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며,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회담으로 강화조약을 신속히 체결하려는 결단력을 확인함으로써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 1993년 러·일 관계에 관한 도쿄성명, 1998년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성명, 2000년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 그리고 2001년 강화조약 회담의 지속을 위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이르쿠츠크성명 등을 포함해서 현시점까지 체결된 협약에 기초하여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도달하고자,

여기에 첨부된 러·일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그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실행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성명했다.

2003년 1월 10일, 모스크바

러시아연방 대통령

V. 푸틴(В. Путин)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출처: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일본 총영사관 제공 자료.

러시아와 일본의 행동계획

(발췌)

2. 강화조약 회담: “과거의 곤란한 유산을 극복하고 러·일 협력의 새롭고 폭넓은 지평을 열어가자”.

현시점까지 양국 간에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회담의 결과 중요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그중에는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 1993년 러·일 관계에 관한 도쿄선언, 1998년 러시아연방과 일본 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수립에 관한 모스크바성명, 2000년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 그리고 2001년 강화조약 회담의 지속을 위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이르쿠츠크성명 등이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준비하기 위해 기구가 설립되었다. 즉 강화조약 체결 문제에 관한 러·일 공동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양국 외무부 장관이 그 수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국경선확정과 공동경제활동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러·일 관계의 점진적 발전이 지닌 중요성 및 강화조약 체결의 공공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국은 일단(一團)의 정책을 실행했다. ‘지구화라는 환경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러·일 관계’라는 러·일 포럼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양자 간 포럼과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영토확정 역사에 관한 공동문서집’이 출간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 전문가, 학자, 전공자들 간에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에 양국 의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그 결과 강화조약의 체결 문제로 협의를 진전시키려면 양국 관계에서 감정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자유로운 도서 방문으로 불리는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의 주민들과 일본 국민들 간의 무비자 방문 실행을 비롯한 다른 접촉들이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에 깊이를 더해주었다. 1991년부터 이런 방문 프로그램에 러시아와 일본 국민 약 1만 명이 참가했다.

1998년 해양생물자원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일부 문제에 관해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협약에 기초하여 위의 도서 구역에서 어업용 일본 선박의 성공적 조업이 보장되어 있다.

최근 10년 동안 일본 정부는 협력 위원회의 노선을 따라 위에 열거된 도서의 주민들에게 협력을 제공했다.

향후 활동

러시아연방과 일본은 질적으로 새로운 양국 관계를 추구하며, 향후 지속적인 상호 이해의 심화,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의 강화에 기초하여 강화조약 체결 문제의 상호 이해 가능한 결정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에 양국은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이다.

1956년 소련과 일본의 공동선언, 1993년 러·일 관계에 관한 도쿄성명, 2001년 강화조약 회담의 지속을 위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이르쿠츠크성명 그리고 다른 협약들은 도서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화조약 체결을 위한 회담의 토대를 형성하여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달성할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아직 남아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활발한 협의를 수행한다. 양측은 회담 진행 시 상호 이해, 신뢰, 다양한 방면에서의 폭넓고 상호 유익한 협력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러·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0년 강화조약 문제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성명에 따라 강화조약과 관련된 정보물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배포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을 위해 강화조약 체결의 중요성이 지닌 공공성을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도시 주민과 일본 국민의 무비자 방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청년과 유소년의 만남, 상호 언어 교육, 가장 간편한 방문 제도의 수립에 합의했음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도시 방문의 실행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러·일 환경보호 위원회와 관련하여, 무비자 방문으로 도서생태의 공동 연구 이행이라는 부문에서의 경제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을 실행한다.

불가피할 경우 일본은 도시의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목적의 효율적 원조 제공에 협력한다. 일본은 향후에도 이런 원조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1998년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해양생물자원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일부 문제에 관해 러시아연방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협약이 러·일 관계의 강화와 양국 국민의 신뢰 심화에 부응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협약에 명시된 협력을 상호 이익의 기초에 입각하여 지속한다.

공동경제활동 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의 도서에서 양국의 적절한 공동경제활동 형태를 모색한다.

러시아연방과 일본 양국 외무부는 본 ‘행동계획’에 기초하여 수행 중인 협력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들을 규칙적으로 검토한다.

출처: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일본 총영사관 제공 자료.

1936년 소련 헌법(기본법)

(발췌)

제18조

소련 공화국의 영토는 그 주체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출처: Конституци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Принята Чрезвычайным VIII съездом Советов Союза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5 декабря 1936 года(소련 헌법 [기본법]. 본 헌법은 1936년 12월 5일 소연방 소비에트 제8차 특별회의에서 채택되었음) //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й Конституции (в документах). 1917~1956. No. 273. М.: Гос. изд-во юри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7. С. 729~746.



1937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기본법)

(발췌)

제16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출처: Конституция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Советской Федеративн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Принята Чрезвычайным XVII

Всероссийским съездом Советов 21 января 1937 года(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기본법], 1937년 1월 21일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제17차 특별회의에 의하여 채택되었음) // История Советской Конституции (в документах), 1917~1956, No. 275, М.: Гос. изд-во юрид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1957. С. 752.

첨부 57

개정 및 추가된 1978년도 러시아연방 헌법(기본법)

(발췌)

국가사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전(全) 인민의 논의에 회부되며, 동시에 전 인민의 투표에 부친다(국민투표).

제70조

러시아연방의 영토는 보전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도 양도되지 않는다. 러시아연방의 구성에 속하는 공화국, 변강, 주, 자치주, 자치구 등의 영토는 러시아연방의 통일된 영토를 구성한다.

제84조⁹

변강과 주의 영토는 그 보유 주체의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제84조¹¹

러시아연방 당국의 연방기관 그리고 변강, 주, 모스크바 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당국 산하 기관 등의 권한에는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b) 변강과 주 ……의 경계선 변경.

제104조

러시아연방 당국의 최고기관은 러시아연방의 하원 의회다.

러시아연방 하원 의회의 배타적 권한에는 아래의 것들이 해당된다.

- 2) 러시아연방의 대내 및 대외정책 결정.
- 3) 러시아연방의 국경선 변경문제 결정.

제184조

러시아연방 국가기관의 모든 법률과 다른 조례는 러시아연방의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에 따라 제정된다.

별첨

연방협약

러시아연방 국가기관과 러시아연방 변강, 주,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당국간의 권한 제한에 관한 협약

제1조

러시아연방 국가기관과 변강, 주 당국은 다음에 대해 공동으로 관할한다.

- b) 변강과 주의 경계 변경

출처: 러시아연방(러시아) 헌법(기본법). 본 헌법은 1978년 4월 12일 소집된 제9차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상원 제7차 특별회기에서 개정되고 추가되어 채택되었다. 1989년 10월 27일자, 1990년 5월 31일자, 1990년 6월 16일자, 12월 15일자, 그리고 러시아연방 법률로 채택된 1992년 4월 21일자

개정·추가 사항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에 채택되었다; Известия, 1992.

첨부 58

1993년 러시아연방 헌법

(발췌)

제3조

1. 러시아연방의 제 민족은 러시아연방 주권의 주체이며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다.
2. 국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국가권력기구와 지방자치기구들을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
3.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다.
4.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을 탈취할 수 없다. 권력의 탈취 또는 취득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소추된다.

제4조

1. 러시아연방의 주권은 연방의 전 영토 전체에 미친다.
2.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연방 법률은 러시아연방 전 영토 내에서 최고 상위법이다.
3. 러시아연방은 영토의 보전과 불가침을 보장한다.

제5조

3. 러시아연방의 연방체제는 국가적 보전, 국가권력체제의 단일성, 연방 권력기관과 연방 구성주체 권력기관 간의 관할 및 권한의 한계, 러시아연방

국민의 평등과 자결에 기초한다.

제11조

3. 러시아연방의 국가권력기관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국가권력기관 간의 관할 및 권한의 한계는 이 헌법, 연방조약 및 관할과 권한의 제한에 관한 다른 조약에 의해 수립된다.

제15조

1. 러시아연방 헌법은 최고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러시아연방의 모든 영토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 러시아연방에서 채택된 법률, 기타의 법령은 러시아연방의 헌법과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2. 국가권력기구, 지방자치기구, 공무원, 일반시민들과 기타 단체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67조

1. 러시아연방 영토는 내해, 영해, 영공을 포함한다.
2. 러시아연방은 연방법률 및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러시아연방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며 관할권을 행사한다.

제72조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주체의 공동 관할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c) 토지, 지하자원, 수자원, 기타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

출처: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нята все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12 декабря 1993 года, М. Юридиче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93.

찾아보기

ㄱ

- 가도와키(Кадоваки) 352
 가라후토(カラフト) 47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138
 가산열도[火山列島] 287
 간제스(나카노도리) 281
 게오르가제(М. Георгадзе) 362
 고노(Г. Коно) 384
 고노 이치로[河野 一郎] 109
 고르바초프(М. С. Горбачев) 6, 7
 고르차코프(А. М. Горчаков) 50, 238
 고르킨(А. Горкин) 283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245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144
 구치노시마[口之島] 281
 국제연합해양법협약 368
 국제연합헌장 27
 규슈 66
 그로미코(А. А. Громыко) 25, 89, 108
 글레브(Г. В. Глеб) 182
 기무라(Х. Кимура) 137

ㄴ

- 나토(NATO) 188
 나호트카(Находка) 185
 난사군도[南沙群島] 293
 난세이[南西] 281
 난포 281
 난포제도[南方諸島] 307
 남만지선(南滿支線) 64

- 남사할린 25
 남치시마 104
 남쿠릴 94
 남쿠릴열도 11
 네르친스크(Нерчинск) 48
 네무로(Немуро) 만 319
 네무로 반도(根室半島) 170
 네무로해협(根室海峽) 300
 네벨스코이(Невельской) 49
 네이스(Нейс) 강 105
 념초프(Б. Немцов) 138
 노바야(Новая) 196
 노보예(Новое) 195
 노사푸[納沙布] 100
 니미츠(Chester William Nimitz) 273
 니시노지마[西之島] 307
 니시도쿠지로[西徳二郎] 242
- ### ㄷ
- 다렌(大連) 53, 257
 다비도프(Г. И. Давыдов) 45
 다이토(오히가시) 281
 다이토제도[大東諸島] 295
 다카쿠라(Такакура) 104
 다카히라 고고로[高平小五郎] 245
 단치히(Danzig) 105
 대서양현장 253
 대쿠릴압초맥 101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272
 덜레스(John foster Dulles) 25, 90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 240
 데미나(Демина) 169
 데즈네프(С. Дежнев) 35

도야마(К. Тояма) 42
 도요하라(豊原, 현 유즈노사할린스크) 283
 도쿄선언 137, 201
 도호쿠[東北] 178
 동프러시아 215
 동해 124
 등사군도(東沙群島)(프라타스제도) 298

ㄹ

라스투아(Растуа) 236
 라이코케(Райкоке) 236, 316
 라페루즈(Лаперуз, 宗谷)해협 46, 187, 236
 러시아-아메리카 회사 45
 러일우호통상조약 33
 러일전쟁 53
 러일행동계획 30
 레이둡스코예(Рейдовское) 196
 레자노프(Н. П. Резанов) 42
 로만 로젠(Роман Розен) 245
 로사리오(Rosario) 287
 로슈코프(А. П. Лосюков) 141
 로크(Рок) 만 197
 로파트카(Лопатка) 곶 236
 루스벨트 23, 60
 루지나(Ф. Ф. Лужина) 37
 루차르스코예(Ручарское) 196
 뤼순(旅順) 53, 257
 류노스케(О. Рюносукэ) 174
 '류큐'열도 107
 류큐제도[琉球諸島] 287
 리시이(Лисьи) 169
 리앙쿠르(다케시마) 281

ㄴ

마가단(Магадан) 188
 마르쿠스(미나미도리) 281
 마쓰모토 슌이치[松本俊一] 27, 108, 347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250
 마츠마에[松前] 42, 43
 마칸루시(Мақанруши) 236, 316
 마투슈마 41
 마투아(Матуа) 236
 마트마이(Матмай) 38
 말리크(Малик) 339
 맥스필드뱅크 298
 맥아더(Douglas MacArthur) 84, 87
 맥아더라인 125
 모네론[Монерон] 65
 모리 요시로[森喜明] 382
 모스크바선언 30, 137, 378
 모스크비틴(И. Москвитин) 35
 몰로토프 72
 무시르(Муссир) 236
 미나미토리지마[南鳥島, Marcus Island] 287
 미주리(Missouri) 호 78
 미코얀(А. И. Микоян) 346

ㄷ

바이칼 59
 발렌티나 호수 194
 발톤(В. Вальтон) 37
 발트 188
 바체슬라프 미하일로비치 몰로토프(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Молотов) 250

번스(James Francis Byrnes) 264
 번스타인(J. Бернстайн) 128
 베링(Берингов) 124
 베링 해 363
 베스스메르트니흐(A. A. Бессмертных)
 369
 베티로보이(Ветровой) 지협 197
 보스토츠니(Восточный) 185
 볼카노(카잔) 281
 북방영토 34
 북치시마 104
 북쿠릴 94
 불가닌(Булканин) 328
 브라트 체르포예프(Брат Черпов) 236
 브로우톤(Броутон) 236, 316
 브루스 프레저(Брус Фрэйзер) 273
 브루텐츠(K. Брутенц) 129
 블라디보스토크(Владивосток) 56, 185
 비테(Сергей Витте) 242

人

사르데냐(Sardinia) 46
 사플린(B. Саплин) 128
 사할린 10
 산타르(Шангар) 군도 35
 상가르(Сангар)해협 188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договор) 10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25
 샌프란시스코회의 25
 샤바노프(A. A. Шабанов) 189
 산타르(Шангар) 42
 셰필로프(Д. Шепилов) 330, 349

셰바르드나제(Э. Шеварднадзе) 5, 127
 소비에트(Совет)해협 124
 소엔(Соэн) 182
 소일공동선언 112
 소일중립조약 72
 소쿠릴암맥 87, 101
 소후칸[孀婦岩] 307
 수데텐란트(Sudetenland) 105
 수쇼(Сушио) 87
 수윤찬(Су Юнчан) 273
 슈판베르크(M. П. Шпанберг) 37
 슈슈(Шумшу) 35
 슈슈 군 100
 슈시리(Шумшири) 319
 스노우(Д. Сноу) 45
 스투드네바(Среднева) 236
 스투딘노쿠릴(Срединно-Куриль) 협곡 202
 스타두힌[M. Стадухин] 35
 스탈린 61
 스토로제보이(Сторожевой) 169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298
 시게미쓰(Сигэмицу) 330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 107
 시그날니(Сигнальный) 28, 124, 169, 359
 시레토코[知床] 100
 시린키 316
 시모다조약[下田條約] 10
 시무시르(Симушир) 38, 236
 시무시르 군 100
 시베토로(Сибэторо, 蘂取郡) 314, 319
 시보츠(Сибоцу) 87, 170
 시사군도[西沙群島] 298
 시시키(Шишки) 169

시아시코탄(Шиашкотан) 236
 시케미쓰 마모루[重光葵] 272
 시코쿠 66
 시코탄 군 100
 실레지아(Schlesien) 105
 쓰쓰이 히젠노 카미 234

○

아누친[Анучин] 57
 아니바(Анива) 만 45
 아르카디 볼스키(Аркадий Вольский)
 128
 아무르(Амур) 48
 아보시(Авось) 35
 아이누 12
 아키유리(Акиюри) 87
 아키유리토 170
 아투(Атту) 175
 아틀라스바[Атласова] 50
 아틀라스프(В. Атласов) 35
 안드로포프(Андропов) 128
 안토노프(Антонов) 269
 안티페로프[Д.Я. Антиферов] 35
 알라딘(В. В. Аладын) 170
 알라이드(Алайд) 50
 알래스카 42, 178
 알렉세이 로바노프 로스토프스키(Алексей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242
 알렌 282
 알류산열도 40
 알리아드 316
 에치슨 60
 애틀리 60
 야나예프(Г. Янаев) 129

야마사쿠라(Ямасакура) 182
 야우스베츠[矢臼別] 184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50, 238
 SSM-1 183
 에카르마(Экарма) 236, 316
 연해주(Приморье) 50
 영미선언(대서양현장) 23
 예브레이노프(И. М. Евреинова) 37
 예카테리나(Екатерина) 37, 39, 176
 엘친(Борис Ельцин) 7
 엠피미 푸타틴(Евфимий Путятин) 234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Bonin
 Islands] 287
 오네코탄(Онекотан) 37, 236
 오테르(Одер) 105
 오리엔트 쉴드(Orient Shield) 182
 오부치 케이조[小淵惠三] 143
 오야가리 281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128
 오쿠마(Р. Окума) 100
 오키나와 110, 182
 오키노도리[沖ノ鳥, Parece Vela] 287,
 295
 오희츠크 주 41
 오희츠크 항구 48
 온네코탄(Оннекотан) 319
 요시다(吉田) 25, 90, 301
 요시쓰구 다테가와(Иосицугу Татегава)
 250
 우다(Уда) 49
 우디비텔나야(Удивительная) 169
 우루프 군 100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272
 우시시르(Ушисир) 236
 우추료(울릉도) 281

유즈노사할린스크(Южно-Сахалинск) 150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 41, 145
 이르쿠츠크성명 30, 146
 이바노프(С. Иванов) 144, 384
 이오 281
 이주군도 281
 이즈메나(Измена) 170
 이즈베스티야(Известия) 61
 이투루프(Итуруп) 10, 33
 이훈(Айгун)조약 49
 일류힌(В. Илюхин) 6

ㅈ

자바이칼(Забайкалье) 54
 장제스[蔣介石] 62, 257
 제르칼니 플라시(Зеркальный пляж) 광
 상 196
 제물포항 59
 젤룬니[Зеленый] 57
 중동철도(中東鐵道) 62, 64, 257
 중사군도(中沙群島) 298
 진주만 71

ㅊ

처칠 60, 254
 체르넨코(Черненко) 128
 체르포이(Черпой) 236
 초르나야(Черная) 196
 초르니(И. Черный) 38
 추코트카 42
 추코트카 항구 71
 추코트 해 124, 363

치린고탄(Чиринкотан) 316
 치시마(쿠릴)해협 98, 101
 치킨(Н. Чикин) 38
 치토세[千歳] 183

ㅋ

카라한(Л. Карахан) 55, 249
 카렐(Карель) 협곡 215
 카를 스트루베(Карл Струве) 240
 카사트카(Касатка) 71, 177
 카이가라 섬 28, 124, 359
 카이로선언 23
 카이엔(Кайэн) 182
 칼리닌(М. Калинин) 283
 칼리닌그라드 105
 캄차카(Камчатка)반도 35
 캄차카 군 41
 케토이(Кетой) 236
 켈파트트(사이슈 또는 제주도) 281
 코르사코프(Корсаков) 237
 코만도르(Командор) 제도 40
 코우프 노트(Коуп Норт) 182
 코즐로바(Г. А. Козлова) 115
 코지레프(А. Козырев) 135
 코지렙스키(И. П. Козыревский) 35
 콘니히베르크(Königsberg) 105
 쿠나시르(Кунашир) 33, 176
 쿠나시르해협 124
 쿠드랴프(Кудряв) 화산 195
 쿠릴열도 10
 쿠순코탄(Кусун-котан) 237
 쿠지마 니콜라예비치 테레만코(Кузьма
 Николаевич Деревянко) 273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협약

142, 145, 378
 크라후토[Крафто] 47
 크루젠슈테른(Г. И. Крузенштерн) 48
 크림전쟁 46
 크림(알타)협정 23
 키스카(Кыска) 175
 킹 스워드(Кинг сворд) 182

ㅁ

타라카 100
 타라쿠(Тараку) 87, 170
 타스(ТАСС) 23
 타타르(Татар) 해협 245
 탄필리예바[Танфильева] 57, 170
 토마스 블레미(Thomas Albert Blamey) 273
 톨레니[Тюлений] 65
 트루먼 60
 티흐빈스키(Тихвинский) 328

ㅂ

파라모시리(Парамошири) 319
 파라무시르(Парамушир) 35
 파레스 벨라(오키노도리) 281
 파벨(Павел) 1세 41
 평후[澎湖]열도 281
 페레스트로이카 123, 216
 페세르나야(Пещерная) 169
 페테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 49
 페테르부르크조약 51
 페트로파블롭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 46
 포노마레프(С. А. Пономарев) 142, 170

포드고르니(Н. Подгорный) 362
 포야르크코프[В. Полярков] 35
 포츠담선언 23
 포츠머스강화조약 22
 폴론스코보(Полонского) 57
 표도렌코(Н. Т. Фёдоренко) 346
 포트리 1세 35
 푸시킨(Г. М. Пушкин) 354
 푸탸틴(Е. В. Путятин) 46
 푸틴(В. Путин) 144, 382
 프라솔롭스키(Прасоловский) 193
 프라우다(Правда) 61
 프로스토르(Простор) 196
 프리마코프(Е. Примаков) 138
 프리아무르(Приамурье) 50, 54
 프리자(Фриза)해협 187
 플로스키예[Шлоские]군도 37, 87
 핀란드(Финляндия) 215

ㅎ

하나카시(Ханакаси) 315
 하림코탄(Харимкотан) 236
 하바롭스크 25
 하바롭스크 변강(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88
 하보마이(Хабомай) 군도 33
 하보마제 281
 하산(Хасан) 56, 290
 하시모토 142
 하코다테[函館] 44, 234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108
 하포마제(Хапомадзе) 87
 할хин골(Халхин-Гол) 56
 해리먼(William Averell Harriman)

23, 65
호소가와 모리히로[細川護熙] 137
호크(Hawk) 183
혼슈 66
홋카이도 29, 36

후루베츠(Фурубэцу) 314
흐루시초프(Н. С. Хрущёв) 27, 109
흐보스토프(Н. А. Хвостов) 45
히로히토 24, 10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총서
36

동북아역사재단
ORIENTAL ASIAN HISTORY FOUNDATION

쿠릴 문제
역사, 법, 정책 그리고 경제

초판 1쇄 인쇄 2014년 11월 30일
초판 1쇄 발행 2014년 12월 10일

지 음 보리스 이바노비치 트카첸코
옮 김 김중현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4

ISBN 978-89-6187-352-9 9391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403487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